

1037-07-0430-01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 총론(Ⅰ)-



nis 국가정보원
www.nis.go.kr

「과거사」관련 대통령 말씀

- 이제 이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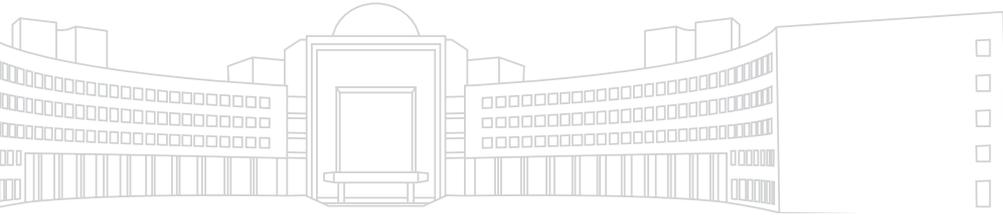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입법을 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

- 2005년 8·15 경축사 중에서 -

발간사



지난 46년간 國家情報院이 걸어온 길에는 굴곡진 우리 현대사의 이픔과 눈물, 기쁨과 영광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安保와 國益을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해왔다고 자부하지만, 그 한편에는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國情院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내부 革新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그동안 과거의 일로만 치부해 왔던 우리의 과오를 겸허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과거에 대한 쓰라린 성찰이 없이는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國情院, 국민을 위해 일하는 國情院”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院 내외에서도 國情院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선진 정보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는 告解聖事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충고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리하여 國情院은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모든 의혹을 밝히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과거사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2004년 11월 2일, 참여정부 들어 部處 가운데 처음으로 「國情院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國情院과 관련해 묻혀 있던 진실을 밝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자”는 취지에 따라 民·官이 뜻을 모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간 진실위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취합한 90여건의 사건중 예비조사를 거쳐 선정된 7건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활동을 벌여왔습니다. 國情院이 보유한 자료에서부터 방대한 외부자료에 이르기까지 조사관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수 십년이 지난 사건을 규명하는 것이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관련자를 찾아 수소문하고 증언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외국의 사건현장도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값진 교훈과 약속들이 국가의 미래를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고, 우리 정보기관사의 새 장을 여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처럼 國情院이 잊혀져 가고 있는 의혹사건을 새롭게 규명하려는 노력은 결코 면죄부를 부여받거나 단순히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로지 과거사건에 대한 진실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다시는 공권력으로 인해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과 더불어 가슴 아픈 과거사로부터 얻은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國情院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國情院이 앞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굳은 약속도 어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고서에 담긴 값진 교훈과 약속들이 국가의 미래를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고, 우리 정보기관사의 새 장을 여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진실위의 활동에 동참해 주신 민간 위원과 조사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을 치하합니다. 아울러 진실위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여러 가지 불편을 마다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10월

국가정보원장 金萬福

축사

이제 국정원 수직원들은
과거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반성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가기관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민들도 불행했던 과거를
털어버리고 미래지향적
발전토대를 구축한 國情院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역사적인 「國情院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 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國情院이 과거사에 대한 투명한 진실 규명과 정치중립의 확고한 정착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46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동안 國情院이 안보와 국익을 책임지는 국가 중추신경기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때의 잘못된 과거에서 비롯된 ‘신뢰의 위기’는 ‘국정원號’의 진로를 가로막는 암초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國情院 진실위」의 출범은 國情院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마음속에는 과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고 평가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功過의 정확한 규명을 통해 院 발전의 항구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은 진실규명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정원 수직원들은 과거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반성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가기관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민들도 불행했던 과거를 털어버리고 미래지향적 발전토대를 구축한 國情院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아무쪼록 國情院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계기로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는 든든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國情院 역사에 새 이정표가 될 진실위 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간위원님들과 조사관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國情院 직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2007년 10월

前 국가정보원장 고영구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의 성격과 의의

오늘날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의 여러 업무 가운데 다른 어떤 기관도 대신하기 어려운 고유한 과제들을 부여 받아 성실히 처리해 오고 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질 피랍 사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그 얼마전에는 남북한 간에 7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정상 회담을 극적으로 성사시켜 민족공동체 수립을 위한 남북한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체들의 핵심적인 생산기술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내는 산업기술보안에 기여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런 활동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국정원에 부여된 임무는 나날이 중요해지고 그 수행해야 할 과제 역시 증대되어 가고 있다. 또 사회가 복잡해지고 주변 정세가 바뀌고 국제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국정원의 역량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이어진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이들 업무 수행에 적지 않은 난관이 되고 있다. 국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적 변화를 이루는 데에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자행했던 탄압과 인권유린의 과거사들은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전신은 1961년 설립된 중앙정보부(중정)였다. 5·16쿠데타 주동자들은 장악한 권력을 공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당시 김종필 중령은 쿠데타가 성사되던 1961년 5월 16일 아침 10시에 최우선적으로 중앙정보기구에 관한 복안을 제시한 후 곧바로 설치 작업에 착수하였고



진실위원회위원장 안 병 옥

5월 25일에는 최고회의령 제2호로 부장에 임명되었다.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되면서 중정이 출범하였는데 이미 그 이전 6월 3일에는 지방 각도에 장교 1명씩을 파견하여 쿠데타에 대한 공무원의 순응여부, 탈선행위, 민심동태에 관한 사항을 비밀리에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렇게 중정은 처음부터 정권안보를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1961년 한해에만 소위 '반혁명행위사건' 이라는 것을 8건이나 적발해냈고 그해 연말까지 반국가행위자로 3,296명을 체포하였다가 2,686명은 석방하였다. 이듬해인 1962년 3월 16일에는 정치활동정화법이 공포되고 그에 따라 중정은 4,363명의 관련자 중 적격심판청구자 2,958명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였고 정치정화위원회에서 그 가운데 1,336명을 정치정화 대상으로 선정하여 제재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중정은 출범과 더불어 5·16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박정희정권 하에서 중정은 중요한 고비마다 정권유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예컨대 1966년에는 “1967년 선거는 기필코 승리함으로써 5·16혁명의 결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집권세력으로서의 수세(취약점)를 합법적 범위내에서 장기적이고 치밀한 기획과 준비태세로서 극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선거승리를 위해 매진했다. 따라서 1967년 선거는 박정희와 공화당의 일방적 승리로 장식된 부정선거로 치러졌으며 그 성과 위에서 1969년 삼선개헌을 강행하고 장기집권의 틀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 후로도 선거때마다 매년 부장들은 직원들에게 선거승리를 위해 진력하도록 채근하였다.

이렇듯 중정은 정권수호와 집권연장에 온 힘을 쏟았다. 안전기획부로 개편된 전두환 집권 시기에도 그런 기능은 변함이 없었다. 장세동부장은 1986년 안기부 창설기념일 치사에서 “대통령각하의 통치권 강화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集注해야만” 한다면서 “대통령각하의 분신기관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정보기관을 독재자의 통치권 강화를 위한 분신기관으로 만들어 권력남용, 인권침해, 탄압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그동안 국정원은 지난날 중정과 안기부 시절에 특권적 공안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자초한 부정적 평판을 불식하기 위해서 관계 법률을 개정하고 기관의 이름까지 바꿔 가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과거의 행태에 대한 기억때문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과거의 업보를 극복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며 미진한 점이 많은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과거의 수많은 공안사건들에 대한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밖으로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명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안으로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사실 국정원이 안고 있는 과거사 문제들은 대부분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탈법적인 행태들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 어느 것도 미래에는 물론 현재에도 정보기관 특유의 보안사항이라는 명목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거 문제들을 노정시켜 공론화를 통해 성찰하고 걸러낸다면 부정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위」는 국정원의 과거사를 총체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것이다.

첫째, 진실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 궁극적으로 진실이 명확해진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진실위는 조사 대상 사건들에

제기된 의혹들을 진실이 확인될 때까지 추적했다. 진실 규명을 위해 의문점들을 끝까지 파헤치고 더 이상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했으며 진실규명 작업에서 모범적인 선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모든 의혹사건을 전부 취급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다루는 대상에는 시효가 있고 법의 잣대로 평가한다. 하지만 과거청산의 대상에는 시효가 없다. 오래된 행적도 필요하다면 심판대 위에 올리게 된다. 그리고 고정된 법조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식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법부 임무는 법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지만 과거사 정리는 한시적인 활동이다. 과거청산의 의의는 한시적이고 선택적인 작업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모든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보다는 국정원 과거사 가운데 대표적이고 상징성이 있는 문제들을 불가피하게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나머지를 덮어두거나 미봉함으로써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취급된 사례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진실위는 논의를 거듭했고 국정원 과거사 가운데 7개 사건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

둘째, 국정원 과거사의 본질은 사실 어느 특정한 사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거 중정이나 안기부리는 존재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재돼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핀 것처럼 그 출발이 국익보다는 정권유지에 있었다. 지난날 군사정권은 30여년에 걸쳐 독재자의 의중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사회를 통제했고 비판적인 인사들을 감옥에 보냈고 정치, 언론, 학원을 감시하면서 통제해왔다. 빌미만 있으면 공안사건을 만들어 온 사회를 위협하고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중정과 안기부는 줄곧 이러한 탄압과 통제의 중심으로 거론되었다.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에 따라 7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이어서 정치, 언론, 노동, 학원, 사법, 간첩죄 확대 적용 등 6개 분야에서 그동안 중정·안기부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하였다. 가능하다면 경제 문화 종교 분야에서 행사했던 역할도 조사하고 싶었다. 하지만 조사 인력, 활동기한 등 현실적인 여건이 닿지 않았다. 그리고 6개 분야도 기대했던 것만큼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 과제들은 우리 현대사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본 진실위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량이 모자랐다. 또 이런 문제를 밝혀줄 국정원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했다. 사안의 성격상 당사자들이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자료들을 보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내부 보존 자료의 실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 그래서 유적 유물 조사하듯이 자료를 찾았다. 예컨대 발굴된 유물 한조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고고학적인 방법을 생각하면서 진실에 접근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그동안 간과되어온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는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셋째, 국정원 스스로 진실 규명에 나선 것은 과거사에 대한 자기고백을 위한 것이다. 곧 진실위의 조사 결과란 과거의 진실을 털어놓는 자기고백에 해당된다. 이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과거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다. 또 과거를 허심탄회하게 성찰할 수 있는 열린 자세와 지혜도 있어야 한다. 국정원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진실 규명에 대해서 자기고백이 아니라 자기부정이라고 여기고 있어 이 점은 참으로 힘든 문제였다.

물론 지난날 모든 행적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러는 왜 애써 이런 공은 언급하지 않고 실수한 과오만 들추느냐는 비판을 제기하곤 한다. 그러나 과거사 정리란 공과를 논하는 일은 아니다. 또 한방울의 오염으로도 깨끗함을 잃게 된다. 모두가 흐려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한방울의 깨끗함을 가지고도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깨끗해 질수록 조그만 하자라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어찌면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부에서는 과거를 묻어놓고 시간으로 희석시키는 편이 낫다고 주장할런지 모른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의 용서와 이해를 얻어야 환골탈태의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되고 다시는 지난날과 같은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현재 국정원은 자기고백을 통해 거듭나고자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래 세대에게 오늘의 선배들은 자랑스럽게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세계는 제국주의 침탈이나 동서 냉전 시대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을 향한 공동체의 건설을 실현해가고 있다. 그런 변화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날 공안기관으로서 중정과 안기부는 보수지향의 가치관을 수호하기 위하여 차단하고 통제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지금은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개방하여 새로운 바람이 자유롭게 흘러들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국정원이 새로운 세계와의 소통을 유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가치관을 창의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contents

발간사	국가정보원장 김 만 복
축 사	前 국가정보원장 고 영 구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의 성격과 의의	진실위원회위원장 안 병 옥

1장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설립과 활동

험난한 파고를 넘어 진실을 찾아서...

14

- ▶ 진실위원회 출범 배경
- ▶ 진실위원회 출범에 따른 추진 경과
-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위원회 활동 종합
- ▶ 조사대상사건 선정 및 조사평가
- ▶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운영규정

2장

7대 의혹사건 · 6개 분야 조사결과

권력, 역사 앞에서 바로서다

120

- ▶ 7대 의혹사건(요약)
 -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사건 진실규명

- 동백림 사건 진실규명
-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규명
- 김형욱 실종사건 진실규명
- KAL 858기 폭파사건 진실규명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진실규명

▶ 6개 분야(요약) 133
 • 정치 / 사법 / 언론 / 노동 / 학원 / 간첩

▶ 7대 의혹사건 발표문 147

3장

진실규명 활동의 성과와 한계
이제는 용서와 화해로... 296
 ▶ 조사의 성과와 한계

4장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꿈꾸는 사랑받는 국정원으로 우뚝 솟기를... 310
 ▶ 진실위의 국가정보원 발전을 위한 권고와 제언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국정원측의 다짐

과거사 정리를 통한 국정원 개혁 342
 기초실장 안 광 복



험난한 파고를 넘어 진실을 찾아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설립과 활동

- ▶ 진실위원회 출범 배경
- ▶ 진실위원회 출범에 따른 추진 경과
-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위원회 활동 종합
- ▶ 조사대상사건 선정 및 조사평가
- ▶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진실위원회 출범 배경

| 국민적 의혹에 대한 국정원 自淨노력의 한계와 시대상황의 변화 |

國家情報院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되어 國家安全企劃部를 거쳐오는 동안 남북한 대치상황을 관리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산업화 등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업적이 있었음에도 권위주의 정부시절은 물론 文民化된 정부하에서도 정권안보를 위해 정치권력과 유착되어 “인권탄압·권력남용”을 일삼아 왔다는 疑惑과 批判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었다. 이러한 국정원 과거에 대한 인식이 본연의 임무수행에 걸림돌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국정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은 물론 세계질서의 재편 속에 새로운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익을 위한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정원은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國民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을 경우 國情院에 대한 소위 ‘信賴의 危機’로 심화되어, 國民들의 진정한 사랑과 협조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文民정부와 국민의 정부 내내 환골탈태를 위한 自淨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정원은 이러한 自淨노력으로 과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본연의 업무수행에 대한 道徳性·正當性을 확보하는 것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였다. 국정원은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제는 어느정도 탈정치·탈권력화를 실현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일부 임무수행과정에서 있었던 국정원의 도덕성·정당성 결여는 어떠한 개혁조치와 자기쇄신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국민들에게 믿을 수 없는 기관, ‘인권탄압·권력남용’ 등으로 상징되는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어 국가안보 중추 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국정원이 끝없는 자기 혁신과 변화를 도모해 나가려는 노력은 소위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 것이다.

그 무렵 「의문사위원회」 출범(00.10)으로 5,500여 쪽의 의혹사건 자료에 이어 추가지원(3,700여쪽 열람허용) 등 국가차원의 과거사 진상규명에도 적극 협조

하였다.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국정원도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존립이유와 정통성이 회복될 것이라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불법수사·고의적인 자료 은폐’ 등 국정원을 비협조적 기관이라고 비난하여 국민 의혹과 불신을 심화시킴으로써 국정원의 개혁의지와 自淨노력이 훼손되는 결과마저 초래하였다.

이런 가운데 우리사회는 경제적 발전에 이어,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사회 주류층이 되면서 인간다운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사회 각계 각층·이익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정보기관이 더 이상 권위주의적 권력기관으로 행세하지 못하도록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고도로 다원화된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었다.

또한 학생운동·노동운동·재야 시민단체 출신 등 진보성향 인사들이 정부·국회·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 지도계층으로 진출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인권보호와 강도 높은 개혁조치들을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국내외 긴박한 위기상황을 고려한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이 무산되는 등 國情院의 활동 여건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늦은 감은 있지만 國情院은 확고한 역사의식과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국정원과 관련된 과거 疑惑事件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스스로 용기있는 진실고백과 진정한 참회를 통해 정보기관 본래의 위상확립과 신뢰회복을 제1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정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조치를 기반으로 스스로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서기로 하였다. 국정원은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정원 4대 혁신과제」 중의 하나로 「국정원 이미지 개선」 방안을 포함시켜 국정원관련 과거사 정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국정원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 아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구성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이다.

| 과거극복을 통한 국정원과 國民과의 바람직한 관계 모색 |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민은 국가의 일방적인 통치대상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차츰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이 국가로 부터 섬김의 대상이 되는 바람직스러운 관계가 설정되어 갔다. 국정원 또한 그 존립기반이 당연히 國民이라는 인식하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정보활동을 해 나가게 된 것이다.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활동은 국민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비로소 판단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세계일류 정보기관들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국정원이 정권이나 정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國民을 위해 국가안보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믿음과 인식이 공유되었을 때, 國民들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정원과 국민의 새로운 관계모색이야말로 국정원이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保安을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情報懸案에 대해 國民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되고 존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한편, 국정원은 여전히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주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國民들도 과거 의혹에 발목 잡힌 절름발이 국정원보다는,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산적한 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헤쳐 나가는 「국민 속의 국정원」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는 신뢰회복에 대한 막중한 소명과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사건에 대한 疑惑 해소 노력이야말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고 절감하게 된 것이다.

| 국민들의 과거사 정리요구에 부응 |

참여정부들어 市民·社會團體들이 過去事 清算을 지속 요구하고, 국회 과거사법 통과시 강제성을 지닌 조사 착수가 예상되는 등 參與政府 출범후 ‘역사 바로 쓰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으로서도 국민들의 過去事정리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한국 現代史의 중심에 위치한 國情院이 사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외부의 비판적 시각과 豫斷에 의해 강제로 진상조사가 진행될 가능성

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마침, 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물론 멀리 식민지 치하에서 벌어진 사건들 중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통해 과거와 화해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었고, 盧武鉉 대통령이 2004년 8·15 경축사에서 ‘과거사 진실규명’은 역사적 과업임을 강조함으로써, 각 국가기관은 ‘역사 바로 쓰기’의 탄력을 받기에 충분했다.

-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고백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관이 먼저 용기있게 밝히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기관이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신뢰를 쌓고 올바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도 더 이상 진실을 묻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 노무현 대통령 2004년 8·15 경축사 중에서 -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음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각종 의혹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도 국민과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과거사를 덮고 갈 수만은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

國情院이 자체 과거사 청산기구 설립을 추진하려는 진정성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과 정치권의 의구심, 그리고 국정원의 역량·조직·보안 유출을 우려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와 국정원 내부의 비판압력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안팎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과거청산을 위해 民·官합동의 「진실위」를 설치하게 된 것은 과거 의혹사건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계속 제기되어 국정원 위상과, 직원들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정원의 존립은 물론 국가안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 속에서 국가 안보기관 본연의 「組織保護 및 과거극복을 통한 未來發展」을 위해 불가피한 스스로의 선택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진실위원회 출범에 따른 추진 경과

|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국정원이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제인 과거사 진실규명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여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또 조사결과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反面教師로 삼아 정보기관의 탈법·불법 활동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정보역량과 본래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국정원 발전의 항구적 토대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용단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각종 현대사의 의혹사건들에 대해 국정원 스스로 ‘메스’를 가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 아닐 수 없었다. 막상 과거 역사를 진실로서 규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문제는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만으로 「진실위」를 구성할 경우 의혹해소는 커녕 과연 ‘국민들이 우리의 조사결과를 믿어줄까’ 하는 것이었다. 또한, 설익은 결과물로 인해 또다시 무차별적으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게 되면,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이러한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다. 우선 국정원장 직속으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많은 진통속에 내부회의를 거쳤으며, 2004.8.16부터 종교·법조·학계는 물론 인권·시민단체들과 어렵사리 만나 4회에 걸친懇談會를 열었으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1차 간담회(8.16)에는 「民辯」을 비롯한 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는데 국정원장이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진실규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은 원론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정보기관의 특성상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차간담회(8.30)는 「대한변협」 등 일부 단체를 추가하여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논의하였는데, 참석자들은 과거 의혹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진정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려는 국정원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진실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각 단체별로 내부 논의를 거쳐 同 위원회에 참여할 외부인사 추천 등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한 후 재회기로 하였다.

3차간담회(9.13)에는 7개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는데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내부논의 미진 및 국회차원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입법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추진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국정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 자체를 반대하거나 협조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기상 적절성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데 불과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은 당초 협조입장을 재확인하고 10월초 추가 모임시 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제출기로 하였다.

4차 간담회(10.7)에는 9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그간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일부 참석자들이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고,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신중 검토하여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위원회 출범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듯 국정원은 원장이 직접 나서서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위원회의 설립취지와 진실규명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설명하였으나 처음에 각계 대표들은 원칙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보기관의 특성상 ‘제대로 과거 정리가 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국정원의 간곡한 요청에 ‘국정원의 과거사 털기 작업에 들러리만 서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인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간담회를 비롯,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정원의 과거사 진실규명과 개혁 의지를 설명하고 그 진정성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에 각계 진보인사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는 과거 정보기관으로부터 고초를 겪어왔던 진보인사들이 유례없이 참여하게 된 의미있던 일로 시민·사회는 물론 국정원의 ‘진실’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조치이자 대국민 약속이었다.

간담회 개최경과

구 분	참석자 명단	회의 결과
1차 간담회 (04.8.16)	이석태 民辯 회장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장식 KNCC 인권위원장 ·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 박석윤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등 7명 * 국가정보원장 · 기초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장이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구성취지 설명 ○ 참석자들은 원론적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정보기관의 특성상 실효성 의문입장 표명
2차 간담회 (04.8.30)	이석태 民辯 회장 · 김갑배 辯協 법제 이사 · 조준호 민중연대 조직위원장 ·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 문장식 KNCC 인권위원장 · 효림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의장 · 김세균 민교협 대표 · 이창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장 등 9명 * 국가정보원장 · 기초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들은 과거 의혹사건의 진실규명으로 진정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려는 의지 신뢰 및 동참의사 표명 ○ 각 단체별 내부 논의후 참여할 외부인사 추천 등 보다 구체적 입장을 정리키로 결정
3차 간담회 (04.9.13)	이석태 民辯 회장 · 김갑배 辯協 법제 이사 ·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 문장식 KNCC 인권위원장 · 효림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의장 · 김세균 민교협 대표 · 이창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장 등 7명 * 국가정보원장 · 기초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국회 차원의 과거사청산 입법활동의 악영향을 우려, 시기 조절을 제안 ○ 국정원의 과거청산 입장을 재확인한 후 10월초 4차 會同시 구성 및 운영문제를 논의키로 결정
4차 간담회 (04.10.7)	이석태 民辯 회장 · 김갑배 辯協 법제 이사 · 조준호 민중연대 조직위원장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 문장식 KNCC 인권위원장 · 효림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의장 · 이창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장 ·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 ·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등 9명 * 국가정보원장 · 기초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유보적 입장이었던 참석자들도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키로 입장 정리 ○ 위원회 구성 · 운영에 있어 독립성 보장 및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방안 강구를 요청

국정원은 종교·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참여와 협조하에 過去事 청산을 위한 委員會 구성 기본방침을 크게 세 가지로 상정하였다. 첫째, 過去事에 대한 실질적 결론도출을 위한 民·官 합동기구로 구성하고, 둘째, 국정원 관계 부서장이 참여하여 실효성과 책임있는 조사활동을 수행하며, 셋째, 민간참여 보장을 통해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하고,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아 민간측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많은 준비 끝에 2004년 11월 2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마침내 국정원장 소속의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 「진실위」 성공을 위한 克服課題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

국정원은 위원회 출범방침에 따라 지휘부에서 자체 T/F를 구성, 제반 운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한 극복과제를 선정하고 여러가지 對內外的인 제약요인과 施行錯誤를 最小化하기로 하였다. 그럼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진실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당시 제기된 각종 비판과 제언 등을 종합 분석하여 크게 세 가지의 극복과제를 설정하였다.

우선, 일부 言論·團體 등 비판층에서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국정원 발전”이라는 「위원회」의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不公正·정치적 의도 운운하면서 “흠집내기”식 문제제기가 지속될 것이며 과거 疑惑事件 遺家族·관련단체 등 지지층은 “이번에는 恨을 풀어 줄 것이다”라는 식의 과도한 기대로 무분별한 의혹제기·압력 등이 예상되었다.

두 번째로 「진실위」가 政府機關에서는 처음 시도되고 民間측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民間 및 國情院 위원·조사관간 經驗的 要素·認識 차이에서 오는 見解差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였다. 특히, 과거 疑惑事件 상당수가 오랜 시일 경과로 증거자료가 불충분 한데다 이해관계 또는 先入觀에 따른 다른 立場 고수시 調査 성과와 성공적 운영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점이였다.

세 번째 「진실위」는 관계법령에 의거, 설치된 「의문사委」와 달리 國情院 內部 規程에 의해 설치됨으로써 강제조사권 미비 등 법적 권능이 없어 조사 실무에

어려움도 예상되었다. 이점을 調査對象 기관인 국정원이 대승적 차원에서 스스로 과거 의혹사건 진실규명에 나섬으로써 자료접근 및 전직 직원 등 관계자의 원활한 협조 등 강점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조사상 장애요인을 어떻게 克服하고 주어진 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이상의 안팎에 제기된 장애요인을 극복과제로 발굴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과 세부적인 분석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국정원은 「진실위」의 성공을 위해 극복해야 할 8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그 과제로는 ① 「진실위」 목적의 순수성에 대한 의구심 ② 보수성향 반대층 등 對内外 비판·압력 ③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관련자료 부재 ④ 과거 의혹사건 관계 부서의 지원·협조 미비 ⑤ 民間·국정원간 동일사안 자료해석·見解 차이 ⑥ 민간측의 정보기관 特殊資料에 대한 이해 부족 ⑦ 「진실위」 활동과정에서 예상되는 보안상 문제 ⑧ 과거 의혹사건 관계자·피해자·유가족 등 반발·설득 문제로 그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하였다.

| 진실위 성공을 위한 8대 세부과제와 극복과제 |

당시 국정원이 위 8대 세부과제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구상한 것은 첫째, 「진실위」 조사활동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의도 등 목적의 순수성에 대한 의구심 불식을 위해 조사과정의 비공개원칙에 따라 철저한 對外保安 유지 하에 과거 의혹사건 선정·조사과정상 政治圈의 관여·개입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정 시기에 委員長이 선정과정·기준·이유 등을 대내외에 설명·홍보키로 결정하였고 調査結果의 정치적 이용·악용소지도 철저히 경계해 나간 것이었다.

둘째, “과거사건에 대해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공정하게 調査할 수 있느냐”는 일부 보수층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입관을 배제한 가운데 객관적 사실 확인 및 證據主義에 의한 공정·투명·객관적 조사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것 만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과거 의혹사건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고 사건관계자를 적극 발굴·면담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代案이 없음을 감안, 자료부재시 자료 파기·미존재 등과 같은 설명·답변으로는

은폐의혹 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진실위」의 출범 취지를 감안, 工作員·情報協力 자료 이외 일체의 사건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파기시에는 비밀열람기록부 등 근거 자료로써 입증하여 오해소지를 차단기로 하였다.

넷째, 「의문사委」 조사때의 지적을 감안 국정원에서 관계자료 등 협조사항을 최대한 발굴·협조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국정원 인터넷망에 「진실위」 소개 사이트를 별도 개설하여 사건제보도 받고 자발적 협조를 받고자 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였다.

다섯째, 자료해석에 있어 民間위원·조사관은 피해자 중심의 선입관을, 국정원 위원·조사관은 방어본능 자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국정원 조사관은 「진실과 반성」, 民間 조사관은 「진실과 발전」이라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상호간의 이해 노력에 최선을 다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특정사안에 대해 合意 결론도출이 어려울 경우 大法院 판결방식 원용 방안과 전문지식 및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인 경우 公信用있는 外部 전문기관(외국포함) 견해·평가의견 첨부 방안도 마련하였다.

여섯째, 정보기관 力量 노출·국가안보와 國益 차질 초래가 예상되는 特殊資料는 의혹사건 규명에 유일무이한 증거가 되지 않는 한 제공 불가한 원칙 마련과 民間위원·조사관의 정보기관 특수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공작·정보협력 관련자료 노출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와 세계 각국의 情報機關 비밀자료 존안관리와 활용 실태 등에 대한 브리핑, 보안교육 강화 방안 마련도 민간측과 협의하에 강구기로 하였다.

일곱째, 과거 의혹사건 관련 정치권·언론 등 대내외적 관심을 감안할 때 조사과정의 보안문제가 「진실위」 성패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과정 비공개 원칙에 따른 조사방법을 마련해 나가고, 위원·조사관 등 관계자들의 보안의식을 함양하고 업무처리 및 대외활동시 보안대책을 강구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건 관계자의 자발적 협조를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느냐가 진실 규명의 관건이므로 前職직원들의 비판적 분위기 전환을 위해 조사착수시 국정원장 명의 협조서신 발송·전직직원 설명회 등을 시행하여 이해를 구하고, 의혹사건 관계자에 대해서는 익명처리로 개인정보보호·명예훼손 등에 유념하여 자발적 협조를 유도기로 하였다. 또한 피해당사자 또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조사계획 설명 등으로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마련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 당사자·유가족에게는 명예회복·보상, 가해자에게는 용서·사면하고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여 진실고백과 용서·화해를 통해 미래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주춧돌을 쌓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克服課題別 解消方案 종합 체계도



| 「진실위원회」 운영에 대한 활동근거 마련 |

국정원은 「위원회」 설치·운영을 결정한 후 2004년 8월부터 종교·법조·학계와 인권·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04.10.18 위원회 조사활동의 목적과 권한을 규정한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위원회 출범에 따른 추진경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운영·조사 범위·방법·조사결과 발표 등 위원회 운영전반에 걸쳐 국정원 자체적 준비 활동과는 별도로 시민·사회단체 주요인사들과 간담회·개별접촉을 통해 많은 논의와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은 04.10.7 '진실위 운영규정 시안' 을 마련하였다.

운영규정 시안의 3가지 기본방침은 ① 국정원장 산하에 半民·半官 합동기구를 설치·운영 ②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대표들을 위원으로 선임 ③ 과거사에 대한 실질적 결론도출을 위해 국정원 관계부서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 위원회 구성방침으로 위원장은 민간측 위원중 호선으로 선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위원은 학계·종교·법조계 및 시민사회 단체 대표 및 국정원 관계자로 구성하되 민간측·국정원측 위원을 2:1 비율로 선임키로 하였다. 실무기구는 민간측·국정원 조사관으로 조사팀 2개와 조사 지원팀으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진실위원회」의 권한은 관련자료 및 의혹사건 내용 검토후 조사착수 여부와 우선순위 결정, 조사팀별 과제를 할당하고 실질 조사활동을 총괄하며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지도·감독하고 명예회복·피해보상·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의견을 제출하며, 각 사건의 성격 및 조사내용에 따라 대외 정보 공개·기자회견 등 공개방법 선택권도 부여키로 하였다.

조사범위와 방법은 과거 인권침해·불법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었다고 의심되는 국정원 관련 과거사건 가운데 현재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이며 국정원 보유자료조사,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증인·참고인 등 사건관계자 면담 등이 포함되었으며 민간위원·

조사관들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접근권과 관계직원 면담 등 제한없는 조사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운영규정 시안을 가지고 국정원장이 직접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법조계·학계 등에 자문을 구하는 등 과거사 조사활동의 공정성·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운영규정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 결과 민변·변협 등 법조계는 ① 의혹사건 선정·조사활동의 공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2/3'로 규정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만큼 '재적위원 과반수'로 완화 ② 예외적으로 조사활동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된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관련내용' 여부를 결정할 주체를 명확히 할 것 ③ 국정원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시 감찰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조사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실지조사를 제한하도록 보완문구 삽입 ④ 조사결과 공표시 국가안전보장, 사생활보호 등 사유로 공개제한 여부에 대해 위원회 의결권 부여 등 운영규정(案)의 보완을 건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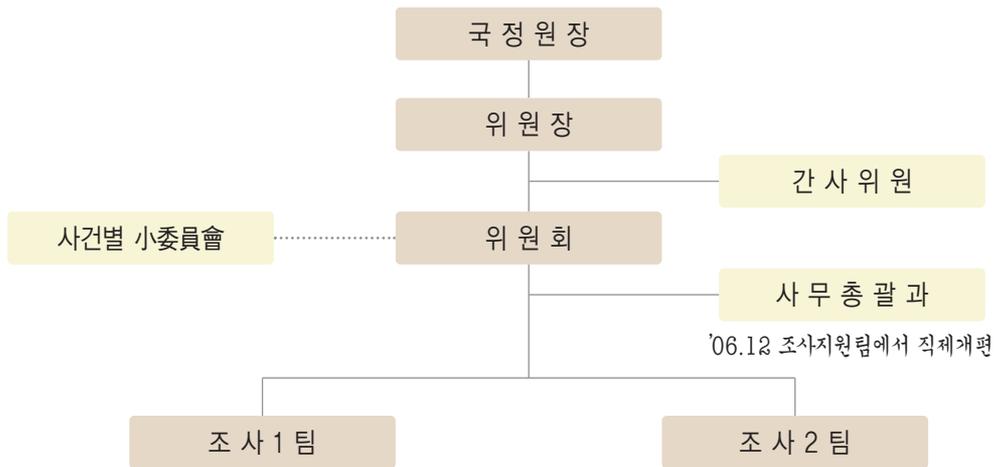
이를 참고하여 04.10.18(규정 제1206호) 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보장·광범위한 자료접근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붙임자료, 진실위 운영규정 참조) 동 운영규정은 그 이후 위원회의 대외협력 업무증가, 업무환경 변화추세 등을 반영하여 1차(04.10.30), 2차(06.5.29), 3차(07.1.8)에 걸쳐 개정하였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국정원은 2004.11.2 운영규정을 근거로 국정원장 소속하에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민간위원 10명 및 국정원 기초실장을 비롯한 과거사건 관계 부서장 5명과 2개의 조사팀(민간·국정원측 조사관 각 10명, 총 20명) 및 조사지원팀(6명)으로 실무인력을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를 국정원 밖에서는 ‘과거사 진실규명’이 주요 임무라는 의미에서 「과거사진실위원회(또는 진실위원회)」로 줄여 부르곤 했지만, 국정원 내부에서는 과거사 省察을 통해 ‘신뢰받는 국민의 국정원으로 발전’ 한다는데 포커스를 맞춰 「발전위원회」로 불리어졌다.

조직체계도



당시 국정원은 진실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원장이 직접 나서 성공적 운영을 독려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진실위원회가 국정원內에서 가장 신뢰받는 조직으로 인식받도록 院內 유관부서는 적극 협조·지원할것 ② 진실위원회 자리가

국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 ③ 진실위원회 직원에 대해서는 고생하는 만큼 인사상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며, 이를 원장·차장이 바뀌어도 실행되도록 기록으로 남기고 제도화 할 것 ④ 진실위원회 직원은 가장 우수한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인사검증과 스크린을 한 뒤 임명할 것 ⑤ 직원은 민간측과 일선에서 접촉하는 만큼 그 사람들보다 조사보고서, 기록작성 등에서 더 우수해야하며, 국정원을 代表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 ⑥ 각별한 사명감을 안고 한국 근현대사의 주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진실위」의 민간위원은 학계·종교계·법조계 및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명망있는 인사들 중에서 투철한 인권의식 및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고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 의지가 남다른 학계 4명, 종교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사회단체출신 1명 등 10명의 인사들이 국정원 신원조사과정을 거쳐 선임되었고, 이들 민간위원들은 국정원 기조실장 및 부서장급 간부(총 5명)들과 함께 조사대상 의혹사건 선정 및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互選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의사결정권이 행사되도록 하였다. 민간주도의 위원회 구성은 과거사 진실규명에 대한 국정원의 진정성과 의지의 발로이며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정원의 교육책이기도 했다.

민간위원 현황			
직책	성명	주요경력	비고
위원장	오충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 민개련 공동대표 · 6월사랑방 대표 · 노동일보 발행인 	07.6 위원장직 사퇴
간사위원	안병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 '05 「진실화해위」 위원 ·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07.6 위원장 직무대행

직책	성명	주요경력	비고
민간위원	손호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87 美 텍사스大 정치학 박사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	이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경상대 법대학장 	
”	박용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변호사(민변) 	
”	문장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89 사형폐지운동협 공동회장(목사) '07 KNCC 인권위원장 	
”	효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반부패 국민연대 공동대표(스님) '05 실천불교승가회 의장 	2005.5 사퇴 (백담사 전출)
”	곽한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4 굴업도 핵폐기장반대 시민대책위 대변인 천주교 인권위원회 운영위원 	
”	한홍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04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 상임이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한국현대사) 	
”	김갑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03 대한변협 법제이사, 변호사 '05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2005.10 사퇴 (진화위 상임위원 취임)

마침내 2004년 11월 2일 출범하게 된 「진실위」 민간위원들에게 당시 고영구 국정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정원이 세계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불행한 과거사의 굴레를 벗어나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오충일 위원장도 과거사 규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과거사 규명을 통해 작게는 국정원이 거듭나고 크게는 분열과 반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진정한 역사 발전을 이룬다는 사명감으로 모두가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연합뉴스 「진실위」 출범관련 보도내용(2004.11.2)

국가정보원이 자체 과거의혹 사건 규명을 위해 민관 합동 15명으로 구성된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 목사)가 2일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 수여와 함께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국정원장 직속의 조사기구인 위원회는 민간 조사관을 선임해 국정원 직원과 함께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활동을 수행하며 과거 위법한 공권력이 개입돼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사건 중 위원회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는 사건부터 진실규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위원들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체위원 15명 중 10명을 민간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으며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접근을 위해 민간위원에게 2급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민간 조사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조사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의혹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과 조사관에게 조사활동에서 알게된 비밀과 직무관련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해촉 또는 면직토록 했으며 조사관에 대해서는 퇴직후에도 비밀 누설시 국정원 직원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11.2 민간위원들이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역사적인 1차회의를 개최, 민간위원간 호선을 통해 오충일 대표를 위원장으로, 안병욱 교수를 민간측 간사위원, 국정원측 간사위원으로는 김만복 기조실장(06.4.25 안광복 기조실장 취임으로 당연직 국정원측 간사위원 변경)을 각각 선임하고 민간조사관(10명), 지원인력(2명) 선발 및 중·장기 위원회 활동방향 설정문제를 협의한데 이어 매주 월요일 정례회의를 개최기로 결정 하므로써 국정원은 '과거사건 진실규명'이라는 먼 향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위촉장 수여후 오찬 장면

- 저는 안기부 밥을 좀 많이 얻어먹고 살았다.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번 조사도 받고 지하실에 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었던 사람이 이제 국정원 과거사 규명을 하게 되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좋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정원으로 가겠다고 돼있는 거니까 어느 것을 빼고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일들은 전부 바로잡겠다는 측면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국민에게 의혹을 아직도 짊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모두 조사하게 될 것 같다.

- 2004.11.3 CBS 뉴스레이다 오충일 위원장과 대담 중 -

고영구 원장은 2005년 신년 기념사를 통해 「진실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직원들의 협조와 당부를 강조하였다.

“우리가 먼저 변하려는 노력없이 국민들의 평가가 바뀌고, 국정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우리 院의 변화와 발전 의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決斷이자 역사적 課業이 될 것입니다. 과거사건 진실규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직원 여러분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갖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상된 자긍심을 회복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결연한 각오를 다져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거사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는 고영구 前 원장, 김승규 前 원장 그리고 김만복 원장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원칙하에 지켜졌고 그 성과는 국정원 개혁의 밑거름으로 이어졌다.



고영구 국정원장



김승규 국정원장



김만복 국정원장

과거사 진실규명에 대한 국정원장의 의지 표현

<p>고영구 前 국정원장 (2005년 신년사 05.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정원의 변화와 발전의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결단이자 역사적 과업이 될 것입니다. ○ 과거사건 진실규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입니다.
<p>김승규 前 국정원장 (불법도청관련 기자회견, 05.8.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만이 힘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정직한 고백만이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를 씻고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세계일류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로 태어나는 진정한 전환점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p>김만복 국정원장 (4개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 정례회의, 06.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국정원에 들어온 초임시절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반면 우리는 같은 정보기관이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 저는 이러한 마음에서 국정원의 굴절된 과거사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진실위원회 설립을 주도하였고 이제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유종의 美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 조사 실무인력 구성 |

실제 사건조사를 담당할 조사관은 민간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조사능력·인권 의식·시민사회단체의 대표성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1차로 7명을 우선 선발하여 조사관으로 배치한 후 5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총 12명(조사지원요원 2명 포함)의 민간조사관을 선발하였고, 조사 과정에 기록물 관리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가기록원'의 학예연구사 1명을 파견받아 조사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국정원은 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관심과 배려에 따라 국정원내 직원중

조사능력 및 소관분야 전문성을 고려, 우수한 인력을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 진실 위 직원으로 임명하였다. 이리하여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2개의 조사팀과 행정·회무·홍보 등 기획과 대외협력업무 등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조사지원팀(06.12 사무총괄과로 재편)에 배치함으로써 위원회 조사실무진 구성을 완료하고 과거 의혹사건 조사 및 조사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 진실위원회 전체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은 민간위원 10명과 국정원 기조실장 및 관계부서장 5명을 국정원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측 위원중 호선으로 선임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 하도록 하였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였으며 개별위원들이 담당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사건 담당조사관들의 조사방향·보고서 검토 등을 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기회의(매주 월요일)와는 별도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① 의혹사건의 선정 ② 조사활동의 공개 ③ 위원회가 원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의 결정 ④ 의문사 진상규명위 등에 조사활동 지원 또는 조사결과 제공 ⑤ 운영규정 개정 의결 등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다.

위원회는 관련자료 및 의혹사건 내용 검토후 의혹사건의 선정 및 조사착수 여부와 우선순위 결정, 조사팀별 과제를 할당하여 실질 조사활동을 총괄하며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지도·감독하고 조사결과 보고서에 사건 진상·피해상황·원인분석과 함께 명예회복·피해보상·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의견을 국정원장에게 제출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다.

위원회 조사범위는 과거 위법한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국정원관련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아니한 사건중 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으로 하였다. 조사활동은 외부 및 국정원 보유 자료조사,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증인·참고인 등 사건관계자 면담으로 이루어지며 조사관과 민간측 위원에게 비밀취급인가(Ⅱ급비밀) 조치로 자료접근권을 부여하였다.

한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경우 국정원의 보안성검토를 거쳐 지원하고, 조사목적 외 자료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보기관의 특성인 보안문제와 민간측의 조사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 半官·半民 합동기구의 하나되기 |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민간과 합동으로 국정원과 관계된 과거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이나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일로써 태생적 한계를 가진 서로 다른 집단이 하나되어 서로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화합하는 것이 위원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위원회는 ‘하나되는 진실위, 우리 모두 One Body’ 라는 슬로건 하에 서로에게 가슴을 열어 보이는 솔직하고도 진지한 노력들을 경주하게 된다.

半官·半民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일체감을 제고하고 상호이해를 통한 조사활동의 원활을 위해 국정원 내·외 인사를 초청, 각종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조사관들의 조사능력을 제고하였고, 민·관 조사관 및 지원팀 합동체육행사와 ‘발전산악회’를 결성하여 주말 또는 휴일을 이용한 합동등반대회 및 수시 문화행사·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였다. 진실위의 민·관 출신 구성원들은 ‘산을 오를 때 오른쪽에서 올라왔든 왼쪽에서 올라왔든 산정상엔 그대로 하나’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면서 진실규명을 통한 국정원 발전 및 역사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된 진실위’를 위한 노력					
구 분	워 크 쉘	등반 행사	문화 행사	체육 행사	직무교육
회 수	11회	60회	5회	6회	30회

국정원은 우선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국정원의 기록물관리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정보기관으로써의 업무 특수성을 설명하고 2004.12.16~17간 오충일 위원장·안병욱 간사위원·기조실장 등을 비롯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영구 당시 국정원장은 오찬 말씀을 통해 “진실위는 불행한 과거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출범된 것임”을 강조하고 진실위원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이번 워크숍은 향후 진실위 활동의 귀중한 밑거름이 되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1차 워크숍 개최장면

그리고 이석태 「민변」 회장은 ‘국정원 진실위에 거는 기대와 의의’ 제하로 “진실 위원회가 성과를 거두게 되면 어두운 과거로부터 족쇄가 돼서 스스로 명예롭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은밀한 곳에서 일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면서 “국정원은 형태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각계의 민간위원들도 국정원 관계자들도 심사숙고하여 진실위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하였다.

박석운 「과거청산범국민위」 상임위원장은 ‘현대 한국의 과거청산과 국정원 위원회의 역할’ 제하로 “장기간의 독재권력 지배하에서 청산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의문사위 활동은 권한의 한계, 한시적 기구라는 점, 개혁세력의 약한 의지로

말미암아 많은 한계를 노정하였다”고 그간의 미흡한 과거청산에 대한 견해를 밝힌 후 “민간과 국정원 간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조에 조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 국정원의 과거청산 분위기를 신뢰한다”며 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당부하였다.

한홍구 위원은 ‘한국 현대사와 국정원 과거사건’이라는 주제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꾸 정보기관에 의존해야 했고, 정보기관은 자신에게 기대려는 독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계속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보기관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진실위를 통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국정원으로 거듭 나아하는데 민간에서 위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만복 당시 기조실장(現 국정원장)은 ‘진실위원회의 극복과제’에 대해 “진실위 목적의 순수성에 대한 의구심, 보수성향 반대층의 비판과 압력, 과거사건의 관련 자료 부족,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냉소적 여론” 등 7가지 극복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진실위의 과거 의혹사건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발제자와 참여자의 토의, 국정원 정보대학원 전문강사로부터 조사·면담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상호 이해도 제고를 위해 새벽까지 이어지는 친교시간을 갖는 등 민간측과 국정원측 위원회 구성원들은 처음 모인 자리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단순한 진실규명 작업을 넘어 ‘역사를 새로 쓴다’는 스스로의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방향과 개별사건의 조사방향 검토, 2차 조사대상사건 선정, 위원회 활동 2년 평가 등을 주제로 10여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 민·관의 입장을 떠나 진실규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숭한 고민과 토론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제1차 워크숍 세부 행사 내용(12.16~17)

구 분	워 크 쉘	비 고
12.16 (木)	<p>출발(참가인원 45명) 오크밸리 도착, 입소등록·숙소배정 워크숍 일정안내 인사말 참석자 상호간 소개 午餐</p> <p>제1차 주제 발표 및 토의 ① 세계 각국 정보기관 및 한국 국정원의 업무와 대국민 관계 ② 진실위원회의 극복과제 ③ 한국 현대사와 국정원 과거사건 晚餐</p> <p>제2차 주제 발표 및 토의 ① 국정원 진실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의의 ② 현대 한국의 과거청산과 국정원 위원회의 역할 친교 시간 취침</p>	<p>지원팀</p> <p>기조실장 위원장 위원장 * 고영구 국정원장 주재 * 위원장 주재 원내위원</p> <p>기조실장 한홍구 민간위원</p> <p>* 위원장 주재 이석태 민변회장 변호사 박석운 과거청산 범국민위 상임위원장</p>
12.17 (金)	<p>기상(산책·조깅) 朝餐</p> <p>제3차 주제 발표 및 토의 ① 정부 기록문서 및 국정원 문서의 현황과 활용 ② 의문사위 등 과거청산 기구에 대한 평가 ③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방안과 내용 ④ 면담 유출과 조사기법 午餐 평가 토론 귀청 및 해산</p>	<p>* 국정원 기조실장 주재 조이현 민간조사관 김현일 민간조사관 정상영 前 인권위전문위원 정보대학원 교수</p> <p>* 위원장 주재</p>

위원회 워크숍 개최현황

연번	목 적	참 석 인 원	기 간	장 소
1차	향후 진실위 역할 등 향후 운영방향 토의(1차)	진실위 위원 및 이석대 민변회장 등 총 42명	'04.12.16~17 (2일)	강원도 원주
2차	안보현장 견학 및 2차 워크숍 개최	오충일 위원장, 기조실장 등 26명	'05.1.28~1.29 (2일)	강화도 안보수련원 * 해병부대 위문
3차	3차 워크숍 개최	오충일 위원장, 기조실장 등 26명	'05.2.22~2.26 (5일)	삼성 연수원 (산청)
4차	인혁당사건 조사관련 자체 워크숍 개최	한홍구 위원 및 조사관 등 20여명	'05.8.10 (1일)	정보대학원 세미나실
5차	진실위 1년 평가와 전망 및 향후 위원회 발전방향에 관한 워크숍 개최	오충일 위원장, 기조실장 등 30명	'06.1.9~1.10 (2일)	강화도 안보수련원 * 해병부대 위문
6차	진실위 워크숍을 개최, 2차 조사대상 사건 선정방안 및 향후 활동방향 논의	오충일 위원장 등 30명	'06.2.16~2.20 (5일)	삼성 연수원 (산청)
7차	안보현장 견학 및 워크숍 개최	오충일 위원장 등 35명	'06.2.27~2.28 (2일)	덕적도 안보수련원
8차	외부인사 초청 워크숍 개최	오충일 위원장 등 35명	'06.5.22 · 23 · 29(3일간 4회)	위원회 대회의실
9차	진실위 활동 2년 평가 및 향후 위원회 발전 방향	오충일 위원장 등 38명	'06.12.11~12 (2일)	경기 용인
10차	1차 7대의혹사건 마무리 방안 및 향후 위원회 활동 로드맵 등 논의	오충일 위원장 등 30명	'07.2.7~2.8 (2일)	위원회 대회의실
11차	제11차 워크숍 개최	오충일 위원장 등 35명	'07.5.11~5.13 (3일)	백령도 안보수련관 * 해병부대 위문

| 국정원 직원대상 홍보 및 협조 분위기 조성 |

국정원은 「진실위」 출범과 관련 국정원내 협조 분위기 조성 및 진행사항 홍보를 통해 활동의 진정성을 알리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당시 김만복 기조실장은 진실위 출범 1개월이 지난 04.12.2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본격활동에 즈음하여”라는 직원대상 당부사항을 원내에 발표하였다. 기조실장은 “우리 국정원은 과거 의혹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국정원 발전의 항구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정원장 직속의 民·官 합동기구인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진실위」는 11.2 출범한 이래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11.25 4차 회의에서는 조만간 민간조사관 및 민간조사 지원팀 구성을 완료기로 결정하였고,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그간의 위원회 활동경과를 설명한 후 “아무쪼록 「진실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시점에서, 쏠 직원들이 이같은 취지와 대의를 충분히 이해하여, 다시 한번 의지를 굳건히 하고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 주기”를 재삼 당부하였다.

김만복 기조실장 직원교육 주요내용

- 우리 국정원은 과거 의혹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국정원 발전의 항구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정원장 직속의 民·官 합동기구인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실위」는 11.2 출범한 이래 매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 우선, 제4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간 互選을 통해 吳忠一 목사(6월 사랑방 대표)를 위원장으로, 安秉旭 교수(가톨릭대 국사학과)를 민간측 간사위원으로 선임한데 이어
 - 민간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및 국정원 기록물 관리규정 등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2차)하고, 「진실위」 활동과 관련된 Road Map을 우리 국정원이 제시한 案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대강의 내용을 확정(3차 회의)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지난 11.25 4차 회의에서는 민간조사관 7명을 선발, 현재 이들에 대한 신원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조만간 민간조사관 및 민간조사지원팀 구성을 완료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기초조사시 주요 과제인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 국정원과 민간측이 각각 제출할 진실규명 대상 사건목록에 대해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이는 한편, 향후 국정원 홈페이지와 원내망을 통해 신고와 제보를 받는 등 원내·외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조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진실위」 출범이후 이미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사건관련 신고와, 2건의 진정서신이 접수되는 등 향후 각종 신고와 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 ▣ 이미 수차례 강조한바 있지만, 과거사 진실규명은 그동안 우리의 변화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위상과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과거의 굴레 즉 ‘신뢰의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이라는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 이에 대해 원내·외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국정원에서는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문건의 외부 반출을 원천 봉쇄하는 등 보안노출 및 조직의 안정성 저해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 ▣ 아무쪼록 「진실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시점에서, 쏠 직원들이 이같은 취지와 대의를 충분히 이해하여, 다시한번 의지를 굳건히 하고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 주기를 재삼 당부하는 바입니다.

2004년 12월 2일

企 調 室 長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정보기관상 정립 노력 |

국정원은 04.10.5(火)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국정원장 주재하에 국정원 창설 이후 최초로 在京 쏘부서장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 「국정원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專門 情報機關」으로의 도약을 위한 혁신 의지를 다짐하였다.

在京 쏘부서장 워크숍은 새로운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국가간 국익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좌표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고 “탈정치·탈권력화” 실현 등 그동안의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원의 역량을 결집시켜 명실공히 국가안보와 국익에 기여하는 「專門 情報機關」으로 거듭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부서장들은 그 동안 국정원은 확고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 本然의 임무에 매진하였고, 다양한 정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평가하였으나 革新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아직까지 직원들간에는 과거 권력기관에 대한 향수와 권위주의적 업무 행태 등, 구태가 잔존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하여 「專門 情報機關」으로 거듭 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타파해 나가는 의식의 革新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앞으로도 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專門 情報機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국정원장은 그 동안 변화와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탈정치·탈권력화”를 실현하였지만, 우리 院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專門 情報機關」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이를 위해 모든 직원들의 참여와 분발을 당부하였다.

| 전직직원 대상 설명회 및 과거사건 진실규명에 자발적 협조 당부 |

기조실장은 05.3.18 국정원에서 전직 직원들로 구성된 여러 친목모임 간부들을 오찬 초청,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선배님들의

자발적 도움 없이 「진실위」의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며 많은 협조와 질책도 당부하였다.

전직직원 대상 설명회(요지)

- 「위원회」를 발족함에 있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평생을 몸바쳐 국가를 위해 일해왔던 선배님들의 충정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음.
 - 國情院이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부 의혹사건으로 인해 고초당하는 現상황하에서
 - 더이상 수동적 입장견지시, 국정원 위상·사기 저하는 물론 존립기반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다소의 아픔이 있더라도 未來指向的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양해 드림.
- 또한, 過去事 규명작업은 外國의 사례에서 보듯이 언젠가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인 동시에 시대적 소명임.
 - 獨逸은 유태인 학살 등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해 진실된 자세로 참회와 속죄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오늘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한 位相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 日本의 경우 과거범죄에 대해 숨기고, 심지어는 오만과 무례를 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位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위원회」 운영과 관련
 - 先輩님들의 高見을 가감없이 수렴,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며, 先輩님들의 적극적인 助言을 부탁드립니다.
 - 과거사건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선배님들의 자발적인 도움 없이는 「위원회」 성공을 기약할 수 없음.
 - 사건조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國情院과 후배 직원들을 위한다는 忠正으로 많은 협조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당시 시대상황도 조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사건 실체의 정당성을 부각하도록 노력 하겠음.

■ 「위원회」 운영결과 期待 效果로는

- 오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疑惑事件 진실규명을 추구 함으로써 對국민 信賴를 回復하고
- 국민들이 國情院의 심정적 협조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정원 발전의 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국정원으로서, 「脫정치·脫권력 기관」으로 거듭나 國益을 위한 專門 情報機關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진실위」 순수성을 훼손하는 어떤 기도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며
- 오로지, 진실규명을 통한 의혹해소와 對국민 신뢰회복으로 명실상부한 先進國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임.

2005년 3월

企 調 室 長

그리고 2006.2.6 지원팀장 등 실무진들은 전직 선배들을 재차 만나 우선조사 대상 7개 사건중 동백림사건 등 4개 사건을 마무리하고 금년 상반기 중 잔여 3개 사건 종결계획과 향후 2차사건 선정방침을 설명하였고, 당시 전직 선배들은 시대상황과 국정원의 불가피한 선택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각오를 새롭게 하여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각계 지도층 대상 “권력기관의 과거극복 노력”에 대한 인식제고 |

「진실위」는 권력기관의 과거사 청산이 국민들에게는 해원의 의미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중요한 혁신사업인 만큼 청와대와의 의사소통이 활동성패의 관건임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관련 조사결과와 진실위 중요 추진현황에 대한 대통령 보고는 물론 청와대 주관행사시 오충일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사무총괄과는 주요회의시 성실히 자료를 지원하고 사무총괄과장은 실무후속회의에 참석해 실효적인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05.1.13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때에는 고영구 원장이 직접 “국정원 진실

규명활동 추진경과와 향후 활동계획”을 보고하고 국정원의 권위주의 정부시절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반성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 날 것을 다짐하였다.

오충일 위원장은 진실위 발족이후 05.10.20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3개 과거사 위원장단 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의 과거사 청산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국정원이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혁신차원에서 진실규명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오충일 위원장 및 안병욱 간사는 07.3.7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과거사 유관 9개 기관 위원장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께 국정원 과거사활동의 성과를 설명하고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임을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 大統領은 參與政府들이 진실규명활동을 제일 모범적으로 진행한 곳은 國情院이라고 강조하고, 본인도 최근 國情院이 “진짜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는 물론 院內직원들도 직원출신 국정원장 임명으로 사기가 충천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國情院이 과거와 달리 해외정보 공유는 물론 정부 부처간 협조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자신은 國情院 자체가 변화한 것도 높이 평가하지만 내부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더욱 높이 평가한다며 진실위 활동을 격려했다.

이와 더불어 진실위는 金大中 前대통령 납치사건 조사와 관련 05.12.15 사건 당사자인 金大中 前대통령을 면담하고 국정원 과거사 활동이 과거 권력기관을 국민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임을 설명하고 金大中 前대통령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이와 관련 김 前대통령은 밝은 모습으로 면담에 응해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는 한편 이러한 활동이 ‘역사의 증언인 만큼 기록으로 남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특히 오충일 위원장은 김원기 국회의장(05.8.19), 신기남 국회 정보위원장(06.3.6), 한명숙 국무총리(06.8.22) 등 정·관계 지도급 인사들을 방문해 진실위 활동상황과 국정원의 개혁의지를 설명하는 한편 06.11.20에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한편 국정원의 과거극복 노력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진실위」는 이렇듯 참여정부 혁신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계기시 마다 대통령은 물론 국내 유력인사 대상 국정원의 과거극복 노력을 설명하고 조사와 관련된 전직

대통령 면담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진실규명활동 과정에서 대상과 상대에 구애됨이 없이 교감을 확대하며 위원회 활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 국정원장, 위원회 조사 활동 지속적 지원 약속 |

고영구 前국정원장은 권력기관의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국정원 발전의 항구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신념으로 진실위 설립을 적극 주도하였는데 04.8.16 제1차 시민단체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7개 시민단체 대표자들에게 국정원의 진실위 설립 취지와 진정성을 설명하고 정권에 봉사하는 국가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노력임을 강조하며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또한 11.2 진실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시 국정원이 세계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불행한 과거사의 굴레를 벗어나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먼저 변화하려는 노력없이 국민들의 평가가 바뀌고, 院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우리 院의 변화와 발전 의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決斷이자 역사적 課業이 될 것입니다.

과거사건 진실규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과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직원 여러분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갖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상된 자긍심을 회복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결연한 각오를 다져 주기 바랍니다.

- 2005년 고영구 원장 신년사(과거사 부분) -

특히 05.6.28에는 민간 및 국정원 전체위원을 초청해 만찬을 갖고 우여곡절 끝에 진실위를 설립하였으나 7대 우선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성공적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것은 물론 ‘김형욱 실종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고 있음을 치하하고 민간 및 국정원측 위원조사관간 상호 협조와 화합을 통해 더욱 업무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고영구 前원장의 뒤를 이어 05.7.11 새로 취임한 김승규 前원장 또한 7.18 국정원으로 오충일 진실위원장을 만찬 초치하여, 그 동안 진실위 조사활동에 대한 긍정 평가에 이어 위원 조사활동 전면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하였다.

또한 05.9.26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진실위 조사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본관에 떨어져 외부에 시설되어 있는 진실위 사무실을 방문해 권력기관의 과거 청산은 굴절된 현대사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들에게는 한을 풀어주는 일이며 또한 국정원으로서도 억울한 누명을 푸는 일이라며 민간과 국정원 직원들이 분발해 업무에 매진해 줄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김승규 원장 발표 요지(05.7.18)

- 國情院이 과거 극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대내외 이미지를 고양하고 미래 발전적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두운 과거사를 먼저 털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임
- 따라서 國情院長 취임시 쏙직원들에게 몇가지 당부를 하면서 ‘국정원의 진정한 혁신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데서 시작되고’
-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이를 과감히 버리고 다시는 비난받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하게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및 탈법행위 등으로 인한 과거 의혹사건 진실규명 작업은 역사발전 및 화해와 통합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당위성과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역사적으로도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함
- 끝으로 「과거사 진실위원회」 관계자들과 오충일 위원장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국정원장으로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2005. 7. 18

국가정보원장 김 승 규

06.9.11 김승규 前원장은 오충일 위원장을 초청해 진실위의 헌신적 노력과 우리 국정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 힘입어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국정원은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개혁과 혁신을 지속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先進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노고를 치하하였다. 특히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은 국민 화해와 통합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이 있으며 歷史적으로도 높게 평가를 받을 것임을 강조하고 향후 國情院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전문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착근하기 위해서는 진실위의 진실규명 노력들이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김승규 前원장의 뒤를 이어 김만복 국정원장은 06.11.20 국회 인사청문회시 오충일 위원장으로 하여금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실위의 업무가 과거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역사적 대의가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토록 권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11.27 민간·국정원 전체위원들을 만찬에 초청해 상호 유기적 협조와 활동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데 이어 11.30 진실화해위 및 「국정원」·「국방부」·「경찰청」 등 4개 기관 과거사위원회회의에 참석해 국정원의 과거극복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고 다른 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진실위」 활동기간 봉직한 3명의 국정원장들은 이렇듯 민간·국정원 위원 초청 격려는 물론 진실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지속 격려함으로써 半民·半官 기구인 진실위의 위상을 높이면서, 기관장이 직접적인 지휘 관심과 지원을 보여줌으로써 진실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기여하였다.

| 국가차원의 과거사위 논의 기반 확산 노력 |

「위원회」 민간 간사인 安秉旭 교수는 05.7.15 대통령 과거사 자문기구인 「汎국민 자문위」 위원 자격으로 청와대 午餐 懇談會에 참석, '진실위 경과사항' 등을 보고하고 국가차원의 과거사위 논의를 확산해 나갔다.

* 명칭 : 바른 역사,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민자문위원회(위원장 : 강만길 등 5명)

대통령 주재 과거사위 오찬 간담회 참석 결과

- 청와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23명의 각계대표들로 「汎국민 자문위」를 구성하고 大統領 주재 午餐 懇談會를 개최
- 同 간담회에서 大統領은 안병욱 간사에게 國情院 과거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
 - 안병욱 간사는 國情院측의 배려와 협조로 순조로운 조사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院內 관련 기록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 이에 대해 大統領은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 노력은 역사와 미래에 대한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國情院 조사는 비교적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여 자료의 부족 등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체에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 6.25 당시 민간학살 의혹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不分明한 과거사건의 조사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국정원 진실위에 많은 관심을 표명
- 「진실위」는 정부차원의 과거사위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가기관 과거사위를 선도해 나가는 등 대통령은 물론 국민들에게 국정원 과거사위 활동의 진정성 부각에 크게 기여

- 05.7.15 -

| 국정원 전직원 대상 의식 설문조사, 운영방향 共有 |

국정원은 직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활동이 국정원 혁신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국정원의 지속적인 발전에 그 취지가 있음을 꾸준히 홍보하였다. 그리하여 05.10 진실위 출범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국정원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원 의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동 설문조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共有하려는 큰 뜻이 있었고 활동 1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의 성격도 있었다. 위원회 출범초기 부정적 여론이 절대 다수였으나 1년이 지난 당시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활동은 응답자의 58%가 '잘한 일'로 답한 가운데 35%는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용서와 화해'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응답자의 49%는 同 규명 활동이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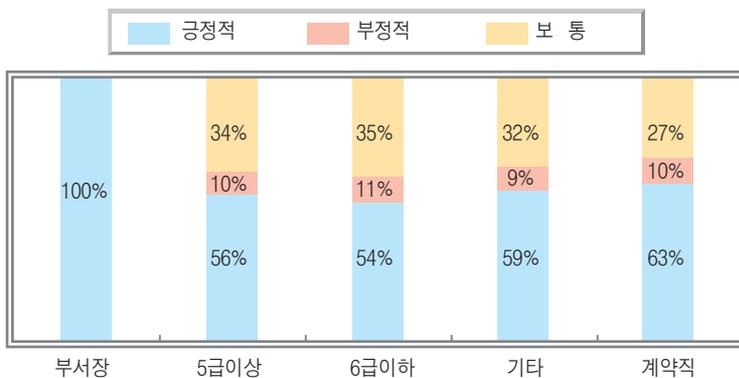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진실위 운영과정에서 '원내외 보안문제' (45%)에 가장 유의해야 하고, 조사결과 발표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 제시' (49%)가 최우선 역점과제라는 반응을 시현하였다. (이하 문항별 분석결과 참조) 이러한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는 당초 활동시한 2년 마감 시점을 전후한 2007년초에 실시하여 직원들의 의식변화와 요구사항을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총평)

- 과거사 진실규명 활동은 응답자의 58%가 '매우 잘한 일'로 답한 가운데, 35%는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용서와 화해'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응답자의 49%는 同 규명 활동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긍정
- 한편, 진실위 운영과정에서 '원내외 보안문제(45%)'에 가장 유의해야 하고, 조사결과 발표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 제시'(49%)가 최우선 역점과제라는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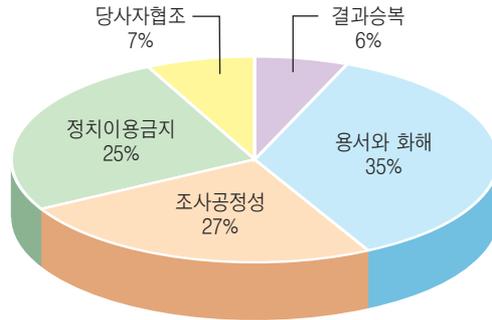
問項別 分析結果

■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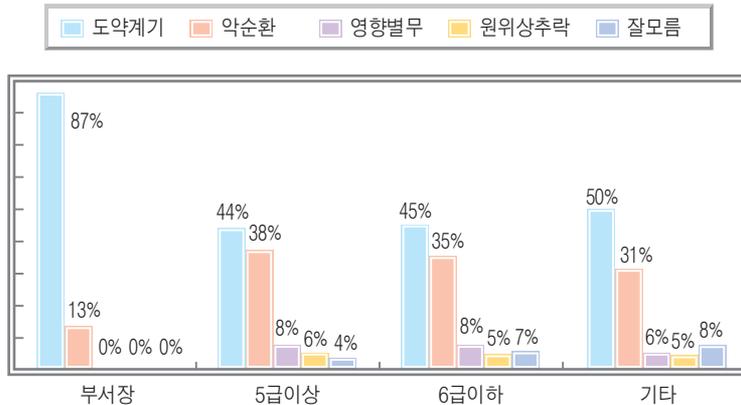
58%가 '매우 잘한 일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10%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라고 부정적 반응인 가운데, 유보도 32% 차지

■ 과거사 진실규명 성공의 선결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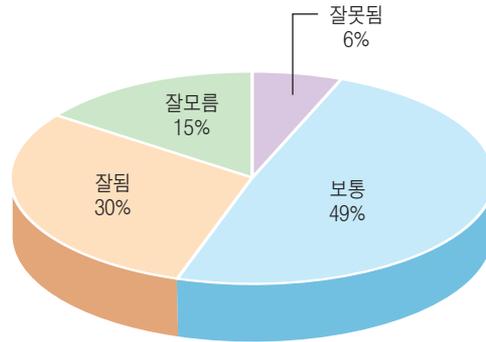
과거사 진실규명 성공의 선결요건에 대해 35%가 ‘용서와 화해정신’ 이라고 답한데 이어, ‘조사 공정성’ (27%) · ‘결과의 정치적 이용 금지’ (25%) 등 順으로 평가

■ 과거사 진실규명에 따른 국정원 파급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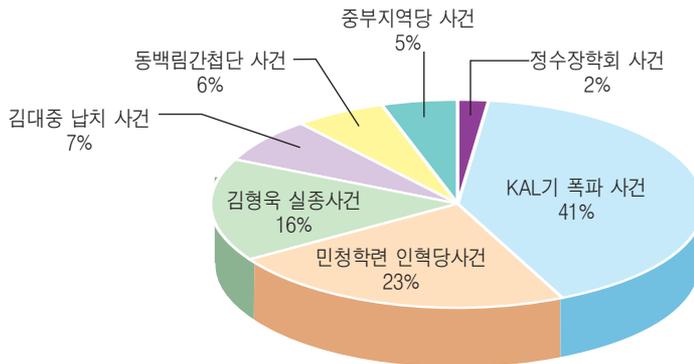
과거사 진실규명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는 긍정적 반응이 49%를 차지한 반면, ‘국정원 위상 추락 · 악순환’ 등 부정적 반응은 37%로 조사

■ 과거사 조사대상 선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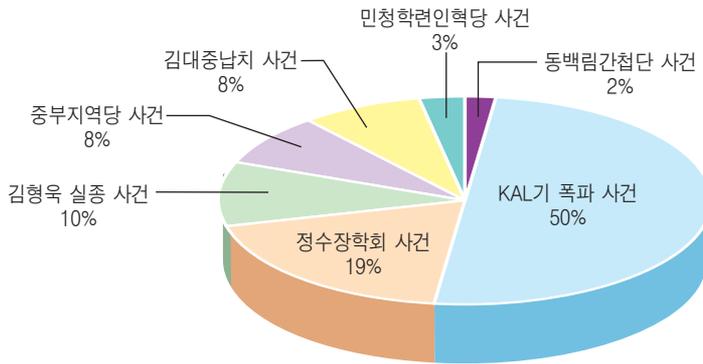
조사대상 선정이 '잘 되었다' 는 반응은 30%인 반면 '잘못 되었다' 는 평가는 6%에 불과한 가운데 응답자의 49%가 유보적 의견(보통)을 제시

■ 반드시 규명해야 할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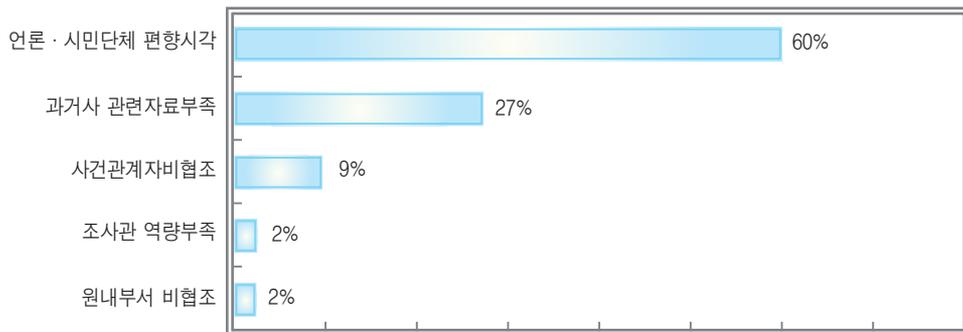
반드시 규명해야 할 과거사 조사 대상은 'KAL기 폭파사건' (41%) · '민청학련 · 인혁당 사건' (23%) · '김형욱 실종 사건' (16%) 등 順이라고 응답

■ 선정이 부적절한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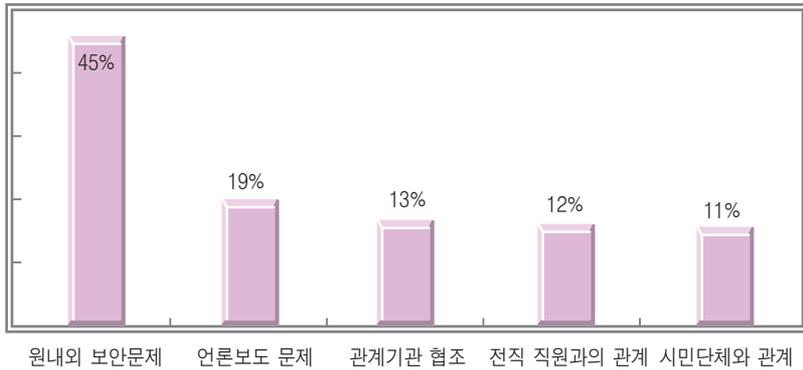
선정이 부적절한 사건으로 'KAL기 폭파 사건' (50%)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정수장학회 사건' (19%) · '김형욱 실종 사건' (10%) · '김대중 납치 사건' (8%) 등 順으로 조사

■ 과거사 진실규명 주요 저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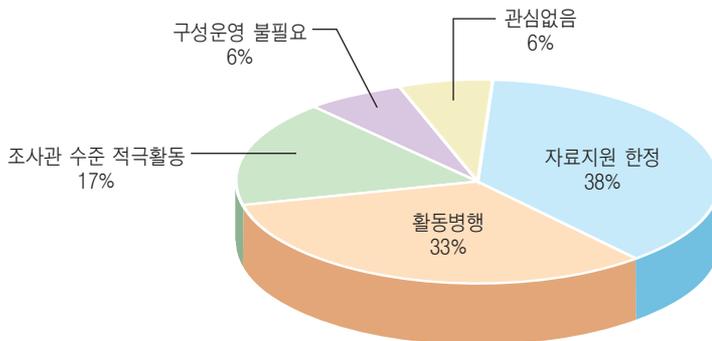
과거사 진실규명 주요 저해요인으로 60%가 '언론·시민단체의 편향적 시각' 이라고 답한데 이어, '관련자료 부족' (27%) · '사건관계자 비협조' (9%) 등이라고 응답

■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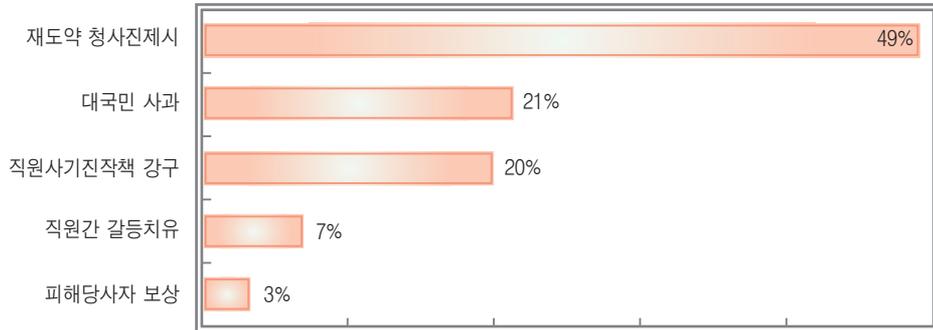
진실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원내외 보안문제’ (45%) · ‘언론보도 문제’ (19%) · ‘관계기관 협조’ (13%) · ‘전직 직원과의 관계’ (12%) 등이 중요한 요건이라고 답변

■ 「진실위」 지원T/F 운영방향 평가



진실위 지원T/F 운영에 대해 38%가 ‘순수 자료지원에 한정’해야 한다고 답한데 이어, ‘자료 보안검토 등 활동병행’ (33%) · ‘국정원 조사관 수준 활동’ (17%) 등 순으로 응답

■ 과거사 조사결과 발표後 최우선 역점과제



조사결과 발표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 제시’ (49%)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데 이어 ‘對국민 사과’ (21%) · ‘직원 사기진작책 강구’ (20%)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

| 조사실무인력 전문성 제고 노력 등 위원회 활동기반 조성 |

국정원은 민간조사관 및 지원팀원 등 위원회의 선발을 거친 민간인 12명을 계약직 직원으로 정식채용(12.27부)하였다. 조사활동의 효율성과 민간측의 인정감 제고를 통한 조기 안정화를 위해 04.12.27~31간 국가정보대학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최근 북한정세전망, 국정원의 국익정보활동 사례, 보안관리실무, 국가발전과 정보기관의 역할, 사격 등 국정원 업무전반에 대한 「진실위 직원화과정」 합동교육을 받고 국정원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교육후 민간조사관 등은 “국정원의 모습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우려반·기대반이었으나 교육이 진행되면서 점차 국정원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조성되었다”고 자평하면서 “교육기간이 짧고 비합숙인 관계로 서로를 알게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였을 정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교육이었다.

1차 민간·국정원 조사관 합동 교육일정

일 자	담당과목 및 주요내용	담 당
12.27(월)	입교식 정보대학원 교육안내	정보대학원 정보대학원
	진실위원회 업무소개 최근 북한정세 및 향후 전망 체육복·운동화 지급 등	진실위 조사지원팀장 정보대학원
12.28(화)	국정원의 국익정보활동 사례 국정원관계법령 보안관리실무 기록물 관련 법령·처리절차 체 육	국정원 담당관 정보대학원 국정원 보안담당관 국정원 자료담당관 정보대학원
12.29(수)	국가발전과 정보기관의 역할 국정원 업무소개 디지털 영상장비 활용법 체 육	정보대학원 기조실장 정보대학원
12.30(목)	관문점 및 안보현장 견학	도라산전망대·제3땅굴 등
12.31(금)	북한의 대남공작 사례 최근 국제범죄 동향 사 격 수 료	정보대학원 정보대학원 정보대학원

위원회는 05.3.24 국가정보대학원에서 정보대학원교수 및 국정원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조사실무인력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가보안법 변천사 및 정부참칭·불고지죄·찬양고무 등 표현 자유의 침해 이유로 개폐 논의에 있는 쟁점사항과 국가기밀의 요건인 非公知性·要秘匿性 등에 설명을 듣고, 간첩사건에 대한 일반적 처리절차와 '검사 및 변호인'이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사실오인·법리오해·판단이유 모호·양형부당 등에 대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하였다.

계속 이어진 '자유토론 및 세미나'에서 오충일 위원장은 "사건을 볼 때 거시적 관점에서 군사적·외교적 당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한홍구 위원은 "1·2차 강의를 들어 볼 때 그 정도로 전향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라며 "만약 과거에 이런 세미나가 있었다면 다들 국정원에서 쫓겨 나갔을 것이다"라며 강의내용에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참석한 조사관들도 이번 직무교육과 세미나는 유익하였다고 자평하였다.

위원회는 민간 조사관 신규채용 및 국정원 조사관 교체 등을 계기로 05.7.10~14(5일)간 정보대학원에서 2차 合同職務教育을 실시하였다. 당시 民間조사관들은 입교전 企調室長과 오찬 면담시 제기된 직급 승급·보수증액 등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건의하였는데 안광복 企調室長은 가능한 분야에서 지원을 약속하고,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직무지식 함양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충일 委員長은 입교시 인사말을 통해, 올곧은 역사인식은 물론 國家와 國情院 발전을 염두에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규채용 민간조사관들은 교육에 앞서 우려와 기대감을 보여왔으나 합동교육을 통해 직원간 유대는 물론 국정원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조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국가정보대학원측의 각종 교육·행정편의 지원 및 국정원 업무소개(기조실장) 등 국정원의 각별한 관심은 물론 충실한 강의내용이었다고 好評하였다.

한편 대다수 직원들은 교육과정과 관련 '기간이 짧아 심도있는 의사소통 기회가 적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향후 심화된 실무교육 및 위원 합동교육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으며 體育·射擊 등 조별활동과 안보현장(평화의 댐) 견학 등을 통해 국정원 및 民間직원들간 단합의 계기가 되었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2차 민간·국정원 조사관 합동 교육일정

일 자	담당과목 및 주요내용	담 당
7.10(월)	정보대학원 입교식 교육안내 진실위원회 업무 현황 및 향후 계획 국가안보와 정보기관 최근 북한정세 및 향후 전망	국가정보대학원장 진실위 지원팀장 국가정보대학원 정보대학원 교수
7.11(화)	국정원의 국익정보활동 사례 국정원 업무관계법 및 각종 규정 각국의 대테러 활동 보안관리실무 국정원 기록물 관리실태 체 육	국정원 업무담당관 정보대학원 국정원 대테러 담당관 국정원 보안담당관 국정원 자료담당관 정보대학원
7.12(수)	안보 현장견학(평화의 댐)	정보대학원
7.13(목)	院 업무 소개 북한 대남공작(간첩침투 사례) 조직혁신을 위한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체 육	기조실장 정보대학원 교수 "
7.14(금)	최근 국제범죄 유형별 특징 및 사례 최근 선진국 정보기관 동향 자체 평가 사 격 수 료	국정원 담당관 정보대학원 교수

또한, 위원회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진상규명에 ‘간첩장비 및 통신체계’에 대한 사전지식이 요구된다고 판단, 국정원에 이에 대한 교육을 요청(05.8.26)하여 국정원은 05.10.10 위원회 민간위원·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간첩통신체계 및 간첩장비’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국정원 유관부서에서는 ‘남한조선노동당’ 간첩단 사건 당시 압수 보관중인 송·수신기 등 간첩통신장비와 간첩통신체계를 교육하고 암호문건을 활용한 지령전문 조립 및 해독절차와 간첩이 소지하였던

권총·침투장비 등 25종 95점의 간첩장비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의 사실에 근거한 진솔한 직무교육을 통해 위원회의 사건조사 능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위원회 전체 회의에 앞서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진실위 출범의 역사적 의미 및 향후 활동방향’ (2005.4.11)에 대해 특강을 듣고 자유토론을 통해 인식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조용범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국제협력이사로부터 ‘고문의 심리학’ (2006.1.23) 등 수시 외부전문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조사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는데에도 주력하였다.

| 진실위 소속 민간 조사관 승급 등 배려 |

진실위 국정원측 간사위원인 안광복 기조실장은 06.6.26 2차 조사를 앞두고 원활한 진실위 운영과 관련 애로사항 취합을 위해 민간직원 등 12명(조사지원팀장 배석)과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기조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긍정평가하고 향후 1차 사건 마무리와 2차사건 선정 등 조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한데 이어 민간측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에 민간조사관들은 조사과정 투명성, 조사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정원측의 지원 방안, 국정원 조사관과의 관계개선, 지원팀 격상 등 운영규정 개정추진 필요성 등 운영에 대한 사항과 민간조사관 승급, 민간조사관 사명감·자긍심 고취방안 등 직원사기고양, 직원 휴게공간 확충 등 복지·후생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기조실장은 배석한 지원팀장에게 가능한 선에서 긍정적으로 실무검토 등 추진토록하되 애로점을 지휘보고하여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시함에 따라 국정원측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위원회 조사지원팀은 동 민간조사관 처우개선 요청사항을 국정원 차원에서 수합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민간측을 배려, 이를 개선 조치 하달 등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민간측 주요 건의사항 및 조치 결과

방 안	주 요 내 용	조 치 결 과
1. 조사과정 투명성 제고	○ 문서조사와 관련 국정원측의 자료지원 지연 등 의구심 해소 필요(보증을 설 수 있을 정도)	○ 국정원차원 자료지원 T/F 구성·운영
2. 조사 효율성 제고	○ 보안성 검토절차와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국정원 문서 조사 효율성 제고방안 필요	○ 국정원내 유관부서 협조 보안성 검토절차 단축
3. 국정원 조사관과의 관계개선	○ '인혁당' 사건이후 급격히 관계악화, 상호간 스킨십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워크숍·동아리 활동 강화
4. '지원팀' 격상 등 운영규정 개정 문제	○ 위원회에서 의결된 운영규정개정 조속 추진 필요	○ 운영규정관련 원내의견 문의 등 수렴, 개정 (07.1.8)
5. 민간조사관 사명감·자긍심 고취방안	○ 여타 계약직 직원과 다른 차별대우 해소 ○ 국정원측의 과거사 규명노력의 진정성 확보 필요	○ 민간조사관 건의사항 수시 수합조치 ○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확대
6. 민간조사관 승급	○ 국방부 계약직 '가' 급에 상응한 조치 필요	○ 1년 이상된 조사관 전원 승급(06.12.1부)
7. 민간조사팀장 위상제고 필요	○ 주간·월간단위 실장님 주재회의 참석 추진	○ 팀장 위상제고 및 건의사항 등 개선 조치
8. 복지시설 확충	○ 여직원 휴게실 등 복지후생 지원 필요	○ 수시 개선 시행
9. 근무환경 개선	○ 사무실 에어컨 설치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10. 체력단련 적극 지원	○ 족구 등 수요체육행사 탄력적 시행 * 체육시설 부족으로, 정보대학원·원내시설 이용 필요	○ 국정원측 및 정보대학원 과 협의 시행

위원회 활동 종합

| 조사활동의 개시, 진실을 찾아 떠나는 험난한 여정 |

위원회는 2004.11.2 출범식 및 오충일 위원장 등 임원진 선출등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 동안 134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그해 12.16 위원·조사관 전체 워크숍을 통해 향후 조사활동 방향 등 논의를 거쳐 내부조직체제를 정비한데 이어 05.2.3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우선 조사대상 7개 사건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당시 오충일 위원장은 역사적인 국정원 과거사건 조사활동이라는 소임의 무게를 실감하듯 기자회견에 앞서 100여명의 국내언론 기자들과 국민들 앞에 冒頭 발언을 통해 진실규명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면서 진실을 찾아 떠나는 험로에서 던지는 화두이자 조사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가슴에 새긴 고뇌의 표현 그 자체가 아닐수 없었다.

오충일 위원장 모두발언

국정원 과거사건의 진실규명을 시작하면서 나는 역사적 진실앞에 슬픔과 아픔을 가지지 않고는 도저히 설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싶지 않기에 진실 앞에서 고통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만 진실을 말하는 새 세상을 만들고 싶지 누구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 앞에서 고백하고 진실을 위해 용서하는 용기없이 우리의 이 일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많은 사건들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고백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역사 앞에서 진실고백을 통해 거듭나고자 하는 국정원의 고통과 용기를 모든 국민이 격려하고 사랑해주길 바랍니다.

2005년 2월 3일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진실위원회

위원장 오 충 일

위원회는 그동안 134차례의 정기회의와 사건별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민간 및 국정원 위원들간 조사방향 조율과 진행실태 점검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결과 발표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金大中 납치사건'을 제외한 6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다만 중간발표한 김형욱 실종사건, 'KAL858기 폭파사건' 및 '金大中 사건'은 이번 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하게 된 것이다.

1차 우선조사대상 사건 조사결과 발표 현황		
1차 우선조사대상 사건	원 현지조사	비 고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05. 7.22	종 결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05.12. 7	종 결
동백림 사건	06. 1.26	종 결
김대중 납치 사건		*
김형욱 실종 사건	05. 5.26	*
KAL858기 폭파 사건	06. 8. 1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06. 8. 1	종 결

* 김대중 납치 사건, 김형욱 실종 사건, KAL858기 폭파사건은 이번 종합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를 공개.

| 국민의 눈과 귀가 '진실'에 주목하다 |

위원회는 설립당시 제보된 사건과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건 등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사건이 97개에 달함에 따라 06년 10월 위원회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1차 우선 조사대상 사건과 병행해 2차 조사를 시작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와 달리 전체 의혹사건을 정치·학원·언론·노동·사법·간첩 등 6개 분야별로 나누어 포괄적 조사를 진행하여 왔다.

그동안 조사과정과 사건 조사결과발표에서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많은 격려와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고, 사회여론이 더욱 증폭되기도 하였다. 우리 「진실위」는 이러한 안팎의 지적을 위원회 활동의 지표로 삼기도 하였다.

國情院 진실위 활동을 주목한다

국가정보원의 진실위원회(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진실위원회)가 새해 벽두인 3일부터 조사관들의 활동을 본격 가동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민간위원 1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진실위는 이미 지난달 2일 부터 활동에 들어 갔었다. 그러나 진실위의 활동은 이들의 손발이 돼 조사의 실무작업을 담당할 조사관들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된 셈이다.

진실위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회의에서 '과거사건 의혹대상'으로 모두 56건을 골라 놓았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현재까지 당원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원내발언으로 불거진 이른바 '이철우의원 간첩조작사건'과 관련된 ● 92년 중부지역당사건을 비롯해 ● 박정희 군사정부의 민정이양과정에서 정치자금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소위 '4대 의혹사건(중권파동사건, 통화개혁사건, 워커히호텔사건, 새나라자동차사건)과 ● 5.18 군부세력의 언론사 통폐합 사건 ● 정인숙 피살 사건 ● KAL기 폭파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모두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이다. 그러나 앞으로 2년간 이렇게 많은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을 모두 마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미진한 사안이나 우선순위에서 빠진 사건들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 등은 일단 1차 조사시한이 임박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조사대상 사건의 우선순위 결정을 빠르면 1월말, 늦어도 2월 안에는 마치겠다는 것이 민간위원들의 판단인 것 같다.

과거 독재정권을 위해 부당하게 동원된 국가조직은 많았다. 그러나 인명과 인권침해 그리고 정치공작 등의 범죄를 자행한 국가기관 가운데 어느 기관도 과거 잘못이나 의문에 대한 진상 규명 절차를 구체적으로 해낸 경우는 없었다.

우리가 국정원 진실위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지난 세월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된 많은 국가기관에서도 핵심에 섰던 국정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자발적인 과거사 고백’을 통해 거듭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진실위의 활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과거사건 규명작업 과정에서 진실위를 구성하고 있는 15명의 위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갖고 이 역사적인 과업에 임하는지 전체 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 연합시론, 05.1.2 -

| 조사결과 발표, 과거성찰의 기록 공개 |

위원회는 민간위원 전원과 김만복 당시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05.12.7 오후 1시에 국정원에서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진실위 조사결과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의 경우 소위 인혁당은 黨수준에 이르지 못한 서클 형태의 모임에 불과하고 강령·규약도 구성원간에 논의된 적은 있으나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아 국가변란을 기도한 反국가단체로 실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민청학련은 실재한 조직이라기보다는 74.4 전국 동시다발적인 유신반대 시위를 하기 위한 준비모임에 불과하며 유인물의 대외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민청학련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했다. 인혁당 재건위는 조직결성을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 민중봉기를 통해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당시 발표내용의 근거가 없고 다만, 혁신계 인사들이 국내외 정세토론과 학생운동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해 서클 형태의 모임을 진행했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숏한 논란을 통해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고,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민간조사관과 국정원 조사관간의 보이지 않는 앙금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혹시라도 과거사건 발표로 인해 입게될 국정원의 또 다른 이미지 훼손과 직원 사기를 고려하여 오충일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에 앞선 冒頭 발언을 하게 되었다.

‘인혁당 · 민청학련 사건’ 조사발표에 즈음하여

- 오늘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사건들은 지난 6~70년대에 일어났던 것으로서
 - 당시 권위주의 정부시절 국민의 인권보호 실상이 오늘날 보다 현저하게 열악했던 시대에 발생했던 사건이며
 - 현재 국정원은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자기 혁신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나아가 국정원은 2000년 이후 업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호소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 오늘 발표로 인해 6~70년대 중앙정보부와 현재의 국정원을 동일시하여 경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봄
- 지금 「진실위」가 국정원 과거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에 진력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 때문이며 여기서 얻은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자는 뜻임
-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발표가 다시 태어나는 국정원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묵묵히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는 것임
- 그러므로 과거에 어렵던 시절 가난을 대대로 물려받았던 자식들처럼 3~40년 전에 보지도 못했던 일부 선배들의 업보를 그대로 물려받은 현재의 국정원 직원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면서
 - 과거 잘못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국정원과 그 직원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도 보내주시기 바람

- 위원장 기자회견 모두말씀, 05.12.7 -

위원회는 그 이후로도 기자회견 형식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中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KAL858기 폭파사건을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안기부 조작설 등 세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北韓 대남 공작조직 주도로 그 조직소속 공작원 김승일·김현희 등에 의해 87.11.29 자행된 테러사건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던 ‘金大中 납치사건’은 4大 핵심의혹 중 ① 이후락 중정부장의 지시로 中情에 의해 실행 ②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③ 박정희 前 대통령 사전지시 ④ 김대중 前 대통령 살해의도 여부는 국민들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이번 종합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를 공개하게 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2차 분야별 조사를 통해 당시 중정·안기부가 정치·학원·언론분야 등에 개입한 구체적 사례들을 모아 포괄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권위주의 정부시절 국가기관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등에 대해 권력기관의 과거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위원회 활동의 그림자, 조사지원팀 |

위원회 활동과 관련 조사지원팀은 위원회의 주요업무가 조사활동의 진행과 모든 결정을 의결하는 정기회의에 있음을 감안해 정기회의의 원활한 지원은 물론 국정원·민간으로 구성된 위원·조사관 등 이질적 요소들을 극복, 人和를 위한 노력에도 주력하였다. 행정적 지원 및 대외기관 협조 등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조사활동 지원 및 대외협력 부문 등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회무업무를 비롯 위원회에서 미처 착안되지 못한 새로운 업무들도 조사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원회 조사지원팀은 국정원 최초로 시작하는 과거사청산의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이러한 전례없는 일들을 영원히 보존하고 정기회의 결정사항의 정확한 복기와 후속조치를 위해 제2차 정기회의부터 회의

전과정을 녹취하는 한편 회의록 작성을 통해 향후 있을지 모르는 결정사항 등 주요사안들에 대한 위원들간 이견 해소에 노력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회의록과 요약보고서는 차기 정기회의시 위원회에 제출되어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위원들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회의진행과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들이 비상근함에 따라 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기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기회의 이전에 위원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시 애로사항·문제점 및 조사활동 진행경과 등 회의안건을 취합해 회의자료를 작성, 지원함으로써 정기회의 회무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지원하였다.

매주 개최되는 위원회 정기회의의 운영편의를 위해 지원팀 직원들이 배석하여 위원들의 회의진행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회의시 제기되는 갖가지 안건을 취합해 차기 정기회의 자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와 원내 공지사항 등을 자문함으로써 민·관 합동 위원회 활동의 한계점 극복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각종 업무협조 및 의견문의는 물론 국회의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 개최시 이를 전달하고 위원회의결을 통해 이를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조사활동 이외 모든 분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진실위가 국정원과 관련된 과거 의혹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 국정원 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보고 받아야 할 일심회 사건, 도청고백, 부정부패 T/F팀 등 각종 국정원과 관련된 현안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관계부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브리핑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신뢰분위기 구축과 이해제고에 노력 하였다.

조사지원팀은 위원회의 조사활동 성과극대화를 위해 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시에는 국정원 유관부서와 협조, 위원회를 대신해 국내 주요 언론기관들을 초청하고 기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차량을 지원하는 한편 조사결과 보고서·CD제작 배포 등 국정원 과거극복의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그 외에 진실위 민간위원·조사관들의 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국정원내 유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부서자료실 방문절차 간소화, 지방출신 민간위원들을 위한 숙소마련, 민간위원(2명)의 상근을 위해 상시 출입조치와 상근에 따른 수당 및 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보이지 않는 그림자 지원을 해 왔다.

| 위원회 활동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사무총괄과 확대재편 |

진실위가 나름의 빛나는 성과를 거둔데는 조사지원팀의 그림자와 같은 헌신적 노력도 한 몫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운영과정의 평가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발굴·개선 노력은 물론 이를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후속조치를 실행해 나갔다. 당초 조사지원팀은 조사1·2팀의 행정지원에 머물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회의가 거듭 될수록 이후 회무업무·위원회 운영지원·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업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현안 대처요구와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06.1.8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사무총괄과로 확대 재편되었다.

이와같이 위원회는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수렴하여 위원회 기한 연장(1년)을 계기로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원회로서는 1차 조사대상 사건이 마무리되고 발전위의 2기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어 성공적인 활동 마무리를 위해서는 위원회와 원내외 업무협약·조정기능 및 대외 협력업무와 대국회 활동 등 새로운 역할업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조사지원 등 기본업무 이외 「진실·화해위」 및 여타 국방부·경찰청 등 국가기관 과거사위 등의 협조요청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院內 유관부서 의견을 수합·판단하고 처리하는 업무가 점증하고 있는데다 매월 「진실·화해위」와 국가기관 과거사 위원장, 간사위원, 실무책임자가 참석하는 ‘진실규명 관계기관 정례회의’가 개최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또한 청와대 4개 과거사위원회 관련부처 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회의와 청와대와 관련부처 장관회의가 추진되는 등 수시 실무협약과 회의준비 등 對外

협력업무 증가에도 대처해야 했다.

특히 국회 정보위를 비롯한 과거사 유관기관과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는 물론 개별 진정사건 처리 등 조사지원팀 업무가중으로 위원회의 성공적 마무리에 한계 등 현실적 문제에도 적극 대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기회의(06.4) 위원회 2기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院조사관 충원, 조사팀 증설, 지원팀의 '사무처' 격상 등 내용으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된 뒤, 원내 협의를 거쳐 조사지원팀을 '사무총괄과'로 확대재편하는 등 최소범위내에서 운영규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院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가게 되었다.

Ⅰ 과거사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 Ⅰ

「진실위」는 정부차원 과거사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기관간 중복업무를 최소화하고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한 국가차원 혁신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후발주자인 「진실화해위원회」와 「경찰청」·「국방부」 등의 국가기관 과거사위원회에 노하우 전수 등 업무기반 구축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2006년 2월부터 시작된 4개 기관 과거사위원장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과제고에 노력하였다.

4개 기관 과거사위원장 회의는 2005년 「진화위」 설립이후 지속 논의되어 오다 4개 기관의 운영체계가 안정화된 06.2.21 1차회의를 시작해 07.8.30 회의를 마지막으로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해 총 14차례에 걸쳐 '4개기관 과거사 위원장' 정례회의를 진행함으로써 각 기관의 활동상황과 조사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교환하였다. 특히 4개 기관 과거사위 위원 및 조사관 전체가 참석하는 합동워크숍을 2차례 개최하여 기관별 위원간 유대를 강화하고 조사진행 실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과거사 진실규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진실위는 4개기관 위원장회의에 앞서 기관 실무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제기된 논의 의제를 중심으로 각 위원회의 의견을 수합하는 등 위원장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04.11.2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과거사 진실규명활동을 전개한 만큼 이러한 위원장·실무회의를 통해 후발 주자인 「진실화해위원회」 및 「국방부」·「경찰청」 업무를 측면지원하였는데 06.11.30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위원장회의를 주재하고 3개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작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업무활성화 의견을 피력하였고, 활동마무리를 앞둔 07.8.30 국정원 「진실위」 주관으로 개최된 제14차 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유관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성공적 활동방안을 제시하였다.

4개 과거사기관 회의 개최현황

회차	일 자	참석인원	협 의 내 용	비 고
1	06.2.21	13명	위원장간 상견례 및 위원회간 정례모임 명칭 결정	* 확대모임은 청와대 및 해 당 부 처 장관 등 기관장 참석
2	3.30	9명	위원회간 정례모임, 간사, 참석범위, 개최 주기 결정	
3	4.27	12명	위원회간 합동수련회 개최 추진 협의	
4	5.25	*18명 (확대모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5	6.29	10명	중복 조사사건 협의를 위한 방향 논의	
6	7.27	12명	7월 중 위원회간 활동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의·조정	
7	8.31	13명	8월 중 위원회간 활동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의·조정, 국회 관련 공동 현안 사항 확인과 검토	
8	9.21	*16명 (확대모임)	9월 중 위원회간 활동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의·조정, 관련 자료 요청	
9	10.26	9명	10월 중 위원회간 활동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의·조정	
10	11.30	13명	11월 중 위원회간 활동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의·조정, 자료협조 방안 마련	
11	12.28	*16명 (확대모임)	12월 중 위원회간 활동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의·조정, 관련 자료 요청	
12	07.4.2	10명	4개 기관 합동 워크숍 장소, 프로그램 협의	
13	5.31	12명	각 위원회자료 활용 공유 및 상호협조	
14	8.30	*18명 (확대모임)	활동 마무리 관련 업무협조 강화 방안	

Ⅰ 국정원의 자기성찰 노력에 대한 국민적 평가 Ⅰ

「진실위」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07.3.7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총리실·행자부·외교부·국방부 등 9개 과거사 유관기관 위원장회의시 오충일 위원장 및 안병욱 간사가 직접 참여해 대통령에게 국정원 과거사활동의 성과를 설명하고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참여정부들어 시작한 과거 진실규명 활동이 그동안 우리사회에 존재해온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해원의 의미는 물론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및 정치지향성을 제거하는 기관 내부개혁에 그 목적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혁신사업이 성공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진실규명 활동이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평가받는 한편, 각 기관 내부적으로는 반성과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는 혁신사업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과거사 규명활동이 어려움도 많고 한계에 부딪힌 적도 많지만 우리는 끈뚱하게 이겨내고 있다”며 “이는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민 해원 차원에서 진행해온 사업인 만큼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것과 각 기관들이 과거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의욕제고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과거사업무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면서 여야는 정보위 등 국회활동을 통해 사건 추가·삭제 및 조사방향 등을 주문하기도 하는데, 진실위는 정보기관의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성실히 답변하라”고 하면서 국회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대통령은 위원회 간담회시 제기된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지시사항을 하명하고 성공적인 과거사위 활동을 독려하였다.

과거사위원회 간담회(3.7) 관련 大統領 지시사항	
구 분	협조대상 및 해야 할 일
총 리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처협의·조정 기능 강화 - 과거사 현장을 적극 발굴, 기념공간 조성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민주공원 조성 사업 추진 지원

구 분	협조대상 및 해야 할 일
기획예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화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조사 참여 자치단체 지원예산 - 조사신청 1만여건을 감안한 조사인력 보강방안 지속 검토 ○ (친일재산조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4월부터 예상되는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 '07 예산 부족분(여비 등 운영비) 보충방안 검토 - 기획예산처 소속 직원 조속 파견조치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진상규명 참여 위원, 공무원 등 직원에 대한 상훈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인력 지속 보강방안 검토 ○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인력 조기파견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인력/기구 보강 지원방안 검토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민주공원 조성사업 지원
중앙인사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진상규명 참여 공무원 등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외교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일본 보유 '후생연금 명부', '공탁금 명부' 등 자료 요구
국 정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화해위원회, 국정원 과거사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사건 자료제공·협조 강화 및 조사활동 완료후 자료이관 등 후속조치 강구
국 방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기구 보강 지원 - 자살처리자 처우·유족지원 관련제도 개선 ○ (진실화해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사건 자료제공·협조 강화 및 조사활동 완료후 자료이관 등 후속조치 강구
경 찰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과거사위 등) 보고서(영문판 포함)발간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 강구 ○ (진실화해위원회, 경찰청 과거사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사건 자료제공·협조 강화 및 조사활동 완료후 자료이관 등 후속조치 강구
법 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인력 조기 파견
교 육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행위자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
국정홍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과거사 정리 관련 홍보활동 강화

위원회는 이와 같이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율 등은 물론 2년 간의 활동을 통해 사건조사결과 및 활동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7개 우선 조사대상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피해자·유족 등 사건 관련자들이 요구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사전 설명하였다. 조사결과 발표시에는 국내 주요 언론기관들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은 물론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국정원의 과거극복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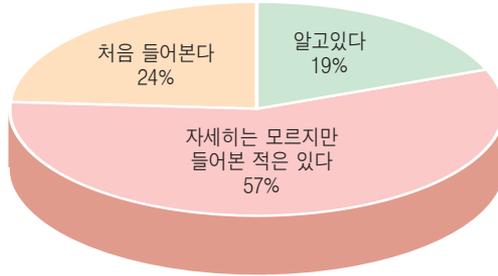
| 성공적 마무리와 방향설정을 위한 국민여론 탐색 |

돌이켜 보면 국가기관 초유의 民·官 합동근무라는 二元 조직운영에 대한 선행 업무가 전혀 없었던 불모지 같은 업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7.1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정원 과거사위가 진행한 7개 사건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75.7%에 달했으며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각 기관의 과거극복 의지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64.4%가 찬성하였다. 국민들과 과거극복 활동 성과를 나누려는 「진실위」의 노력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국민 여론조사 주요 결과분석		
여론조사 개요		
1.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2. 표본설계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지역, 성, 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오차 한계 ±3.7%(95% 신뢰수준)		
3. 조사진행 : 조사기간 2007.1.22 조사기관 TNS Korea		
주 제	항 목	비 고
국정원 의혹사건 재조사 인지도 (문항 1)	1. 과거사 조사대상 및 조사결과 등을 알고 있다 19% 2.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 56.7% 3. 처음 들어본다 24.2%	인지 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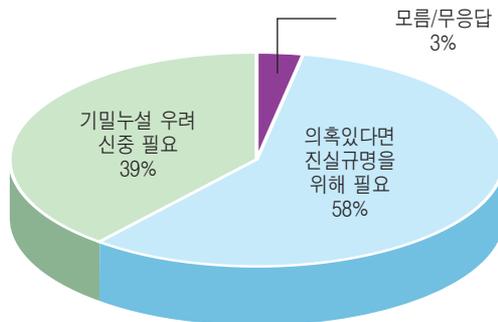
주 제	항 목	비 고
의혹사건 재조사 필요성 평가 (문항 2)	1.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면 진실규명을 위해 재조사가 필요하다 57.6% 2. 국가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조사는 신중해야 한다 39%	
의혹사건 재조사 공정성 평가 (문항 5)	1. 매우 공정하다 2.7% 2. 대체로 공정하다 35.3% 3. 대체로 불공정하다 36% 4. 매우 불공정하다 5.8%	공정 38% 불공정 41.8%
재조사 결과의 신뢰도 평가 (문항 7)	1. 매우 신뢰한다 2.2% 2. 신뢰가 가는 편이다 44.4% 3.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47.5%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1%	신뢰 46.6% 신뢰하지 않음 51.6%
의혹사건 조사 지속 필요성 (문항 8)	1. 사실 여부를 떠나 사회적 논란과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 64.4% 2.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위축과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조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재조사는 자제해야 한다 33%	신뢰 46.6% 신뢰하지 않음 51.6%
국정원의 변화 평가(문항 13)	1. 많이 달라졌으며 개선되었다 12% 2. 다소 변화했으나 아직 미흡하다 48% 3. 노력은 하지만 별로 변한게 없다 28.6% 4. 노력도 하지 않고 변한것도 없다 5.4%	변화했다 60%
국정원 과거사위 활동 평가 (문항 14)	1. 매우 잘하고 있다 2.5% 2. 잘하는 편이다 53.3% 3. 잘못하는 편이다 30.6%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3.9%	잘하고 있다 55.8%

■ 국정원 의혹사건 재조사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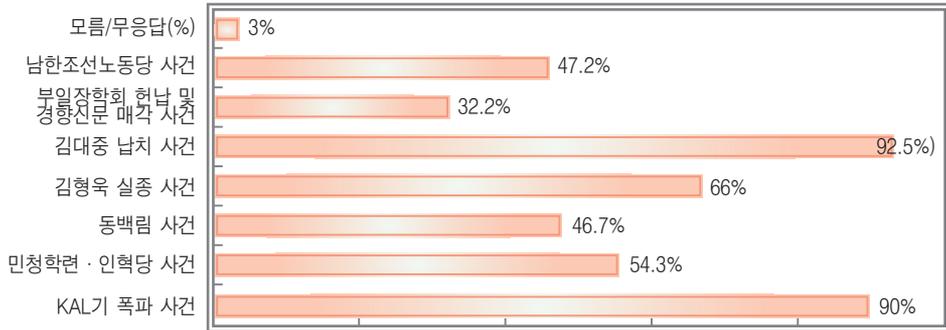
국정원이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진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혹사건들을 재조사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76%에 달해 다수의 국민이 의혹사건 재조사를 인지

■ 의혹사건 재조사 필요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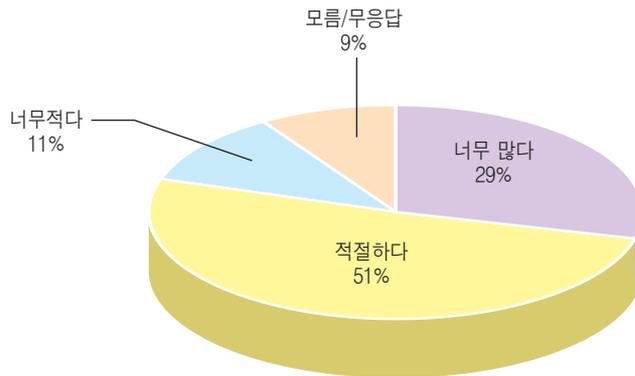
의혹사건 재조사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면 진실규명을 위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8%이나, ‘기밀누설 등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39%를 차지

■ 7대 의혹사건 인지도(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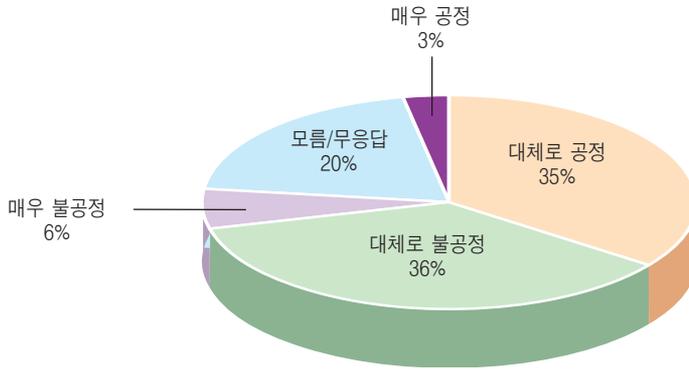
국민 10명 중 9명이 7대 의혹사건중 ‘김대중 납치 사건(92.5%)’ · ‘KAL기 폭파 사건(90%)’ 를 알고 있고, ‘김형욱 실종 사건(66%)’ · ‘민청학련 · 인혁당 사건(54.3%)’ 이 뒤를 따랐음

■ 재조사 대상 7개 사건 선정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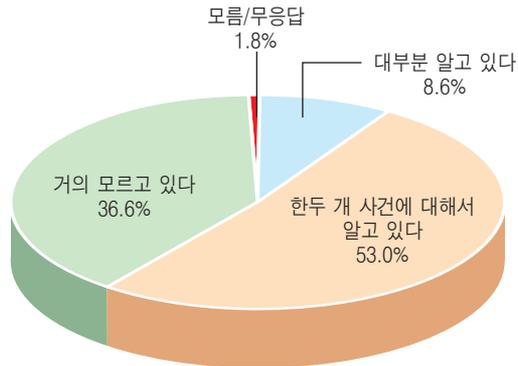
재조사 대상으로 7대 사건을 선정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 는 의견이 51%로 가장 높았고, ‘너무 많다’ 는 29%였으며, ‘너무 적다’ 는 11%로 비교적 소수였음

■ 의혹사건 재조사 공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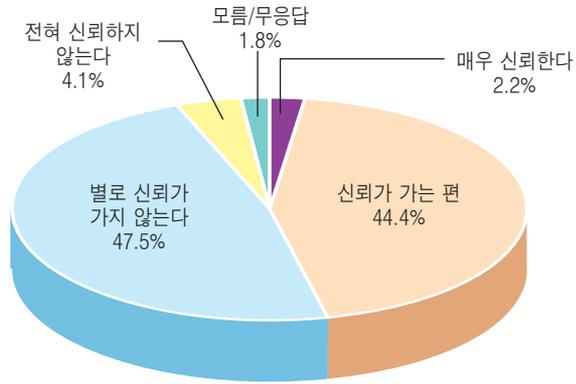
의혹사건 재조사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다’가 38%인 반면, 41.8%는 ‘불공정하다’고 답해 상반된 국민여론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조사 결과 및 중간결과 발표 내용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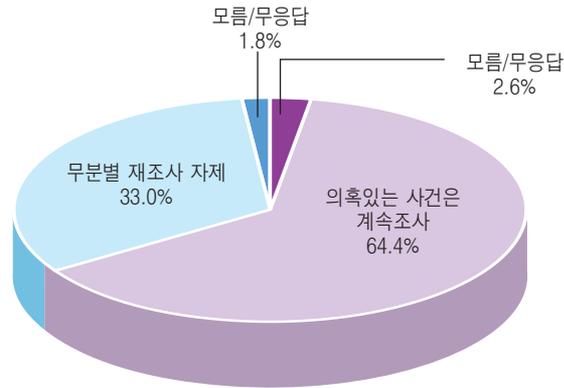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6개 사건 재조사 결과 및 중간결과 발표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은 61.6%로 나타나 반수 이상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재조사 결과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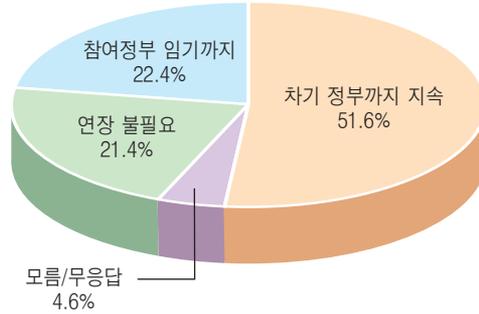
재조사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질문한 결과, ‘신뢰한다’는 긍정 평가가 46.6%로 나타나 ‘신뢰 않는다(51.6%)’는 평가보다 다소 낮았음

■ 의혹사건 조사지속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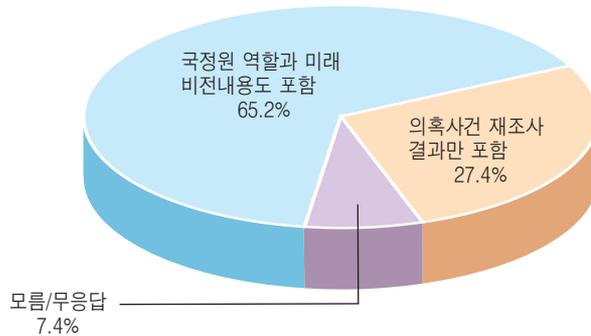
‘논란과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64.4%)’는 당위론이 ‘정보기관의 활동위축과 외국정보기관과의 협조 등을 고려해 자제해야 한다.(33.0%)’는 현실론 보다 우세

■ 과거사위 활동 기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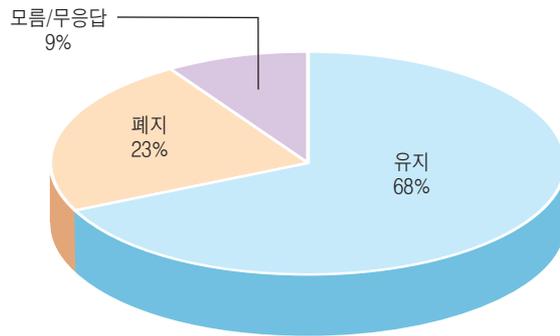
활동 기간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도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높았음. ‘2007년 까지 활동’과 ‘연장 불필요’ 견해는 각각 22.4%, 21.4%

■ 재조사 보고서 국정원 미래비전 포함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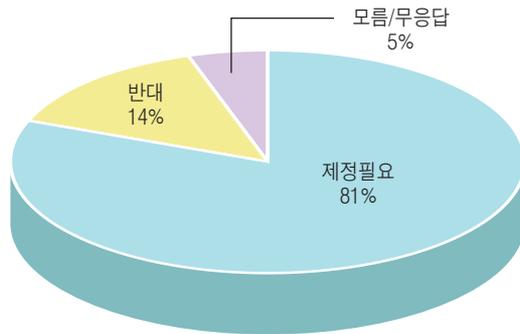
국정원의 역할과 미래 비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65.2%로 ‘재조사 결과만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27.4%)’는 견해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국정원 수사권 폐지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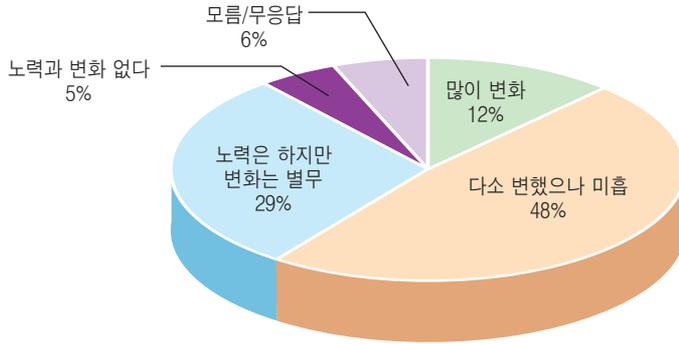
국정원 수사권 폐지 주장과 관련, '간첩사건 수사의 보안과 정보력을 고려해 유지하자'는 의견이 68%로 높은 반면, '인권침해 등 문제로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23%에 불과

■ 테러방지법 제정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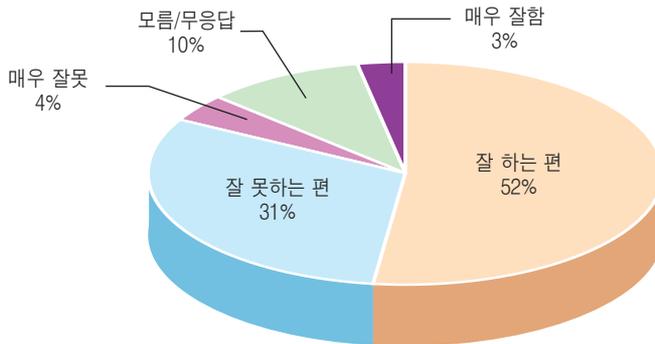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다수(80.7%)의 국민들은 '국제사회의 테러증가와 위협성을 감안할 때 제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이며, '법제정 반대(14%)'는 소수에 불과하였음

■ 국정원 변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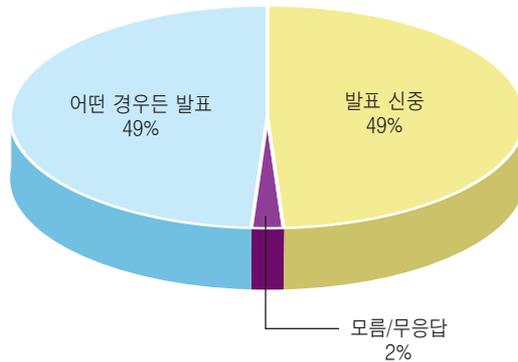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고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12%, '다소 변했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48%로, 다수(60%) 국민이 변화를 느끼고 있음

■ 국정원 과거사위 활동 평가



'잘하고 있다(55%)'는 긍정평가가 '잘못하고 있다(35%)'는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남. 과거사 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상당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음

■ 김대중 납치사건 결과 발표 방향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발표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파장이 있더라도 발표해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49.5% · 48.9%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음

| 진실규명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국회활동 전개 |

진실위는 국정원장 소속 부서로서 국회 정보위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국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정보위 요청자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동안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자료를 작성해, 성실히 답변해 온 것은 물론 2005년과 2006년 등 2회에 걸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자료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국회 정보위는 2004. 11.2 진실위 발족 직후 국민들의 관심이 권력기관의 과거사청산에 집중되면서 여당은 향후 진실위 활동방향 및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세밀한 조사활동 등을 요구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① 위원회의 구성(민간 10, 국정원 5) 관련 형평성 문제 ② 외부위원 시민단체 위주 선정관련 공정성 문제 ③ 활동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등 향후 활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진실위는 당시 야당의 우려에 대해 위원회 구성상 민간위원은 당초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며 학계·법조계·종교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의 숫자에는 별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는

한편, 보안성 담보문제도 조사활동과는 별도로 국정원관계법령에 입각해 처리해 나갈 방침임을 지속 설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5년 5월 드디어 진실위는 첫 번째 조사결과로 ‘김형욱 실종사건’을 발표함에 따라 야당은 발표내용에 오히려 새로운 의혹만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하며 조사과정상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등 국정원의 과거사 활동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부일장학회’·‘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에 이어 ‘KAL 858기 폭파사건’ 등이 순차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등 국회 정보위의 요구도 덩달아 많아졌으나 진실위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해명 그리고 설득을 통해 활동종료시까지 국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 진실위 활동성과를 국정원 혁신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삼다 |

국정원은 스스로 과거 인권침해 등 반성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2004년 국가기관 최초로 「진실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90여개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토대로 7개 우선조사 대상사건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2006년부터 정치·학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정보기관의 개입 여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진실위는 조사활동을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권력남용·인권침해 등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던 국정원 이미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온 것은 물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진실되고 권위있는 국가기관상 정립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진실위는 05.2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7개 개별사건 중 「김형욱 실종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지난 시절의 불법·탈법 요소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것은 물론 종합보고서를 통해 국가기관의 구습 등 革新대상을 적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진실위는 국정원의 과거 공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과거 정보기관이 사회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밝힘으로써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스스로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진실위의 1차·2차 조사결과 드러난 과거 정보기관의 임의동행·변호인

접견제한·피의자 구타 등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등 일부 관행에 대해 국정원이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토록 권고함으로써, 2006년 국정원이 일심회 등 각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체 인권침해 시비가 없었던 것은 물론 직원 개개인 스스로에게 구습에 대한 혁신노력을 강화토록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실위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국정원은 새로운 국정원상을 정립하는 등 믿음직한 국가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진실규명을 통해 구축된 권위·신뢰 회복을 국민들은 물론 자연스럽게 국정원 내부로 확산시켜 조직원 개개인이 민주적 가치를 지향토록 유도함으로써 이제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情報機關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조사대상사건 선정 및 조사평가

Ⅰ 조사대상사건 선정 경위 Ⅰ

「진실위」는 2004.11.2 위촉장을 받은 즉시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 위원장 선출 등 활동에 착수하였다. 우선 정보기관과 관련있는 사건 중 의혹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건들을 선정해야만 했다. 진실위는 국민들로부터 의혹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의 제보를 받는 동시에 ① 국민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② 시민단체 및 유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사건 ③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건 등의 기준을 두고 면밀한 선정작업에 돌입하였다.

이후 3개월여 동안 1차 조사사건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민간위원들이 제출한 진실규명 대상사건 목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정원 홈페이지·우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제보받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대상사건 목록을 취합하여 총 97건의 국정원 과거 의혹사건에 대해 위원회의 전 역량을 투입,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3회의 정기회의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거쳐, 위 세가지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시간제약·인력부족 등 현실적 조사가가능성과 시의성 등을 고려, 이에 적합한 「7大 우선조사대상 사건」을 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2005년 2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였다.



활동경과 보고와 사건조사에 관한 기자회견(2005.2.3)

마침내 진실을 밝혀야할 분명한 목표점이 생긴 것이었다. 7개 조사대상사건별로 조사위원과 조사관을 선임하여 사건소위를 구성하여 본격 조사에 착수하였다.

「1차 우선조사대상 7대 사건」과 주요 의혹		
연번	사건 제목	주요 의혹
1	부일장학회·경향신문 강제 매각 사건(65.5)	5·16 이후 군사정권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제로 탈취, 中情의 주도적 개입 의혹
2	동백림 사건(67.7)	67년 선거 당시 中情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였다는 의혹
3	김대중 납치사건(73.8)	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으로 이후락 前중정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4	인혁당(64.8)·민청학련 사건(74.4)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사실 왜곡·조작 의혹
5	김형욱 실종 사건(79.10)	김형욱 前중정부장이 해외에서 박정희 前대통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 파리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中情이 살해했다는 의혹
6	KAL 858기 폭파사건(87.11)	87년 대통령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안기부가 KAL 858기 폭파를 자작했다는 설
7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92.10)	안기부가 92년 대선을 앞두고 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조작·과장했다는 의혹

「1차 우선조사대상 7대사건」 1차 조사를 어느정도 마무리한 위원회는 당초 활동시한인 2006년 10월말(2년)을 앞두고 2007년 10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가 1년간 활동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의 활발한 조사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의혹이 있는 과거사의 진실을 한 가지라도 더 조사하여 정당한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리하여 위원회 출범초기 예비조사가 완료된 97개 사건중 이들 사건들을 간첩·노동·언론·사법·정치·학원 등 6개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분야에서 4~7건의 대표적인 사건을 선정하여 2차 조사기로 결정하였다.

| 2차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과정 |

2차 분야별 조사대상사건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선 노동·사법·간첩·언론 등 4개 분야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분야별 대상사건 조사시 범위와 한계에 대해 가늠하고 조사방법에 대한 방향타를 설정하였다.

이원보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국가와 노동통제’ 특강을 통해 1945년 해방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조직에서부터 60~70년대 유신체제 및 80년대 신군부의 노동탄압까지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사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노동탄압의 주체로 50년대 경찰에 이어 60~70년대는 중앙정보부가 총체적으로 노동통제 기관으로 등장하였으며, 80년대부터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보안사가 중정·안기부의 역할을 대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박원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장은 사법분야 특강을 통해 프랑스·독일 등 국제사회의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시효문제에 대한 논란 및 흐름과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 악용사례들을 제시하고 20세기 우리민족의 비극적 역사를 바로세우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진실위의 성실한 조사활동을 당부하였다.

조용환 변호사는 간첩분야 특강을 통해 그동안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발생한 간첩조작사건의 실태를 제시하고 중정·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감금·고문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재심제도의 불합리성 등 각종 간첩사건 재판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진실위가 당시 간첩사건 수사 주체였던 정보기관의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장행훈 신문발전위원장은 ‘한국의 언론과 국가권력’ 주제하 5.16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80년 신군부 시절까지 자행된 언론탄압 실태를 시기·사례별로 나누어 당시 정보기관의 역할과 시대분위기 등을 전달하고 향후 진실위에서 언론분야 과거 의혹사건 조사시 프랑스·독일·영국·미국 등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실태와 비교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분야별 주제발표 및 토론회 일정(2006년)

일시	발제자	직책	주제
5.22(월)	이원보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국가와 노동통제
5.23(화)	박원순	○ 변호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장	권위주의 정권시기의 사법권 침해
5.29(월)	조용환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조작간첩 의혹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5.29(월)	장행훈	○ 신문발전위원장 ○ 前 동아일보 편집국장	한국의 언론과 국가권력

2차사건의 분야별 조사는 기존 1차조사와는 달리, 97개사건 모두를 조사하기에는 활동시한과 인력 등 제한요인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2차 분야별 조사대상사건

분야	주요 유형	주요 조사 사건
간첩	월북자 가족, 남북 귀환어부, 일본취업, 행방 불명자 가족 간첩사건	송씨 일가 간첩사건, 정영 간첩사건 차풍길 간첩사건, 박동운 간첩사건
노동	87년 이전·이후 민주노조 탄압,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동통제	한국노총 설립과 운영, 도시산업선교회 탄압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확대, 전교조·전노협 조직 와해 활동
언론	필화사건, 언론자유 실천 및 노조 결성 탄압, 보도지침 및 여론조작, 언론인 연행 및 사찰	사상계 필화사건, 동아일보 광고탄압 동아·조선투위 탄압, 박정희 정권하 보도지침 전두환 정권하 보도지침
사법	재판 개입, 법관 인사조치, 변호권 침해	연세대생 내란음모사건,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사건과 검사 파면, 피의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변호사 비리조사

분 야	주 요 유 형	주 요 조 사 사 건
정 치	정치인 사찰, 선거개입, 정당·국회 활동 개입, 정치자금 통제	야당의원 정치사찰 및 탄압, 총선판세 분석 후보자 사퇴압력 및 낙선공작, 통치권자의 통치자금 조달 및 관리
학 원	학교·교수에 대한 통제,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	학사개입을 통한 통제, 비판성향 교수 인사권 개입 학원 건전화세력 육성, 운동권 총학생 회장 당선 저지 프락치를 통한 학생운동 조직 와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한 통제 등

| 조사 방법 |

위원회 조사활동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국정원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국정원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가 정부기관 기타 단체나 개인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이를 요구하고 국정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구체적 조사방법으로는 증인(소송법상의 증인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널리 의혹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있는 사람을 지칭)·참고인 등 사건관계자 면담조사, 국정원 보유 관련자료의 열람·제출 요구 및 타 기관 자료협조 요청,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의혹사건이 발생한 장소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계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해 실지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다만, 관련자료의 열람·제출 요구 또는 실지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다. 실지조사의 대상이 국정원 시설인 때에는 보안사항에 관하여 미리 감사실장과 협의토록 하였고, 실지조사를 보안사항임을 이유로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한 실제 조사활동은 위원회가 국정원 소속 기구로서 민간위원의 경우 국정원장 위촉으로 Ⅱ급비밀 취급인가를 받고, 민간조사관의 경우 국정원 직원으로 임용된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국정원 보안관련 제 규정·지침을 준용토록 하였다. 국정원 내부자료 및 국방부·검찰청·경찰청 등 외부 자료에 대한 자료협조는 조사팀에서 공문으로 기안하고 사무총괄과장 책임하에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등 내부절차를 거쳐 국정원 해당부서에 발송, 공문서를 접수한 해당부서에서는 관련자료를 검색하여 공작원·협조자·정보기관간 협력사항 등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거쳐 자료가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한 국정원의 정보역량 훼손이나 보안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이 경우 국정원 내부자료 열람은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보안담당관의 안내 등 관계절차에 따라 제한없이 열람하였다. 다만 동 문건을 직접 출력하여 조사 보고에 인용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문서의 '증명력'을 위해 공문서로 요청함으로써 조사과정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되었다. 국정원 자료 제공은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비밀문건의 대외유출에 대비, 관계 법령에서 국정원 보안절차를 거친 후 지원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관계절차에 의거 보안담당관의 안내에 따라 직접 자료열람 등을 하였다. 이러한 조사방법과 절차로 인해 조사착수 초기에는 일부 민간 위원·조사관들의 오해와 갈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조사자료 지원의 불가피성과 정의있는 자료지원 노력 등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과거극복에 대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조사활동이 무난히 진행 되어 질 수 있었다.

| 조사추진 경과 |

1차 7대 의혹사건은 대부분이 30~40년 전에 일어난 과거사건인데다 비밀을 생명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관련된 사건들이어서 여타 과거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진실규명작업은 국정원의 '문서관리규정'·'기록물관리규정' 등에 따른 절차에 의거 문서보존 실태를 점검하고, 조사과정과 내용이 비공개토록 되어 있어 조사중에는 관계문서의 대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안업무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조사관련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사건(7개)은 조사1팀·조사2팀에 배당하고, 사건별로 조사관 2~3명이 담당하되, 담당위원 2~3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방향과 조사지도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규명활동을 전개했다.

조사팀별 1차 조사대상사건 및 배당현황		
구 분	조 사 대 상 사 건	배 당 건 수
조사 1팀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 KAL 858機 폭파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3건
조사 2팀	1·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김형욱 前중앙정보부장 실종 사건	4건

사건조사는 사건별로 구성된 소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매주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정기회의에 수시 조사추진상황보고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사방향 및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또는 국정원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진실위원회」 조사가 의문사위원회 조사 등과 다른 점은 ‘국정원 자료의 직접 접근성’과 ‘면담대상자의 자발적 협조유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1차 조사대상 사건별 소위원회 현황		
조사대상사건	조 사 위 원	비 고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한홍구, 국정원위원1명	* 조사관은 민간·원측을 동수로 편성
1·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한홍구·이창호 국정원위원 1명	
동백림 사건	손호철·한홍구 국정원위원 1명	

조사대상사건	조사위원	비고
김대중 납치사건	곽한왕 · 문장식 · 국정원위원 1명	* 조서관은 민간 · 원측을 동수로 편성
김형욱 前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문장식 · 손호철 국정원위원 1명	
KAL 858機 폭파사건	이창호 · 박용일 · 곽한왕 · 국정원위원 1명	
남한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	박용일 · 곽한왕 국정원위원 1명	

* 조서관(민간조사관 포함)은 국정원 직원으로 관계법에 의거 비공개

1차 사건별 書面調査 현황 (단위 : 쪽)					
사건명	구분	國情院 자료	타 국가기관 자료 (법원 · 국가기록원 등)	기타자료	공개자료
	김형욱 前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10,905	9,521	·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 신문 매각 사건		3,163	11,335	448 (유족 제공)	22,447
1·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67,223	45,968 (테이프 25개)	·	6,490
동백림 사건		34,169	43,529	·	1,758
남한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		98,000	152,000	1,200	980
김대중 납치사건		12,833	2,651	·	4,638
KAL858기 폭파사건		130,000 (앨범 25권 · 테이프 73개)	11,400	2,500 (대한항공)	8,200 (방송물 9편)
계		356,293	276,404	4,148	53,213

1차 사건별 面談調査 현황 (단위:명)				
조사대상 사건	국	내	해	외
	회수/일수	면담인원	회수/일수	면담인원
김형욱 前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46/46	37	2/2	2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46/46	46	1/3	2
1·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48/48	48	.	.
동백림사건	32/32	32	14/23	15
남한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	30/30	8	.	.
김대중 납치사건	18/16	18		
KAL 858機 폭파사건	72/72	72	21/21	21
계	292/290	281	38/49	40

KAL 858機 폭파사건·동백림사건 등은 장기간 해외거주중인 참고인 조사와 미얀마 海上 동체수색 등 현지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외교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하였다. 2차 조사대상인 6대 분야별 사건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분석과 시간·인력의 한계가 있었으나, 분야별 小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사활동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을 엄선 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사활동을 무사히 마무리 하였다. 이점에서 국정원이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과거를 털고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 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었다.

우선 언론분야의 경우 외부집필진 선정을 통해 언론탄압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이론을 보고서에 접목하고자 하였고, 사법분야는 당시 中情·안기부의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를 반영하였으며, 노동분야의 경우 국정원 자료들에 나타난 당시 노동 운동 현장에서의 긴박한 분위기를 반영함으로써 생동감 있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학원·정치분야의 경우 2007년 1월에 2차 조사에 추가로 포함되어 시간·인력제약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 위원회 자체 능력으로는 활동시한내 보고서 작성에 한계가 있어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였다. 외부집필에 대한 국정원과 민간위원들의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위원회는 각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언론(3명)·노동(2명)·사법(1명)·학원(1명)·정치(4명)분야 총 11명을 외부집필진으로 선정하였다.

외부집필진 현황		
성 명	주 요 경 력	분 야
김주언	○ 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장(2005.11) ○ 한국기자협회 언론연구소장(2007.1)	언론
박용규	○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부교수(96.3~현재) ○ 한국 언론학회 편집위원(2005.5~현재)	"
김서중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98~현재)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2005.10~현재)	"
박승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석연구원(2004.12) ○ 전태일기념사업회 연구원(2005.1~현재)	노동
노중기	○ 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2006.3) ○ 한신대 교수(1997~현재)	"
고지훈	○ 한국역사연구회 회원(99.12~현재)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2004.6~현재)	학원
오승용	○ 전남대 대학원 정치학과(정치학박사) 졸업 ○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2006.9)	정치
방인혁	○ 서강대 한국정치, 정치사상 박사과정 수료(2005.9) ○ 서강대학교 대학원 학술단체협의회 회장(2006.2~현재)	"
엄관용	○ 서강대 정치사상 박사과정 수료(2003.3) ○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지원사업 연구원(2006.2)	"
강명세	○ 美 캘리포니아대 대학원 박사과정(정치학) 졸업(1995)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현재)	"
송호창	○ 사법연수원(#31) 수료(2002) ○ 現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2007)	사법

2차 사건별 소위원회 현황		
분야별 조사대상사건	주 관 위 원	비 고
노동분야	이창호, 곽한왕 국정원위원 1명	* 조사관은 민간·원측을 동수로 편성
언론분야	안병욱, 이창호 국정원위원 1명	
간첩죄 확대적용	문장식, 한홍구 국정원위원 1명	
사법분야	박용일, 한홍구	
정치분야	손호철 국정원위원 1명	
학원분야	안병욱 국정원위원 1명	

* 조사관(민간조사관 포함)은 국정원 직원으로 관계법에 의거 비공개

2차 사건별 조사현황					
					(단위 : 쪽, 명)
구분 분야	國情院 자료	여타 국가기관 자료 (軍·법원·국가기록원 등)	공개자료 (신문, 인터넷)	면 담 조 사	
				회수/일수	면담인원
정치 분야	1,687	3,070	5,100	5/5	5
학원 분야	7,137	302	350	4/3	4
언론 분야	6,823	565	·	18/18	22
노동 분야	4,272	1,985	2,000	25/25	25
사법 분야	2,105	5,058	25,000	13/13	13
간첩 분야	10,233	147,128	·	25/25	46
계	32,257	158,108	32,450	90/89	115

그리고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조사 진행단계에 따라 2회의 조사 중간발표 또는 4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했으나, 김대중 납치사건은 추가 제기된 의혹조사로 인해 결과발표가 늦어지게 되었다.

| 조사결과 발표과정 |

「1차 우선조사대상 7대사건」으로 선정된 모든 사건들은 한국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사건들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실체가 공개될 경우 한국 현대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사건과 관련된 유족·정치 지도자 등 생존해 있는 인사들의 신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국정원으로서의 조사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만 했다.

각 사건별로 실무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였다.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는 前職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십 번에 걸쳐 찾아가기도 했으며, 오랜 세월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자료를 찾기 위해 온 사무실을 찾아 헤매기도 했다. 김형욱 前중정부장 실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의 거리와 호텔들을 뒤지고 다녔으며, KAL858機 잔해 흔적을 찾기 위해 망망대해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애를 태우기도 했다.

매일같이 산처럼 쌓인 보고서들과 싸우기도 했고 밤샘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건 관련자들의 복잡한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져가는 ‘진술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과정중에는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다. 05.5.26 7대 우선조사대상 사건 중 첫 번째인 ‘김형욱 실종사건’의 중간발표를 앞두고 진실위 사무실에는 초조함과 긴장감이 가득했다. 국가기관 최초로 과거사를 규명하는 작업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기대감과 함께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05.5.26 「김형욱 실종사건」 중간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중간 조사결과 발표였고 살해 지시자 및 사체유기과정 등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김형욱 사건에 대한 정보기관의 개입 실체를 밝혔고, 이는 무엇보다 「진실위」 활동의 첫 번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김형욱 실종사건 조사중간보고 및 사건조사 설명회(2005.5.26)

이후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사건' (05.7.22)을 비롯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05.12.7) · '동백림 사건' (06.1.26) · 'KAL858기 폭파사건' (06.8.1) ·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06.10)까지 숨가쁜 발표가 이어졌고 그만큼 진실은 드러나고 있었다. 다만, '金大中 납치사건' 조사 제기된 의혹에 대한결과는 추가조사로 인해 종합보고서에 포함, 공개하기로 했다.



인혁당사건 조사결과 발표회(2005.12.7)



남한조선노동당 · KAL 858기 폭파사건 발표회(2006.8.1)

한편으로 위원회는 2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노동·언론·간첩죄 확대 적용·사법·정치·학원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2차 조사는 개별 사건위주 1차 조사와 달리 당시 시대적 상황과 법적인 문제 검토 등을 수반하는 포괄적 조사방식을 채택하였다. 2차 조사는 우선 광범위한 원내·외 자료수집으로 시작되었다. ‘카더라’ 류의 각종 ‘설’과 관련자료는 많았지만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수많은 자료들 속에 깊이 묻혀 있었다. 위원회는 고고학자가 선사시대 유적을 발굴하듯 작은 역사적 편린들을 모아 과거의 진실을 모자이크 해 나가는 자세로 정성을 다 하였다.

그러던 중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선입감이나 편견으로 인한 자료해석의 오류를 범할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우려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사범위가 방대하고 분야별 조사방식이 제각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력과 시간의 제약은 위원회의 고민을 더하게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시간·인력의 제약을 극복하고 전문분야에 정밀한 연구조사를 통해 보고서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정치·학원·언론·노동·사법 등 5개 분야(간첩분야 제외) 일부내용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에게 위탁해 조사보고서 집필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외부집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국정원으로서의 외부집필진들의 국정원 문서열람에 따른 보안문제를 주장하며 신중한 검토를 주장하는 반면, 민간측은 국정원측의 용단을

주장하며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번 기회에 권력기관으로 각인된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발전도대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과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유관부서의 협조와 조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하였다. 외부집필의 경우 국정원 직원 동행 하에 국정원내 제한된 장소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외부집필자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조사사항외부 유출을 유지하는 보안서약과 함께 200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드디어 진실위 조사활동과 보고서 작성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외부집필자들은 위원회 활동로드맵에 맞춰 보고서 초안(4월)·수정안(5월)·최종안(6월) 보고를 목표로 업무에 매진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보고서 완성이 다소 지연되었고, 2007.5.7 드디어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학원·언론·사법·노동분야 초안이 순차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하였으며, 6월 중간보고에 이어 7월 최종 보고서(초안)가 제출되었다. 이로써 위원회의 2차 분야별사건 조사결과보고서는 객관성과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

| 조사 전반에 대한 평가 |

국정원 「진실위」가 수립되고 조사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은 마치 ‘産菩의 진통’처럼 곳곳에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다. 먼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진실위」가 주로 진보인사들로 구성되었다며 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끊임없이 의심하였다. 또한 사건 진실을 규명할만한 새로운 증거도 없이 과거 의혹사건을 파헤치는 것은 국론분열과 사회통합 저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보수성향 언론들은 진실위의 활동을 ‘청와대 코드 맞추기’로 단정 짓고 非공식적으로 입수한 내용을 근거로 추측보도를 하는 등 국민 여론을 자극하며 과거의 진실을 진솔하게 밝히려는 국정원의 의지를 폄하하기도 하였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과거사를 바라보는 국정원과 민간위원들의 기본 시각이 달라 조사활동을 둘러싼 마찰과 갈등이 불가피했다. 국정원側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변함이 없고 단지 사건을 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 행위는 있었다”는 입장인 반면, 민간위원들은 “과거 중정·안기부 주도의 모든 사건들이 왜곡·조작되었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진실위 활동 관련 각계 반응	
정치권	○ 일부 정치권은 “정부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있음에도, 각 기관들이 별도의 진실규명위를 두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주장
해외언론	○ 06.7 日本 아사히신문은 “국정원이 DJ납치 사건을 조사중이며 8월중 국가기관이 개입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차원의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
국내언론	○ ‘어두운 과거 털기’, 기대 반 우려 반(세계일보 05.2.3) ○ 국정원 과거사 조사에 제기되는 의문들(문화일보 05.2.4) ○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자 증언 의존’ 어려움(SBS TV 05.2.3) ○ 국정원 과거사 조사 냉정하게(국민일보 사설 05.2.3) ○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 ‘산 넘어 산’ (내일신문 05.2.3)

따라서 「진실위」 구성원들이 기존에 견지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신념이나 또는 조직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 등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최대 난제였다.

일부 국정원 직원들의 부정적 시각도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보안을 평생의 신념으로 알고 살아온 대다수 국정원 요원들에게 과거 활동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특히 국가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대공 수사에 평생을 바쳐왔던 고참 수사관들이 ‘밤을 새워가며 노력했던 활동들이 조작행위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표출한 좌절감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으며 내부적 불만이 분출되는 등 긴장감은 높아만 갔다.

- 과거사를 스스로 들추는 것이 정보기관이 할 일 맞습니까? 보안이 생명인 정보기관이 모든 걸 다 밝힌다면 그 파장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국정원 전직 간부 000)
- 무엇을 위해 일해 왔는지조차 알 수 없다. 지나간 세월이 아까울 뿐이다. 과연 이것이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인가?(대공수사 요원 000)

7대 우선 조사대상 사건중 시간적으로 가까웠던 사건이 1987년에 일어난 KAL858機 폭파사건과 1992년의 남한조선노동당사건정도였으며 대다수의 사건은 20~3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사건(62.5) 등과 같이 40년이 넘는 사건도 있었다.

체계적인 자료 존안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시절에 발생한 사건들을 파헤치는 것도 난감한 일이었다. 부일장학회 사건 등의 실체를 알고 있는 증인들은 이미 대다수가 사망했고 관련 자료조차 변변히 남아있지 않았다. 증인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前 駐프랑스공사(김형욱 실종사건)나 김현희(KAL 858기 폭파사건) 등 주요 증인들의 증언 거부로 사건 실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진실위」의 조사과정은 험난했지만 결국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성과를 거두게 된 데에는 과거를 바라보는 다양한 주체들의 복합적 의지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대통령 및 참여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가 강력하였고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들의 용서 및 화해가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汎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

둘째, 발전의 명예이자 걸림돌이었던 의혹사건을 규명해 떼떽하게 나서자는 국정원 지휘부와 직원들의 의지가 확고하였다.

셋째,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 “국민은 정보기관을 신뢰하고 정보기관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계정립을 이루겠다는 국정원과 「진실위」의 진실규명 의지와 사명감이 투철하였다.

끝으로, 진실화해위원회와 국방부·경찰청 과거사특 등 4개 기관이 수시 실무 회의를 통해 조사방향·절차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는 등 공동 대응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국정원 직원 개개인의 시각 변화였다. 초기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점차 「진실위」 조사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려했던 것처럼 과거 활동이 왜곡되지 않았고 이를 수사했던 수사관의 명예도 훼손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점차 조사의 진실성을 인정하며 격려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국정원 요원들은 점차 스스로 과거를 향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국정원의 과거사 규명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자부심과 명예를 다시한번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ruth shall make you free)”는 성경의 한 구절이자 지구상 최고 정보기관으로 불리는 美 CIA의 부훈이기도하다. 이제 국정원과 그 직원들은 ‘진실만이 정보기관의 영속성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안다. 또한 ‘과거를 성찰하고 참회한 사람만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주요일지

구 분	내 용
04.11.2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진실위원회’ 1차 정기회의를 개최, 위촉장 수여 및 오충일 위원장 등 임원진 선출
04.12.16~17	오크밸리콘도(강원도 원주 소재)에서 진실위 위원(14명) 및 직원(28명), 이석태 民辯회장 등 외부인사 6명 등 총 42명 참석하여 진실위 역할 등 향후 운영방향 토의
04.12.27	민간조사관(9명) 및 지원팀원(2명)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04.12.27~31	국가정보대학원에서 ‘진실위 전 직원(26명) 합동교육’을 실시, 기록물관리법령, 보안 실무 등 직무 교육
05.1.13	대통령 국정원 방문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 활동”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 활동계획 등 보고
05.1.18	국정원 전산망에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 사이트’를 개설하여 쏠직원들의 공감 및 동참 분위기 제고
05.1.28~29	강화도 수련원에서 오충일 위원장·기조실장 및 진실위 직원(26명) 참석리 2차 직원 워크숍 개최
05.2.3	우선 조사대상사건 7건 선정 및 1차 위원회 합동기자회견 등 언론브리핑 실시하여, 언론 등 대상 대국민설명회 개최
05.2.23~26	지리산에서 오충일 위원장, 기조실장, 문장식·손호철·이창호 위원 및 직원(26명) 참석하여 3차 워크숍 및 등반대회 개최
05.2.17	13차 정기회의시 우선 조사대상사건(7건)에 대한 담당 위원 및 조사관 배치 및 공개자료·국정원 보유자료 등에 대한 조사 착수
05.2.28	14차 정기회의시 제보된 사건 및 위원이 제출한 예비조사 대상사건(91건)에 대한 예비조사 완료
05.3.24	정보대학원에서 오충일 위원장, 한홍구 위원 및 진실위 직원 등 35명 참석하여 ‘직무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 ‘국가보안법 변천과정’, ‘간첩죄의 개념’ 등 논의

구 분	내 용
05.4.8	前 중정 부산지부장 박00을 접촉, 당시 김지태 수사과정 및 재산헌납과정 면담실시
05.4.11	강만길 前 고려대 교수 초빙, '진실위 출범의 역사적 의미 및 향후 진실위의 방향' 제하 강연회 개최
05.4.27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유가족 송혜영 등 4명을 대상, 당시 부일장학회 설립 및 강제헌납과정 면담 실시
05.5.10	김지태 명의 기부승낙서 등 위변조 의혹 문건 7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변조사실여부 확인
05.5.19	국회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관련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에 기조실장 참석, 정부방침 협의 및 院의견 개진
05.6.14~15	한홍구 위원 등 2명이 미국을 방문하여 중정 전직직원 방00(당시 감찰실장)을 접촉하여 경향신문 관련사항 면담 실시
05.6.28	정수장학회 이사장 최필립을 대상으로, 김지태 재산 헌납과정 등 관련사항 면담실시
05.6.28	국정원장 주재, 쏘위윈대상 만찬행사에서 진실위의 과거사규명 노력 평가 및 활동경과 재점검
05.7.18	위원장, 국정원장 단독 만찬회동, '국정원 진실위' 발전방안 등 논의
05.8.2	KAL 사건관련 당시 주 바레인 대리대사 면담, 김현희·김승일 접촉 경위 등 조사
05.8.10	'1·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조사 관련 위원 및 조사관 20여명 참석리 워크숍을 개최, 조사방안 등 논의
05.8.19	오충일 위원장, 국회의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국정원 차원의 과거사 조사 활동 경과 및 국정원 현안관련 국회차원 협조 요청
05.8.22	위원장 등 전체위원들과 국정원장 만찬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진실위' 발전방안 등 논의
05.9.2	검거간첩 김동식 대상 면담실시 90.5 초순 재북 당시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인혁당 관련 득문사실 확인

구 분	내 용
05.9.5~8	위원장은 제주도 방문을 통해 도지사 및 지역 기독교계·사회단체 인사 대상으로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 노력 설명
05.9.6	前 불꽃회 관련자 김정강 대상 면담 실시, 「인혁당」 사건 실체 및 도예종 접촉 상황 등 확인
05.9.10~12	중국 베이징 해외출장, 동백림 관련 핵심 인물인 故 윤이상의 처 이수자를 접촉, 당시 상황 등 면담 실시
05.9.12	진실위 주관, 군·경찰 과거사위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실위원회 추진경과 설명 및 3개기관 협조체제 공동 모색
05.9.14	前 인혁당 서울시당 학생지도부 조직책 김경희(지식산업사 대표) 대상 면담 실시, 「인혁당」 사건 고문여부·조직활동 관련내용 득문
05.9.15	행자부에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 추진경과 등 진실위 관련자료 지원, 국정원 혁신노력 대외홍보
05.9.21	인혁당 사건 당시 중정 ○○과장 및 ○국장 등으로 수사지휘했던 이○○ 접촉 당시 수사상황 확인
05.9.26	국정원장 ‘진실위’ 사무실 방문, 조사활동관련 전직원 격려 등 역사인식 제고
05.9.28~30	대구지역을 출장, 74년 민청학련-인혁당 재건위 사건 담당 당시 中情 파견 경찰 이○○ 등 5명 대상 면담 실시
05.9.30	대통령께 ‘국정원의 과거사 진실규명 실태 및 향후 계획’ 현안보고
05.9.30~10.10	독일·프랑스·스위스 등 3개 지역을 방문하여 동백림 관련 핵심인물 故 이용로의 처 및 독일인 빌케(동독전문가) 등을 접촉, 총 10명 면담 실시
05.10.10	쑤위원 및 조사관 대상, ‘간첩장비 설명회’ 개최, 국정원과 民間간 조사 사건 인식에 대한 간극 해소
05.10.12	前 노사정위원장 김금수 접촉, 60년대 혁신계 활동상황 및 「인혁당」 사건 실체, 강령·규약, 고문여부, 조직활동 등에 대해 면담실시
05.10.13	前 대법관 한환진 대상 당시 「인혁당」 재판상황 서면질의 결과 접수

구 분	내 용
05.10.20	위원장, 청와대에서 주관한 '3개 과거사 위원장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진실위과거사 규명 상황 및 국정원 혁신노력 홍보
05.10.26	위원장·민간위원 등 국방부 과거사위가 주관한 '3개 국가기관 과거위 간담회'에 참석, 상호 협조 방안 등 논의
05.10.29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이철 접촉, 「민청학련」 사건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면담실시
05.11.10	LA 파견관을 통해 74년 인혁당재건위 사건 당시 조사국장 모○○ 면담 실시, 당시 수사진행상황 확인
05.11.11	“민청학련-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중정 차장보 조○○ 접촉, 당시 합수부 구성현황 및 수사상황 등에 대해 상황 확인
05.11.11	KAL 사건관련 홍순영사건 당시 정부조사단장 면담, 정부조사단의 태국 현지 활동 실태조사
05.11.13	KAL사건관련 류시야 사건 당시 주UAE 대리대사 면담, 김현희·김승일 추적경위 등 조사
05.11.25	주일 파견관 김○○ 면담(06.1.20 면담 실시 등 2회)
05.12.1~3	위원·조사관 및 국정원 T/F 등이 참석한 '합동워크숍'을 개최, '인혁당 사건' 조사보고서 및 언론발표문 최종안 심의
05.12.7	기자회견을 개최,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제하 국정원 입장을 발표한 후 조사결과 발표
05.12.13	이후락 前 中情部長 주거지 방문, 건강악화 사실 확인
05.12.15	김대중 前 대통령 면담을 통해 납치상황 확인
05.12.15	김대중 前대통령을 접견하고 'DJ 납치사건' 관련 조사 및 국정원의 과거사 진실규명 활동경과 사항 설명
05.12.20	국정원장, 진실위 지원팀장, 조사관 2명을 오찬 초치하여 진실위 활동 경과 하문과 그간의 노고를 치하
05.12.22	위원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출범행사에 참석하여 국정원의 과거사 규명활동 및 혁신활동 설명

구 분	내 용
06.5.7~16	이철희 당시 차장보 면담(2회 실시)
06.1.9~10	2006년 진실위 위원 및 전직원 참석리 “위원회 1년 평가와 전망 및 향후 발전방향” 제하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조실장의 “위원회 출범 1년 평가와 극복과제” 발제
06.1.14	「DJ사건」 관련자 유○○ 면담
06.1.19	「DJ사건」 관련자 한○○ 면담
06.1.20	「DJ사건」 관련 주일 파견관 김○○ 면담(05.11.25에 이어 2번째 면담 실시)
06.1.23	위원 및 전체 직원 대상, “고문 피해자 심리”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문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변화과정 등 직무 교육
06.1.26	기자회견을 개최, “동백림사건”의 실체 및 의혹사항을 규명한 조사결과 對국민 발표
06.2.1~2.3	「DJ사건」 관련 용금호 선원 4명 면담 실시(여수 및 부산 현지 출장)
06.2.14	「DJ사건」 관련 윤○○ 단장 면담(3.7, 3.23 등 총 3회 실시)
06.2.16~19	경남 산청 지리산 일원에서 진실위 제5차 워크숍을 개최, 2차 조사대상 사건 선정방안 및 향후 활동방향 논의
06.2.23	KAL사건관련 최광수 당시 외무부장관 면담, 정부조사단 구성 경위·사건최초 인지 및 대통령 보고경위 등 조사
06.2.27~28	웅진군 덕적도에서 1차 사건 마무리를 앞두고 안보현장 견학 및 워크숍을 겸한 정기회의를 개최, 향후 계획 토의
06.3.6	위원장 및 민간위원은 국회 신기남 정보위원장 주재 만찬에 참석, 국정원의 혁신노력과 과거사 규명 의지 등 설명
06.4.3~8	KAL사건 관련 일본·태국·미얀마 등 3개국 출장, 사건의 범인인 김현희·김승일 신원 및 KAL기 잔해수색 관련 교포 및 외국인 21명 면담
06.4.27	위원장 및 지원팀장 4개 과거사기관 위원장 정례회의에 참석, 과거사기관간 협력강화방안 등 논의
06.5.7~16	KAL사건 관련 「미얀마」 출장, 안다만 해상의 Heinze Bok Island 따웅팔라(Taung Pa La)섬 인근 海底를 수색 및 KAL기 잔해 탐사

구 분	내 용																				
06.5.22	<p>2차 조사대상 분야별 주제발표 및 토론을 위한 노동·사법·간첩·언론 등 4개 분야 외부인사 특강</p> <table border="1" data-bbox="425 459 1239 836"> <thead> <tr> <th data-bbox="425 459 539 518">일 시</th> <th data-bbox="539 459 639 518">발제자</th> <th data-bbox="639 459 915 518">주 제</th> <th data-bbox="915 459 1239 518">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25 518 539 578">5.22(월)</td> <td data-bbox="539 518 639 578">이원보</td> <td data-bbox="639 518 915 578">국가와 노동통제</td> <td data-bbox="915 518 1239 57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td> </tr> <tr> <td data-bbox="425 578 539 677">5.23(화)</td> <td data-bbox="539 578 639 677">박원순</td> <td data-bbox="639 578 915 677">권위주의 정권시기의 사법권 침해</td> <td data-bbox="915 578 1239 677">○ 변호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장</td> </tr> <tr> <td data-bbox="425 677 539 751">5.29(월)</td> <td data-bbox="539 677 639 751">조용환</td> <td data-bbox="639 677 915 751">조작간첩 의혹사건, 무엇이 문제인가?</td> <td data-bbox="915 677 1239 751">○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td> </tr> <tr> <td data-bbox="425 751 539 836">5.29(월)</td> <td data-bbox="539 751 639 836">장행훈</td> <td data-bbox="639 751 915 836">한국의 언론과 국가권력</td> <td data-bbox="915 751 1239 836">○ 신문발전위원장 ○ 前 동아일보 편집국장</td> </tr> </tbody> </table>	일 시	발제자	주 제	비 고	5.22(월)	이원보	국가와 노동통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5.23(화)	박원순	권위주의 정권시기의 사법권 침해	○ 변호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장	5.29(월)	조용환	조작간첩 의혹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5.29(월)	장행훈	한국의 언론과 국가권력	○ 신문발전위원장 ○ 前 동아일보 편집국장
일 시	발제자	주 제	비 고																		
5.22(월)	이원보	국가와 노동통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5.23(화)	박원순	권위주의 정권시기의 사법권 침해	○ 변호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장																		
5.29(월)	조용환	조작간첩 의혹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5.29(월)	장행훈	한국의 언론과 국가권력	○ 신문발전위원장 ○ 前 동아일보 편집국장																		
06.5.25	「진실화해위」 주관, 4개 기관 과거사위원장 및 관계기관장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개정관련 상호 협조방안 논의																				
06.6.8~9	진실화해위 등 4개 기관 과거사위 「합동워크숍」 개최를 통해 기관별 진실규명활동 진행상황 및 공동관심사 등 논의																				
06.6.29	4개 기관 과거사위원장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간 중복 조사사건 조정문제 등 공동관심사 논의																				
06.7.12	전체직원 참석리 안보현장 견학(평화의 댐)을 실시하고, 80년대 남북간 안보경쟁실태 등 체험																				
06.7.19	서울시 구로구 소재 성공회대 세미나실에서 사회학과 교수 이종구 등 노동관련 전문가 7명 참석하 '노동의 시대적 상황 및 향후 방향' 등 간담회 개최																				
06.7.27	4개 기관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간 공동관심사 및 업무협조 강화방안 논의																				
06.8.1	「南韓 조선노동당 사건(최종)」 및 「KAL858기 폭파사건(중간)」 조사 결과 발표																				
06.8.22	오충일 위원장, 총리 주재 과거사 관련 위원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 진실위 애로사항 및 향후 진행방향 등에 대해 논의																				

구 분	내 용
06.8.25	민족일보, 동아투위 사건 관련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측과 조사사건 중복문제 협의
06.8.31	4개 기관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국회 자료요청 등 관련 공동 대처 및 업무협조 강화방안 논의
06.9.21	4개기관 과거사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 기관간 공동관심사 및 업무협조 강화방안 논의
06.10.10~21	상반기 미얀마 출장(5월)시 KAL기 잔해로 추정되는 海底 인공조형물 발견관련, 조사관·해양전문가 등 12명 참석리 同지역 정밀 再수색을 실시
06.10.11	「다리」지 필화사건 관련 김상현(前 민주당 의원) 면담
06.10.16	이돈명 변호사를 면담, 변호사시절 정보기관의 사법분야 개입 체험 및 유신시대 재판분위기 및 변호사 휴업 이유 등을 청취
06.10.17	동아일보 기자 강제해직 및 동아일보 광고 탄압사건 관련 정동익(동아투위 위원장) 면담
06.10.26	4개 기관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간 공동관심사 및 업무협조 강화방안 논의
06.11.1	「진실위원회」는 06.11.1부로 위원회 활동기한(2년)이 만료되어 위원회 제88차 정기회의(10.23)에서 기한연장을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 활동기한 1년 연장
06.11.2	목요상 변호사를 면담, ‘다리’ 지 사건 등 재판관련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 및 중앙정보부의 재판관여 실태 청취
06.11.9	「신동아」 필화사건 관련 손세일(前 신동아 부장) 면담
06.11.20	김만복 국정원장 후보 국회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인으로 오충일 위원장 국회 정보위 참석
06.11.24	서울시 혜화동 소재 한국방송통신대 세미나실에서 한국노동사회 연구 소장 이원보, 참여노동복지터장 전순옥, 내일신문사 대표 장명국 및 한홍구, 이창호 위원 등 8명 참석 간담회 개최
06.11.27	국정원장은 11.27 국정원장 취임과 위원회 활동연장을 계기로 진실위 전체 위원들을 만찬, 노고치하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입장과 지속적인 국정원 발전을 위해 협조를 당부

구 분	내 용
06.11.30	국정원장, 「진실규명관계기관 위원장회의」를 개최하고 기관간 자료 협조 활성화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
06.12.11~12	“진실위 활동 2년 평가 및 향후 위원회 발전 방향”을 주제로 위원장, 기조실장 및원내·외 위원 및 직원 전원 참석리 워크숍 개최
06.12.28	4개기관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간 공동관심사 및 업무 협조 강화방안 논의
07.1.5	「신동아」 제작 방해사건 관련 장신훈(前 동아일보 출판국장) 면담
07.1.8	진실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진실위 지원팀을 사무총괄과로 격상하는 등 조직 재정비
07.1.17~23	하반기 종합보고서에 포함될 발전방안 도출 및 진실위 활동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국정원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
07.1.22	진실위는 200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성공적인 활동 마무리와 최종 종합보고서 작성 등에 참고하기 위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
07.2.6	이일규 전 대법원장을 면담, 송씨일가 재판 상황 및 대법관 시절 안기부 미행 등 감시 경험 및 재판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청취
07.2.7~2.8	진실위 워크숍(부산)을 통해 1차 7대 의혹 사건 마무리 방안과 2차사건 조사 관련 분야별 조사방향 및 향후 위원회 활동 로드맵 효율적 추진 방안 논의
07.2.14	진실위 안병욱 간사는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정치중립과 21세기 국정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
07.2.20	윤○○과 김○○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문 제출하고 화해를 희망
07.3.7	대통령께서는 과거사위원장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시고 진실규명 활동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혁신사업인 만큼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독려하시는 한편 그동안 국정원의 개혁성과를 치하(오충일 위원장, 안병욱 간사 참석)
07.3.15	감사실은 진실위 보안점검을 실시, 자료관리 및 전산보안 분야를 점검하고 총평을 통해 대선 등 정치일정 관련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07.3.21	청와대는 민정수석 주재 과거사위 실무협의회를 개최,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3.7)시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방안 등 논의

구 분	내 용
07.4.1	김종필 前 총리에게 서면 질의(4월말 답변서 수신)
07.4.26	오충일 위원장은 4개 기관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 금년 활동 마무리 관련 향후 성과확산 방안 등 도출을 위해 6월중 4개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결정
07.5.9	안병욱 간사 등은 국정원장님 면담을 통해 위원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국정원 자료 신속 지원, 직원 인사상 인센티브를 통한 분위기 제고” 등 건의
07.5.11	진실위는 전체 위원·직원 참석리 워크숍(5.11~13, 백령도)을 갖고 향후 종합보고서 작성관련 총론분야 집필위원 등 선정
07.5.22	2차사건 ‘정치분야’ 조사관련 김상현·유성환 전의원 면담, 중정·안기부의 정치개입 실태 조사
07.5.28	2차 사건 ‘정치분야’ 조사 관련 신상우 전의원 면담, 제5공화국의 민한당·국민당 등 관제야당 창당에 대해 조사
07.5.29~30	전남대·조선대·광주대 등 과거 학생과 근무 교직원 4명 대상 면담 실시
07.5.31	오충일 위원장은 4개 기관 과거사위원회 회의를 참석, 진실규명활동이 중요한 참여정부 혁신사업인 만큼 국민은 물론 기관내에서도 올바른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상호 노력키로 결정
07.5.31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과거사 활동 성공 마무리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보고
07.6.8~9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장상환을 접촉하여 크리스찬아카데미 활동상황 및 수사과정 등 면담실시
07.6.20	전남대·조선대·광주대 등 과거 학생과 근무 교직원 4명 대상 면담 실시
07.6.21	진화위 및 국정원·국방부·경찰청 등 4개 과거사위원회 합동워크숍(6.21~22)을 개최, 상호협조 강화 및 향후 조사성과 계승문제 등 공동 관심사 논의
07.7.11	吳忠一 위원장은 외부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으로 7.8 미래창조연대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게됨에 따라 위원장직 자진 사퇴
07.7.27	진실위 사무총괄과장은 청와대 주관 4개 기관 실무회의에 참석, 개별 과거사기관 활동 종료시 기관 보유자료 공유문제 논의후 긴밀히 협조키로 합의
07.8.30	진실위는 국정원에서 4개 기관 과거사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개별 기관 과거사활동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4.10.18 규정 제1206호
개정 2004.10.30 규정 제1207호
개정 2006. 5.29 규정 제1236호
개정 2007. 1. 8 규정 제124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하 “원”이라 한다)과 관련된 과거 의혹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원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얻고 원이 다시는 그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의혹사건”이라 함은 과거 위법한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원관련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아니한 사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을 말한다.

제 3 조(위원회의 설치)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혹사건의 선정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괄과 및 조사팀의 지휘와 업무분장
3.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4.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조사결과의 공표
5. 기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의 각 부서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각 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위원회가 정부기관 기타 단체나 개인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에게 이를 요구하고 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위원회가 의혹사건을 선정함에 있어 관련부서의 장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5 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원 직원인 위원 5인과 민간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10인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2인을 두되, 민간위원인 간사위원 1인과 원직원인 간사위원 1인으로 한다. 민간위원인 간사위원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원직원인 간사위원은 차장 또는 기조실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원 직원인 위원은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부서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투철한 인권의식을 지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학계, 종교계, 법조계, 인권·시민단체의 지도적 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제 6 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정당의 당원
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 7 조(민간위원의 임기 등)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8 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혹사건의 선정
2. 제14조 단서 규정에 의한 조사활동의 공개
3.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원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의 결정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활동의 지원 또는 조사결과의 제공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개정의 의결

제 9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간간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혹사건의 조사·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의혹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의혹사건과 관련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의혹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의혹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의혹사건에 관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그 의혹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총괄과 및 조사팀의 설치) ①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총괄과 및 조사1팀, 조사2팀을 둔다.

②사무총괄과는 원 직원과 원외 인사로 구성하되, 사무총괄과장은 원 직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원 직원 6명, 원외 인사 2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다만, 사무총괄과 직원중 원외 인사 2인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계약직 직원으로 임용한다.

③사무총괄과는 위원회의 지휘와 감독 아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행정(인사, 조직, 예산)·각종 위원회 회무·홍보업무 등 기획·총괄 및 종합보고서를 작성·지원

2. 위원회 조사활동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지원, 원내 업무협의 등 사무처리
3. 「진실·화해위원회」·국가기관 과거사위원회 및 여타 국가기관 등과의 협의·조정 등 대외협력 업무
4. 원장 지시사항 및 위원회 의결사항 수행

④조사1팀 및 조사2팀에 조사팀장 1인을 포함한 조사관 10인을 각각 두되, 각 조사팀별로 5인은 원외 인사중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계약직직원으로 임용하고 5인은 원 직원중에서 선발하며, 조사팀장은 원외 인사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⑤각 조사팀은 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아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관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2. 소관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3. 기타 소관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

⑥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조사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증인(소송법상의 증인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널리 의혹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참고인 등 사건관계자 면담조사
2. 원 보유 관련자료의 열람·제출요구

②위원회는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의혹사건이 발생한 장소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계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열람·제출요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한다. 이 경우 실지조사의 대상이 원 시설인 때에는 보안사항에 관하여 미리 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를 보안사항임을 이유로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5.29>

제14조(조사활동의 비공개 원칙) 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아닌 사항으로서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할 대상 및 내용을 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의혹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징계,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의혹사건의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결과와 보고 및 공표) ①위원회는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경우 조사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성격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대외 정보공개
2. 기자회견
3. 보도자료 배포
4. 당사자에 의한 브리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혹사건의 진상
2. 의혹사건 관련 피해자의 피해상황
3. 의혹사건의 발생원인
4. 의혹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원인
5. 의혹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6. 유사사건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
7. 의혹사건 관련 피해자의 명예회복 방안
8. 기타 위원회에서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17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의문사진상 규명에관한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과거사조사기구 또는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활동을 지원하거나 조사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등의 누설금지 등) ①위원회의 위원, 조사관 및 행정 요원은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 및 직무 관련사항을 이 규정의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민간위원은 해촉하고, 조사관 및 행정요원은 면직할 수 있다.

③계약직직원으로 임용된 조사관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한다.

제19조(보안조치) ①원장은 민간위원의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Ⅱ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원내 자료의 원외 무단반출 및 조사결과 임의공개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들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①민간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직직원으로 임용된 조사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수·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활동기한)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이를 매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규정의 개정)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권력, 역사 앞에서 바로서다

7대 의혹사건 · 6개 분야 조사결과

▶ 7대 의혹사건(요약)

-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사건 진실규명
- 동백림 사건 진실규명
-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규명
- 김형욱 실종사건 진실규명
- KAL 858기 폭파사건 진실규명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진실규명

▶ 6개 분야(요약)

- 정치 분야
- 사법 분야
- 언론 분야
- 노동 분야
- 학원 분야
- 간첩 분야

▶ 7대 의혹사건(요약)

-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사건 진실규명
- 동백림 사건 진실규명
-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규명
- 김형욱 실종사건 진실규명
- KAL 858기 폭파사건 진실규명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진실규명

1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구 분	내 용
부일장학회 사건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지태 사장 구속 수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中情에서 실행했는데 권력 핵심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 ● 석방 과정도 고원증 前법무부장관 건의를 받아들인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직접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 재산 헌납과 관련해서는, 최고회의·中情·국방부 등 정권차원의 개입을 통해 강제되었던 것으로 판단 ● 무상 양도 근거로 삼고 있는 ‘62.4 부일장학회 이사회결의로 부동산을 기부받았다’는 내용도 조작된 것으로 판단 ● 군사정부가 부산일보 등 언론사를 강제로 헌납 받은 목적은 5.16정당성 홍보 및 효율적 언론통제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
경향신문 사건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데타 이후 언론사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中情 주요부서들이 동원되어 부당한 압력 행사 ● 특히, 이준구 사장이 관련된 간첩사건은 경향신문의 친북성향을 부각시키고 경향신문 경영권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재판부는 이준구와 간첩사건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 이로 미루어 경향신문 매각작업에 中情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여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정황을 명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 절대 부족 ● 더욱이, 관련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을 달리함에 따라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납 또는 강제 매각된 언론사들이 朴 前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5.16 장학회 소유가 된 사실관계 규명 ● 中情은 정권의 언론 장악과 사유 재산권 침해에 조력한 잘못을 확인하고 반성

구 분	내 용
인민혁명당 사건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 인혁당은 黨수준에 이르지 못한 서클 형태의 모임에 불과 ● 강령·규약도 구성원간에 논의된 적은 있으나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아 국가변란을 기도한 反국가단체로 실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인혁당이 북한지령에 의해 조직·활동했다’는 근거로 中情이 내세우는 남파간첩 김영춘과 월북했다가 67년 남파된 김배영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춘으로 발표한 김상한은 남한의 다른 對北정보 기관으로부터 특수공작임무를 받고 북파된 것이며 - 김배영 越北도 인혁당 사건이 발표된 3개월 후에 발생한 것으로 발표 당시 中情은 김배영 소재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 조작 ● 고문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일부 과장된 정황은 있으나 고문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움
민청학련 사건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청학련은 실재한 조직이라기보다는 74.4 전국 동시다발적 유신반대 시위를 하기 위한 준비모임에 불과하며 유인물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명칭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청학련은 정부발표처럼 노농정권 수립을 통한 사회주의 정부건설이 아니라 유신정권 타도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을 의도 ● 또한,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 배후로서 조직적·구체적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조총련을 민청학련 배후로 지목한 것도 잘못 ●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한 가혹행위가 이뤄졌으며, 가족·변호인 등 일체의 접견 금지조치를 통해 피고인 권리행사를 제약

구 분	내 용
<p>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혁당 재건위 조직결성을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 민중봉기를 통해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는 당시 발표내용의 근거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혁신계 인사들이 국내외 정세토론과 학생운동 대응책 마련을 위해 서클 형태의 모임을 진행했음은 확인 ● 中情이 처음부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임기응변적 수사로 당시 군사정권의 요구에 편승하여 사건을 확대·왜곡 ●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 차단, 피고인들의 증인신청 기각 및 발언저지 등 재판 공정성을 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판조서도 심문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군법회의법을 근거로 피의자 접견금지명령을 내려 가족·변호인 접견권 침해 ● 확정판결 18시간만에 사형집행이 이뤄진 것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집행명령을 내리라는 대통령 지시가 이미 전달되어 있었다는 일부의 증언 - 최후진술까지 조작하여 사형수들의 용공성을 부각하는 등 언론을 여론 조작에 동원
<p>한계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수사결과에 대해 당시 수사관들과 피해자·유가족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면담은 물론 결과 판단에도 어려움 가중 ● 특히 과거 中情이 대형 공안사건으로 종결지은 사건을 재조사하여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관들은 물론 현직 수사관들의 반발이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 소요
<p>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실체가 과장·왜곡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일부 가혹행위 확인 ● 억울한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구제 계기 마련 ● 최대 공안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한 국정원의 반성과 새 출발 노력

3

동백림 사건 진실규명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등 유럽거주 한국인들은 북한공작단의 유인에 의해 동백림 및 북한 방문, 금품수수·대북접촉 주선 등의 실정법을 위반 했고, 3~4명은 국내 귀국후 북한에 안착신호를 발송 ● 당시 남북대치상황 속에, 中情이 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사건 조사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30여명의 용의자들을 외국에서 직접 연행한 것은 해당국 주권과 국제법을 무시한 행위 ● 中情이 6.8 부정선거 규탄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백림 사건을 기획·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들에게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수사과정에서 위협과 신체적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사건의 외연과 범죄 사실을 확대 과장 - 또한 이례적으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10일동안 7회에 걸쳐 수사 내용을 대대적으로 발표, 부정선거 비판 분위기를 반전하는데 활용한 측면이 있고 -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북한지령에 의한 국가전복행위로 몰고 가기 위해 60년대 대표적 학생조직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무리하게 동백림공작단 일원으로 확대 왜곡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 등 사건관련자 및 中情직원·방첩대·경찰수사관 등 일부 관련자의 면담 거부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 국정원 보유자료(34,000여매) 확보와 해외 현지출장 면담조사 등을 통해 조사활동 마무리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들의 북한 방문 및 복측 요청사항 수행 등 실정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건 과장·가혹행위 및 정치적 이용 사실 확인 ● 과거 간첩 사건에 대한 공과를 밝혀 수사관행 개선 등 새 출발 노력과 함께 일부 국민 의혹을 해소

4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규명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중 납치사건의 4대핵심의혹 중 ① 이후락 中情部長의 지시로 中情에 의해 실행 ② 政府가 조직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사실은 확인 ● ③ 박정희 前대통령 事前지시 ④ 김대중 前대통령 殺害계획 여부와 관련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보하지 못함
애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인 김대중 前대통령도 재임시 굳이 진실규명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는 가운데,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정치적 의도 등에 대한 억측·오해 제기 ● 노벨상 수상 등 저명한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으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다 일본 등 관련국가와의 외교문제 비화 우려로 인하여 조사 참여자들의 중압감 가중 ● 사건이 발생한 지 40여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수많은 핵심 의혹들에 대한 자료발굴·검증 등 증거확보가 곤란하여,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부담감 지속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김 前대통령이 생존하고 있는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과 국민정서·외교적 파장 등으로 인해 어느 정부도 선불리 다루지 못하였으나,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이를 과감히 재조사 ● 자료·문서확인 등 객관적 조사를 통해 실체증명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각기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향후 무분별한 의혹·說등 불필요한 오해 확산 차단 <p>* 국정원은 中情의 김대중 납치사건 실행에 대한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각오로 완전한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를 진행</p>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형욱은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의 지시를 받은 중정 주불 거점 이상열 공사와 중정직원 연수생, 그리고 이들에게 고용된 제3국인들에 의해 파리 현지에서 살해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조사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점과 단지 사건 관계직원 1인의 면담 결과에 의존하였다는 점 그리고 배후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는 점 등 규명작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이에 진실위는 1차 조사결과를 보강하고 필요한 사건 배후규명을 위한 두 가지의 추가조사를 진행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대통령이 김재규 부장에게 김형욱 살해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 범행현장 확인을 통한 신현진 진술의 객관성 입증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대통령의 김형욱 살해 직접지시 여부와 신현진 진술에 대한 검증 문제와 사체확인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객관적 증거자료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였음 ● 사건의 전모를 고백한 신현진 진술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핵심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상열 공사 및 여타 전직직원들의 증언과 협조를 얻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잠적생활을 해오던 이상열 공사 사망(06.4)하고, 이를 계기로 추가적인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음 ● 프랑스 현지를 실사하여 김형욱 살해현장을 확인코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박대통령의 지시여부 규명은 사안의 성격상 물적증거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 또한 모두 사망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문제임 ● 이에 진실위는 현장확인을 유보한 채로 김형욱 실종사건 조사활동을 종결함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정이 직접 자행한 범행임을 명백히 밝히고 잘못의 반성과 사과 ● 그동안 온갖 의혹을 야기해오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종식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기부요원이 폭발물을 설치하고 중간 기착지에 내렸다는 북한 주장의 거짓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일부언론에 보도된 안기부 사전인지說 및 일본 아사히 TV의 ‘북한 테러방치說’ 등은 근거 없는 추측보도로 판단 ● KAL 폭파사건은 북한 대남공작조직에서 주도하고, 그 조직의 공작원인 김승일·김현희에 의해 자행된 테러사건으로 확인되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기부가 김현희 진술에만 의존해 검증도 없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 결과를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각종 의혹을 유발 ● 김현희·김승일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음독했고, 자신이 폭파했다는 김현희 진술 등 여러가지 사실로 미뤄 이들을 폭파범으로 단정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실체의 분명한 규명을 위해 비행기 동체와 블랙박스 등의 물증 확보가 필요 ● 수사결과 발표시 폭발물(C4 350g, PLX 700cc)은 김현희의 진술을 토대로 안기부가 추정 발표한 것으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L 폭발사고는 폭탄 테러에 의한 동체폭발인 것으로 판단 ● 정부가 김현희 압송을 위해 바레인 정부에 수천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북한 주장은 근거가 없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選을 앞두고 김현희 국내압송을 위해 안기부 등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무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 ●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사건 관련국들의 조사결과 등이 접수된 점 등으로 보아, 안기부가 최종 확인없이 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안기부가 두 차례나 김현희가 아닌 소녀를 김현희라면서 화동 사진을 공개한 점은 김현희 신원 의혹을 증폭시키는 빌미로 작용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 이후 김현희 신원과 폭탄의 실재여부 등 적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검증절차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이 유가족들의 분노를 유발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현희 진술외에는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만한 증거물이 부족한데다,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능 ● 김현희가 면담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김현희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의혹에 대한 조사활동에 어려움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기부가 심층적 검증활동 없이 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면서 생긴 오류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유발한 결정적 원인임을 확인 ● 김현희 진술거부로 미흡한 점이 있으나, 20여년 동안 제기되어 왔던 안기부의 기획조작·사전인지설 등 국민의혹 해소에 기여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선화 · 신순녀 · 이화선, 그리고 황인오와 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할머니는 모두 이선실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선실은 월북한 제주출신 이화선으로 73년 일본으로 침투해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90년경 황인오와 손병선을 포섭하고 91년 황인오와 서해안을 통해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판단 ● 김낙중은 90년 북한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210萬불)과 공작장비를 전달 받고, 중국인 이상문 교수를 통해 자신의 저서 『굽이치는 임진강』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은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백하게 간첩활동으로 볼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36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는 발표는 사실과 상이 ● 손병선과 황인오가 일본 연락거점을 통해 북한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기부가 손병선과 황인오로부터 암호해독체계와 장비 등을 확보한 후 지령전문을 해독했고, 실제로 손병선 · 손민영 · 황인오 등은 A-3 방송을 통해 북한과 통신했음이 확인 ● 황인오와 최호경은 대외명칭을 ‘민애전’으로 하는 중부지역당을 결성하고 강원도당으로 ‘조애전’을 조직했으며 산하조직에 ‘95년 위원회’를 재편한 ‘애국동맹’을 두었다는 것은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합법 비밀조직 특성상 북한과 직접 연결된 중부지역당의 존재와 활동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남한내 자생적 운동조직인 ‘95년 위원회’ 또는 ‘애국동맹’의 다수 구성원들의 활동은 중부지역당을 주도적으로 조직한 지도부 활동과는 구분해서 취급하는 것이 마땅 ● 안기부가 사건의 단서를 미리 입수하고도 수사착수 시기를 임의 조절했거나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기부는 미란다원칙 불고지·변호인접견 제한·긴급구속을 하면서 임의 동행으로 기재하는 등 일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수사과정에서 일부 구타·잡 안재우기·벌 세우기·인격 모욕·고문 등의 육체·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졌다는 피의자 주장은 사실 ● 김낙중·손병선·황인오의 활동은 개별적인 조직사건으로서 이들이 ‘남한 조선노동당’이나 남한내 조선노동당이라는 단일한 조직을 결성했다고 볼 수 없고, 조직규모도 다소 과장된 것으로 판단 - 간첩단 사건 또는 무전간첩망 조직원이 400여명이라고 발표하고 관련자 62명의 인적사항과 행적을 공개한 것은 이들이 모두 간첩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자 대부분의 사건 해석에 대한 이해가 대립되는데다, 진실 고백 보다는 개인적인 주장을 강하게 제기함으로써, 진실 접근에 어려움 ● 일방적 주장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진실규명 한계 ● 북한이 남한 친북세력을 이용해 남조선 혁명을 획책한 무모한 행위로 판단 ● 안기부가 기획·조작한 것은 아니나, 피의자 인권침해·미확인 사실 발표 등으로 모든 관련자가 간첩으로 오인될 개연성 제공 사실 확인

▶ 6개 분야(요약)

- 정치 분야
- 사법 분야
- 언론 분야
- 노동 분야
- 학원 분야
- 간첩 분야

1	정치 분야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p>【 정치인 사찰 유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선개헌 등 중요한 정치국면에서 야당과 야당의원은 물론 집권당과 집권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도 사찰 ● 정치자금·이권청탁 등 정치인들이 관련된 비위사실들을 수집하여 필요시 정치인들을 회유하는 수단으로 악용 ●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사찰 지속 <p>【 선거 개입 유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대선과 총선 등에서 야당후보 낙선공작을 펼치는 등 선거를 총괄적으로 주도하거나 관리 ● 선거판세를 자체 분석하여 여당에 지원하고,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부합하기 위해 선거시기와 제도의 변경도 기획 <p>【 정당·국회활동 개입 유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희 정권의 권력기반 구축을 위해 민주공화당 창당 주도 ● 민주공화당 삼선개헌 공방과 10.2 항명사건 등 중요한 정치적 이슈마다 최고 권력자를 위해 여당 의원의 의정활동에 개입 ● 제5공화국 출범 당시 민한당·국민당 등 관제야당 창당과 유지에 관여 ● 관제 야당 창당이나 야당의 창당방해를 지시한 최고책임자가 청와대였다는 사실을 확인 <p>【 정치자금 통제 유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치자의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관리 ● 야당 및 야당의원은 물론 여당 및 여당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을 통제하거나 정치후원금의 전달루트를 차단

구 분	내 용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현대정치사는 곧 중정을 비롯해 안기부로 이어지는 정보기관의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역사가 오래 되었고, 그 사례 또한 방대하여 정보기관의 개입 의혹이 있는 개별 사건들을 모두 조사하는데 한계 ● 조사과정에서의 직접적인 한계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는 자료들이 거의 존안되어 있지 않는 등 현재 국정원에 과거 의혹 사건들과 관련된 자료가 부족 ● 각 유형별 사건자료의 양과 질의 불균등 및 이로 인한 보고서 구성과 서술방식의 통일에 애로 ●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전체적인 추세와 실상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해 일부사건 위주로 실체적 진실의 일단만을 보여줄 수 밖에 없음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정보기관의 과거 부당한 정치개입에 대한 실체 규명과 반성을 통해 정치개입의 본산으로 인식되어온 오욕의 과거를 떼땃이 밝혀, 반성함으로써 새롭고 발전적인 국정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 ● 또한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적 가치구현 요구에 부응하고 개혁과 혁신을 지속해 바람직한 정보기관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전기 마련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정의 직원이 시국사건 담당재판부에 직간접으로 압력을 행사, 중정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 ● 중정은 국가배상법 위헌 판결 등 정권의 의도와 다른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재임명 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 또한 1975년 KNCC 선교자금 횡령사건에서 담당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이자, 금품수수 등 비위조사에 나서는 등 판사에 대한 압력 행사 ● 70년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였던 이병린·한승헌·이돈명·홍성우·강신옥 변호사에 대한 뒷조사를 통해 구속 또는 휴업을 강요 ● 안기부는 검찰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83.1부터 대법원 비서실장 뇌물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두명의 부장판사 및 검사장과 지청장의 비위사실을 적발, 사임하도록 유도 ● 안기부는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재판시 공판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공판대책을 세우며 검찰 및 법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 ● 안기부는 83.3 학생시위에 대한 형량을 1년 내지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결정하고 법원을 압박 ● 83년 그간 재일동포 간첩사건을 많이 맡아왔던 태윤기 변호사가 공판 자료를 일본측 가족에게 유출한 것을 '비밀유지 위반'으로 문제삼아 제명 유도 ● 또한 김근태 고문사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과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사건의 진상은폐 등 시국사건 처리에 개입조정 ● 1989년 주요 시국사건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

구 분	내 용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자체가 오래되어 자료가 국정원내 존안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있더라도 단편적이어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편적인 정보의 경우, 그 당시 시대상황 및 공개자료에 나타난 사실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하여 사건을 역추적 ● 사법부는 엄격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곳이고 검사·법관들의 자부심도 강해 ‘안기부의 압력은 있었으나 무시되었다’는 식으로 외압을 부인하거나 면담을 거절함으로써 입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주의 정부시절 중정·안기부가 정권 핵심부의 의중에 따라 원하는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검찰수사 및 기소과정, 판사의 재판과정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음을 확인 ● 어두웠던 과거사 재조명을 통해 사법부 독립의 초석을 더욱 굳건히 하고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일부 법조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계기 마련 ● 또한 향후 국정원의 권력남용 여지를 없애 더욱 투명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국정원 모습 제시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이루어진 언론 통제속에서 국가정보기관은 가장 효율적인 통제수단을 가진 기관으로 인식되었음 ● 언론탄압의 대표적 유형으로 각종 필화사건, 언론자유 실천 탄압, 노조 결성 탄압, 보도지침, 언론인 연행, 언론인 사찰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었던 사실 확인 ● 사상계 필화사건의 경우 중정이 신민당을 압박하거나 사상계를 폐간하기 위해 김지하의 ‘오적’을 사건화하기로 사전 계획하였다는 의혹은 명확히 밝힐 수 없었으나 박정희 정권이 사상계 폐간을 위해 중정·문공부 등 관계기관을 동원하였음은 확인 ●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의 언론자유 실천운동으로 촉발된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을 중정이 주도하였다는 기존의 주장을 검증할 자료가 없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사건진행 과정에서 중정이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연행한 자료들을 근거로 유추 가능 ● 중정은 동아일보 탄압사건에 앞서 1973년 조선일보사에 대한 광고탄압을 실행하였는데 이때 주요 광고주 명단을 작성한 후 광고주 대표를 불러 조선일보에 광고를 심지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음이 국정원 자료를 통해 확인 ● 전두환 정권은 언론기본법을 제정해 언론을 제도적으로 장악했으나 그것에 더해 문공부에 홍보조정실을 만들어 매일 보도를 일상적으로 통제하였고 이 보도지침은 형식상 문공부 홍보조정실에서 내렸지만, 실제의 골격은 청와대 정무비서실과 공보비서실 및 안기부·보안사에서 개입한 것으로 평가

구 분	내 용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의 과거기록물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어 있지 않아 사건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의존케 됨으로써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 따름 ● 자료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기관 출신 과거 관련자들의 증언이 필수적인데 이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과 ● 또한 사건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록을 검증해 줄 국정원 내부관련자들의 정확한 증언과 입장을 청취하지 못함 ● 권력의 언론탄압 공작은 언론내부의 조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세간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도, 언론통제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이 개입해 언론을 가혹하게 탄압해 왔다는 증언들과 더불어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의 보유자료를 이용하여 실제적 진실규명을 시도한 최초의 작업 ● 이번 조사에서는 필화사건은 물론 언론자유 실천 탄압사건, 보도지침, 언론인 연행 등 언론탄압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에서 정보기관이 개입한 흔적을 찾아 의구심을 해소 ● 1970년대 중정이 직접 행한 보도지침 사례와 5공 정권 보도지침 이행과 관련하여 안기부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피해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던 언론인 연행과 사찰관련 사례들을 국정원 자료에서 확인 ● 언론인 출신들이 개별적으로 기록하여 산재해 있던 자료에 국정원 자료를 보완해서 당시 정보기관이 개입한 언론통제의 큰 골격을 그릴 수 있었다는 점도 성과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노동자 계층의 저항을 안보위기와 결합하여 통제하고 간섭해옴 ● 특히 중정·안기부는 노동문제를 국가정책 이행과정에서 국가안보라는 국가 최우선 시책으로 간주하고 노동분야에 개입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노동분야에 개입하게 된 중정 및 안기부는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에 의한 노동계 재편과정에서 한국노총 상층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 ● 도시산업선교회 등 종교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등 안보적인 시각에서 해결하고자 시도함으로써 일부 개별 사업장 및 활동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활동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일부 노동 문제에 대하여 관여 ● 특히, 불순 노동운동에 대한 외부세력 차단이라는 명분하에 기업, 노동부, 경찰 등과 상호 정보교류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블랙리스트 등을 활용, 해당 근로자 동향감시 및 관련조직 와해활동 실시 ●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과 같이 일부 노동운동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무리한 법적용으로 사건실체가 확대 해석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형소법상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인권침해 행위 일부 확인 ● 또한 전교조, 전노협 등 민주노조 조직에 대하여 좌경성향을 은폐한 불순단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하여 체제수호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광범위한 통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분석

구 분	내 용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분야의 조사 활동은 국가권력의 노동분야 통제 및 개입의혹 제기 사건 중 중정(안기부)이 부당하게 통제, 개입한 노동통제의 구조와 수사권·형벌권 남용으로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 피해 사실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 보유자료 등 당시 정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부족하고 - 주요 관계자들의 면담 거부 또는 관련자 진술 등이 서로 상충하는 등 현실적인 조사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 ● 자료의 제한요인과 더불어 당시 노동문제는 청와대, 노동부, 안기부(중정), 보안사, 검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진실위 노동분야 조사는 중정(안기부)만을 대상으로 노동 통제·개입을 확인하였는바 국가권력의 총체적 노동통제의 실상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위 노동분야 조사활동을 통하여 지난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중정 및 안기부 등 국가정보기관이 정부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요구를 정권의 위기상황 및 체제 도전으로 인식 하였음을 확인 ● 노동운동을 불순세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광범위한 개입·통제를 통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을 침해하였던 사실을 일부 확인 ●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향후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 금번 조사활동의 성과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주의 정부시절 정보기관의 학생운동에 대한 사찰 및 통제의혹을 국정원 자료를 통해 확인 ● 학원에 대한 통제가 전방위적으로 행사된 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문교부·검찰·경찰·보안사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였고 - 교련교육·학도호국단·교수 재임용제·졸업정원제·제적생 및 해직교수 처리문제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통제와 더불어 - 정보기관에서는 문제권 학생 및 이념서클·비판성향교수에 대한 통제 활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소위 건전학생이나 건전서클 및 언론을 활용, 반운동권 여론형성 등 학원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사실 확인 ● 정보기관의 학원통제 시스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별 담당관 운영, 정보망 등 협조자 활용, 대학 당국과 협조체제 구축,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한 조정권 행사 등에 의해 정보활동이 이루어진 사실 확인 ● 정보기관의 학원에 대한 개입·통제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종합해 볼때 법적권한을 일탈한 과도한 통제행위도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관의 학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은 중정법 및 안기부법에 의해 인정되나 비판성향 교수 인사권 개입행위 등 무리한 방법도 동원 ● 문제권 학생이나 비판성향 교수들에 대해 정보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찰 활동을 해 온 사실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년대 경찰이 대학에 상주한 정도의 사찰개념은 아니라도 제적생, 해직교수 등에 대한 동향내사를 통해 복교불허 및 승진탈락에 활용 ● 문교부 고유의 소관사항인 대학정책의 입안 및 학사행정 업무에 대해 정보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확인

구 분	내 용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원 자료에 국한된 조사로 인해 교수해임, 연구비 통제, 학원안정법 제정 문제 등 다양한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 미흡 ● 특히 활동기간 및 자료 부족으로 인해 학원관련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조사하지 못함 ● 정보기관의 학원에 대한 통제실태를 문서상에 나타난 사실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그러한 대책방안이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를 명확히 단정할 수 없다는 점 ● 학원문제의 성격상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한 협의과정을 거쳤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기관의 자료는 거의 활용하지 못해 총체적인 통제실태를 확인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모든 사항을 정보기관이 주도했다고 평가하는 것도 다소 무리 ● 과거 대학 학생과 교직원 출신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유관기관 실무자 및 관계기관장 등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실제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의혹만 제기되고 있던 정보기관의 학원통제 실태를 국정원 문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한 사실 ● 정보기관의 구체적 통제사례 중에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통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 확인 ● 국정원 문서중 80년대까지의 학생운동사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자료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충분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첩죄 확대적용 분야는 월북자가족, 납북귀환어부, 일본취업, 위장귀순, 윤태식, 조직사건 등에 대해 조사 실시 <p>【 월북자 가족 간첩사건(송씨일가 · 박동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씨일가 간첩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75일에서 최대 116일간 구금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았고 송치 후 수사관이 구치소를 방문하는 등으로 검찰에서의 자백도 신빙성이 문제 되어 대법원에서도 2회에 걸쳐 무죄 파기환송 - 6.25시 월북한 송창섭이 1960년에 간첩으로 남파하여 송씨일가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남파사실은 물적 증거 없는 자백에 의한 것이고 송창섭의 처 한경희가 고정간첩이라거나 송지섭 · 송기준의 밀입북 등 가족들의 간첩행위를 증명할 물적 증거는 없음 - 안기부가 대법원의 무죄파기 환송 후 재판과정에서 피고측 증인 및 변호사를 위협하고 담당 대법원판사에 대한 미행 등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 ● 박동운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북자 이영준 · 박영준 등의 남파 가능성만을 가지고 연고자 박동운 등을 60여일 간 구금상태에서 자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간첩 박영준의 남파사실이나 박동운의 밀입북 사실 등은 물적 증거 없음 - 국가기밀을 복사하였다는 전자복사기는 당시 농협에 없던 때였고, 호출 부호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체북기간중 주민등록 전 · 출입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소사실의 불합리성을 확인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p>【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정영 사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영을 상대로 1965년 함께 납북귀환한 이옥분의 진술을 근거로 38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물적 증거 없이 6.25시 월북한 정진구가 남파시 접촉 하거나 그와 동반밀입북한 것으로 자백 강요 ● 물적 증거 없이 일상적으로 보고 들은 내용이 국가기밀탐지가 되고, 농지 매입이 공작금 수수 증거가 되고, 자녀교육상 인천으로 이주한 사실이 지령 수행으로 진술 강요
	<p>【 일본취업 간첩사건(차풍길 사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일간 조사실에서 구금한 채 자백을 강요하였고 상부선 ‘요시무라’를 증명하는 증거로 제출된 영사증명서도 안기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신뢰성이 없음 ● 자백외에 조총련을 찬양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의 간첩행위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물적 증거가 없음
	<p>【 위장귀순 간첩사건(김진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진모는 1939.4 강릉에서 출생하여 1960.3 강릉사범 졸업 후 1962.4 동료교사와 결혼하여 자녀까지 두었음에도 1974.5 서독 광부를 자원, 파독간호사와 동거하는 등 생활하다 1977.9 한국 사업가로 행세하던 북한 공작원 광기석에게 포섭됨 ● 1977.10 광기석과 동반밀입북, 간첩교육을 받고 남한침투를 위해 북한 의사로 신분 위장한 후 1977.12 서독으로 망명하여 터키 여자와 결혼 하는 등 합법신분을 획득하고 1982.2 터키 영사관에 북한의사로 망명 신청하여 1982.3 입국, 심사과정에서 위장귀순이 확인되었음

구 분	내 용
조사결과	<p>【 윤태식 사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태식은 1986.9 홍콩으로 출국하여 김옥분(일명 수지 김)과 동거하다 1987.1.3 김옥분을 살해한 후 북한 망명이 거절당하자 싱가포르 주재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북한공작에 의해 처 김옥분이 납치되었다’ 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안기부 파견관이 신병을 인수 ● 해외부서 직원이 현지 출장조사하여 윤태식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본부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를 은폐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윤태식의 기자회견을 강행토록 하였음 ● 2000년 가족들이 경찰청에 탄원하여 내사가 진행되자 안기부 대공 수사국장이 외교관계와 대북관계를 빌미로 수사를 중지시켰고 이에 가족들이 검찰에 고소하여 2001.11 서울지검 외사부가 윤태식을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인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지만, 단순히 의혹이 있는 몇개의 사건을 표본추출하여 전체 간첩사건을 성격지우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당시 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면담에 응하여 사건내용 및 고문 주장 등을 청취할 수 있었으나 수사관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게 되는 한계 ● 조사관에게 사법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수사가 직접적인 증거없이 자백에 의존한 관계로 관련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사실확인이 어렵고, 특히 오랜 시간의 경과로 과거를 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간첩수사가 영장없는 불법강제 연행, 접견권을 차단한 밀실수사,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위주의 수사 등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사과 ● 제한된 사건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안기부의 조작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

▶ 7대 의혹사건 발표문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발표문

I 概 要

1. 조사 목적

-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부일장학회 등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에 따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 그 동안 이 사건들은 5.16 쿠데타 주동자들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탈취하기 위해 자행한 정치공작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거론되어 왔고
 - 특히 이러한 정치공작에 중앙정보부가 앞장서 개입했다는 비난을 받아 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진실을 엄정히 밝히고자 한 것임
- 이번 조사를 통해 은폐되고 왜곡되어온 사실을 바로잡음은 물론, 나아가 밝혀진 진실에 합당한 사후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진실위」는 지난날 야기된 비슷한 유형의 권력남용과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 국정원이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서 기틀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

2. 사건 개요

-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 62년 김지태(金智泰)가 석방의 대가로 자신 소유의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장학사업을 위해 준비해 둔 토지 100,147평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기부' 토록 한 사건으로
- 박정희 정권은 '기부' 받은 재산을 토대로 5.16장학회를 설립하였음
-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언론장악을 기도해 온 박정희 정권이 65년에서 66년에 걸쳐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을 간첩사건 연루 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은행대출금 회수 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공매 처분한 사건임

Ⅱ 調査 內容

1. 핵심 의혹

-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재산헌납 과정의 강제성 여부와 구속 과정의 적법·타당성 여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여부 및 헌납 재산의 5.16장학회로의 이전 경위 등이며
-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경향신문의 강제매각 추진 배경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여부, 구속 과정의 적법·타당성 여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회수 압력 행사 여부 등이 핵심 의혹임

2. 자료 및 면담 조사

사 건 별	조 사 현 황	
	참석자 명단	회의 결과
부일장학회 등 사건	계 : 646건 8,800여쪽 ○ 일반자료 : 165건 5,900여쪽 ○ 국정원 보유자료 : 94건 1,147쪽 ○ 타기관 보유자료 : 342건 1,262쪽 ○ 유족측 제공자료 : 35건 400쪽 ○ 부산일보·정수장학회 제공자료 : 9건 48쪽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 1건 23쪽	계 : 18명 ○ 김지태 유족 : 6명 ○ 전 중앙정보부 직원 : 7명 ○ 5.16장학회 및 정수장학회 관계자 : 2명 ○ 기타 인사 : 3명
경향신문 사건	계 : 300건 28,500여쪽 ○ 일반자료 : 210건 16,547여쪽 ○ 국정원 보유자료 : 82건 1,901쪽 ○ 타기관 보유자료 : 8건 10,050쪽	계 : 28명 ○ 경향신문사측 인사 : 7명 ○ 전 중앙정보부 직원 : 18명 ○ 기타 인사 : 3명

Ⅲ 調查 結果

1.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

- 김지태는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자 언론인으로 조선견직 등 기업체와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등의 언론사를 보유하고 제2대와 제3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 58년 11월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4년간 총 12,364명에게 17억 7,032만환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부일장학회와는 별도로 모교인 부산상고에도 부상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육성사업을 벌였으며

- 61년 5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표한 '부정축재처리요강'에 의해 이병철 등 기업인 15명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61년 6월 30일 석방

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여부

- 5.16 직후 부정축재와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기업인 중에서 재구속 되어 재산을 내놓게 된 경우는 김지태가 유일함
- 김지태 수사에 대한 박정희 의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은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고(자신의 진술이 파장을 일으키자 이를 번복)
 -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수사요원들은 쿠데타 직후 사회악 일소 차원에서 비리사범 정보를 수집하던 중 김지태의 비위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박○○ 지부장이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직전에 작성된 부산지부의 '정치인 실태보고서'에서는 김지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박 의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어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나. 김지태의 혐의와 구속

-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지태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62년 3월 27일 부산일보 전무 윤우동 등 임직원 10여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4월 초순에는 그의 처 송혜영을 밀수 혐의로 구속하고
-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黃龍珠)의 권유에 따라 62년 4월 20일경 귀국한 김지태를 체포하여 부산으로 압송, 4월 24일 부정축재처리법 등 9개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군검찰은 5월 24일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등 4개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였음

- 김지태는 구형을 받은 다음날인 62년 5월 25일 최고회의 법률고문인 신직수(申植秀)에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 6월 20일 군수기지사령부 법무관실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고원증(高元增)이 작성해 온 기부승낙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 고원증의 건의를 받아들인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6월 22일 공소 취소로 석방되었음
- 한편 김지태는 처음부터 언론 3사와 부일장학회 명목의 토지를 가진 헌납할 의사가 없었고, 강압적으로 탈취당했다고 생각하여 석방 이후 62년 7월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을 만나 재산 반환을 주장하는 등 기회가 닿는 대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음
- 김지태의 재산헌납은 표면상 자발적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이나 구속 수감중인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다. 기부승낙서 위·변조 의혹

- 김지태가 62년 6월 구속상태에서 작성한 기부승낙서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기부날짜가 원래의 6월 20일에서 6월 30일로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김지태 명의의 기부증서 등 문건 7건 원본에 대한 필적 동일성과 기부일자 변조여부를 감정한 결과
- 기부승낙서는 김지태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서명을 하였고 기부승낙서 상의 날짜도 한자 ‘六月 二十日’에 한 획을 가필하여 ‘三十’으로 변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 이는 김지태가 6월 22일 석방되었기 때문에 6월 20일이라면 김지태가 아직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부가 이루어진 것이고, 6월 30일이라면 석방된 다음 기부한 것이 되어 재산헌납의 자발성 문제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가 됨

라. '강제 헌납' 재산

- 김지태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 헌납' 한 재산은 총 85,270,279원임
 - 주식 : 총 53,100주(평가액 34,876,096원)
 - 부산일보 : 100%(2만주, 평가액 19,285,649원)
 - 한국문화방송 : 100%(2만주, 평가액 10,446,342원)
 - 부산문화방송 : 65.5%(13,100주, 평가액 5,144,105원)
 - 부동산 :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 토지 100,147평(평가액 50,394,183원)
- 헌납된 김지태의 재산 중 부산 시내에 있는 토지 100,147평(253필지)은 58년 11월 설립된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이었으나, 5.16장학회는 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63년 7월 25일 국방부에 양도하였으며
- 국방부는 63년 10월 21일 김지태에게 62년 4월 11일 부일장학회 이사진 결의로 정부에 토지(도로부지로 편입된 6필지를 제외한 99,451평)를 기부출원한데 대해 감사공문을 보냈음

마. 언론 관련 재산 헌납 경위

- 김지태가 구속된 뒤 석방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은 박정희 의장의 대구 사범 동기이며 부산일보 주필인 황○○였음
- 황용주는 수감중이던 김지태에게 “생사업체는 해야 할 것이고, 부일장학회는 재산 내놓고 이사장 맡으면 공익사업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냐, 그러니 생사 부문은 살아야 되고 언론부문은 내놔야 안되겠냐”라며 언론 관련 재산 포기를 종용
 - * 前 부산문화방송 사장 김종한은 “문화방송을 넘겨주자고 한 건 황용주 장난”이라며 “주연은 박 대통령 이고, 조연은 황용주와 국제신보 사장 둘이 맡았다”고 주장

- 이에 김지태는 헌납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한국생사 등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일단 실행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다 강제헌납된 재산을 곧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것으로 추정됨

바. 재산 헌납과 5.16장학회의 설립

-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전적으로 김지태로부터 헌납받은 재산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평가액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는 국방부에 무상으로 양도
- 박정희 의장은 “기부 받은 재산이 자꾸 유실된다”는 보고를 받고 고원증에게 5.16장학회 설립을 지시하고 장학회 설립 이후에는 이사진을 직접 선임하는 등 장학회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 이후 장학회의 이사진과 장학회 소유 언론 3사의 사장에 주로 대구사범 출신 측근들과 친인척 등을 임명하였고, 박 대통령 사후에도 유족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사.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

-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최고회의 등 국가 주요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는데
- 중앙정보부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재산헌납을 강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재산헌납 과정에 개입하였고
-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신직수·고원증 등)들은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헌납 받은 재산을 5.16장학회로 이전하였음

2.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

가. 박정희 정권과 언론

- 64년 8월 박정희 정권은 정국의 혼란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 때문이라며 언론을 규제하기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마련하여 언론계와 마찰을 초래하였음
- 정부는 8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끝까지 반대하는 4개사에 대하여 정부광고 중단, 신문용지 배급과 은행 용자의 제한, 출입기자의 관청출입 금지, 언론인 사생활 정보수집은 물론 나아가 정간 또는 폐간 조치 등을 취하기로 의결하였음
- 64년 시행이 보류된 것으로 끝난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은 표면상 언론계 승리로 끝났으나, 그후 박정희 정권은 더욱 효과적인 언론대책을 준비하였고, 이로 인해 1965년 경향신문 사건이 야기된 것으로 보임

나. 경향신문 탄압의 배경

- 당시 많은 언론사들 중에서 왜 경향신문이 정권의 언론공작에서 우선적인 대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1) 경향신문의 논조

- 경향신문은 자유당 시절 독재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다가 폐간된 전력이 있는 신문으로 한일회담과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를 주도하고, ‘허기진 군상’ 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였고
- 63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박정희 후보의 남로당 연루 자료를 보유하여 야당의 윤보선 후보가 활용할 수 있었던 데다, 황태성 간첩 사건 보도 등을 통해 박 후보의 사상문제를 부각시켰음

2) 박 대통령의 경향신문 인수 추진

- 박정희 의장은 천주교유지재단이 62년 경향신문의 매각을 추진하자 자신과 친분이 돈독한 시인 구상(具常)을 내세워 경향신문 인수를 추진하여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 천주교측은 자금원이 박 의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계약금 3억환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한 사실이 있음¹⁾

다. 사건의 경과

1) 필화 사건

- 경향신문은 64년 2월 1일 삼분폭리(三粉暴利)의 내막을 파헤쳐 정치쟁점화 시킨데 이어, 64년 5월 9일 ‘허기진 군상’ 제하의 연재물을 통해 가난한 농촌과 영세민들의 궁핍한 삶을 생생하게 고발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나, 이와 같은 비판은 경향신문과 박정희 정권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음
- 64년 5월 12일 ‘정일권 내각에 바란다’ 기사에서 “지금처럼 구호에만 그치는 대책밖에 없다면, 북한에서 주겠다고는 200만석이나 받아 배급해 달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가 문제가 되어 경향신문 관계자 10명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음
- 이어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격화되어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당국은 ‘허기진 군상’ 시리즈 등의 폭로기사와 르포기사가 북의 신문·방송에 인용됨에 따라, 북측을 이롭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 등 3명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음
- 한편, 박 정권은 사장 이준구를 구속했다가 풀어줌으로써 신문의 논조 변화를 기대했으나, 경향신문의 비판적인 논조는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신문

1)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시점인 62년은 중앙정보부가 김지태를 구속하고 언론 3사의 헌납을 강요하던 시기에 같은 일이 발생한 시점인 62년은 중앙정보부가 김지태를 구속하고 언론 3사의 헌납을 강요하던 시기

발행인협회 회장이었던 이준구는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당시 경향신문으로 하여금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도록 함

- 이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에서 이준구가 손을 떼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강제 매각을 추진하게 됨
- 김형욱의 중앙정보부는
 - 65년 4월 8일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李馨白)이 연루된 무전간첩사건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윤우현(尹祐鉉)이 월북한 사실을 발표하였고
 - 5월 8일에는 사장 이준구와 그의 처남인 업무부국장 홍화수(洪化洙) 등을 이 사건과 연관시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함

2) 윤우현 간첩사건

- 윤우현은 동경 소재 마루우치상사(丸內商社) 사장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등을 역임하다가 64년 12월 25일 제121차 북송선을 타고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갔는데
- 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이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와 자신의 고종사촌 정○○ 등을 활용, 각종 정보자료 수집 및 간첩 침투를 위한 공작을 전개타가 입북하였다고 발표함
- 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의 실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주일 파견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준구 사장을 압박하기 위해 윤우현을 이형백 사건에 연계시켰음

3) 이형백 간첩사건

- 중앙정보부는 65년 4월 8일 언론기관을 배후조종하라는 지시를 받고 남파된 북한 간첩 이문백(李文白)에 의해 포섭되어 활동한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등 ‘無電間諜’ 4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
 - 이문백은 이형백의 친동생으로 58년 5월 남파된 뒤 이형백과 접선 후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58년 6월 15일 북으로 복귀했고, 60년 8월 다시 남파되어 국내정보 등을 수집 후 64년 9월 북으로 복귀

- 중앙정보부는 이형백이 이준구를 포섭대상으로 삼고 농촌의 참상을 과장 보도케 했다고 발표
- 65년 9월 검찰은 윤우현·이형백 사건과 관련 이준구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
 - 이형백은 66년 9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및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관련자 송택봉·유익재는 사형을 언도받고 집행
- 이를 종합해 볼 때 중앙정보부는 남파간첩 이문백과 연계된 이형백 등이 적발 되자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간첩사건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윤우현 월북 사건을 한데 묶어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장 이준구는 간첩들에 의해 포섭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한편, 이준구에게 경향신문 경영권을 포기토록 압박하려 한 것으로 판단됨

4) 경향신문 매각과정

당시 경향신문은 한일은행에 2,207만원, 서울은행에 1,470만원, 제일은행에 950만원 등 총 4,627만원의 은행 빚을 지고 있었는데, 당시 비슷한 수의 독자층을 가진 중앙 일간지들이 각각 1억 3,700만원·1억 2,600만원·1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경향신문의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할 수 있음

- 65년 7월 3일 제일은행과 한일은행이, 7월 5일에는 서울은행이 각각 경향신문사로 '대출금상환통지장'을 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 각 은행은 언론사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일을 관례적으로 자동 연기해 주었는데 반해
 -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만기일을 불과 2~3일 남겨놓고 상환을 통보한 데 이어
 - 7월 9일부터 법원에 경향신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9월 7일 부동산 경매개시를 결정

- 이준구의 처 홍연수는 66년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던 경향신문에 대한 경매에 응찰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소공동 부지 매각대금 800만원을 1월 24일 찾으려하자, 중앙정보부는 조총련 연계자금이라며 지불을 정지시켜 경매 응찰을 방해
- 66년 1월 25일 실시된 경향신문에 대한 경매는 박정희 대통령과 동향으로 단독 입찰한 기아산업 사장 김철호(金喆浩)에게 218,074,850원에 낙찰되었음
 - 당시 기아산업은 산업은행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어 경향신문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음

라. ‘강제 매각’에 대한 권력의 개입

1) 강제적인 주식 양도

- 김형욱 등 중앙정보부 간부들은 이준구를 구속시킨 후 홍연수에게 부산일보 김지태가 징역 7년을 구형받자 5.16장학회에 재산을 헌납했던 사례를 들어가며 빨리 신문사를 넘길 것을 종용
 - 그러나 이준구·홍연수 부부는 이준구가 간첩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상황에서 신문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경향신문의 법적인 매각이 이루어진 66년 1월 25일 이후에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음
 - 중앙정보부는 이형백·윤우현 사건만으로는 이준구 부부를 굴복시킬 수 없자, 이준구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하거나 당사자들을 협박하고, 주변인물들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함
- 홍연수에 따르면 신문사 매각에 관한 압력은 주로 김형욱 부장과 이준구의 구속수사를 담당하던 부국장 길○○이 주도했다고 증언
 - 특히 길○○은 홍연수에게 경향신문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준구를 사형시킨 후에 정신을 차리겠느냐,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징역가고 신문사도 운영 못하고 두 가지 모두를 잃을 것”

이라고 하는 등 협박하다가 이를 녹음당했고, 66년 2월 14일 김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폭로하여 경질됨

- 경향신문이 매각된 뒤에도 홍연수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김형욱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서 이렇게 주식을 안주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고, 홍연수는 남편을 무죄로 석방해 준다면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김형욱은 먼저 주식을 넘겨주면 석방해 주겠다고 승강이하어 4개월여를 끌게 되었음
 - 이 기간 기존의 김형욱 부장과 수사국 이외에 서울분실·감찰실 등 중앙정보부 내의 다양한 부서가 동원되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음
- 한편 이준구 부부는 국가권력에 맞서 1년 가까이 신문사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준구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고립감에 빠져 더 이상 신문사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66년 4월 초순경 김형욱에게 주식을 양도
 - 이에 김형욱은 이준구를 다음 공판 기일인 4월 19일에 맞춰 석방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국가보안법·반공법 부분은 무죄로 해주겠지만, 중앙정보부도 체면이 있으니 외환관리법은 선고유예로 하겠다고 했다고 함
 - 이준구는 실제로 이날 벌어진 2심에서 김형욱이 약속한대로 판결을 받고 석방
- 중앙정보부는 경향신문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형백·윤우현 사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준구의 여죄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서, 이준구가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금전출납 군인을 살해하고 거액을 탈취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홍연수가 주권을 양도하자 66년 4월 22일 수사를 종결
- 김형욱은 이준구 부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경향신문 경매 낙찰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준구 부부에게 지급
- 경향신문을 낙찰받은 김철호는 66년 4월 주식을 양도받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요구로 제헌국회의원이자 1950년대에 부산일보 사장을 지낸 박찬현(朴贊鉉)

에게 경영을 맡겼고, 주식도 50%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바쳤으며, 69년 1월에는 신진자동차측에 소유권을 넘기라는 이후락 비서실장의 요구를 받아 주식을 양도하였고

-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자 74년 박정희 대통령이 문화방송 사장 이환의(李桓儀)에게 경향신문과 통합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결국 경향신문도 5.16장학회 소유가 됨

2)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서울분실장 백○○ 등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당시 중앙정보부 간부들이 모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문제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고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고
- 홍연수는 김형욱 등이 매각 압력을 가할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임을 내세웠다고 했으며 또 김형욱이 “(박 대통령이) 당장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 빼앗아 5.16장학회에 다 갖다 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
- 길○○ 부국장의 협박 내용을 국회에서 폭로한 김상현 전 의원도 당시 테이프에 길○○이 “내 뜻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뜻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
- 당시 중정 직원들도 사건 정황상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중정의 전 부서가 동원되어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해 온 점으로 미루어 경향신문 매각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3) 중앙정보부의 조직적 개입

- 65년~66년 당시 자료 및 중정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김형욱 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공활동국·서울분실·감찰실 등 주요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경향신문 매각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홍연수는 65년 5월 이준구 구속 이후에는 주로 사건 수사를 담당한 길○○ 부국장이 갖은 협박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66년 2월 녹음협박 폭로로

길○○이 경질된 이후에는 방○○ 감찰실장이 자신과 주변인에게 폭력과 고문·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문사의 매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함

- 금융권에 대한 압력도 현재 중앙정보부의 개입을 증명하는 문서는 남아 있지 않으나, 당사자들의 증언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대출금 회수 압력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이형백 사건과 윤우현 입북 등을 빌미로 이준구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것이나 추후 조총련 자금 유입설에 대한 수사(K공작), 그리고 이준구 측의 저항이 장기화 되자 살인혐의와 부역죄까지 씌우려했던 여죄 수사 등으로 미루어 중앙정보부가 언론탄압을 위해 공안사건을 확대하는 등 대공수사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

Ⅳ 結論 및 意見

1. 결 론

-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의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부일장학회 등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 5.16쿠데타 이후 당시 군사정권이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탈하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 당시 군사정부가 5.16의 정당성 홍보와 국가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확보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제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헌납 및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 두 사건 모두 ‘헌납’ 또는 ‘매각’ 된 대상이 언론사이고,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5.16장학회 소유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이 두 사건은 40여년 전에 발생한 오래된 사건으로 당시 정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더욱이 관련자 진술도 서로 엇갈리는 등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에 지시하여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 100,147평을 헌납받았고
 - 당시 중앙정보부는 헌납의 계기가 된 수사를 담당한 것은 물론 헌납된 재산 중 특히 토지의 처리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언론 장악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앞장섬
 - 결국 同 사건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최고 권력자의 자의와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으로 조사되었음

-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 당시 중앙정보부가 쿠데타 이후 대정부 비판 논조를 지속해왔던 경향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이준구 사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고
 - 특히 경향신문 처리 과정에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지시에 의해 대공활동국·서울분실·감찰실 등 주요 부서들이 동원되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 관계자들의 진술과 국정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실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2. 의 견

- 부일장학회 및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중앙정보부의 강압에 의해서 헌납 또는 매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에 합당한 시정

조치가 필요

-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 김지태가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재산의 사회환원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으나, 62년 4월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자, 석방을 조건으로 소유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헌납하고 대신 처벌을 면하도록 하라는 제의를 수용
 - 그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가운데 부일장학회·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 등 공익적인 성격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게 되었음
 - 따라서 김지태가 헌납한 재산은 당연히 공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5.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로 이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처럼 관리되어 왔고
 - 장학회의 이름에서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내세웠으며, 그 동안 이사진도 대체로 박 대통령에 의해 선임되었고 그의 사후에도 유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 관련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었던 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김지태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 경향신문이 1950년대 대표적인 비판적 언론이었지만, 이승만 정권에 의해 폐간되었다가 4.19이후 복간되어 과거 비판적 언론으로서의 논조를 강화해 나가던 중 박정희 군사정권이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강제매각시켰음
 - 경향신문은 기아산업에 인수되었다가 69년 소유권이 신진자동차로 이전되었고 74년 문화방송에 통합됨으로써 5.16장학회 소유가 되었음
 - 당시 군사정권을 비판하다가 정권의 탄압을 받아 매각당한 경향신문의 언론 활동을 재평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명예를 회복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또한 신문사 건물과 부지를 보유하여 경영상 큰 어려움이 없던 경향신문사가 강제매각과 통폐합 과정에서 심각한 적자에 이룸으로써 매달 사옥의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큰 손실을 입어 왔으므로 이러한 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강구할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봄

○ 국가정보원은

-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며
- 향후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워야 할 것임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 발표문

I 概 要

1. 조사목적

-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세칭 ‘인민혁명당 사건(1964)’, ‘민청학련 사건(1974)’,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왔다.
 - 이들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시위로 궁지에 몰린 박정희 정권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동원하여 고문 등을 통해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탄압한 대표적인 사례들로서
 - 특히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 재건위사건’의 경우 8명의 피고인들이 사형선고를 받은 지 불과 18시간 만에 처형되어 사법살인의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다.
- 「진실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은폐되고 왜곡되어온 진실을 밝혀내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과 더불어 강구함은 물론
 -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범한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여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국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도록 하고자 한다.

2. 사건개요 및 의혹사항

가. 1964년의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은

- 박정희 정권이 1964년 6·3사태라 불리는 한일회담 반대데모로 인하여 큰 위기에 빠져 계엄령까지 선포한 상황에서
-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 하였다고 하면서, 한일회담을 반대한 학생데모는 이들 인혁당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으로 배후 조종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나. 민청학련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국가변란 기도사건)은

- 1972년 10월 박정희의 탈법적 유신 선포 이후 1973년 10월 서울대 문리대생들의 데모를 기점으로 유신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이 1974년 4월 3일을 기해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전국적 연합시위를 준비하자 박정희 정권은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 민청학련이 조총련·인혁당 재건위 등의 배후조종을 받으며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34명을 검거하여 253명을 구속하고, 7명에게 사형·7명에게 무기징역·12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1심기준)하는 등 중형을 남발한 사건이다.

다. 세칭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민청학련 관련 담화문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인민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발표한 뒤
-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의 배후로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이 있다며 도예중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였고
- 도예중 등 사건 관련자들은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지하비밀조직을 만들어 학생 데모를 배후조종하는 등 국가변란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1, 2심 군사법정을 거쳐 1975년 4월 8일 7명이 사형·8명이 무기징역·4명이 징역 20년·3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 등 총 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의 형확정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 55분 경부터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라. 이들 사건은

- 박정희 정권이 학생데모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발생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학생시위의 배후에 공산계 불순세력이 있다는 중앙정보부 발표의 진위, 고문 조작 논란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이 벌어져 왔다.

Ⅱ 調査 內容

1. 자료조사 및 분석

1) 국정원 보유자료: 459건 67,223쪽

-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사항이 포함된 각종

보고서·수사 및 공판 기록 일부·기타 참고자료 등 459건 67,223쪽을 면밀 분석

- 인혁당사건과 관련 「김상한 월북사건 진상조사 보고」등 관련 문서가 발견돼 64년 8월 14일 발표문에서 등장하는 ‘남파간첩 김영춘’에 대한 의혹의 해소에 참고할 수 있었고
-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초점」, 「수사지침」 등의 문서가 발견돼 ‘조총련과 일본공산당의 민청학련 배후조종’ 의혹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며
- 인혁당재건위사건과 관련해서도 「인혁당사건 공판조서 변조 내사결과보고」라는 문서가 발견돼 ‘공판조서 변조’ 의혹해소에 참고가 되었음
- 그러나 사건과 관련해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서 중 극히 일부 자료들만 보존돼 있어 이들 사건과 관련한 정권 내부 및 중앙정보부 수뇌부의 의도 및 개입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2) 타기관 보유자료: 문서 164건 45,968쪽, 녹화테이프 25개

- 국가기록원 자료로는
 -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 ‘장석구 사건기록’ 등 80건 22,165쪽, 참고인 조사 녹화테이프 25개
 - 기타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료 24건 2,214쪽
 - 특히 관련자들의 조사 녹화테이프들은 관련자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었음
- 서울지검 자료로 ‘인혁당사건기록’, ‘김배영 사건기록’ 등 51건 20,064쪽
- 국방부 자료로 ‘불온유인물 사본’ 등 6건 1,481쪽
- 국회 자료로 국정감사회의록 등 50쪽
 - 1964년 인혁당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의혹에 대해 당시 국회국정감사반의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고문의혹을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었음

- 기타 법무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견서 7쪽 검토

3) 일반자료 : 82건(권) 6,490쪽

- 「사법살인」 등 관련책자 14권 4800쪽, 월·주간지 25건 800쪽, 신문 및 방송 자료 43건 120여쪽, 관련 논문 10건 500쪽 등 기타자료 600쪽 등 공개되어 있는 일반자료에 나타난 각종 의혹 및 주장을 검토하여
- 그동안 사회적으로 제기된 사건관련 의혹사항과 그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국가기관의 자료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음

2. 관련인물 면담조사 내용

가. 사건 당시 중정직원

- 이○○, 윤○○ 등 8명

나. 사건 관련자

- 김금수, 전창일, 유인태 등 18명

다. 사건 당시 관련 국가기관 직원

- 전재팔, 조규철, 문상익 등 19명

라. 기 타

- 김정강 등 3명

Ⅲ 調査 結果

1. 인민혁명당 사건(1964년)

가. 시대적 배경

-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원대복귀를 약속한 이른바 혁명 공약과는 달리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어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는 박정희 정권에게 한일 회담은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였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라는 민족적인 과제를 정권 차원의 이해 때문에 줄속으로 처리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한일국교정상화 추진을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비판하면서 정권퇴진을 요구했다.
- 1964년 5월 20일 서울대 문리대생들이 당시 박정희가 표방하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른 후 관을 앞세우고 시위에 나서자, 정부는 이를 체제 전복 기도로 간주하고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연행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담당판사가 영장청구를 기각하자, 무장군인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 까지 벌어지는 등 정국의 긴장감은 높아져 갔다.
-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자 정부는 1964년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박정희 정권은 위기상황에서 학생운동의 배후로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 1964년의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은 이와 같이 6·3사태라는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아 반정부학생시위의 파장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발표된 공안사건이다.

나.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발표내용

-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여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수배 중에 있다’ 고 발표하였다.
-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 인혁당은 1962년 1월 우동읍의 집에서 남파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우동읍(본명 우홍선)·김배영·김영광·김금수·도예중·허작·김한득·박현채 등이 창당발기인 모임을 갖고
 - ‘북괴 로동당’ 강령·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의 新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한 후
 - 1962년 5월 중순 북괴간첩 김영춘이 월북하여 ‘북괴 로동당’에 인혁당 창당 결과를 보고했고, 1962년 10월에는 교양위원인 김배영이 당 자금 수령차 일본을 경유 월북하였으며
 - 도예중은 전국의 당 조직 건설에 착수하여 박현채 등 50여명을 포섭하고 전국의 군·면당과 군소 직장 내에 세포조직을 부식하여 오던 중
 - 1964년 2월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 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하고
 - 중앙당 시위지도부는 시위의 방향과 구호를 통일하도록 전국학생 조직에 지령함과 동시에 현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학생데모를 조종함으로써 북괴가 주장하는 노선에 따라 남북평화통일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투쟁하다가 검거되었다는 것이다.

다. 사건의 처리

-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학생시위의 배후를 파헤쳐 북괴와 직접 연결된 대규모 지하당을 적발한 중대한 사건으로 발표되었다.

- 중앙정보부는 이 사건을 수사하여 서울지검으로 송치하였고,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용훈 부장검사의 지휘 아래 20여 일 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 이용훈 부장검사와 김병리, 장원찬 검사 등 공안부 검사들은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자백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며 기소장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였다.
 - 그러자 검찰총장 신직수(전 중앙정보부 차장), 서울지검장 서주연 등 검찰 수뇌부는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은 당직검사(정명래)를 시켜 2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했고
 - 이용훈·김병리·장원찬 검사는 자신들의 불기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지자 이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하였다.
- 한편, 검사들의 ‘항명’ 파동에 이어 이 사건에 대한 고문 의혹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인혁당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 한옥신 검사는 기소된 26명 중 14명은 공소를 취하·석방하고, 12명은 당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변경하여 반공법 제4조1항(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 결국 사법부는 인혁당사건에 대해
 - 1965년 1월 20일 1심(재판장 김창규)에서 이들이 서클을 구성한 적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복괴에 동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 13명 중 도예종은 징역 3년, 양춘우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했고
 - 1965년 6월 29일 항소심(재판장 정치원)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도예종에게 징역 3년, 박현채 등 6명에게 징역 1년, 이재문 등 6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전원 유죄 판결했으며
 - 대법원은 1965년 9월 21일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발표내용과는 달리 학생 운동의 배후에 대규모 지하 반국가단체로서가 아니라 반공법 상의 단순 고무·찬양죄 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었다.

라. 의혹 및 쟁점

1) 소위 인혁당은 實在했는가?

- 중앙정보부는 관련자들이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당명을 '인혁당'으로 정했으며 국가변란을 기도하기 위한 '지하정당'으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으나, 과연 인혁당이 당명과 강령·규약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지하정당으로 실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 「진실위」의 조사 결과 이들 관련자들 가운데 일부가 당시 사법당국이 판단한 것처럼 당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서클 형태의 모임을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인민혁명당이란 명칭은 여러 명칭 중의 하나로 언급되었을 뿐이며, 강령·규약도 일부 구성원 사이에 논의된 적은 있으나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 소위 「인혁당」은 5·16 군사쿠데타로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자 혁신계 주요 인물들이 장차 합법화될 혁신정당 활동에 대비하여 혁신계 청년들의 통합을 논의해오던 활동이 드러난 것으로
-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실재했다고 할 수 없다.

2) 인혁당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하였는가?

- 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이 북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한 근거로 창당을 주도한 남파간첩 김영춘과 창당에 참여한 뒤 월북했다가 1967년 남파된 김배영의 존재를 들고 있다.

가) 남파간첩 김영춘에 대한 의혹

- 중앙정보부의 여러 내부분건과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보면 중앙정보부가 '남파간첩 김영춘'이라 발표한 인물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4·19후 사회대중당 후보로 고성에서 민의원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전 동아대 철학과 교수 김상한(1919년생)이다.
- 김상한이 중앙정보부의 발표처럼 월북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상한 월북사건 진상조사 보고」등 중정 내부 문건에 따르면 김상한은 남파간첩으로서 북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다른 대북정보기관으로부터 특수공작 임무를 받고 북파된 것이다.
- 대북정보기관은 '과거 좌익활동 경력소지자로서 북파 후 북괴에서 신뢰를 득할 수 있는 자를 물색 중, 교수출신 김상한의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월북 시키면 공작성과거양이 기대' 된다고 김상한을 북파공작원으로 선발한 것이다.
-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발표할 당시 중앙정보부는 김상한이 대북정보기관에 의해 북파된 사실은 몰랐지만, 적어도 그가 남파간첩이 아니라는 점은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보부가 허위사실을 발표하여 학생시위의 배후에 남파간첩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려한 것은 중앙정보부가 스스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남파간첩 김배영 문제

- 1964년 8월 14일자 중앙정보부 발표문에 따르면 인혁당 창당위원 김배영은 당지도부에 의해 "약정된 암호방식에 의하여 당자금 수령 차" 1962년 10월 일본을 경유 월북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러나 김배영이 월북한 것은 국내에서 인혁당 사건이 발표되고 난 뒤 3개월 후인 1964년 11월의 일로, 1964년 8월에 중앙정보부가 김배영의 소재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김배영이 월북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학생시위의 배후에 친북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 김배영은 1967년 10월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검거된 후 1971년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중앙정보부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에도 김배영 문제를 들어 과거 인혁당이 북괴와 연계를 가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4년 11월에 비로소 월북한 김배영이 1964년 8월에 적발된 인혁당 조직의 대북연계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1964년의 학생시위는 ‘북괴의 지령’ 또는 ‘인혁당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인가?

- 중앙정보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한일회담반대 데모의 배후에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중앙정보부에 의해 인혁당과 학생운동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오병철 등은 학생데모가 전국에 파급된 것은 대일굴욕외교에 대해 학생들이 의분에 못 이겨 한 행동이지 어떠한 세력의 지령이나 선동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 중앙정보부는 학생데모가 북한은 물론이고 인혁당의 지령이나 조종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으며
 - 학생지도책으로 발표된 김경희는 중앙정보부의 조사과정에서 학생데모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조사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등
 - 64년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가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의 ‘조종’으로 발생되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인혁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수사가 자행되었는가?

- 인혁당 사건은 담당 공안검사들이 자백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하여 파문이 일어난 데 이어, 민정당 박한상 의원이 인권옹호협회 이름으로 피의자들의 고문 사실을 폭로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 특히 제일은행원 이종배(일명 이상배)는 현장검증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또다시 고문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투신하여 척추골절상을 입고 전신마비의 중증장애인으로 지내던 중 1970년 고문장애로부터 회복될 수 없음을 비관하여 자살하였으며, 허작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안경알로 자해를 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인혁당 사건 관련자 다수가 고문으로 피해를 입었다.
- 신직수 검찰총장도 의혹이 증폭되자 고문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서울지검 형사부 정태균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전원을 개별 면접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수사관의 명단을 작성하였고
- 국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토론되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피의자들의 고문 상처를 확인하는 등 고문의 증거를 찾아내어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국회전문위원 문상익(당시 검사)도 조사결과 고문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보고하였다.
- 이상 당시 신문보도와 취재 내용, 박한상 의원 등의 조사결과 발표, 국회법사위 국정감사반의 조사 내용에 대한 보도, 제45회 국회법사위 회의록 10호와 21호 기록, 「진실위」 면담내용에서 확인되는 물·전기고문, 구타, 강압수사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고
- 수사에 참여한 장원찬 검사도 의문사위에서 도예종에게서 고문의 상처를 확실히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고문의혹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당시 ‘고문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던 수사기관이 ‘수사한다’고 공언하고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이 없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검찰의 당시 수사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진실위」가 확인했음)
- 일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고문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공판투쟁의 일환으로 동료들의 주장에 편승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당한 가혹행위의 정도를 부풀려 진술한 정황도 살필 수 있으나

- 검찰이 고문 의혹이 제기된 중앙정보부 수사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사건을 수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보부의 인혁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민청학련 사건

가. 시대적 배경

-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3선개헌 이후 1971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하였으나, 정상적인 헌법 절차에 의해서는 1975년에 권력을 내놓아야 했다. 이에 그는 1972년 10월 친위쿠데타를 단행하여 불법적으로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 정치권이나 재야 민주세력은 처음에는 박정희 정권의 갑작스럽고 폭압적인 유신 쿠데타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숨죽인 채 상황을 관망했다.
- 그러나, 1973년 10월 2일 서울 문리대생 300여명은 그 간의 침묵을 깨고 유신 이후 전국 대학가에서 최초로 유신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학생시위를 단행했다. 정부는 학생 21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통해 시위의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학생시위는 10월 4일 서울법대, 10월 5일 서울상대 등을 거쳐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 유신정권은 언론의 통제 위에서 유지될 수 있었으며, 1973년 10월 2일 이후 언론은 정권의 통제 때문에 학생시위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어 11월 12일 CBS 기자들의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 채택을 시발로, 동아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문화방송·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과 방송의 기자들이 모두 언론자유 수호를 선언하며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학생시위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 학생들의 반유신운동이 번져가면서 재야민주인사들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1973년 12월 24일 함석헌·장준하·백기완 등 재야인사 30여명은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구성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 이에 당황한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 2호를 발동하였다.
-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기는 자뿐 아니라, 이 조치를 비방한 자까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조치 제1호의 6항은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고 규정했으며, 긴급조치 제2호는 군사법정 설치를 위한 비상군법회의의 규정을 담고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저항의지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은 새 학기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연합시위를 전개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의 연락체계를 만들어 갔고, 1974년 3월 신학기 들어 경북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나.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발표내용

- 1974년 4월 3일 오전 10시, 11시를 기해 서울대·이화여대·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각 대학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명의로 ‘민중·민족·민주선언’ (일명 삼민 선언), ‘민중의 소리’ 등의 유인물이 배포되면서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 이날 밤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1)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하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2) ‘통일선선’의 초기 단계적 지하조직을 우리 사회 일각에 형성하고 반국가적 불순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확증을 포착했다면서, 이러한 불순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다.

- 긴급조치 제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는 등 일체의 행동을 금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이유 없이 출석이나 수업, 시험을 거부하거나 학내 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등을 할 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고, 문교부 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 발표에서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인 공산당원 및 국내 좌파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 민청학련을 조직, 국가변란을 획책한 학생들은 그들의 사상과 배후관계로 보아 공산주의자임이 분명하고, 폭력으로 정부타도를 기도한 이들의 행동은 폭력혁명을 부르짖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을 추가 발표하면서 민청학련 사건은 이철·유인태 등 평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몇몇 불순학생이 핵심이 되어 작년 12월경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봉기를 획책한 것으로
- 서도원, 도예종 등을 중심으로 한 인민혁명당계 지하공산세력, 재일 조총련 계열, 과거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조영래 등 용공불순세력, 일부 종교인 등 반정부세력과 결탁하여 반정부연합전선을 형성, 유혈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 공산정권을 수립코자 한 국가변란기도 사건이라고 규정하였으며
- 1974년 7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민청학련 관련자 32명에 대해 유인태·이철 등 7명 사형,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을 선고하였고
- 1974년 9월 7일 비상고등군법회의 항소 기각하고
-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

하고 민청학련 사건관련자들의 형량을 최종 확정하였음

다. 의혹 및 쟁점

1) 민청학련은 실제로 존재하는 반국가단체였는가?

- 민청학련이란 명칭은 1974년 3월 27일 서울 삼양동 김병곤의 방에서 이철 · 김병곤 · 정문화 · 황인성 등이 모여 유인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황인성의 제안으로 붙인 명칭으로
-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경희대, 경북대 등은 각각 민청학련 명의를 선언문 대신 각 대학이 스스로 정한 「반독재투쟁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했고
- 당시 학생들 사이에는 전국적인 연합시위를 하기 위한 연락망은 있었지만, 단일한 명칭과 강령, 규약을 가진 정치적 결사체도 아니었고, 국가변란을 기도할만한 실행력을 지닌 하부조직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며, 과도정부를 구성할만한 준비는 더더욱 없었다.
- 따라서 민청학련은 중앙정보부의 발표와 같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반유신투쟁을 위한 학생들의 연락망 수준의 조직이 유인물에 표기한 조직명칭에 불과한 것이다.

2) 민청학련은 용공·이적 단체였는가?

- 중앙정보부 등 수사당국은 민청학련의 투쟁목표가 정부 전복 후 노농정권을 세워 공산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에 있으며, 그 유인물 및 선전내용이 북한방송 및 간첩지령과 일치하고 있어 순수한 학생운동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 수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이미 민청학련을 공산주의자와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 중앙정보부의 수사방향은 처음부터 민청학련 주요관련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 한 예로 1974년 4월 21일자 <수사상황보고> 92보에 따르면
 - 수사의 초점은 “관련자(특히 주동자)는 공산주의 사상의 보지자임을 입증” 하는 것으로
 - 이를 위해 신원조사와 환경 수사에서는 “(1) 가족 중 부역자 혁신계, 월북자, 행방불명자, 전과자를 찾아내고, (2) 본인의 평소 탐독한 공산서적, (3) 북괴 대남방송 청취 사실” 등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으며
 - 민청학련의 투쟁방법과 목표에 대한 수사지침은 “적화 통일 전략전술인 인민민주주의 혁명완수를 위해 민족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학생과 노동자·농민·영세시민을 선동, 폭도화하여 폭력으로 우리 정부를 타도하고 과도 정부를 거쳐 중국에 가서는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되어 있으며
 - 배후관계와 관련해서는 “간첩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재일조총련의 지령이다. 국내 혁신세력의 조종 하에 움직이고 있다. 북괴대남방송을 청취하고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진술을 받아내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어
 - 수사 이전에 미리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과 수사결과가 일치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 또 수사당국이 민청학련 관련자의 친북용공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내세운 학생들이 북한의 혁명가요를 불렀다는 것도 사실은 분단 이전인 1920년대부터 불리던 독립군 추도가(날아가는 까마귀야, 시체보고 울지 마라)를 부른 것으로서, 이 노래는 남쪽에서 간행된 독립군가집에도 수록되어 있는 노래였다.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민청학련의 이름으로 추진된 학생시위의 목적은 수사당국의 주장과 같이 노농정권 수립을 통한 사회주의 정부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유신정권 타도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3) 민청학련은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았는가?

- 당시 중앙정보부와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은 것으로 발표하여 민청학련의 배후에 공산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듯이 설명했으나
- 당시 수사에 참여한 중앙정보부 직원이나 경북도경 소속 경찰관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진술과 「진실위」 면담조사에서 ‘여정남 진술’ 이외에는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으며, 민청학련은 유인태 등 서울대생들이 총괄기획하여 ‘인혁당 재건위’가 배후조종을 할 여지가 없었으며, 일부 수사관들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수사 발표에 반발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으며
-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모두 여정남과의 교류는 인정하지만, 지방에서 갓 올라온 여정남이 모든 학생운동을 배후조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 ‘인혁당재건위’가 민청학련의 배후조직으로서 4·3학생시위의 준비 등 주요 활동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배후조종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4) 민청학련은 조총련 또는 일본공산당원 등 국외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았는가?

- 중앙정보부 등 수사당국은 유인태, 이철 등 민청학련 지도부가 일본 공산당원이었던 하야가와와 소개로 조총련 비밀조직원인 광동의의 지령을 받고 학생들에게 접근한 다찌가와 등과 접촉하면서 이들로부터 폭력혁명 선동과 자금제공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사상황보고에 첨부된 「민청학련 사건 관련 일본인에 대한 수사지침」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 “초기수사단계에서 조서에 올린 사항으로서 범죄요건에 배치되거나 일본인의

관여사실을 부정하게 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부분, 전후 모순 되는 부분 삭제” 하라고 하고

- “조서를 정리할 때 경력·모의과정·목표배후·자금·활동·조직 등 상황은 지난번 부장님의 ‘수사상황발표문’을 참조하여 거기에 맞도록 체제를 갖추어 정비” 하고
- “다찌가와·하야가와 등이 7,500원을 유인태에게 준 것을 ‘취재에 대한 사례비조로 7,500원을 받았다고 표현’ 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니 ‘폭력혁명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통비도 없다는 사정을 말했더니 나도 같은 사상이라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되어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기를 희망한다. 적은 돈이지만 폭력혁명을 수행하는 자금에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주기에 처음에는 거절 하였으나 되풀이 하여 하야가와와 함께 전하여 주기에 마지못하여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기로 하고”
- “같은 사상이라고 한 것은 정부타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내란 선동의 표현으로는 되지 않으니 다찌가와·하야가와는 7,500원을 주면서 “우리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학생이 주동하는 폭력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지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등 선동하는 것은 뚜렷이 표시하도록 했다.

○ 또한 당시 통역으로 참여한 조○○는 이 사건이 종결된 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특채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조서의 증거능력을 굳히기로 하였음”이라며 중앙정보부는 그의 “진술조서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점”으로

- (1) 다찌가와·하야가와 등 두 일본인이 이철, 유인태에게 기자로서 인터뷰한 것이 아니고 폭력혁명을 선동·사주·방조하였다는 점
- (2) 다찌가와·하야가와는 물론이고 이철·유인태가 공산주의였다는 점
- (3) 다찌가와·하야가와 등이 이철, 유인태 등 학생운동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집요하게 조○○와 접근한 상황이었으며

(4) 다찌가와가 이철·유인태 등에게 농촌계몽을 가장한 농촌침투, 사회사업을 위한 농촌계몽의 방법을 쓰는 것이 당국에 발견되지 않고 좋을 것이라고 하는 등으로 반정부 투쟁방법을 소상히 교시하였고 이철·유인태 등이 이에 적극 찬동하였다고 하는 등 사항에 대한 진술을 완전히 수록함으로써 다찌가와·하야가와 등이 정부전복을 위한 내란음모를 하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보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 일본인들의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삭제, 왜곡하고 중앙정보부에 협조적인 통역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받아내어 내란음모의 증거로 삼을 것인가를 상세히 지시하였고

○ 중앙정보부가 조총련 비밀조직원으로 지목한 곽동익은 당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던 김대중 구출운동의 핵심인물로서, 곽동익과 다찌가와는 서로의 관계가 취재원과 기자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 이들 일본인들이 유인태 등과의 접촉과정에서 ‘무장’ 운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중앙정보부가 조총련이나 일본공산당이 민청학련의 배후라고 한 발표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조작된 것이다.

5) 민청학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가?

○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수사과정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구타와 물고문·잠 안 채우기·모욕과 협박 등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가해졌다.

○ 당시 수사에 참여한 전직 중앙정보부 직원 중에서 고문사실을 인정하거나 혹은 고백한 사람은 없지만

○ 사건 관련자들의 고문 관련 주장은 구체적인 고문상황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교도관·과경경찰·검찰서기 등)역시 고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6)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은 보장되었는가?

- 민간인인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에 의해 군사법정인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는 점 자체가 곧 유신독재의 폭력적 인권침해의 적나라한 실상을 나타내고 있다.
- 특히 2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민청학련, 인혁당 관련 피고인 48명에 대해 인정신문만을 한 뒤 “피고인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어불성설의 이유를 들며 법정심리, 변호사의 반대신문,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의 기회를 봉쇄한 채 대부분의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 김지하 등 11명의 변호를 맡은 강신옥 변호사가 애국학생에 대하여 검찰측이 사형과 무기를 구형한 것은 사법살인 행위로서 직업상 변호인석에 있으나 차라리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 해 피고인석에 앉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자 그를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군사재판은 유신체제 하의 군법회의법조차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변호사에게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함으로써 변호인의 변론권을 짓밟았다.
- 변호인조차 재판과정에서의 변론이 문제가 되어 구속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군사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는가를 묻는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3.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가.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수사당국의 주장

-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하에 ‘인민혁명’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

-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 “민청학련은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 제일 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 공산당원, 국내 좌파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하였으며
 - 민청학련의 배후인물들은 모두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의 검찰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추가발표에서 서도원, 도예종 등은 1969년부터 지하에 흩어져 있는 인혁당 잔재 세력을 규합,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사주했다고 발표하였으며
-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공판은 군법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974년 7월 11일과 13일 서도원, 도예종 등 인혁당 관련자 7명, 이철, 유인태, 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련자 7명에게 각각 사형이 언도되었으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년 9월 7일 2심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관련자들의 상고를 기각했고
 - 도예종·서도원 등 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자마자 18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어, 사법살인이란 비난이 고조되었다.

나. 의혹 및 쟁점

1) ‘인혁당재건위’ 는 실재했는가?

- 박정희대통령의 4.3 특별담화에 ‘인민혁명’ 이란 용어가 적시된 상태에서
- 여정남 등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도예종 등 1964년의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과 교류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인데
- 중앙정보부 등 수사당국은 ‘인혁당재건위’ 를 조직재건이 완료된 하나의 실체로 간주했지만
 - 서로 잘 알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이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을 인혁당재건위 ‘경북지도부’, ‘서울지도부’, ‘서울지도부와 같은 조직’ 이라고 수사과정에서 이름붙인 것으로

- 재판과정에서 단일조직의 결성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경북지도부’, ‘서울지도부’, ‘서울지도부와 같은 단체’ 등 모두 3개의 서로 다른 조직이 대법원에서 ‘인혁당재건단체’ 라는 모호한 명칭으로 성격 규정된 것일 뿐
- ‘인혁당재건위원회’ 라는 단체의 실재를 입증할 증거나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이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증거는 자백이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 따라서 8명의 관련자를 사형에 처한 세칭 ‘인혁당재건위’ 란 단체는 중앙정보부와 군사법정 검찰부가 검찰 송치 직전에 수사의 편의상 붙인 명칭일 뿐 실제로 존재한 지하조직의 정식명칭은 아니었다. ‘인혁당 재건위’ 란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의 명칭으로서만 존재할 뿐 실재했던 조직이 아니다.

2) ‘인혁당재건위’ 는 국가변란을 기도했는가?

-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들 중 경북 출신 인사들은 1969년 3선개헌 반대 운동 이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민수협)가 구성되자 경북민수협을 구성하여, 서도원·도예중·하재완·송상진·전재권 등은 운영위원으로, 강창덕은 총무위원장, 이재문은 대변인으로 각각 활동하는 등 박정희 출신지역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중심인물들로서
- 1971년 8월의 남북적십자회담, 1972년 1월의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에 이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되자 서울 지역의 혁신계 인사들과 함께 5.16쿠데타 이래로 침체된 혁신세력의 활로를 모색하는 등
-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와 유신체제 등장 이후 대구와 서울의 혁신계 인사들이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반유신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된 혁신계 인사들의 활동이 반박정희활동 내지

반정부활동일수는 있어도 체제전복이나 국가전복기도행위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3) '인혁당재건위' 는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는가?

-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 중 서도원 등 대구에 거주하는 일부 인사들이 1973년 11월과 1974년 3월 경북대학교에서 발생한 반유신시위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여 여정남에게 주는 등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에 깊이 관계하였고
- 서도원·하재완 등이 여정남을 서울의 이수병에게 보내 서울지역 학생운동과의 연계를 도모하였으며
- 여정남이 이철·유인태 등 민청학련을 주도한 학생들과 몇 차례 교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여정남 외에 인혁당 관련자들이 민청학련과 연결된 적은 없으며, 당시의 수사 관련자들도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여정남이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
- '인혁당 재건위' 가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이라는 수사당국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4) '인혁당재건위' 는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는가?

- 1972년 2월 하재완은 송상진의 도움을 받아 20여일에 걸쳐 북한방송을 청취 하면서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보고문을 노트에 받아 적었고, 서도원 등 일부 혁신계 인사들이 이를 돌려 본 것은 사실이지만
- 군대시절 북한방송을 녹취하는 임무에 종사했던 특무대 중사 출신의 하재완이 전역 후에 주위의 혁신계 인사들이 이북의 통일정책에 대해 궁금해 하자 이를 받아 적은 것으로
- '인혁당재건위' 관련자들이 이북의 지령을 받았다는 중앙정보부의 발표내용도

지령수수의 방식이 통상적인 남파공작원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할 때와 같이 A-3단파라디오를 통해 암호문을 수령하여 난수표를 통해 해독하는 것이 아닌 당대회보고문을 청취한 것을 지령수수로 본 것이고, 그 내용도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인민이 주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령으로서의 구체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 북한의 공작금이 인혁당 재건위에 흘러 들어갔다는 일부 전직 중앙정보부원들의 주장은 김배영의 자금이 강무갑을 통해 이수병에게 전해졌다는 것인데, 이미 1974년도에 조사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당시의 공소장에서도 빠진 것이며
 - 하재완 등이 북한방송을 녹취하여 주변인사들과 돌려 본 행위는 당시의 법체계 상 반공법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지만
 - 이 노트가 빌미가 되어 ‘인혁당재건위’ 라는 반국가단체 결성의 유일한 물증이 되어 여덟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중앙정보부의 무리한 수사와 반공법·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권력남용이 사소한 트집을 가지고도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5)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고문을 통해 조작되었는가?

-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의자들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은 피의자들을 비롯하여 피의자 가족, 변호인, 교도관, 파견경찰, 서울구치소 수감자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기됨
-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은 항소 및 상고이유서를 통해 구타·물고문·전기고문 등 다양한 유형의 고문을 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도예종, 김용원,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 등은 고문일시, 고문방법, 고문으로 인한 상처 및 후유증, 고문수사관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 서울 성북서 파견경찰 전재팔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를 담당할 파견경찰이 중앙정보부에서 전기고문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수사관이 군용전화 손잡

이를 잡고서 기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손잡이를 돌렸다고 「진실위」 면담조사에서 진술하였음

- 당시 담당검사 송○○를 비롯하여, 중앙정보부의 이○○·윤○○, 파견경찰 손○○·박○○·신○○ 등은 자신들이 고문을 하거나 고문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고 있고, 고문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3자적 위치에 있는 교도관이나 성북서 파견 경찰 등 목격자들이 고문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본 「진실위」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사과정에서 고문이 행해졌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인 장석구의 의문사 사건 조사 결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6) 공판조서는 변조 되었는가?

- 민청학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반대신문 기회와 증인신청의 봉쇄, 진술기회의 제한, 가족 접견 금지 등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하였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방어권의 침해를 넘어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 「진실위」는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977년 12월 29일 작성된 「인혁당사건 공판조서 변조 발설자 내사 결과 보고」라는 문건에 의하면 중앙정보부는 공판조서 변조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조승각, 김종길 변호사와 관련자 가족 15명 대표 임인영 등을 중앙정보부에 연행, 조사하였는데
 - 연행조사의 목적이 이들이 향후 다시는 이런 주장을 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으며

- 공판조서 변조 의혹의 진원지는 공판조서를 열람한 두 변호사로서, 특히 조승각 변호사는 1975년 2월 공판조서 중 피고들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X 표시를 하여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 가족들에게 교부하였으며
 - 조승각·김종길 변호사는 중앙정보부의 강요로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은 아니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진술서의 내용에서는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즉, 중앙정보부의 1977년 조사보고서는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실제답변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 두 변호사가 공판조서가 실제답변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공산주의국가건설을 목적으로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자는 회합결의를 한 사실” 등 반국가단체 결성과 관련하여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의 자백과 관련된 부분으로
- 대법원은 반국가단체 결성의 증거가 피고인들의 자백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검찰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을 판단할 때 검찰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들이 공판에서도 인정하였다면서, 1심 공판조서를 판결문에 인용하였다.
 - 그러나 조승각 변호사가 예로 제시한 공판조서의 변조된 내용의 상당부분이 대법원 판결문에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 답변과 정반대로 작성된 공판조서가 대법원에서의 사형 확정판결에 실제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준다.

7) 사형집행을 둘러싼 의혹

가) 사형집행의 배경

- 유신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무거운 형벌로 반유신

운동을 탄압하려 하였다. 그 결과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천명이 넘는 사람이 조사를 받아 모두 14명이 사형판결을 받았고, 무기징역 13명,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28명에 이르는 등 중형을 언도받았다.

-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을 받은 22살의 대학생 김병곤이 “영광입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조롱한 것처럼 유신정권의 엄벌정책이 반유신운동을 제압하지는 못했다.
- 1974년 8월 15일 재일동포 문세광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이 발생하여 육영수 여사가 피격사망하자 박정희는 동정여론에 기대어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를 해제하였지만, 구속자들을 석방하지는 않았다.
- 1974년 7월 11일의 1심에 이어 9월 7일의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도 사형 등 중형이 변함없이 언도되자, 바깥의 가족들도 박정권이 실제 이들을 처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고문 등에 의한 조작의혹을 주장하고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인 오글 목사가 추방당하였다.
- 한편 1974년 8월 22일 신민당 전당대회는 선명야당을 표방한 김영삼을 총재로 선출하였다.
-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였고, 다음날 한국일보 기자들 또한 민주언론 사수를 선언하는 등 전국 31개사의 기자들이 정부의 언론통제를 거부하고 자유언론을 실천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 과정에서 반유신운동의 실상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 11월 18일 문인 101명이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선언을 발표하였고, 11월 27일에는 윤보선·함석헌·유진오·이희승·이병린 등 사회원로와 각계 인사 71명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는 등 반유신 연합전선이 결집되어 갔다.
- 12월 16일 유신정권은 당시 반유신언론의 선두에 서 있던 동아일보에 대해 사상 초유의 광고탄압을 가하여 백지광고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국민들은 동아일보에 자발적인 의견광고를 보내 자유언론을 지원하였다.

- 반유신운동이 강화되자 박정희 정권은 1975년 1월 22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월 12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찬반 토론은 일체 허용되지 않은 채, “유신체제 반대하면 붉은 마수 밀려온다”라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는 찬성 73.1%의 결과를 보였다.
- 국민투표를 이용해 명분을 찾은 박정희 대통령은 2월 15일 구속인사의 석방을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이철·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련 사형수들은 석방되었지만, 인혁당 관련자들과 학생 신분이 아닌 민청학련 핵심관련자들은 석방에서 제외되었다.
- 2·15조치로 석방된 김지하는 동아일보를 통해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에게 자행된 고문에 대해 폭로하여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2월 21일 문화공보부를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최근 석방된 자들은 긴급조치가 아니더라도 국가보안법으로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자들인데도 “이들이 형무소를 나올 때 마치 개선장군처럼 만세를 부르고” 나왔다면서 “민청학련 사건은 이들(인혁당)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 명백한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이들을 동지니 애국인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법에 안걸리는가, 법무부와 중앙정보부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냐”며 매우 격앙된 어조로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인혁당이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조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정희 대통령의 질책이 있는 직후인 2월 24일 황산덕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적 견해를 대변하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 인혁당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견해와 방침을 밝힌다’고 전제하고
 - ‘인혁당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61년 남파된 북괴간첩 김상한이 62년 1월 조직한 지하당으로 김은 그 후 62년 5월 사업보고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월북했고, 당시 재정책이었던 김배영이 새로운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령하기 위해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 인혁당이 김일성의 지시로 북괴간첩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박정희 대통령과 황산덕 법무부장관의 발표는 1964년의 인혁당 사건의 실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국민들에게 북한의 조종을 받은 지하당으로 인식 되었으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도예중 등 피고인 22명 전원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도예중·서도원·이수병·송상진·하재완·김용원·우홍선·여정남 등 8명의 사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1974년 4월 체포된 이후 단 한 번도 가족들과 면회를 하지 못했다.
- 사형선고 이튿날인 1975년 4월 9일 새벽 4시 55분 서도원을 시작으로 이들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 당시의 신문은 사형수들이 대부분 종교의식을 거부하였으며, 도예중은 “조국이 공산주의 아래 통일되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진실위」의 조사결과 사형수들의 최후진술(유언)은 사실과 다르게 사형집행명령부에 기재 되었는데, 이 같은 조작된 유언을 언론에 공개하여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이 진짜 공산주의자로구나 하는 여론조작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나) 형 확정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유는?

- 대법원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진 4월 8일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가 발동되었는데, 이 조치는 군을 동원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한 휴교를 명하는 것이었다. 1개 대학의 휴교조치를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지시할 정도로 유신정권은 이성을 잃고 있었다.
- 같은 날 공화당과 유신정우회의 합동의원총회는 “한반도가 사실상 전쟁상태” 라면서 인도차이나 정세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일부 지도급 인사들의 망국적 언동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현행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인 9일 새벽 4시 55분부터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 사형수에 대한 형집행이 통상 형확정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전례가 없는 일로서, 피고인들의 재심 기회마저 박탈한 것으로 국제법률가협회로부터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 전격적인 사형집행과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문서나 증언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사전에 국방부, 법무부 등의 긴밀한 협조와 준비가 있어야만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형 확정 즉시 처형한다는 방침은 이미 청와대 선에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무리없이 판단할 수 있다.

8) 고문흔적은폐를 위해 시신을 탈취했는가?

- 경찰은 사형집행 다음날인 4월 10일 송상진과 여정남의 시신을 가족의 동의 없이 벽제화장터에서 강제 화장하였는데
- 송상진·여정남의 시신이 강제로 화장처리된 것은 고문 상처의 은폐보다는 응암동 성당 등에서 합동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전격적 사형집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표출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 국가기관이 가족의 의사에 반해 크레인까지 동원하며 시신의 화장 처리를 강행한 것은 인도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였다.

9) 인혁당 재건위 사건 소결

- ‘인혁당 재건위’ 조직결성 여부와 관련
 - ‘인혁당 재건위’의 조직결성을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하고 지역지도부 간의 위상 및 관계를 설명하지 못해 인혁당을 재건하고 민중봉기를 통해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는 증명 불가능함
 - 다만, 당시 혁신계 인사들이 국내외 정세토론과 학생운동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클 형태의 모임을 가졌음은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했음
 -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중정의 주장은 하재완 노트에 불과하고 평양방송의 내용을 지령으로 인식했다는 주장 역시 과도한 해석임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 강압적인 수사 등 관행적이고 폭넓은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었음을 부정하기 힘들고
 - 중앙정보부가 초기부터 ‘인혁당 재건위’를 인지하고 조직사건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 중앙정보부의 수사는 다분히 임기응변적이어서 수사 종결시까지 ‘혐의와 증거의 불일치’를 극복하지 못함
- 유신정권과 사법부는 관련자들을 부당한 군사법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으로 정권의 요구에 따라 처단한 것은 무엇보다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국가 폭력 행위임
-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 차단, 피고인들의 증인신청 기각, 발언 저지 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데
 - 공판조서는 심문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군법회의법을 근거로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금지명령을 내려 피의자의 가족 및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였음
- 확정판결 18시간만에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집행명령을 내리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전 달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증언을 통해 제기되었고, 또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 조작된 최후진술이 사형수들의 용공성 부각 등 언론의 여론조작에 동원되었다.

IV 結論 및 意見

1. 결 론

- 1964년의 인혁당 사건과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각각 민정 이양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 직후에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발표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 다양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거나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에 북한과 직접 연결되거나 조총련 등 국외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몰고 간 사건들이었다.
- 이들 사건은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된 채 발표되었고
 - 일단 대통령이나 부장의 발표에서 규정된 인혁당이나 민청학련의 성격은 그대로 수사지침이 되어 짜 맞추기가 진행되어 이들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어간 것이며
 -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다가 사표를 쓸 정도로 파문이 컸으나,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기소를 강행한 사건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훼손당하는 전기를 이룬 사건이고
-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여 1천여명을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여 253명을 군사법정에 세워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수십 명을 무기과 10년 이상의 장기 형에 처한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며
-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 학생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이 학생데모의 배후에 북괴와 연결된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이용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하여 국내외로부터 ‘사법살인’이란 비판을 듣게 된 최악의 공안사건이며
-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서클 수준의 조직에까지 적용하여 19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조직들을 만들어 내 민주화운동 탄압이

가능하도록 한 역할을 했다.

- 또한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의 경우, 긴급조치에 따라 다수의 시민과 학생들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법회의에서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사법부의 존립의미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북한방송을 녹취한 노트를 돌려 본 행위는 분명 당시의 실정법 위반이겠지만, 그 처벌은 반공법으로 엄격하게 의을 한다 해도 최고 징역 1~2년 정도에 그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사건을 조작하여 8명씩이나 사형에 처한 조치는 분명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며, 이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2. 의 견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국가안보의 이름 아래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왔는데, 이제 이러한 과거와 결별하려는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은 중앙정보부의 책임 아래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지만, 정권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미리 결정되어 집행됨으로써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기도 했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이 국가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은 부단히 자기반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동백림 사건 발표문

I 概 要

1. 시대적 배경

- 1960년대 후반부에 발생한 동백림 사건은 규모도 규모이지만 유럽에 거주하거나 유럽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당대의 명망 있는 지식인들이 관련된 대형 공안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이 일어난 1960년대 후반은 북한이 사회주의적 산업화의 초기 효과에 의해 경제발전 정도에서 남한보다 앞서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시기이며 남한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해온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이다.
- 한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 서독에 광부(1963년 12월)와 간호사(1966년 10월)를 파견하였고, 이들은 유학생들과 더불어 재유럽 한인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사건이 발생한 무렵인 1967년 7월 기준으로 유럽내 한국인은 4,800여명에 달했다.)
- 당시 한국유학생들은 본국의 어려운 형편과 정부의 엄격한 송금 제한¹⁾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다. 반면 북한은 이 당시 체제우위에

1) 자유당시절부터 1967년 7월 18까지 유학생 1인당 월 150불까지 송금이 허용되었으나 4.19 및 5.16 직후 기금 고갈 등의 사유로 환금 자체가 중단 내지 제한되어 시행됨으로써 해외 유학생의 완전 또는 부분적 고학이 불가피해짐.(이상 조선일보 1956년 9월 14일, 1963년 11월 16일)

대한 자신감²⁾을 바탕으로 유럽 거주 한국인 및 유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선전 공세를 벌였다.

- 1960년대 후반은 1965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베트남 전투병 파병 등을 통해 한국이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던 시기였다. 이 때 발생한 동백림 사건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국내정치 상황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1971년 정권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1967년 6월 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이 가능한 2/3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 이와 관련 1967년 6.8 선거에서 박정희 정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3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고, 야당과 대학생들이 6.8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규탄 시위를 전개하자, 정부는 6월 16일 기준으로 30개 대학과 148개 고등학교를 임시 휴업시키는 등 우리사회가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둘러싼 분기점에 놓여 있었다.

2) 북한은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으로 1960년 기준 1인당 GNP가 137弗로 남한의 3.5배에 달하는 등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함.

2. 사건 내용

- 중앙정보부는 1967년 7월 8일부터 17일 사이에 7차에 걸쳐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개요는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윤이상·이응로,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6.3 학생운동 주역인 김중태·현승일 등을 포함, 교수·예술인·의사·공무원 등 194명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는데
 - 이들은 1958년 9월부터 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한데 이어, 일부는 입북하거나 노동당에 입당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 특히 귀국후 북한의 지령사항을 이행한 사례로는 황성모교수가 서울대에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이하 「민비연」으로 표기)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내란 음모 및 선동시위 등으로 정부전복을 모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동백림사건은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독일·프랑스 등에서 관련자들을 직접 연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해당국으로부터 주권침해에 대한 항의를 받았고 심각한 외교문제를 발생시켰는데
 - 당시 6.8 부정선거로 야당의 등원거부와 대학생들의 대규모 규탄시위가 발생, 중앙정보부에서 공안정국으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였다는 의혹과 함께
 -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Ⅱ 調査 内容

1. 자료 조사

가. 국정원 보유자료 : 3만 4,169매

- 국내에서 생산된 각종 수사자료·보고서·계획서와 독일대사관과 중정 해외담당 부서 사이의 송수신 문서를 분석하였다.
- 특히 「V-318수사계획」, 「합동수사계획」, 「민비연 재수사계획」 등 다수의 수사계획서와 「일일 수사상황보고」 등의 수사자료를 통해 사건수사의 발단과 전개과정, 중정의 사법부 독립 침해에 관한 의혹조사에 참고할 수 있었고
- 「GK-공작계획」과 해외 송수신문서를 통해 동백림 사건의 사전기획여부와 해외거주자 연행경과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으나, 6.8선거 전후 중정의 대응지침과 관련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나. 他 기관 보유자료 : 4만 3,529매

- 국가기록원에서 「수용자신분장」 등 3,781매, 서울지검에서 중정·검찰의 사건 수사기록과 법원 공판기록 3만1,700매를 입수하였고
- 외교통상부에서 「동백림사건 관련 한독 및 한불간 협상동향」 등 1,098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동백림사건에 관한 독일외교부 내부 문서를 7,000매 입수, 검토하였다.

다. 일반 자료

- 『김형욱 회고록』 등 공개자료 30여종과 당시 신문 기사를 분석하였다.

2. 면담 조사 : 총 46회 47명 면담

가. 사건 당시 중정 및 軍방첩대 직원 : 12명

나. 사건 관련자 및 유족 : 26명

다. 기타 : 변호사(2명), 판사(1명), 검사(1명) 등 9명

Ⅲ 調査 結果

1. 사건 발생 및 전개과정

가. 중앙정보부의 수사경과

- 1967년 5월 14일 조선일보는 서독주재 이기양 특파원이 체코에 취재차 입국한 이후, 실종되었다고 보도했다. 임석진 교수는李기자의 실종사건을 계기로 독일유학 당시 북한측과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 평소 알고 지내던 홍○○(박대통령의 처조카)을 통해 5월 17일 박대통령을 면담하고 대북 접촉 사실을 고백했다.
-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 22일부터 31일경까지 임교수를 조사한 중앙정보부는 유학생을 비롯하여 수십여명의 한국인이 동독주재 북한대사관측과 접촉하였다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동백림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 7일에는 해외혐의자를 국내로 연행 하기 위한 「GK-공작계획」을 수립하였다.
- 6월 10일부터 특수공작팀(39명)이 해외혐의자 체포를 위해 서독·프랑스 등에 파견된 뒤, 6월 18일에 대부분의 혐의자를 연행하여 독일주재 한국대사관에 집결시켜 6월 20일부터 국내로 이송하였으며, 해외 5개국에서 총 30명이 연행되었다.

-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軍방첩대가 참여하는 동백림 사건 합동 수사본부가 발족되어 피의자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중정은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한 것을 포함, 총 66명을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 등의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 검찰수사와 재판결과

- 서울지검은 총 66명 가운데 41명을 기소하고 1명을 軍 검찰에 이첩했으며 특히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였다.
- 서울형사지법은 검찰에서 기소된 41명을 동백림사건과 민비연사건으로 나누어 심리를 하였는데
 - 동백림사건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재상고심까지 진행하여 34명중 실형 15명 (사형 2명·무기징역 1명·징역 15년 2명·징역 10년 4명·징역 7년 1명·징역 5년 1명·징역 3년 6개월 3명·징역 3년 1명), 집행유예 15명, 선고 유예 1명, 형면제 3명이 최종 선고된 한편, 피고인 가운데 누구도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 민비연사건은 7명 전원이 최초 공소제기 내용인 반국가단체구성·가입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다만 이적단체구성예비음모죄로 황성모·김중태에게 징역 2년, 현승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독일유학생 출신인 황교수에 대해서 적용된 간첩죄 혐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 되었다.
- 정부에서는 서독 등과 외교정상화를 위해 최종심 판결을 앞둔 1969년 2~3월경 1차로 윤이상·이응로 등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하였고, 1970년 12월에는 사형 선고자를 포함, 모두 석방하였다.

다. 외교문제 발생 및 해결

- 1967년 6월 29일 서독 신문에 유학생 김종대의 실종사실이 최초로 보도된 뒤 서독은 7월초 실종 수사에 착수한데 이어, 한국 수사관의 서독내 체포활동을 주권침해로 간주하고, 피연행자들의 출국일자·경로와 출국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과 관련자의 원상회복, 한국공관원 3명의 소환을 요구했다.
- 또한 프랑스도 7월 21일 한국인들의 귀국과정에 한국공관 관계자가 연루되어 있다면서 자국의 주권과 외교관계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침해라고 공식적으로 항의를 제기했다.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서독(7월 23일)과 프랑스(8월 3일)에 피연행자들이 자유의사로 귀국한 것이라는 해명과 함께 공식사과, 재발방지 약속, 공관원 소환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우리 측의 각서 전달과 7월 21일 무협의자 10여명이 귀환한 것을 계기로 한독 및 한불간 외교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되면서 상호 ‘조용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서독연방검찰도 수사결과 한국 수사관의 활동을 도와준 구속자 2명의 혐의를 발견치 못했으며 한국인들의 귀국이 납치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12월 13일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서독은 신속한 재판과 재판 후 특별사면조치를 요구하였고, 한국정부의 우호적인 답변에 기술원조협정 체결에 비공식적으로 합의했지만, 1968년 11월 21일 재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독일은 차관 승인을 보류하였으며, 독일인 시위대 200여명이 한국 대사관에 난입하기도 하였다.
- 이후 1969년 1월 독일 대통령특사가 방한하여 사건관련자 6명에 대한 조속한 석방에 합의하고 2월 10일 서독정부가 동해유전 차관을 승인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2. 주요 의혹 및 쟁점별 조사결과

가. 동백림 사건은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인가?

- 1967년 6.8총선 직후 학원과 야당을 중심으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비판여론과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 박정희 정권이 부정선거 시비를 무마하기 위해 동백림 사건을 기획, 조작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당시 수사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기획조작설과는 달리 중앙정보부가 임석진의 자수(1967년 5월 17일)에 따라 선거 이전에 계획을 수립,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 다만 중앙정보부가 당시의 대표적인 학생조직이었던 민비연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관행과 달리 이례적으로 수사 도중에 10일동안 7차에 걸쳐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 사건을 6.8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신문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사발표 이후 대학생들의 6.8부정선거 규탄시위는 사실상 없어졌다)

나. 동백림 사건은 조작사건인가?

- 동백림 사건이 조작 사건이라는 일부 세간의 의혹과 달리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동백림(50명) 및 북한방문(12명), 금품수수(26명), 특수교육 이수(17명), 복측 요청사항 이행(12명)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특수교육의 경우 강요된 측면이 강하고 귀국자들에 대한 북한의 지하조직 구축 등 지령사항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3~4명만이 호기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안착신호를 발송하고 A-3방송을 1~2회 청취하는 등 귀국 후 국내활동은 그 위반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는 논외로 치더라도 중앙정보부는 관련자들의 단순한 대북접촉 및 동조행위 까지도 국가보안법 2조 및 형법 98조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단순 대북 접촉자 까지도 일반국민들에게 간첩으로 확대 오인시키게 되었다.
 - 중앙정보부는 관련자 203명 중 6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23명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했고 검찰도 23명을 간첩죄와 간첩미수죄로 기소했지만 최종심에서 간첩죄를 적용받은 피고인은 한명도 없었다.
- 이밖에도 중앙정보부는 혐의가 미미하고 범의가 없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혐의를 확대하고 귀국 후 대북접촉 활동을 과장하고 특정사실 적용을 왜곡하는 등 사건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발표했다.
 - 그 대표적인 예가 잘 알려진 천상병 시인의 경우로 중정은 천상병이 대학 친구인 강빈구로부터 그가 동백림을 다녀온 사실을 들은 것을 암약중인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식으로 확대하여(그것도 전기고문 등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 송치했다.(아래 참조)

다. 민비연은 동백림 공작단의 일부인가?

- 중앙정보부는 사건 당시 황성모 서울대 교수가 동백림에서 북한에 포섭되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귀국후 민비연을 조직해 지도교수로서 학생시위를 선동해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고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 중앙정보부가 이처럼 민비연을 무리하게 동백림 사건에 포함시켜 확대한 것은 6.8부정선거에 대해 학생들의 시위가 거세지자 학생시위의 뒤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생시위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김중태·현승일 등이 주도한 민비연은 1964, 65년 한일회담 반대 학생시위를 주도해 국민들에게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 황성모에 대한 조사는 임석진 등의 진술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기타 민비연 회원에 대한 수사 착수 사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정은 수사를 민비연과 그 회원들로 확대했다
 - 나아가 중정은 협박 및 신체적 가혹행위 등을 통해 황교수와 민비연 회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해, 혐의내용을 확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자 중정은 이들을 기소 3일전 다시 소환해 협박·가혹행위 등으로 허위진술서를 작성토록 해 검찰에 추송자료로 제출했다.
 - 이후에도 중정은 1심에서 민비연 관련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자 유죄판결을 위해 보강 및 재수사를 추진했으나 과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간첩 황성모가 만든 반국가단체 민비연이 국가전복을 기도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 판결되었다.
- 이같은 사실은 중정이 학생시위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대학생들의 6.8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무리 하게 민비연사건을 동백림사건에 끼워 넣었음을 추정하게 해준다.
- 이 사건 수사를 총 지휘했던 김형욱 중정부장도 이후 회고록에서 “동백림 사건에 민비연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다”라고 인정하였다는 점은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라. 해외거주 관계자들의 연행에는 문제가 없었나?

- 독일 등 해외거주 관계자 30명의 연행과 관련해 폭력·마취제 등의 강제수단이 사용되었으며 해당국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연행작전이 수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 동백림 사건을 접하고 중정이 국가정보기관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실정법 위반자들을 사법처리해야겠다고 나섰던 것은 이해하지만 해외연행은 해당국의 주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였다.

- 이같은 해외연행이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기록이나 증언은 없다. 대신 박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증언은 있는 바 이같은 철저수사 지시에 의해 중정차원에서 결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하지만 주요 우방들과 주권침해 시비를 가져올 해외연행을 최소한 대통령에게 보고, 승인을 받지 않고 중정이 독자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 해외연행자 30명중 16명이 기소되고 이중 9명만이 실형을 받은 것을 보면 중정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제분쟁이 일 수 있는 해외연행의 경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행 대상자의 수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당시 연행을 위한 「GK-공작계획」에 따르면 중정은 해외연행을 위해 해당국 기관과의 협조까지 고려했으며 필요한 경우 강압 수단을 사용한 강제연행도 계획했다.
- 그러나 실제 연행과정은 보존되어 있는 기록에 의하면 서독지역 연행자 전원이 자진 귀국한 것으로 되어있고 여러 증언들도 형식상 임의동행 형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만 연행 대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내초청·식사초대 등의 거짓말로 대사관으로 유인된 뒤 일부는 폭력 등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국행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따라서 마취제 등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납치한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 대상자들의 경우 실질적인 강제연행에 의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 해외기관과의 협력의혹의 경우 독일 및 프랑스 기관과의 협력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다.

마.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는 없었는가?

- 이 사건은 천상병·윤이상 등 그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대해 수사 관련자들은 동백림 사건이 자수자의 진술 등에 의해 실체가 너무 명백하고 충분해 피의자들이 순순히 실토함으로써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가혹행위를 부정하고 있다.
 - 다만 당시에 위협, 잠안재우기, 구타 등은 있었을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 이같은 중정 수사관들 및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허위진술 강요를 위한 심리적 위협 등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고 인정된다(UN 등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따르면 일반적 통념과 달리 이 같은 심리적 위협 등도 고문에 해당된다.)
- 한편 신체적 가혹행위의 경우 기록 검토결과, 기소자 41명중 8명이 재판과정에서 신체적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2명이 변호사 접견시 가혹행위를 언급했고, 위원회 면담에서도 면담자 중 절반인 11명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 구체적인 신체적 가혹행위의 유형으로는 구타 이외에 전기고문, 물고문, 비행기타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같이 수사관들과 피의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에서 40년전의 사건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 중 최소한 14명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그 대표적인 예가 천상병 시인의 전기고문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천시인의 진술이외에도 사건 관련자·담당변호사·가족의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도 행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 재판은 공정했는가?

- 당시 중정이 검찰과 사법부에 영향을 행사해 공정한 재판을 저해 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 특히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 조치를 한 뒤 ‘용공판사 물러가라’는 등 대법원 판사를 비판하는 괴벽보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그 배후로 중정이 지목되기도 했다.
- 조사결과 이 사건은 그 성격상 독일·프랑스 등 관련국들이 관심을 갖고 참관한 사건으로 공판마다 이를 참관한 독일정부 관계자도 재판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공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 사실 변호사·피의자들도 위원회 면담에서 재판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부 관계자는 걱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의자들은 형량이 무겁고 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내부 문서에서 중정이 재판진행 중 검찰과 재판부에 금품을 제공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 이 계획이 실제 집행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이후 자백이외에 물증을 제시하기 어려웠던 중정이 일정한 금품을 통해 검찰과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결과보고서 112쪽 「동백림 및 통혁당 사건 증거보강 수사계획」 참고바람)
-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괴벽보사건의 경우 당시 국회진상조사위가 구성되어 노력한 바 있으나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위원회도 관련자료 부재 등으로 진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 그러나 이 같은 금품로비 시도, 괴벽보 사건 등은 역설적으로 재판부가 당시 까지만 해도, 즉 유신이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 ‘동백림 사건의 상징’인 윤이상의 경우

-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은 동백림 사건의 피의자로서 독일에서 연행되어 반공법상의 탈출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형 집행정지로 석방후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로 잔형이 면제되어 독일로 돌아갔다. 1980년대 말부터 윤이상은 국내 음악계의 초청에 따라 자신이 당했던 가혹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귀국을 추진하였으나, 우리정부가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결국 귀국하지 못한 채 1995년 베를린에서 사망하였다.
- 윤이상이 북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방북하였으며, 북한의 요청에 의해 주변인사들의 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 방문을 주선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점은 재판과정에서 본인도 인정하였다.
- 그러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독일에 거주하는 그를 연행해 귀국시킨 것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잘못된 것이다.
- 연행과정에서 중정은 국내 초청이라는 거짓말을 통해 그를 대사관이 있는 본으로 유인했으며 대사관에서는 “한국에 가 간단한 조사를 받고 오면 된다”는 식으로 설득해 한국행을 수락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철야 조사·폭언·일부 구타 등의 개연성은 있지만 생전의 물고문 주장은 관련증거 및 진술미비로 현 단계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 진술의 구체성, 증언자의 세계적인 예술가로서의 위상, 수사과정에서의 자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강압 수사 등을 고려할 때 물고문 등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고문주장을 한 적이 없는 등 고문을 입증해 줄 증거가 없어 판단이 불가능하다.
- 거짓말에 의해 국내로 불법 연행되어온 뒤 일부 강압수사에 의해 소극적인 대북행적에 대해 고전적인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윤이상=간첩’이라는 오명을 둘러쓰게 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 * 윤이상의 동백림 사건이후의 해외 행적은 본 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원회 조사에서 제외했다.

Ⅳ 結論 및 意見

1. 결 론

가. 評 價

- 1950년대 후반부터 독일 등 유럽거주 한국인들은 동서독간의 교류 분위기속에서 현지 대사관의 관심부족과는 대조적인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한 공작단의 유인에 의해 동백림 및 북한방문, 금품수수, 특수교육 이수, 주변인물 근황제보, 대북접촉 주선 등 실정법을 위반했고, 이 중 3~4명은 국내 귀국 후 안착신호를 북한에 발송하고 A-3방송을 1~2회 청취했다.(다만 이들이 국내 귀국후 북한의 지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당시의 남북간의 대립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보부가 이를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사건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독일·프랑스·미국·오스트리아 등 외국으로부터 30명의 용의자들을 연행해 온 것은 해당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로 이 사건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 주권침해 등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해외거주 관련자들의 경우, 사법적 처벌보다는 관련자들의 협조에 기초한 현지 공관의 자체 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는 한편, 교포사회에 이같은 접촉의 불법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유사한 행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 그리고 결국 이 같은 불법연행은 독일 등 해당국과의 외교문제를 초래했으며 특히 해외 연행자 수를 무리하게 확대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 뿐만 아니라 중정은 6.8총선의 부정선거 반대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백림 사건을 기획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 피의자들에게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으며
- 수사과정에서 심리적 위협은 말 할 것도 없고 신체적인 가혹행위도 행사 하였고
- 당시 박정희 정권의 발등의 불이었던 6.8 부정선거 비판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10일 동안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사내용을 발표하고
- 특히 정권의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한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국가전복 행위로 몰고 가기 위해 1960년대의 대표적인 학생 조직이었던 민비연을 무리하게 동백림 공작단의 일원으로 확대 왜곡하는 등 불행하게도 동백림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波及效果

-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을 이용해 3선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1967년 6.8선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 등 학생들과 야당의 규탄운동을 침묵시킴으로써 궁극적 으로는 3선 개헌과 장기집권의 초석을 만들 수 있었다.
-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국민들의 반공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의 실상을 국제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유럽지역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지만
 - 독일·프랑스 등으로부터 주권침해 공세에 시달리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가 추락되고 윤이상·이승로 등을 위한 국제 사회의 탄원운동 등으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의 차원에서는 당시 부장이었던 김형욱의 위상 강화와 맞물려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중정의 위상과 정보활동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 대외활동 인프라 훼손, 해외 방첩 기관으로부터 집중견제, 해외교민사회내 반정부인사 양산 등 전반적인 해외 정보력의 위축을 초래했고
 - 또 유럽 거주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연행 작전의 성공은 김대중 납치 사건, 김형욱 실종사건 등 중앙정보부의 1970년대의 불법적인 해외공작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해외교포 사회와 관련해 사건 이후 중정 주도로 공관관계, 교민관계, 유학생관계, 보안관계 등의 대책이 수립, 시행됨으로써 본국으로 부터의 지원과 통제가 동시에 강화됐고
- 동백림 사건 이후 유럽 등 해외 교포사회가 동백림 사건과 한국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친정부 및 반정부인사 등으로 갈려 분열과 반목이 첨예화되었고, 해외 거주 일부 지식인들의 반정부 활동이 증가하였다.
-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가는 바, 1971년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야기된 판사들의 집단 사표 제출이라는 사법부 파동이 하나의 단적인 예이며, 이후 유신과 함께 법관 재임용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는 그 독립성을 상당히 상실하게 된다.
- 이점에서 동백림 사건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동백림 사건 판결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여준 사법부라고 할 수 있다.

2. 의 견

- 사건 관련자들이 실정법을 어겼고 당시의 남북 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위반 행위를 중앙정보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해외거주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연행, 조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 간첩죄의 무리한 적용과 사건 외연 및 범죄사실의 확대과장, 동백림 사건의 민비연에 대한 확대 적용 등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자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 그리고 현재의 국가정보원은 문제가 된 불법연행, 가혹행위, 사건의 확대 조작 등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탈피했지만 유사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 한다.
- 나아가 동백림 사건은 이 사건처럼 상당히 ‘실체’가 있는 사건도 이를 특정 정권이나 공안기관이(이례적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수사경과를 발표하고 관련이 거의 없는 민비연이라는 학생조직을 연관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경우 오히려 그 진정성이 훼손되고 사건의 실체 등에 대해서까지도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어느 정권이나 공안기관도 사건 처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김대중 납치사건 발표문

I 概 要

1. 사건내용

- 金大中(前 대통령)은 73. 8. 8 일본 동경 소재 그랜드팔레스호텔에서 신원미상 남자들에 의해 납치된 후 8.13 귀환하여 납치상황에 대해 증언한 바에 의하면
 - 8.8 11:00경 그랜드팔레스호텔 2211호실에 투숙중인 梁○○(당시 ○○당 당수, 사망)을 방문한 자리에 金○○(당시 ○○당소속 의원, 사망)이 합석, 점심을 먹은 후 13:00경 金○○과 함께 복도로 나오는 순간 2210호와 2215호 쪽에서 6명의 남자들이 달려들어 2210호로 끌고 들어갔는데
 - 납치범들은 金大中을 침대에 눕혀 “떠들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마취를 시켰으나 의식은 남아있는 상태였으며,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 자동차에 태워 호텔을 빠져나가 5~6시간 고속도로를 달려 저녁 무렵 오사카 부근 어느 건물에 도착하였고
 - 범인들은 그곳에서 金大中의 얼굴을 코만 남긴 채 테이프로 감싸고 손발을 결박한 상태로 다다미방에 넣어둔 후 다시 자동차에 태워 1시간 이상 가더니 바닷가에 이르러 다른 팀에게 인계하자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모터보트로 1시간쯤 더 가서 큰 선박에 옮겨 실었으며
 - 항해 중 배 밑쪽에 감금해 놓고서 칠성판에다 몸을 묶고 재갈을 물려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 바다에 던질 듯한 준비를 하다가 “비행기다”하는 소리가 들린 후에 중지한 일도 있었고

- 결국 8.11경 한국 연안에 도착, 모터보트로 상륙시켜 앰블린스에 태워 양옥 집으로 옮겨서 계속 감금하다 이들은 「구국동맹행동대」라고 자칭하면서 8.13 22:00경 동교동 자택 앞에서 풀어주었다고 함

2. 의혹사항

▶ 중정에 의한 납치 여부

납치사건 발생 후 駐日파견관 金OO 지문발견 등 중정 개입 단서가 나왔음에도 한국정부는 무관함을 주장하였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은 없음

▶ 최고위 지시자는 누구인가

【李厚洛 중정부장 지시설】

李厚洛은 박대통령에게 최고의 신임을 받아오다 ‘윤필용사건’에 연루되어 신뢰도가 갑자기 약화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한 과잉충성에 의해 납치공작을 지시했다는 주장

【 朴正熙 대통령 지시설 】

李厚洛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박대통령이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政敵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 차원에서 지시 하였다는 주장

▶ 공작목표는 무엇이었는가

【 단순납치 주장 】

사건관련 전직 중정직원들의 일치된 주장으로 金大中的 해외에서의 反유신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순히 국내로 데려다 놓기 위해 납치를 했다는 것임

【 살해계획 주장 】

당초 살해계획이 있었으나 상황변화(목격자 출현 등)로 인해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뿐이라며, 따라서 ‘단순납치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납치사건’이라는 것임

▶ 정부의 조직적 진상은폐 여부

당시 한국정부는 공권력 개입사실을 전면부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하였으며, 일본과는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면서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

3. 조사목적

- 「김대중납치사건」은 당시 韓·日 정부간에 외교적 합의를 통해 결국 조사가 종결되어 75.7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짐으로써 법적으로는 公訴時效가 완성된 상태인데
- 따라서 본 위원회의 조사활동은 비록 국정원 자체적인 진상규명 작업이긴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에 의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종결 처리된 사안에 대한 재조사의 의미가 있으며
- 이를 통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公訴時效가 지난 사건이라도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얻는 것과 함께 단순한 진상규명 차원에 머물지 않고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를 통한 진정한 화해의 장을 만들어 과거청산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4. 조사한계

- 조사권한상 한계
 -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신문 등이 보장된 수사활동이 아니라 면담조사 방법에 의한 증언 청취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로 작용
- 핵심자료 不在
 - “KT공작계획서”가 작성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아 의혹사항의 완전한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음
- 증언에 대한 검증자료 부족
 - 李厚洛의 건강상태 악화로 면담조사가 불가능하여 핵심 관련자인 李哲熙 차장보·尹○○ 공작단장·金○○ 駐日과견관의 진술내용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이에 대한 검증자료는 부족한 실정임

Ⅱ 調査 内容

1. 자료조사

- 사건관련 핵심자료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지 않아 관련자들의 증언에 대한 진실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 중정 ○국과 駐日과견관간 송수신 전문내용을 통해 “KT공작계획서”가 작성된 사실과 납치실행 과정은 명확히 밝혀졌고
 - 또한 사건 발생 후 중정에서 작성한 대책방안 문건 등은 진상은폐 과정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며
 - 국가기록원 · 해양수산부 · 외교통상부 · 출입국관리소 등 타 기관에서 입수한 내용을 통해서도 관련사실 일부를 확인

2. 면담조사

-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요청 결과
 - 사건관련 중정직원 27명 중 사망 · 건강악화(7명), 신원 · 연락처 미확인(6명), 중요도미약(3명) 등을 제외하고 11명(15회)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 용금호 선원(선장 李 ○○ 등 4명)과 피해자인 金大中 前 대통령 등을 포함하여 총 18명(22회)에 대해 면담 실시
 - * 李厚洛 부장과의 면담 조사를 위해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건강 악화로 인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사실 확인
- ※ 전직 중정직원들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 상세히 증언함으로써 진실규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면담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전했다

Ⅲ 調査 結果

1. 시대적 배경

- 중정은 이미 71년경부터 金大中에 대한 동향내사를 통해 집중 견제활동을 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 이는 大選(71.4)을 통해 야당 대통령후보였던 金大中이 박대통령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대두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 이로써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金大中이 박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함으로써 본격적인 政敵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 72.10.11 金大中(국회의원 신분)은 일본으로 출국, 체류 중 ‘10.17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가 해산되자 귀국을 포기하고 反유신 활동에 주력할 당시
 -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등으로 박대통령에게 최고의 신임을 받던 李厚洛은 73.3 ‘윤필용사건’(윤필용 수경사령관이 술자리에서 ‘박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후계자로 李厚洛을 거론한 일’로 처벌된 사건)에 연루된 이후 청와대 독대보고 횡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던 시기로
 - 더욱이 金大中이 미국과 일본의 정계·언론계·학계 등 유력인사들과 접촉, 朴정권 지원중단 협조요청과 함께 「한민통」을 결성하여 朴정권 타도투쟁을 전개하면서 망명정부 수립 의사까지 밝혔다는 보고를 받은 박대통령과 李厚洛 으로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신했을 것으로 보이며
 - 중정이 73.5 실력행사를 통한 金大中의 滯美활동 봉쇄공작을 추진한 사실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납치공작이 진행되기 훨씬 전부터 金大中 관련 대책방안이 은밀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 줌
- 한편 ○국은 부장 지시에 의거 駐日·駐美과견관에게 金大中 동향감시 지침을 하달, 이들이 파악한 활동내용을 상세히 종합하여 납치공작이 한 참 진행 중이던 73.7.27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2. 중정에 의한 납치사실 확인

가. 중정의 납치주도 사실 공식 확인

- 납치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駐日파견관 金○○의 지문이 발견되는 등 중정 개입단서가 나왔으나
 - 한국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마찰을 무마하는데 급급하였으며
 - 결국 75.7 金○○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통해 내사종결을 선언함으로써 지금까지 진상이 은폐된 채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상태였음
- 본 위원회는 사건의 실제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한 결과
 - 전직 중정 직원 및 용금호 선원들의 납치사건 가담 인정 증언
 - 중정 해외파트와 駐日파견관간 납치실행 추진상황 송수신 전문내용
 -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事後 관리대책 방안 문건

등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김대중납치사건」은 중정에서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임
- 또한 공작계획안 작성과정 및 내용, 납치 준비물품(대형배낭 등)의 용도, 용금호 동원 목적 등에 대한 증언 확보와 더불어
 - 호텔에서 납치 후 오사카 安家를 거쳐 용금호로 부산항에 도착, 국내 安家에 감금하다 放免하기까지의 이동경로별 납치상황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해진 위해행위의 실상을 확인하였으며
 - 다만 “KT공작계획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의혹사항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점도 밝힘

나. 납치단계별 관련자 신원 확인

납치 단계	관 련 자 신 원
공작 추진지시	李厚洛 부장
공작추진상황 총괄	李哲熙 정보차장보 · 河○○ 담당국장
현지공작 책임자	金○○ 駐日대사관 공사
현지공작 지휘감독	尹○○ 담당단장
납치현장 행동대원	尹 단장 · 金○○ · 尹○○ · 洪○○ · 柳○○ · 劉○○
호텔 ⇨ 오사카 安家	尹 단장 · 洪○○ · 柳○○ · 劉○○ * 金○○ · 尹○○는 梁○○ 및 金○○ 감시
오사카 安家 경유	尹 단장 · 柳○○ · 朴○○ · 朴○○ · 金○○ · 金○○ * 洪○○ · 劉○○은 복귀
安家 ⇨ 오사카항	尹 단장 · 柳○○ · 安○○(운전)
통선 ⇨ 용금호	鄭○○ · 朴○○ 및 金○○ · 鄭○○(선원)
용금호 항해 중 감시	鄭○○ · 朴○○ 및 용금호 선원(金○○ 등)
부산항 ⇨ 서울 安家	金○○ · 姜○○ · 金○○
서울 安家 감시	姜○○ · 李○○
동교동 자택 放免	姜○○ · 李○○ · 黃○○(운전)

다. 공작계획 수립 과정 및 내용

- 73. 7.10 金大中이 미국에서 일본에 재입국하자 ○국은 駐日파견관에게 일일 동향보고체계 확립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 73. 5 金大中の 滯美 활동 봉쇄공작이 진행되었던 사실을 볼 때 이런 연장선상에서 납치공작이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 73. 7.13 “책임 활동관을 선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라”는 지시내용은 지휘부에서 공작 추진을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임
- 또한 공작계획안은 현지사정에 밝은 駐日파견관이 작성·보고토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 이는 73. 7.19 駐日파견관(金○○)이 본부 지시에 의거 작성한 공작계획안을 ○국에 송부하였고, 7.21 金○○이 계획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국한 사실로 알 수 있으며
 - “金大中 관련 대책방안(공작계획안)을 작성·보고하라”는 지시전문이 하달된 시점은 73. 7.14경으로 이는 金大中이 일본에 재입국 하자마자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말해줌
- 그리고 계획안이 작성되기 전인 시점에서 “金大中이 주한미군 철수의 타당성과 독재적인 차정권 지원 중단을 역설했다”(73.7.17)거나 “조총련 부의장과 접촉시 평양 방문 의사를 보였다”(73.7.18)는 駐日파견관의 보고내용은 지휘부에 공작추진의 당위성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임
- 한편 73.5경 ○국장은 李厚洛의 특명을 받고 金大中の 자진귀국 설득공작을 추진하던 중 73.8.6에야 구체적인 진척사항이 나오자 이를 ○국에 통보함으로써 “梁○○을 통해 金大中の 귀국 可否를 문의하라”는 긴급전문이 하달되었지만, 그 때는 납치장소 결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金大中이 일본에 재입국(73.7.10)할 당시에 이미 자진귀국 설득이 어렵다고 보고 납치공작 추진지시가 내려졌다고 판단됨

- 공작계획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73.7.10 金大中이 일본에 재입국하자 李厚洛 부장이 李哲熙에게 납치공작 추진을 지시하였는데
 - 초기에는 실무자들의 반대의견도 제시되긴 했지만 李厚洛이 李哲熙에게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고 했다는 것처럼 지휘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결국 공작부서인 ○국에서 비밀리에 추진키로 결정되었으며
 - “KT공작계획안”은 ‘李厚洛 부장 ⇨ 李哲熙 차장보 ⇨ 河○○ 국장 ⇨ 金○○ 공사 ⇨ 金○○ 파견관’이란 명령계통을 통해 지시가 하달되어 73.7.19에 작성·보고 되었으며
 - 尹 단장은 뒤늦게 李哲熙의 지시를 받고 金○○이 작성한 계획안을 검토 후 73.7.21 金○○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 납치실행에 착수함으로써 현지공작 지휘감독 임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
- 또한 金○○이 작성한 공작계획안에는 “야쿠자를 이용, 납치 후 파우치로 데려오는 안”과는 별도로 “야쿠자를 활용하여 제거(암살)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尹 단장의 증언은
 -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했다는 사실과 3차에 걸친 면담과정에서 시종일관 살해안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은 진술로 평가되며
 - 그러나 작성자인 金○○은 살해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尹 단장 또한 동 계획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반대하여 결국 金○○ 공사에게 “駐日파견관을 동원하여 납치해 오라”는 지침이 하달되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단순 납치계획이 추진되었다고 주장
- 한편 현지공작 지휘체계는 직책상 金○○ 공사가 총책임자였으나, 호텔에서 납치키로 결정된 이후부터는 尹 단장이 실질적인 현장지휘를 했던 것으로 판단됨

라. 구체적 공작추진 과정

- 73. 7.21 尹 단장이 현지공작 지휘감독을 위해 渡日하면서부터 駐日파견관 전원이 동원되어 납치실행을 위한 감시활동에 착수하였는데

-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73.7.29)하기 전부터 金大中 체류 예상 호텔 등 감시와 병행, 협조자를 활용한 유인 공작이 추진된 사실은
 - 만약 용금호가 없는 상황에서 납치 했을 경우 다른 이송수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파우치 활용방안 또는 암매장 계획이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 반면 73.7.31 구체적 방안이 포함된 “KT공작관계 보고서”가 ○국에 송부된 사실은 용금호 도착(7.29)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며
- 납치실행 이틀 전인 73. 8. 6 공작을 주도하고 있던 ○국에서 駐日파견관에게 金大中의 자진귀국 의사 可否 확인 지시가 긴급 하달된 점과
 - 납치 하루 전날까지도 金大中 동향보고 재강조 지시와 함께 “임무수행 가능성 여부에 중점을 두라”는 지침이 내려진 점은 최소한 용금호 도착 후에는 단순납치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정황자료로 평가됨
- 그리고 尹 단장은 용금호 동원 경위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金大中 이송수단으로 사용할 것에 대비하여 준비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 사전에 李哲熙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점과 중정요원 2명을 승선시켜 오사카항에서 대기토록 한 사실 등 납치 후 이송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 조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 처음 공작계획 단계에서는 金大中의 국내 이송을 위한 용도로 용금호를 이용하겠다는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음
- 결국 73. 8. 6 金○○ 공사가 “金大中이 8. 8 梁○○의 숙소인 그랜드팔레스 호텔 2211호를 방문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자 尹 단장은 동 호텔에서 납치키로 최종 결정을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는데
- 감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梁○○의 숙소(2211호) 바로 옆방인 2210호실을 예약하여 韓○○으로 하여금 미리 체크인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현장 행동대원으로 駐日파견관 중 金○○·柳○○ 등 5명을 선정한 후 납치 차량으로 劉○○의 자가용을 준비토록 하고, 대형배낭 등 구입

- 尹 단장은 金大中을 납치 후 오사카 安家를 경유하여 용금호로 이송하는 계획을 호텔에서 납치기로 결정할 때 이미 구상했다고 주장하는데
 - 柳○○이尹 단장의 지시로 오사카 安家를 사전 정찰한 점과 당초 ‘오오쓰’에서 오사카 파견관에게 金大中을 인계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 鄭○○이 세관을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용금호로 이동할 수 있는 통선을 별도로 준비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사실로 판단됨
- 반면 尹 단장이 납치현장에 가지고 갔던 권총의 용도에 대해 “긴급상황 발생시 자살용으로 준비했다”는 주장은 명확한 납득이 되지 않는 점과
 - 또한 대형배낭(2개)은 “金大中을 마취시킨 후 담아 나오려는 생각에서 구입했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파우치용 또는 토막살해용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완전하게 불식하기는 어렵고
 - 더욱이 로프(13m)와 관련해서는 “金大中을 넣은 배낭을 묶어 밑으로 내려 보내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진술하나 납치장소가 22층인 점을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점 등 일정단계에까지 살해계획이 그대로 추진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물증으로 평가

마. 이동경로별 납치상황

▶ 납치 및 차량 이동상황

- 73.8.8 13:00경 尹 단장 등 납치행동대원 6명은 金大中이 그랜드팔레스호텔 2212호실에서 梁○○과 만난 후 金○○과 함께 복도로 나오자 2210호실로 끌고 들어갔으며, 金○○ 등 2명은 金○○을 梁○○의 방으로 밀어 넣고 감시
- 尹 단장 등 납치조 4명은 “떠들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金大中을 마취시킨후 엘리베이터를 이용, 지하주차장으로 긴급히 이동하였고 감시조는 납치 준비 물품(대형배낭 등)을 2210호실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호텔에서 이탈
- 엘리베이터로 이동 중 일본인 2명이 탑승 후 내리는 순간 金大中이 “살인자다. 살려달라”고 일본어로 소리를 쳤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자 劉○○ 소유 차량에 金大中을 싣고 호텔을 신속히 빠져나감

▶ 오사카 安家 도착

- 尹 단장 등 납치조 4명은 동명고속도로를 이용, 오사카 방향으로 이동 중 코베인근 오오쓰에서 오사카 파견관들을 기다렸으나 이들이 나타나지 않자 오사카 安家로 이동 후 金大中の 소지품(일화 20만엔 등)을 빼앗고 입과 눈을 포장용 테이프로 붙인 후 손발을 묶은 뒤에 다다미방에 넣음
- 尹 단장은 劉○○(운전)과尹○○를 복귀토록 하고, 오사카항부근 나폴리호텔에서 대기 중이던 용금호 책임자 鄭○○에게 연락,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 준 후 오사카 총영사관 차량을 이용, 심야에 오사카항 부속 부두인 ‘아마가사키(尼崎)’로 이동

▶ 용금호로 이송

- 尹 단장은 8.8 22:00~23:00경에 약속장소인 ‘아마가사키’ 부두에서 용금호 팀과 만나 金大中을 인계해 주었고, 鄭○○은 金大中の 얼굴에 보자기를 씌운 후 통선에 실고 30여 분만에 용금호로 이동
- 金大中 인계 후尹 단장과 柳○○은 오사카 소재 金○○ 집에 체류하다 柳○○은 다음 날 駐日대사관으로 복귀했고,尹 단장은 며칠 후 홍콩을 경유하여 귀국

▶ 용금호내 감시상황

- 용금호에 승선 후 金大中の 얼굴을 감싼 테이프를 뜯어낸 후 눈에 거즈를 대고 붓대를 감았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 화물창에 감금
- 73.8.9 아침 오사카항을 출항, 일본 내해를 경유하여 부산항을 향해 항해 중 널빤지를 십자형으로 만들어 金大中을 눕히고 묶었으며, 손발도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음
- * 金大中は 칠성판에 몸을 묶어 돌을 매달아 水葬을 하려는 순간 비행기가 나타나자 중지하여 살아냈다면선원들이“숨이붙을 붙여놔야 물이 차니까 안 떠오른다”말도 했다고 주장

- 용금호에 설치된 통신수단은 모르스부호를 사용한 수동무전기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본부에 “화물(김대중 지칭)을 무사히 싣고 출발했다”고 보고
- 도쿠야마 부근을 지날 때는 검색을 대비하여 金大中을 화물창 밑에 있는 조그만 창고(겨우 1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로 옮겨 놓음

* 용금호는 73.8.9 09:00경 출항하여 일본 내해를 경유, 8.10 밤에 부산항 외곽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

▶ 서울安家 체류 및 放免 상황

- 용금호는 73.8.10 밤 부산항 외곽에 도착, 하루 동안 대기하다 8.11 밤에 金大中을 하선 시킨 후 중정 앰블런스 차량 등을 이용하여 서울 수유리 소재 安家로 이동
- 동 安家에서는 姜○○, 李○○ 등 3명이 감시를 했으며, 당시 지휘부로부터 “눈가리개를 떼지 말 것, 자해할지 모르니 가죽 수갑은 풀어주지 말 것, 말을 걸지 말 것” 등 지침만을 받음
- 처음에는 姜○○이 납치단체를 「구국동맹행동대」라고 金大中에게 밝혔으나, 放免 후에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는 「애국청년구국대」라고 하여 혼선이 발생
- 8.13 오후 갑자기 姜○○ 이 “사람들이 안 보는 어두운 시간에 동교동 집 앞에 풀어 주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날 21:00경 姜○○ 등 4명이 차량에 金大中을 태우고 동교동으로 이동, 「애국청년구국대」 명의 경고성 메모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준 후 자택 부근에서 放免

* 공작을 주도한 李哲熙 차장보와 尹○○ 단장은 국내 安家 감시 및 放免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

바. 납치상황 분석

- 사건에 가담한 중정요원 및 용금호 선원들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밝혀진 이동 경로별 구체적인 납치상황과 피해자인 金大中의 증언을 비교·분석한 결과
 - 尹 단장의 지시로 柳○○이 오사카 安家를 사전 정찰하였고, 당초 납치 후에 ‘오오쯔’에서 오사카 파견관에게 金大中을 인계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 또한 鄭○○이 용금호로 이동하기 위한 별도의 통선을 준비해 두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安家를 경유하여 용금호로 이송한다는 구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 실제 납치상황에서도 오사카 파견관들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생략되기는 했지만 “호텔에서 납치 ⇒ 安家 경유 ⇒ 용금호 이송” 등 단계별로 실행된 사실을 확인

- 한편 호텔이라는 장소적 취약점과 金○○·梁○○ 및 종업원 등 다수의 목격자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납치를 강행한 것은 지휘부에서 실행을 독촉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 실제 납치를 자행하면서도 막상 준비한 대형배낭(룩색) 등은 사용할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호텔을 이탈하는데 급급했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현장에 金○○의 지문을 남긴 사실은 공작이 조직적·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 더욱이 ‘오오쯔’에서 오사카거점 파견관이 나타나지 않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비록 은어로 표현하긴 했지만 安家로 이동하는 경로가 피해자에게 노출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현지공작은 허술하게 진행되었던 측면이 있음

- 이동경로별 납치상황을 통해 확인된 구체적 危害행위를 살펴보면
 - 호텔에서 납치할 당시 “떠들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폭행과 함께 마취제 사용 등 불법행위는 있었으나, 권총이나 칼로 위협하는 등의 살해를 기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은 없었으며

-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金大中이 동승한 일본인들에게 “살인자다.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복부를 구타하였고
- 납치차량에 태운 후 오사카 安家로 이동할 때에는 뒷좌석 바닥에 엎어놓고 움직일 경우 발로 내리누르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 安家에서는 소지품을 빼앗고 코만 남긴 채 얼굴을 포장용 테이프로 감은 후 손발을 결박한 상황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행위로 느꼈을 것은 자명하고
- 용금호에 감금되어 있을 당시 십자형 널빤지에 묶고 재갈을 물려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水葬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충분히 인식할 수도 있으며
- 더욱이 피해자가 선원들로부터 “숨이불을 붙여 놓으면 떠오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水葬을 당한다는 위기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직접적으로 갑판 위에서 바다에 던지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없었고
- 또한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는 의사의 진찰을 받았으며, 서울 安家에서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가죽 수갑을 채운 상태로 감금을 당했으나, 중정요원과 대화를 나누는 등 다소 완화된 분위기에서 지내다 放免된 사실 확인

3. 최고위 지시자에 대한 판단

- 李厚洛 부장이 공작추진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구두 지시를 받았다는 李哲熙 등의 진술내용과 실제로 중정 해외공작국 주도로 납치가 실행된 점을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
- 박대통령의 납치공작 인지 시점과 관련 李厚洛은 그동안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 事後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事後에 알았다는 근거로는
 - 73.8.10 외무부는 박대통령의 지시로 “목적자인 梁○○과 金○○에 대해 귀국을 연기하여 일본 측의 수사에 협력토록 강력히 권고할 것”을 지시하는 훈령을 駐日대사관에 하달하였으며

- 李厚洛이 박대통령 사전지시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김정렴·김종필·박종규·김성진 등 당시 측근들의 事後인지에 대한 증언이 많고
- 李厚洛이 최영근(前 의원, 사망)에게 “박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공작을 추진했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시기가 10.26사건 이후라는 점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또한 李厚洛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 만약 李厚洛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면 박대통령이 즉시 책임을 묻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73.11 일본과 외교적으로 사건을 해결한 후 李厚洛을 해임시킨 사실

등을 통해 李厚洛이 ‘윤필용사건’으로 인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박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납치공작을 강행했다는 것이고

○ 반면 박대통령이 사전에 李厚洛에게 지시를 했다는 근거로는

- 중정에 의한 납치임이 탄로가 났을 경우 일본과의 외교문제 발생과 국제사회에서 위신추락 등을 고려할 때 과연 李厚洛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실행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과 함께
- 李厚洛에게 “박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의미의 말을 직접 들었다는 최영근의 증언과 李哲熙가 李厚洛에게 지시를 받을 당시 반대의사를 피력하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고 했다는 진술뿐 아니라
- 金○○공사가 “박대통령의 결재사인을 확인하기 전에는 공작을 추진할 수 없다”는 등 반발을 보이다 얼마 후 정보제공·인원 동원 등 적극 협조를 했다는 尹 단장의 증언도 있고
- “대통령의전일지”상 事後보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업무시간 이외에 궁정동 安家 등에서 구두지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측근들에 의한 증언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 점과
- 73.7.27 중정이 “金大中 滯美·日 활동 종합” 제하로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이 이미 납치실행에 착수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공작추진 사항도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많은 점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박대통령의 직접 지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박대통령의 사전지시나 사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직속기관인 중정이 납치를 실행하고 또한 事後 은폐까지 기도한 사실에 비추어 통치권자로서의 정치·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4. 공작목표에 대한 판단

가. 살해계획 주장 근거 및 반론

- 金○○이 작성한 “KT공작계획안”에 “야쿠자를 활용, 암살하는 방안도 포함 되어 있었다”는 尹 단장의 증언으로 실제 살해계획 추진 가능성 확인
⇒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尹 단장도 실행 과정에서는 단순납치 계획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타 관련자들은 살해계획 논의 자체를 부인
- 재일교포 출신 폭력단 두목 양원석(사망)이 “金○○ 공사에게 金大中 제거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일본 경찰의 미행과 도청으로 인해 가담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내용은 살해방안이 일정부분 진행되었음을 시사
⇒ 위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양원석이 金 공사를 만나 金大中 암살안을 제안 받은 시기는 金○○ 이 계획안을 작성(73.7.18)하기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동경 소재○○ 0란 홍신소에 돈을 주고 金大中 감시를 의뢰한 것은 살해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정보수집 목적이었다는 의혹 제기
⇒ 동 홍신소에서 감시한 기간은 73.7.25부터 3일간이었다는 사실과 73.7.21 부터 駐日과견관들이 감시에 착수한 점 등은 노출을 대비한 의뢰행위로 해석 가능

- 납치실행 착수시기(73.7.21)와 용금호의 오사카항 도착일자(73.7.29)에 차이가 난 사실을 통해 그때는 별다른 운송수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납치를 했을 경우 암매장 계획 등이 추진되었다는 주장
 - ⇨ 그러나 이 기간 중 살해계획이 추진되었다는 증언 또는 구체적 입증자료는 없는 상태임

- 납치현장인 그랜드팔레스호텔 2210호실에서 발견된 유류품 중 대형배낭(록색, 2개)은 토막살해용 또는 파우치 용도라는 주장
 - ⇨ 대형배낭을 직접 구입한 尹 단장은 金大中을 마취 후 담아서 나오기 위한 용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호텔에서 납치기로 결정된 후 파우치로 이송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증언 또는 자료는 없음
 - ⇨ 또한 토막살해를 위한 도구인 톱·칼·비닐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金○○·梁○○ 및 종업원들의 목격 가능성, 토막살해를 할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임

- 金炯旭(前 중정부장)은 회고록에서 현장 행동대원이었던 柳○○에게 “호텔에서 토막살해 계획이 있었으나, 金○○의 목격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전문증거 제시
 - ⇨ 柳○○은 金炯旭을 만난 사실자체를 부인하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는데 어떻게 살해계획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어 金炯旭이 실종된 상태에서 사실여부 확인 불가

- 金大中은 용금호에서 칠성판에 몸을 묶고 재갈을 물린 상태로 돌을 매달아 水葬을 시키려고 했으나, 비행기의 출현으로 인해 중지되었다고 주장
 - ⇨ 돌을 매달았다는 부분과 관련 李哲熙 등 이를 인정하는 증언도 있으나, 鄭○○ 및 용금호 선원들은 강력 부인하고 있어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
 - ⇨ 또한 金大中의 몸을 묶고 감금시킨 이유는 일본 경찰의 검색에 대비한 조치였고, 金大中의 구출을 위해 비행기가 떴다는 근거자료를 찾기 힘들다는 점과 더욱이 향해 중 직접적인 水葬기도 행위는 없었다는 것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水葬계획이 상황변화로 인해 중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임

- 尹 단장은 “金大中을 용금호에 인계한 후 곧바로 귀국하지 않자 河○○ 국장을 급히 보내 귀국을 설득했다”고 증언, 귀국을 지체한 이유는 살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 제기
- ⇔ 尹 단장은 일본 입국시 대사관에다 여권을 맡겨 두었는데, 사건발생 후 일본 경찰의 감시로 인해 여권을 전달받지 못해 귀국이 지연됐다고 주장

나. 국정원 자료를 통한 단순납치 근거

- 공작추진 과정이 단기간이란 점
 - 73.7.10 金大中이 일본에 입국하면서부터 李厚洛의 지시에 의해 구체적으로 공작계획이 수립되어
 - 73.7.21 현지공작 책임자로 尹○○이 파견된 후 본격적으로 납치를 위한 감시에 착수, 8.8 실행된 사실은 준비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었다는 점에서 단순납치 계획이었다는 주장
- 다수 인원이 공작에 가담
 - 납치실행 단계별로 駐日대사관·오사카총영사관 등에 파견된 중정 직원들과 용금호 선원 등 다수 인원이 동원된 사실
- 용금호를 이송수단으로 동원
 - 尹 단장은 공작계획 단계부터 용금호 동원이 확정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鄭○○ 등 중정요원을 승선시켜 오사카항에 대기토록 지시한 점은 납치 후 수송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염두 해 둔 조치로 평가
- 자진귀국 설득 추진 사실
 - 73.5 李厚洛은 담당국장에게 金大中 자진귀국 설득 특명 하달 후 진척사항이 없자 73.7 李哲熙에게 납치공작 추진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 논리적이란 설명

- 해당파트와 駐日파견관간 송수신 전문내용
 - 납치실행 이틀 전임에도 자진귀국 설득 지시가 하달된 점과 특히 73.8.7 납치일 하루 전에도 일일보고 재강조 지침이 내려진 사실은 이미 단순납치 계획이 확정되었음을 강하게 시사

다. 최종 판단

- 우선 납치과정 중 살해위협을 당했다는 金大中의 주장에 대해 사건에 가담한 중정요원 및 용금호 선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 金○○이 작성한 “KT공작계획안”에 살해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尹 단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 권총(실탄 7발 장전) 및 대형배낭·로프의 용도, 용금호에 金大中 인계 후 尹 단장이 지연 귀국한 사유 등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납치실행을 위한 감시활동을 전개한 사실은 만약 그때 납치에 성공했을 경우 별다른 이송수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암매장 의혹도 상존

등 암살계획이 하달되어 일정단계에까지 진행되다 목격자 출현 등 상황변화로 인해 실행이 중지되었거나, 현지 공작관의 판단에 따라 살해계획을 포기하고 단순납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 사건에 관여한 중정 직원들의 단순납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해당파트와 駐日 파견관간 송수신 전문내용과 납치과정에서 토막살해·암매장·水葬 등 직접적인 살해기도 행위는 없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 다수의 중정요원과 용금호 선원들이 가담, 단계별로 납치를 진행하여 국내로 데려온 후 放免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작계획 단계에서는 야쿠자를 이용한 살해안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한 이후 또는 호텔에서 납치가 실행된 단계에서는 단순납치 방안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5. 정부의 조직적 진상은폐 사실 확인

- 한국정부는 납치사건 발생 직후 공권력 개입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은 폐에 주력하였는데
 - 중정은 사건에 관여된 駐日파견관들의 귀국조치와 함께 “국내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특별수사본부」 조사활동에 대한 조정·통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事後관리를 통해 진상은폐에 주력하였고
 - 「특별수사본부」는 현장에서 金○○의 지문이 발견되고 납치 차량이 劉○○ 소유로 확인되었다는 일본 측의 수사상황 통보에도 불구하고 74.8 내사 중지 후 75.7 金○○을 불기소처분 함으로써 내사종결 처리하였으며
- 또한 한국정부는 일본 측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였는데
 - 73.11 金鍾泌 총리가 다나카 수상과의 면담을 통해 박대통령의 납치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 親書를 전달함으로써 일본정부로부터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 74. 8.15 발생한 문세광 저격사건에 대해 한국 측이 배후인물 수사 등을 강하게 요구하자 일본 측은 납치사건 재론으로 맞서지만
 - 결국 75.7 한국 측이 김○○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일본정부는 “金大中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실 확인
- ※ 당시 한국정부가 납치사건 진상을 은폐한 잘못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일본정부 또한 한국의 공권력 개입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결에 협조한 사실로 인해 결국 잘못된 행위를 묵인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겠음

Ⅳ 結論 및 意見

1. 결 론

▶ 본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의혹사항별로 정리해 보면

- 「김대중납치사건」은 당시 중정부장 李厚洛의 지시에 의해 해외파트 주도로 駐日파견관들을 동원하여 실행한 사실과 납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위해행위 실상뿐 아니라 사건 발생 후 정부(중정)의 진상은폐 사항에 대해서도 명백히 확인하였음
- 최고위 지시자와 관련 朴正熙 대통령 지시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밝혀줄 직접적인 문서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 당시 朴正熙 1人 중심의 초강경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李厚洛 부장이 李哲熙의 반대에 부딪치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고 역정을 낸 적이 있고, 金○○ 공사가 “박대통령의 결재를 확인하기 전에는 공작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버티다 곧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정황과 더불어
 - 납치공작이 한창 진행 중이던 73. 7.27 金大中的 反유신 활동을 종합한 내용이 박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되었을 때 당연히 공작사항도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많으며
 - 박대통령이 사건 발생 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하였으며, 진상규명을 하기 보다는 金鍾泌 총리를 일본에 파견하여 외교적 마찰을 수습토록 한 점
- 등 사전지시 가능성과 함께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납치공작의 구체적 방안으로 살해계획이 추진되었는지에 관해서는
 - 초기 공작계획 수립 당시 야쿠자를 동원하여 암살하는 방안과 납치 후 외교행낭 편으로 반입하려는 계획이 논의된 적이 있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거 공작목표는 살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 납치 준비물로 권총과 대형배낭 및 로프를 구입하여 지참했던 점과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에 납치실행에 착수한 점은 국내 이송수단용으로 준비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약하고
- 尹 단장이 金大中을 용금호에 인계한 후 河○○ 국장이 일본에 와서 귀국을 종용할 때까지 지체한 이유가 불명확한 점

등 암살계획이 하달되어 일정단계에까지 진행되다 목격자 출현 등 상황변화로 인해 실행이 중지되었거나, 현지 공작관의 판단에 따라 살해계획을 포기하고 단순납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 만약 실제로 암살계획이 있었다면 납치과정에서 암매장 또는 水葬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적인 살해기도 행위는 없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 다수의 중정요원과 용금호 선원이 가담하여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것은 비밀 누설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살해공작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 또한 납치실행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진귀국 설득 및 金大中 동향보고 강조 지시가 하달된 정황을 통해서도 단순 납치계획이 확정된 상태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

등 적어도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한 이후 또는 호텔에서 납치한 이후에는 단순 납치계획이 확정되어 실행되었다고 판단됨

○ 韓·日 양국 정부가 납치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을 검토해 보면

- 한국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도 형식적인 조사로 진상을 호도하였고, 일본 측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며
- 일본정부는 한국의 공권력 개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요구에 따라 외교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데 협조한 사실

등 양국 정부 모두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2. 의 견

- 우선 피해자인 金大中 前 대통령이 납치과정에서 당한 생명의 위협과 고통, 그리고 이후 진상 은폐로 인해 겪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중정 직원들은 조직체계상 상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납치공작에 가담한 이들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들은 면담과정에서 진술한 증언과 함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전했다. 특히 현지공작 책임자였던 尹○○ 및 駐日과견관 金○○은 관련자들을 대표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金大中 前 대통령께서는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사건에 관여한 중정 직원들에 대해서는 용서한다는 뜻을 밝혀 왔는데, 이는 가해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앞서 용서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본 위원회는 조사결과의 공개를 통해 “前職 중정직원들은 金大中 前 대통령께서 납치과정 중 겪었을 고초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이로써 진정한 용서와 함께 화해의 장이 마련되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그리고 당시 한국정부는 박대통령이 다나카 수상에게 親書를 전달하면서 납치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바 있지만, 본 위원회는 이번 진상규명 작업을 계기로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이 일본 내에서 납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한편 일본정부 또한 한국의 공권력 개입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합의해줌으로써 결국 사건발생 초기에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 따라서 본 위원회가 30 여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납치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을 했다는 것은 미래지향적 韓·日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 일본 당국도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아울러 국정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저지른 정치공작 등 잘못들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하고 이를 거울삼아 국가의 중추적이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김형욱 실종사건 발표문

I 概 要

- 金炯旭 前 中央情報部長은 63.7월 이래 中情部長으로 在職하던 중 69.10월 박정희 前 대통령이 3選개헌의 1등 功臣인 자신을 전격 해임하고 73.3월 유정희 국회의원 명단에서도 제외하자, 73.4월 美國으로 망명
- 김형욱은 77.6월 『뉴욕타임즈』 기자회견 및 美 하원 프레이저 聽聞會에서 박정희 前 대통령을 강력 비난한데 이어, 박정희 政府의 치부를 告發하는 회고록 출간을 추진
- 박정희 政府는
 - 77.6월 민병권 무임소장관을 대통령 特使로 美國에 파견하여 김형욱을 설득·회유하는 한편, 국무총리 주재 김형욱 대책회의를 3차례 개최한데 이어 김형욱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 77.12월 “外國 政府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者”와 “外國에서 귀국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罪狀이 현저히 重한 者”를 처벌할 수 있는 「反國家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욱이 회고록 출간을 계속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김형욱은 79.10.1 單身으로 프랑스 파리에 도착, 10.7 저녁 파리 시내 카지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失踪

- 그간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國際 범죄조직 또는 정치적 보복에 의한 프랑스 현지 殺害, 국내 압송·살해 등 각종 疑惑들이 유포되어 왔고, 그 배후에는 당시 박정희 政府와 그 예하에 있는 中情이 이를 주도하거나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 왔음

Ⅱ 調査 內容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이번 김형욱 실종사건 眞實 糾明을 위해 현재 까지 아래와 같은 資料 조사·분석 및 관련 인물에 대한 面談調査를 실시하였음

1. 資料 조사 및 분석

가. 公開 資料 : 59권 8,700여쪽

- 단행본 등 책자 17권 7,700여쪽, 月·週刊誌 42권 610여쪽, 신문 및 방송 자료 220여쪽, 기타 자료 170여쪽 등 공개자료에 나타난 김형욱 실종사건 관련 각종 疑惑 및 주장 내용 등을 검토

나. 國情院 존안 자료 : 748건 10,905쪽

- 國情院이 존안중인 각종 보고서 76건 836쪽과 본부-해외거점간 受發信 電文 및 참고자료 672건 10,069쪽을 면밀 분석
- 김형욱 실종사건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工作計劃書 등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김형욱의 美 의회 증언 대책에 대한 朴대통령의 특별 지시 내용과 中情 駐佛 거점 요원들의 사건 전후 출입국기록 및 활동보고서 등 일부 有用한 자료 확인

다. 國情院外 여타 기관 존안 자료 : 87권 9,521쪽

- 軍 보관 「김재규 사건 공판기록」, 10·26사건 당시 「軍 검찰 수사기록」, 「합동수사본부 수사기록」, 「中情 직원 조사기록」, 국가기록원 보관 「대통령 儀典日誌」 등 여타 기관 존안자료 내용을 면밀 검토

2. 관련인물 面談調査 : 총 33명

가. 사건당시 中情 駐佛 거점 요원 및 연수생 : 8명

1) 프랑스 公使(中情 책임자)

- 3차례 면담조사
- 김형욱 실종사건에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否認하지 않으면서도, 사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완강하게 거부

2) 신현진(가명, 당시 駐佛 中情 연수생)

- 7차례 면담조사

- 김형욱 살해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음을 시인하면서, 同 살해 진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

- 다만, 死體 遺棄 장소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 회피

3) 이만수(가명, 당시 駐佛 中情 연수생)

- 6차례 면담조사

- 김형욱 살해사건에 直接 가담하였으며 하급자로서 부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으나, 具體的인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

4) 김철진(가명) 및 이일만(가명) : 당시 中情 駐佛 거점 요원

- 김철진은 1차례, 이일만은 3차례 면담조사

- 양인 모두 사건 당시 파리 현지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수생 등 일부 김형욱 殺害事件 가담자들은 이일만이 同 사건의 企劃 임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

5) 여타 연수생 3명

- 살해 가담자인 신현진·이만수 외에 여타 연수생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면담조사

- 그중 연수생 1명은 김형욱 실종사건에 이상열 公使, 거점 요원 이일만, 연수생 신현진·이만수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연수생 2명은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

나. 中情 本部 지휘계통 간부 및 직원 : 5명

- 中情 본부 차원의 조직적 가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79.10월 당시 윤일균 해외담당 차장, 金○○ 해외담당 국장, 李○○ 해외담당 부국장, 曺○○ 유럽담당 과장, 黃○○ 유럽담당과 主務官 등을 각각 면담 조사

- 상기명 모두 사건 당시 中情 차원에서는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상열 公使는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

- 상기명들은 김형욱 실종사건이 言論에 보도된 시점인 79.10.16경 駐佛 거점에 사건 眞相 파악을 지시한 점 등으로 보아 사건 개입 가능성 희박

다. 지원업무 담당 및 여타 해외거점 근무 中情 職員 : 4명

- 사건 당시 海外通信 등 지원업무 담당자 및 영국 등 여타 해외거점 근무 직원 4명에 대해 면담조사한 결과, 사건 개입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음

라. 合搜部 관계자 및 특파원 등 事件 주변인물 : 16명

- 79년 10·26사건 직후 김재규 前 中情部長을 조사했던 합동수사본부장과 수사국장은 모두 10·26사건 당시 김형욱 사건을 調査하거나 報告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언급하였음
- 신○○(조선), 주○○(중앙), 박○○(동아) 등 사건 당시 파리주재 특파원 등 言論人 8명을 면담한 결과, 그간 제기된 疑感 이상의 구체적 정황이나 진술을 발견할 수 없었음
- 김경재 前 민주당 의원(2회)과 송진섭 안산 시장(1회)에게 청와대 경호실 개입설의 진위 여부 등을 문의하였으나, 사건 眞實 糾明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은 없었음
 - * 김 前의원은 김형욱 회고록 저자이고, 송 시장은 79.12월초 서대문 형무소 수감중 박선호 前 中情 의 전과장으로부터 김형욱 실종관련 사항 득문 주장
- 김형욱을 파리로 誘引하는 과정에 관련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연예인 최○○, 정○○ 등 女性 3명을 면담한 결과, 개입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음
- 10.26사건 당시 김재규 部長으로부터 김형욱 사건의 眞相을 직접 得聞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안사 서빙고 분실의 김재규 部長 감시 헌병 박○○을 2차례 면담 조사하였으나, 사건 실체를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

Ⅲ 調査 結果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김형욱은 김재규 당시 中情部長의 지시에 의해 中情 駐佛 거점 이상열 公使와 中情 직원 연수생, 그리고 이들이 고용한 제3국인들에 의해 파리 현지에서 殺害된 것으로 밝혀짐

1. 殺害 動機

- 73.4월 김형욱의 美國 亡命이후 박정희 前 大統領은 정일권 · 김종필 · 김동조 · 오치성 등 政府 고위급 인사들을 美國으로 보내 김형욱의 歸國을 설득하였으나, 김형욱은 계속 不應
- 김형욱은 77.6.2 『뉴욕타임즈』와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6.22 美 하원 프레이저 聽聞會에 출석하여 김대중 납치사건 등 박정희 政府의 내부 비리를 잇달아 폭로
- 이에 朴大統領은 프레이저 청문회 직전인 77.6.16 김재규 中情部長에게 “김형욱의 美 하원 청문회 출석 저지를 위해 민병권 무임소장관을 特使로 파견하여 김형욱이 자제토록 설득 · 회유하라”고 지시
- 한편, 박정희 政府는 77.6월말 최규하 국무총리 주재 김형욱 대책회의를 3차례 개최한데 이어, 77.12월 “反國家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 윤일균 前 中情 해외담당 次長의 진술에 의하면
 - 김형욱이 김경재(筆名:박사월)를 통해 박정희 政府의 非理를 폭로하는 회고록 집필을 추진하자
 - 朴大統領은 78.12월 김형욱과 同鄉으로 친분관계에 있던 자신(윤일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급히 訪美하여 김형욱과 회고록 관련 협상을 추진토록 지시하였으며

- 이에 따라 자신이 訪美, 김형욱에게 美貨 50만불을 주고 회고록 원고를 받아 내었으나
 - 79.4월경 日本의 한 群小 출판사가 同 회고록 문고판을 出刊함으로써 朴대통령 등 정부 당국자들의 김형욱에 대한 분노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김형욱은 美 하원 프레이저 聽聞會에 출석, 中情部長 재직시 지득한 中情의 對美 공작활동 등 각종 국가기밀을 폭로하였으며
- 박정희 政府와 中情의 입장에서는 김형욱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政府 내부의 치부와 국가기밀이 누설되어 국익이 훼손되고, 정권이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을 것이며
 - 특히 김형욱 자신이 上記 국가기밀 사업들을 기획·집행·감독했던 장본인이었다는 점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임
- 이밖에 김형욱의 개인적 비리와 부도덕한 행적은 김형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심화시켰을 것임
- 김형욱은 美國 망명 당시 財産이 15만불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프레이저 위원회 조사 결과 1,500만~2,000만불의 財産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 美國 생활시 호화 카펫이 장식된 고급 주택에 살면서 자식들에게 벤츠 자동차를 사주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고
 - 도박에 탐닉, 카지노에서 한번에 수만불 이상의 돈을 날리는가 하면, 78.1.18 파리에서 뉴욕 入國시 7만 5천불 상당의 현금을 密搬入하려다 적발되어 美國 관세법 위반으로 保護監視 1년을 선고(78.3.15)받은 적이 있으며
 - 심지어 자신의 一生을 정리하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온 회고록 출간조차 박정희 政府와의 돈거래에 활용하는 등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음
- 이에 따라
- 당시 박정희 政府내에서는 中情部長을 지낸 사람이 막대한 外貨를 해외로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국가기밀을 무차별 폭로하는데 대해 대단한 분노와 증오감이 존재했을 것이며

- 이러한 정황이 당시 中情 직원들로 하여금 김형욱에 대한 응징 필요성에 쉽게 공감하게 하였던 것이고,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따랐을 것임

2. 殺害 指示

- 김형욱 실종 사건이 김재규 당시 中情部長의 지시에 의해 이상열 公使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아래 이유로 확실시 됨
 - 79.9월말 이상열 公使가 연수생 신현진에게 김형욱 살해 임무를 부여하면서 김재규 部長의 지시임을 분명히 밝힌 점(신현진 진술)
 - 신현진이 사건후 歸國하여 79.10.13경 김재규 部長에게 김형욱 처리 결과를 보고하자, 김재규 部長이 크게 칭찬, 격려하고 포상한 점(신현진 진술)
 - 김형욱 실종사건 발생 직전인 79.10.1경 이상열 公使가 비밀리에 귀국하여 김재규 部長을 2차례 만난 점(10·26사건 당시 김일곤(가명, 死亡) 中情 차장보가 檢査部 조사시 진술)
 - 김형욱 사건 발생 직후인 79.10.18 이상열 公使가 은밀히 귀국하여 김재규 部長에게 보고하고, 10.19 파리로 귀환한 점(國情院 존안 문서 및 曹○○ 당시 中情 유럽담당 課長 진술)
 - * 김재규 部長은 79.9월말 이전 이상열 公使에게 김형욱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상열 公使가 79.10.1경 귀국시 김재규 部長에게 김형욱 殺害 계획을 보고하고 소련제 소음 권총과 독침(後述)을 수령했을 것으로 판단됨
- 김재규 部長의 지시를 받은 이상열 公使는 현지 中情 연수생 2명 등에게 김형욱 살해 관련 임무를 부여하고, 同 연수생들이 임무를 수행
- 김재규 部長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殺害 指示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不在와 당사자들의 死亡으로 인해 事實 關係를 현재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음
- 다만, 77.6.16 박대통령이 김형욱의 美 하원 프레이저 聽聞會 출석(77.6.22)을 앞두고 민병권 당시 무임소장관을 급히 美國으로 보내 김형욱의 聽聞會 출석을 저지하라는 指示를 직접 내린 바 있고

- 윤일균 前 中情 해외담당 次長도 “78.12월 朴대통령이 자신에게 直接 電話를 걸어 급히 訪美하여 김형욱의 회고록 출간을 저지토록 하라는 指示를 내렸다”고 진술한 바 있음

- 박정희 前 대통령이 김형욱의 朴정권 비난 활동에 대해 분개하고, 김형욱의 美 下院 청문회 출석 및 회고록 출간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분명하나
- 朴대통령이 직접 김재규 中情部長에게 김형욱 殺害를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

3. 殺害 準備

가. 殺害 가담자 물색

- 김재규 部長의 직접 지시를 받은 이상열 公使는 79.9월경 김형욱 납치 및 살해 임무를 研修生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 신현진 등 당시 파리 연수중이던 中情 연수생 5~6명을 자택으로 초대하여 대화 도중 “요즘 젊은이들은 패기가 없어 문제다”라는 등으로 질책, 젊은 연수생들의 正義感을 부추기면서 반응을 타진
 - 研修生들에게 ‘파리주재 北韓 통상대표부의 현황과 실태 등에 대한 관찰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여, 同 내용을 검토하면서 개개인의 적극성·과단성 등 資質을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신현진, 이만수 등 2명을 適任者로 선정
 - 79.9월경 이상열 公使는 신현진과 이만수를 파리 시내 未詳 카페로 불러
 - “김형욱이 곧 파리에 온다. 中情部長을 지낸 사람이 거액의 外貨를 빼돌려 카지노 등에서 탕진하고 있으며, 국가기밀을 마구 폭로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그냥 뒤흔어 안된다”라고 하면서
 - 상부의 指示로 김형욱을 처치해야 한다는 점을 은연중 암시하고, 신현진과 이만수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指示
- * 당시 中情 職員들은 김형욱을 국가를 배신한 逆賊으로 인식

- 79.9월 하순 이상열 公使는 파리 상젤리제 거리의 ‘푸께’ 카페로 신현진을 별도 호출
 - “자네에게 부여할 任務가 있다. 일단 任務를 전달받고 나면 자네에게는 選擇의 여지가 없다. 이 일은 자네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 “김재규 部長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자네가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임무를 부여
- 신현진은 임무 내용을 直感하고 “어려움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김형욱이죠”라고 反問하자, 이상열 公使가 고개를 끄덕여 확인
- 신현진은 이상열 公使에게 “보내겠습니다(처치하겠다는 의미로 사용). 그대신 모든 것은 나의 主導로 하겠습니다”라며 김형욱 殺害를 자신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표명
 - * 신현진은 당시 中情 연수생들이 어렵게 생활하던 상황에서 中情部長을 지낸 사람이 거액의 外貨를 빼돌려 카지노에서 하룻밤에 수십만불을 날리고, 개인 영달을 위해 국가기밀을 무차별 폭로한다는 등의 얘기를 듣고 극도의 증오심을 갖게 되어 적극 실행할 것을 결심했다고 진술

나. 殺害 計劃 수립

- 신현진은 김형욱을 殺害하기 위해
 -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제3국인 친구 2명에게 사건을 請負기로 하고, 同人들을 접촉하면서 美貨 10만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殺害를 의뢰, 승낙을 받고
 - 2~3천평 규모의 파리 근교 ‘샤또’ (農園이 딸린 옛날 城)를 빌려 김형욱을 납치·살해한 후 ‘샤또’내 적당한 곳에 땅을 깊이 파고 매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등 구체적인 方法을 제시하며, ‘샤또’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3천 프랑을 제공(실제 김형욱 살해 당시까지 ‘샤또’를 임차한 바는 없었음)
- 또한, 신현진은 평소 氣質이 맞아 친근하게 지내던 후배 研修生 이만수가 임무 수행시 보조역할을 맡기로 한 후 상기 제3국인 친구 2명을 이만수와 함께 수차 접촉, 상호 친분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 파리 시내 소재 ‘바놀레’ 벵룩시장에서 김형욱 殺害에 사용할 칼과 노끈 등을 구입하고
- 79.9월말경 이상열 公使를 다시 접촉, 임무수행에 필요하다며 美貨 10만불과 권총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살해 준비를 진행

4. 殺害 過程

가. 殺害 機會 포착

- 79.10.7 오후 늦게 신현진은 이상열 公使로부터 급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이상열 公使 집에 도착하자, 이상열 公使가
 - “김형욱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電話가 왔는데 돈이 없다고 거절하려다가 오히려 좋은 機會라는 생각이 들어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하여 만나기로 하였다”며
 - “2시간뒤 샹젤리제 거리로 김형욱이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이 좋은 機會다. 오늘 처치해야 하니 이만수와 일꾼들을 불러라”라고 指示
 - * 김형욱 妻 신영순은 김형욱이 79.10.1 파리 방문시 이상열 公使를 믿고 혼자 갔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이상열 公使는 김형욱이 殺害되기 전에 김형욱과 함께 파리 시내 카페 및 카지노 등지를 동행한 사실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김형욱과 이상열 公使는 상당 수준의 신뢰가 형성된 관계로 평가
- 신현진은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 제3국인 친구 2명과 이만수에게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리도 劇場’ 앞으로 급히 나오도록 연락한 후
 - 이상열 公使를 조수석에 태운 채 자신이 이상열 公使 관용차(푸조 604)를 직접 운전하여 ‘리도 劇場’ 앞에서 제3국인 친구 2명과 이만수를 접촉, 同人들에게 김형욱 살해 계획을 설명하였으며
 - 이만수에게는 美貨 10만불이 든 가방을 갖고 개선문 근처의 ‘콩코드 라파예트’ 호텔 바에서 대기하도록 지시

- 신현진은 이만수를 먼저 보낸후
 - 조수석에 이상열 公使, 뒷좌석에 제3국인 친구 2명을 태우고 ‘리도 劇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김형욱과의 약속 장소로 운전해 가던 중
 - 차내에서 이상열 公使로부터 미리 받아 지니고 있던 소음 권총 1정과 독침 가운데 권총만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제3국인 친구에게 제공

-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김형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 이상열 公使가 차에서 내려 김형욱에게 인사를 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제가 아끼는 中情 연수생이고, 뒷좌석의 두사람은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한 錢主들입니다”라고 설명한 후
 - “이 분들과 어디 가까운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저는 저녁 약속이 있어 그냥 가보겠습니다”라면서 김형욱을 승용차 조수석에 앉게 하고, 자신은 현장을 離脫

- 김형욱은 상술한 바와 같이 카지노 도박 자금을 빌릴 목적으로 연수생 신현진이 운전하는 이상열 公使 관용차 조수석에 앉아, 뒷좌석의 제3국인 2명과 돈 빌리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카페로 가는 줄 알고 함께 출발
 - * 신현진은 김형욱이 카지노에서 며칠간 밤을 새웠는지 초췌한 얼굴로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상태였으며, ‘알콜 중독자’ 같은 느낌이 들어 “어찌 이런 자가 中情部長을 지냈나”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

- 김형욱의 파리 유인과 관련, 79.10.1 김형욱이 婦人 등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파리로 떠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未詳 연예인의 유혹설, 회고록 출간 포기 대가 수령설 등이 있으며
- 김재규 中情部長과 이용운 前 해군 참모총장(김재규 部長과 김형욱 사이에서 회고록 출간 중지협상 중재)이 관련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이 모두 死亡했기 때문에 이상열 公使 등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

나. 殺害 결행 및 死體 처리

- 신현진이 이상열 公使 차량에 김형욱을 태운 시각은 어느 정도 날이 저물어 전조등을 켜었을 때이며
 - 신현진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제3국인 친구들이 指示하는 대로 개선문 앞 로터리를 우측으로 돌아 市 외곽 순환도로로 향하던중
 - 김형욱 뒷좌석에 앉아 있던 제3국인 친구가 갑자기 김형욱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 실신케 함
- 이어 승용차는 파리 시내를 離脫, 교외로 이동하였으며, 길가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작은 마을을 지나 인적이 드물고 작은 숲이 내리막 方向으로 이어진 장소에 도착하여
 - 제3국인 친구 2명이 차에서 내려 조수석에 실신해 있는 김형욱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끌어내려 도로 우측 숲속으로 끌고 내려간 후 약 30분쯤 지나 돌아왔으며
 - 제3국인 친구 2명은 신현진이 U턴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에 탑승하여 김형욱이 입고 있던 바바리 코트에 여권·지갑·시계 등의 소지품을 싸서, 벨트로 묶어 건네주면서
 - 도로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김형욱의 머리에 권총을 쏘아 죽였으며, 시체는 땅을 파지 않은 채 두껍게 쌓여있는 낙엽으로 덮어 버렸다고 報告
- 당시 신현진은 제3국인들이 김형욱을 殺害한 후 권총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신속한 현장 離脫을 위해 권총 회수를 포기하였으며, 死體도 계속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낙엽들에 의해 두껍게 덮여질 것이라고 생각
 - 殺害 당시 총성은 들리지 않았으나(소음권총), 제3국인들은 권총 실탄 7발을 모두 쏘았다고 언급하였으며, 신현진은 이들에게 佛語로 “잘 했어”라고 격려하고 이만수가 기다리고 있던 장소로 이동
 - 이만수로부터 美貨 10만불이 든 가방을 받아 제3국인 친구 2명에게 전달하면서, “내일 중으로 프랑스를 떠나라”고 지시

- 상기 김형욱 殺害 計劃 수립 및 살해과정 부분은 全적으로 신현진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여타 가담자인 이상열, 이일만, 이만수의 陳述을 통해 신현진 진술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신현진이 진술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을 補完할 필요
- ※ 신현진은 최초 면담시 김형욱 살해후 이만수가 이태리 밀라노로 가서 제3국인 2명을 만나 美貨 10만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만수가 밀라노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실을 2차 면담시 지적하자 진술을 반복한 바 있음
- 특히, 신현진이 死體 遺棄 장소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

5. 事後 措置 및 報告

- 신현진은 제3국인 친구들을 보낸 후 곧바로 이상열 公使 집으로 가서 이 公使에게 임무 수행 결과를 報告하였으며
 - 이상열 公使는 “수고했다”며, 여권과 지갑은 자신(이상열)이 넘겨받고 다른 소지품들은 “철저히 인멸한 후 즉시 파리를 떠나 歸國하라”고 지시
- 신현진은 이상열 公使 집을 나와 자신의 宿所로 돌아오는 길에 김형욱의 시계는 세느江에 던져 버렸으며, 宿所로 돌아와서 바바리 코트와 벨트는 가위로 잘게 찢어 자신이 以前에 살던 하숙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림
 - * 同 쓰레기통은 매일 청소차가 수거해 가며, 내용물은 形體도 알아볼 수 없이 분쇄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
- 한편, 신현진은 이만수에게 즉시 파리를 떠나 귀국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事件직후 프랑스를 떠나면 오히려 주변 친구 등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것 같아 事件 發生 3일 후에 귀국하였으며
 - 出國前 이상열 公使는 “그림(살해 경과)에 대해서는 ‘신’ 군한테 들으십시오”라는 내용의 밀봉되지 않은 書信을 김재규 部長에게 전달하라고 지시

- 신현진은 귀국후 79.10.13경 김재규 部長에게 김형욱 처리결과를 보고했으며, 김재규 部長은 同 보고를 받자
 - “수고했어. 잘했어. 우리가 그런 놈을 그냥 놔두면 우리 組織은 뭐하는 곳이야” 라고 격려하였으며
 - 신현진이 殺害에 사용한 권총을 분실하였다고 보고하자, 김재규 部長은 “괜찮아. 소련製 권총이니 발견되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면서, 현금 300만원과 2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2개씩 주었으며, 그중 1개씩은 나중에 이만수에게 전달

- 이어 김재규 部長은 신현진에게
 - “근무하고 싶은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 “저는 이미 해외담당국 구주과로 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없습니다”라고 하자
 - “그러면 政策研究室에서 근무하면 어떨겠나. 내 직속기관이야”라고 하며, 즉석에서 비서실장을 불러 “‘신’ 군을 政策研究室로 발령내라”고 지시한 후
 - “집은 어디야”라고 물어 “여동생 집에서 다닙니다”라고 하자, “앞으로 장가도 가야하고 집이 하나 있어야 되겠군. 新婚 살림을 하려면 한 4~50坪 정도면 안되겠나”라고 하면서
 - “집을 알아보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이리로 전화해. 내 秘書가 받으면 ‘신’ 군이라고 얘기하고, ‘部長님과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내가 알고 있는 ‘신’ 군은 자네밖에 없어”라고 언급

- 한편, 연수생 이만수도 사건 직후 歸國하여 김일곤 次長補에게 殺害 결과를 보고하고, 김 次長補로부터 액수 미상의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으며, 신현진으로부터 김재규 部長이 준 돈도 전해 받았다고 진술

Ⅳ 結論 및 意見

- 금번 중간 조사결과 발표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調査를 통해 구체화시켜 나가겠으며
 - 이를 위해 사건 가담자들로 확인된 이상열, 신현진, 이만수 등을 계속 설득하여 死體 遺棄 장소를 파악할 계획이며
 - 특히 김형욱 前 中情部長의 유골을 수습하여 遺家族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同 사건의 완전한 眞實 糾明을 위해서는 殺害 지시 수령, 가담자 물색 및 모의, 권총·독침 등 사전 준비, 사후 처리, 사건전후 일시 귀국 김재규 部長에게 보고 등 사건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을 이상열 公使의 진솔한 고백을 기대함. 끝.

KAL858기 폭파사건 발표문

I 概 要

1. 사건 내용

- 1987.11.29 밤10:40분 대한항공은
 - 1987.11.28 23:27분(한국시간 11.29 05:27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아부다비를 경유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 등 115명 탑승), 태국 방콕을 거쳐 서울로 향하던 KAL858기(보잉707기)가
 - 미얀마 현지 시간으로 1987.11.29 11:31분(한국 시간 14:01분) 비행 위치 통보 지점(Urdis, 북위 14도 45분, 동경 95도 38분)에서 미얀마 지상 관제탑에 위치를 보고한 후 행방불명됐다고 발표
 - * 교신내용은 비행고도 37,000FT, 바깥 온도 영하 46℃, 바람 속도 15~20 Kts, Tavoy 도착 예정 시간 05:22UTC(한국시간 14:22) 등이며 항공기 결함 상태 보고는 없었음
- 사건 직후 정부와 대한항공은 동 비행기가 테러에 의해 공중 폭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 UAE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린 15명의 외국인 탑승자 명단을 확인, 이 중 일본인으로 보이는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추적하게 되었고
 - 1987.12.1 바레인 당국이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받던 이들을 연행, 조사하던 중 이들이 갑자기 음독자살을 기도함으로써 용의점이 더욱 짙어지게 되었으며
 - * '하치야 신이치'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하치야 마유미'는 생존

- 1987.12.13 KAL858기가 실종된 지 15일 만에 미얀마 안다만 해상에서 구명보트가 발견되었고, 1987.12.15 ‘하치야 마유미’를 비행기 폭파 용의자로 국내로 압송하였음
- 1987.12.19 교통부는 인양된 구명보트 잔해를 근거로 ‘실종된 KAL기가 벵골만 상공에서 공중 폭발해 승객과 승무원 115명 전원 사망’ 한 것으로 발표하였음
- 同 사건에 대해 1988.1.15 국가안전기획부는
 - ‘88서울올림픽 참가신청 방해를 위해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하라’는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은 북괴 공작원에 의해 자행된 가공할 만행임이 드러났으며
 - 이번 사건의 범인은 그동안 각각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라는 이름으로 일본인을 가장했던 북괴 노동당 소속 대남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로 밝혀졌고
 - 이들은 여행자 휴대용품으로 라디오 시한폭탄(콤포지션C4)과 약주병으로 위장한 액체 폭발물(PLX)을 9시간 뒤에 폭발하도록 조작한 뒤, 바그다드에서 탑승한 KAL858기의 선반 위에 놓은 채 중간기착지인 아부다비에서 내림으로써 同 비행기를 폭파 시켰다고 발표
 - * 김현희는 1989.2.3 기소되었으며 1990.3.27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후, 1990.4.12 ‘역사의 산증인’으로 살려두기 위해 특별사면 되었음
- 그러나 북한의 범행 부인과 ‘남한의 자작극’이라는 주장, 일본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 그리고 수사발표 내용의 일부 오류 등을 근거로 국내 반미청년회 등

일부 운동권과 사회단체에서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이에 대해 國家情報院(이하 국정원)은 ‘현지 확인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현희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결과를 발표해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으나 사건의 본질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음

2. 의혹사항

- 13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 발생한「KAL858기 폭파사건」은 사건 발생 시점과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김현희 (당시 ‘마유미’)의 국내 압송 시점이, 당시 집권당 후보였던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에 극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으로 인해 사건 초기부터 안기부의 공작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으며
 - 1987년 11월 29일 KAL858기 실종 이후 시신, 블랙박스 등 물론 동체 잔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다만 김현희 압송 시점 즈음인 12월 13일 구명 보트만 발견되었음에도 ‘KAL858기 폭파’가 기정사실화 됐고, 同 보트의 폭발 흔적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부합 하지 않았던 점
 - 안기부의 수사 발표 내용 중, 김현희 어린 시절의 화동(花童) 사진, 김현희 부모로 발표된 김원석의 앙골라 근무 경력, 폭탄의 실재 여부와 폭발력, 자필 맹세문의 표현상의 혼동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론 등으로 김현희 신원과 사고의 실체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 수사 발표시 공개됐던 김현희 자필 진술서 내용 중 김현희, 김승일의 바레인 행과 체류 행적 그리고 체포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점
 - 북한의 ‘남한 정권 자작자연극(自作自演劇)’ 주장과 ‘북한이 자신의 고립을 왜 자초하려 하겠는가?’ 라는 주장 등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며
 - 이에 대해 당시 수사기관이었던 안기부의 합리적인 해명 없이, 김현희 재판과 특별사면이 논란 속에 진행되고, 관계 당국의 고압적인 대응이 지속되면서

탑승객 유족과 다수 시민단체에 의해 안기부의 사건 공작설이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 왔음

Ⅱ 調査 内容

1. 자료 조사

가. 공개 자료 : 28種 8,200여쪽, 방송물 9편

- 단행본, 가족회와 시민단체 자료 등 관련 책자 18권 7,400여 쪽, 月·週刊誌, 신문 500여 쪽, 유사 항공 사건 사고조사보고서 300여쪽, 한국과 일본에서 방송된 사건 의혹 제기 방송물 9편 등

나. 국정원 보유 자료 : 문서 419건 130,000여 쪽, 증거물 144건, 사진 2천여 매, 비디오 테잎 73권

- 국정원이 보관 중인 각종 사건 수사 관련 문건(보고서, 전문 등)과 유관 자료 (김현희 관리, 망명자, 탈북자, 적군파, 남북비밀접촉 자료 등)등의 문서와 김승일, 김현희 소지품과 구명보트 등 증거물과 영상 자료

다. 他 기관 보유 자료 : 13,900여쪽

- 법무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국가기록원, 대한항공의 사건 관련 문건 13,900여 쪽

2. 관련자 면담 : 총 93 명

가. 사건 당시 안기부 직원 : 5명

- 당시 수사지휘 책임자(바레인 출장 김현희 압송), 1987~1992 김현희 관리 수사관, 쿠웨이트 파견관(김현희, 김승일 추적 지시), 이라크 파견관(폭발물 탑재 상황 파악), 말레이시아 파견관(적군파 관련)

나. 사건 당시 외무부 직원 : 10명

- 장관, 사고 대책반 반장, 현지 조사단 단장, 駐버마 대사, 駐UAE 대사대리, 駐바레인 대사대리, 태국 공사, 태국 참사관(유선 면담) 駐홍콩 총영사(유선 면담), 駐일본대사관 정무과장(유선면담)

다. 사건 당시 교통부 직원 4 명

- 항공국장(유선면담), 운항계장(태국 출장/유선면담) 검사과장(태국 출장), 사고조사보고서 작성자, 사고대책반 근무자 (유선면담)

라. 당시 대한항공 직원 : 8 명

- 사고대책본부장, 방콕 사고대책본부장, 조○○ 회장 비서, 아부다비 지점 지사장, 아부다비 지점 여객 담당 직원, 아부다비 지점 승무원 담당 직원, 중간 탑승 승무원 2명(김승일, 김현희 접촉)

마 : 해외 면담자 : 총 15명

- 일본 : 「파괴공작」저자 노다 미네오 등 6명

- 태국 : 방콕 한국 식당 <코리아 하우스> 사장 등 4명
- 미얀마 : 당시 민항국 관제과장, 수색 지역 군사령관 등 5명

바. 기타 51명(유가족, 사고조사 전문가, 사건 보도 기자, 의혹 제기자, 동체목격자 등 / 유선 면담 포함)

3. 전문기관 감정, 자문

- 국방과학연구소(폭탄 관련 2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필체, 사진, 음독 상황 감정 3건), 대한항공(90.3 수거 잔해 부위 파악 1건)

4. 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수색

- 진실위는 KAL858기 동체 잔해를 찾기 위해 2006.5.7~16 및 2006. 10.10~21 등 두 차례에 걸쳐 미얀마 양곤 동남방 약 300km 지점에 위치한 무인도 Heinze Bok 群島 주변 해저를 수색했으나 동체 발견에 실패

Ⅲ 調査 結果

1. 주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가. 안기부 및 제3국의 사전 인지 또는 공작 여부

1) 안기부 사전 인지 또는 공작 여부

‘KAL858기의 중간 경유·최종 탑승객의 신원과 숫자’, ‘아부다비와 바레인에서의 김승일·김현희 추적 과정’, ‘사건 직후 언론보도 내용과 취재 경위’, ‘김현희·김승일의 음독 상황’, ‘兩人的 바레인 행적’, ‘兩人的 소지품’, ‘이경우(李京雨)와 진짜 하치야 신이치의 신원과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의혹들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보부족과 오해, 북한과 일부 일본 언론의 근거없는 주장, 안기부의 미흡한 수사와 후속 조치, 언론의 오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라는 판단이며

다만 김현희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兩人的 바레인 행적’ 중 87.11.29 동경으로부터 걸려온 2통의 전화, 바레인에서의 장기간의 체류 등 일부 행적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측면은 있으나

‘안기부가 KAL858기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사건을 기획또는 공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임

2) 제3국의 사전 인지 또는 공작 여부

‘1987.11.29 두 차례에 걸쳐 Mr.하치야를 찾은 동경에서 걸려온 전화의 발신자 신원’, ‘〈파괴공작〉에서 제기한 미·일 정부의 김승일·김현희 행적 사전 파악 주장’, ‘북한 고위 인사의 망명을 전제로 한 KAL858기 테러 제보’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기된 의혹들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김승일과 김현희의 폭탄테러 계획 또는 이를 위한 행적을 제3국이 사전에 알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북한 고위인사가 망명을 전제로 KAL기 폭탄테러 계획을 제보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됨

‘1987.11.29 두 통의 Mr.하치야를 찾은 동경발 전화의 발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발신자가 김승일·김현희의 배후세력이었는지, 사건을 사전 인지한 제3의 세력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사건 당시 同伴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가 미흡했던 이유 또한 파악하지 못했음

나. 김현희·김승일의 북한 출신 여부 및 행적 관련 의혹

‘1988.1.15 안기부 수사발표문과 김현희 기자회견 그리고 김현희가 사면받은 뒤인 1991.6 출간된 「김현희 고백록」의 내용’과 ‘김승일의 신원과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록 김현희와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들의 신원과 행적 관련 내용들은 관련국들의 보고서 등 다수의 객관적 문건들로 입증되었음

김현희는 1972.11.2 남북조절위원회 한국대표단의 평양 방문시 평양 헬기장에 화동소녀로 현장에 있었고, 북한 공무여권으로 1987.11.13 모스크바에서 부다페스트로 입국했던 점 등의 사실과 신문(諷聞) 과정에서의 각종 진술내용 등으로 볼 때, 북한 공작원이라는 판단이며

김승일은 1950년대 이후 남한이나 일본에 입적하지 않았던 인물로, ‘하치야 신이치’ 명의 위조여권으로 1984.9.21~26간 남한을 입·출국한 점, 김현희와 함께 북한 공무여권으로 1987.11.13 모스크바에서 부다페스트에 입국한 점, 그리고 청산가스 독약 앰플로 자살한 점 등의 사실을 볼 때, 역시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판단임

다. 김현희·김승일의 폭파 범행 여부

KAL858기의 실종 원인은 실종 직전 사고기의 운항 상황, 기상 상태, 비상 신호가 없었던 점, 납치일 경우 협상 시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 잔해의 발견 상태, 여타 항공기 사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갑작스런 ‘공중폭발로 인한 추락’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며

‘공중폭발로 인한 추락’의 원인으로는 ‘기체결함’ 또는 ‘폭탄테러’를 추정할 수 있으나

북한 공작원으로 판단되는 김승일의 자살과 시한폭탄으로 사용됐다는 라디오의 운반, 검색, 반입에 대한 김현희의 진술이 사실과 상당히 부합되는 점 등을 볼 때, ‘폭탄 테러’를 1차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을 무리가 없다는 판단임

다만 잔해 수거를 통한 동체 재구성이나 블랙박스 판독을 통해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 아니라는 점, 사용된 폭약의 양이 수사 발표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KAL858기가 1987년 9월과 197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동체착륙을 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탄 테러 뒤 기체 일부의 결함과 같은 또 다른 원인이 작용하여 교신·조종능력 상실이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임

라. 폭약의 종류와 양

1988.1.15 수사 발표시 제시되었던 ‘콤포지션 C4 350g과 액체폭약 PLX(Picatinny Liquid Explosive) 700cc’라는 폭약의 이름과 양은, ‘폭탄을 라디오와 양주병으로 위장했다’는 김현희의 진술을 근거로 당시 안기부가 임의로 추정한 것임을 확인하였음

액체폭약으로 사용됐다는 ‘약주병 혹은 물약병의 반입’에 대해서는 김현희 진술만 있을 뿐 이를 확인해 주는 문건을 없음

김승일과 김현희 소지품에서 TNT 성분이 발견된 점과 KAL858기가 라디오 안에 은닉된 폭약과 약주병으로 위장한 액체폭약에 의해 폭탄 테러 되었다는 김현희의 진술을 고려할 때

사용된 폭약은 화합물 폭약(콤포지션 계열)일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물로 제시됐던 ‘Panasonic RF-082’ 라디오의 크기와 ‘정상작동이 됐다는 김현희와 검색 담당자의 증언’, 폭탄 전문가들의 자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용된 폭약의 양은 수사 발표된 양(350g)보다 적은 양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함

마. 잔해 수색 문제

1) 수색 활동의 적절성 여부

정확한 최종 교신지점과 시간, 추락 추정지점인 안다만해에 대한 수색 상황, 사고 초기 정부 조사단의 태국-버마 국경 수색 경위, 블랙박스 수색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1987.12.13 KAL858기의 내장품이었던 구멍보트가 발견돼 수색을 중단하기 전까지, 정부와 대한항공 그리고 태국과 버마 정부의 수색 활동은 나름대로 성심껏 진행됐다고 판단되나

열악한 수색 장비, 전문성의 부족 그리고 버마의 특수성(폐쇄성, 종족 갈등) 등으로 인해 수색 활동이 충분하게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수색 활동이 주로 인명 구조에 집중되었고, 사고의 원인이 '북한의 폭탄 테러'로 신속하게 규정됨에 따라, 동체 잔해와 블랙박스 등의 인양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판단됨

사건 초기 언론의 오보와 수색 활동 관련기관과 정부 부처가 유가족 등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혹의 발생과 확산을 자초한 측면이 있으나 수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숨기거나 조작하기 위한 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임

2) 구멍보트 등 발견된 잔해의 진위 여부

대한항공의 장비관리 기록, 잔해 발견 상황과 보도 과정, 잔해조사 문건과 국과수의 잔해 감정 결과 등을 볼 때

1987.12.13 발견된 구멍보트와 1990.2월과 3월 발견된 동체 잔해는 KAL858기의 잔해가 맞으며 특정 시기에 특정 목적을 위해 잔해가 발견되도록 공작을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임

바. 사건의 정치적 이용 여부

1987.11.29 KAL858기가 실종되고, 12.1 김승일·김현희의 위조여권 사용과 음독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同 사건을 북한에 의한 테러로 규정하고, 13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同사건을 활용했음은 확인되나

‘김현희 압송을 위해 바레인 정부에 금품을 제공했다’, ‘가족에게 주어진 돈이 보험금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전날에 맞춰 김현희를 압송해 왔다’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임

사. 재판과정과 사면 이후 관리의 적절성 여부

김현희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1998.11 당시 정부가 ‘KAL기 폭파 만행의 산증인으로서 ‘살려서 활용한다’는 원칙 하에 형확정과 동시 구제 활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음을 확인했고

김현희에 대한 기소 및 판결 시, 당시 이미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내용들 중,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 증거(물증, 진술)로 채택된 바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유가족들로 하여금 더 큰 분노와 사건에 대한 의혹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김현희의 원활한 사면을 위해 화동사진과 동체 잔해증거를 조작했다’, ‘안기부 직원이 김현희와 결혼한 것은 김현희를 평생 감시하기 위해서다’, ‘김현희를 현재 국정원이 보호, 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의혹은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2. 주요 성과와 한계

가. 진실위 조사의 주요 성과

- 1) 사건과 관련된 각 기관(정부, 대한항공, 언론사 등)의 인사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빠짐없이 면담한 것은 KAL858기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래 처음 있었던 일로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서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음
- 2) 관련 기관들의 문건과 관련국 수사·수색보고서, 재판자료 등을 모두 취합해 정리·보관하고,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판단할 수 있었음
- 3) 당시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이 사건 초기 김현희 일행의 추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실을 새로 밝혀내고, 관련 전문가들을 상호 비교해 양인 추적 과정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함으로써 추적과 관련돼 제기됐던 의혹들을 해소하였음
- 4)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함으로써 주요 의혹을 해소하였음
 - 김현희가 중학교 시절 평양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화동(花童)소녀사진과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행적을 증명하는 입국증명서와 당시 북한 공무여권을 사용했다는 전문을 새로 확보해 김현희가 북한 공작원임을 증명할 자료 확보
 - 유럽, 중동, 아프리카 외교관들의 사건 당시 출입국 기록 확인과 1987.11.30 재외공관장 회의 준비 문건을 통해 ‘아부다비 고위 외교관 하기(下機)설’은 근거 없음을 확인
 - * ‘외교관 하기(下機)설’은 북한이 KAL858기 사건을 다룬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남한정부의 사전인지와 공작’ 주장의 핵심근거로 제기한 바 있음
 - 1987, 1988년 태국 파견관의 공작계획 문건과 사건 발생 후 전문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의 사장과 방콕 교민 등에 대한 면담을 통해 ‘코리아 하우스’는 안기부 또는 제3국의 공작거점이 아님을 확인

- 김승일이 사용했던 ‘하치야 신이치’ 위조여권 제작에 관련된 인물인 李京雨가 1983년부터 韓·日 공안기관의 대공 내사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문건과, 1985년 북한에서 사망한 내용을 보고한 안기부 공작원의 보고 문건을 확인함으로써, 李京雨는 친북인물로서 안기부 공작원이 아님을 확인함
- 당시 집권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공작(무지개 공작)을 범정부적으로 시행했으며, 검찰 송치 전 김현희를 ‘살려서 활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는 등 안기부가 ‘KAL기 사건’과 ‘김현희 처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최종 교신은 위치통보지점인 Urdis를 11.29 05:01(세계시간)에 지나고 1분 후인 05:02에 이뤄졌음을, 인도 사고조사보고서와 버마 사고조사보고서 그리고 11.30 외교부의 청와대 보고 문건을 종합 비교해 파악하였음
 - * 기존 공식발표는 11.29 05:01이 최종 교신 시간이었으며, URDIS 도착 이전 최종 교신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 미안마의 사고 후 수색 일지와 당시 수색 참가자의 면담을 통해,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달리 안다만해 예상 항로 하부 수역에 대한 수색이 사고 직후부터 수행됐음을 확인하였음
- 1987.12.13 발견됐던 구명보트의 파손이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불에 탄 것’이거나, ‘외부에서 파편이 관통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1990.3 발견된 동체 잔해들의 해당 부위를 파악하였음

나. 「진실위」 조사의 한계

- 1) 강제적인 조사 권한이 없어 김현희를 면담하지 못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 2) 폭탄양이 수사발표 내용보다 적을 것이라고는 판단되나 여전히 그 양과 종류 그리고 폭파 후 동체 추락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폭탄 테러로 인한 추락’이라고 실종원인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임

- 3) 수색을 진두지휘했던 당시 대한항공 사장이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사고 직후 사태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수색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완결성에 비춰봤을 때 아쉬운 부분임
- 4) 미얀마 현지 주민들과 군·경에 대한 탐문을 통해 KAL858기가 안다만해 Heinze Bok 群島 주변에 추락했고, 同 지점에서 잔해를 목격했다는 증언들을 확보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탐사 하였으나, 동체 확인에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주게 된 것은 크나큰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음

IV 結論 및 意見

1. 사건의 실체

가. KAL858기 실종 경위

- 1987.11.28. 20:27(세계시간, 이하 동일)¹⁾ 바그다드 공항에서 승객 99명과 승무원 12명을 태운 KAL858기(보잉707/HL7406기)는 20:42에 이륙, 동일 22:44에 중간 경유지인 UAE 아부다비에 도착
- 중간 경유 승객 15명(국적-이라크인 7, 팔레스타인인 3, 미국인 2, 서독인 1, 일본인 2)과 승무원 9명이 내리고, 서울행 승객 11명과 승무원 17명 등 총 115명이 탑승 1987.11.29. 00:01 아부다비 이륙
- KAL858기는 운항계획보다 2분 빨리 순항해 안다만해상 위치통보지점인 Tolis 에서 1987.11.29. 04:31 인도 켈커타 관제소, 미얀마 랑군 관제소와 삼각교신, 04:59에 다음 위치통보지점인 Urdis에서 교신키로 랑군 관제소에 통보

1) 바그다드 +3, 아부다비 +4, 양곤 +6:30 방콕 +7, 서울 +9

- 04:59에 KAL858기로부터 교신이 오지 않자 랑군 관제소가 KAL 858기를 호출해 05:02에 교신, KAL858기는 05:01에 Urdis를 지났고 05:22에 다음 위치통보지점인 Tavoy에서 교신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이후 비상 신호도 없이 교신 두절되어 실종

나. 수 색

- 실종 당시 미얀마의 레이더가 작동되지 않아 정확한 실종지점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당일 오후부터 미얀마는 예상비행지역(Urdis-Tavoy)의 해상 및 내륙을 수색하고, 태국은 미얀마와 태국 국경 산악지역인 칸차나부리 지역을 수색 및 탐문
- 11.29 밤부터 칸차나부리 지역 추락 풍문이 돌고, 11.30 아침 지역주민으로부터 추락 목적 신고가 들어와, 同 내용이 외신과 태국 정부를 통해 한국에 알려짐
- 11.29 심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한 정부는 대한항공과 합동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11.30. 07:20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방콕으로 출국
- 정부 조사단은 당시 추락 목적 신고가 들어온 칸차나부리 지역을 집중 수색했으나 발견에 실패, 수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 조사단은 현지 대사관과 대한항공에 수색작업을 인계한 뒤 12.10 철수
 - * 당시 추락목적 제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동 허위제보들은 해당지역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스톰 현상과 태국군의 사격 연습으로 인해 포성이 자주 울리던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착각에 의한 제보였던 것으로 추정됨
- 우리 정부의 수색 협조 요청에 따라 12.10 안다만해를 수색한 미군은 Narcondam 섬 주변에서 부유물을 발견, 한국과 인도, 미얀마가 비행기와 배를 동원 12.14~15간 그 해역을 수색했으나 수거에 실패
- 12.13 미얀마 랑군협동조합 소속 화물선 Dagon 1호가 KAL858기에 탑재돼 있었던 구명보트를 미얀마 남부 연안에서 인양하고 12.15 이 사실이 한국 측에 알려진 뒤, 대한항공과 한국 정부는 12.17 모든 수색을 종료

* 12.1 마유미가 체포된 뒤,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의 수색 작업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폭발, 추락의 증거로서 KAL858기의 부장품을 찾는 것이 주목적이었기에 구명보트 수거 뒤 바로 수색을 종료했다는 판단임

다. 김승일·김현희 추적과 수사

- 1987.11.29 오후(현지시간. 이하 동일) UAE 두바이로 출장을 갔던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은 두바이 공항에서 KAL858기 실종 소식을 듣고, 직무 경험과 기 입수했던 첩보에 근거해 同 사건이 폭탄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아부다비의 한국대사관과 대한항공 지점에 전화를 걸어 중간 경유 승객의 신원 파악을 요청
- 11.29 밤 대한항공 직원과 UAE한국대사관 직원이 아부다비에 내린 KAL858기 중간 경유 승객의 신원과 행적을 파악한 결과 ‘비엔나-베오그라드-바그다드-아부다비’를 거쳐 바레인으로 간 부너지간으로 보이는 ‘신이치’와 ‘마유미’를 발견
- 11.30 오전 UAE한국대사관에 도착한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은 이전 일본에서의 근무 경험으로 ‘신이치’와 ‘마유미’가 일본 이름임을 바로 파악하고, 兩人的 수상한 여정과 함께 입국 금지자 명단에 ‘야카베 마유미’가 등재돼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대사관과 대한항공을 통해 본격적으로 兩人에 대한 추적을 개시
- 11.30 오후 UAE 한국대사관은 UAE 일본대사관을 통해 兩人的 신원 파악을 의뢰하는 한편, KAL바레인 지점은 兩人的 바레인 입국 사실과 Full name, 여권번호, 리젠시 호텔 투숙 사실 등을 파악했고 KAL아부다비 지점은 이들의 이전 행적지 투숙 장소 등을 파악
- 11.30. 21:30분 경 주바레인 한국대사관 대사대리는 兩人的 투숙 호텔 방문, ‘하치야 신이치’와 필담을 나누는 등 거동수상 여부를 확인했으나 특이 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

- 12.1 새벽 일본 정부로부터 ‘하치야 마유미’의 여권이 위조된 것임을 통보받은 주바레인 일본대사관은 바로 리젠시 호텔을 방문해 공항으로 향하는 兩人을 추적, 바레인 마나마 공항 경찰에 兩人의 출국을 제지해 줄 것을 요청, 兩人을 검문하는 도중 공항 로비에서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가 음독. ‘신이치’는 현장에서 사망, ‘마유미’는 응급조치 후 회생, 바레인 수사기관에 체포됨
- ‘마유미’가 일본인이 아님을 확인한 일본은 사고기 등록국이자 최대피해국인 한국의 ‘마유미’인수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바레인 정부는 ‘마유미’를 직접 수사할 경우 발생할 지도 모를 테러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가 제시한 북한 테러 관련 증거 등의 이유로 한국 정부에 ‘마유미’를 인도키로 결정, 바레인 정부 사정으로 인해 두 차례에 걸친 인도 연기 끝에 1987.12.15 한국 정부에 ‘마유미’인도
- 1987.12.23 ‘마유미’는 바레인 수사당국에서의 진술 내용과 국내 압송 직후의 진술내용이 허위였음을 자백하고, 자신의 본명이 ‘김현희’이고 북한공작원으로서 KAL858기 폭탄테러를 감행했다고 진술
- 안기부는 사고 원인과 범행 경위에 대한 초동수사가 미흡했음에도 주로 김현희 진술에 의존해 1988.1.15 수사내용 발표,

2. 결 론

- KAL858기 폭파사건은 1988.1.15 안기부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안기부에 의해 기획된 자작극’이라거나 ‘북한의 테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이에 진실위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온갖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하고자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존안 자료

분석과 관련자 면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하고도 면밀한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음

-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김현희의 진술 외에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만한 증거물이 부족한 데다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음
- 진실위는 이러한 열악한 조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 KAL858기 실종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쿠웨이트, UAE와 바레인에 있던 안기부, 외교부, 대한항공 직원들에 의해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 중 유럽 행적이 특이한 두 金에 대한 추적이 시작되었고
 - ‘기획된 자작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안기부는 두 金이 바레인 공항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한 뒤에 현지에서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으로 개입했음을 확인하였으며
 - 특히 비록 사건의 범인인 김현희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화기와라 료가 1972.11.2 촬영한 화동사진 전량을 입수·분석하여 김현희가 북한 출신임을 확인하였고
 - 이 사건의 배후에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이 있었으며, 그 조직의 공작원인 김승일과 김현희에 의해 자행된 사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근거들을 확인하였음
- 이에 따라 진실위는 이 사건의 실체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며,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안기부의 ‘기획 조작’과 ‘사전 인지’ 의혹 등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 그러나 당시 안기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음에도 김현희 진술에만 의존한 채 검증 없이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음
-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와 안기부는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선거 前에 김현희를 압송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 전국적인 '북괴 만행 규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무부·안기부 등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Task Force'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 김현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구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사면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 한편 국정원은 2003년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여론이 다시 확산되자 2004년 범행 증거 확보와 추락 상황 재점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관련 지역들로 출장을 가는 등 진상 규명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 이러한 국정원의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미안마 안다만해 Heinze Bok 群島內 Taung-Pa-La섬 앞바다 해저에서 KAL858기 동체를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을 청취하게 되었으며
 - 비록 해양탐사 전문가를 동원한 두 차례에 걸친 정밀 탐사에도 불구하고 KAL858기 잔해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KAL858기가 그 해역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들을 확보하게 되었음
 - 그러나 KAL858기 잔해를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실망을 안겨 주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림
- 아울러 김현희가 십여 차례에 걸친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김현희의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의혹들과 함께 비행기 폭파에 사용된 폭발물 등 일부 사항들을 말끔하게 해명하지 못한 것은 진실위에 강제적 조사권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비행기 폭파사건에 따르는 특성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는 아쉬운 점이라 하겠음

3. 의 견

- 진실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KL858기 폭파사건’의 실체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앞으로는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서도 법적 공방 중단과 사건 관련 기록의 조속한 공개 등을 통해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이 종식되어 진정한 국민화합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 또한 진실위는 정부가 김현희를 ‘역사의 산증인’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특별 사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진실위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아울러 진실위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KAL 858기 동체 발견에 실패하였으나 이후에도 관계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동체 잔해 등의 수색 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요청함
- 마지막으로 국정원은 ‘KAL858기 폭파사건’처럼 실체가 명백한 사건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오히려 그 진정성이 훼손되고 사건의 실체에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뼈아픈 교훈으로 새기고 다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활동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반성과 각오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 정보 기관으로서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분발할 것을 촉구함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발표문

I 概 要

1. 사건내용

-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가 1992년 10월 6일 발표한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은
 - 북한이 1995년에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대남 공작기구를 총동원하여 남한내에 북한 공작 현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로당 이후 최대규모의 ‘남한내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는 것으로
 -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이선실은 10여 년 동안 서울에 잠복하면서 북한 직파간첩 10여명으로 남한 내에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과거 남로당과 같은 성격의 남한내 「조선노동당」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실체화시킨 「애국동맹」을 결성하고
 - 「민중당」을 제도권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적 ‘별동대’로 만들어 대선시 반민자당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등 정치적 혼란을 조성한 다음, 1995년에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이룩한다는 전략 하에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며 대담한 대남 적화공작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 안기부는 김낙중 간첩망·손병선 간첩망 및 황인오를 책임자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3개 무전간첩망의 조직원이 400여명이고
 - 그 밖에 현재 실체가 드러나고 있거나 실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인·영남·호남지역당과 정치권 및 재야, 생산현장, 학생운동권, 언론, 출판,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 구축된 ‘간첩망’ 을 포함하면 가담자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 사상 최대규모의 ‘공산혁명 지하당 공작’ 이라고 규정했다.

- 안기부가 김낙중, 손병선, 황인오 각각의 주요 혐의사항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 김낙중은 1955년 6월 자진 월북하여 간첩교육을 받고 남파돼 36년 동안 간첩으로 암약해 오다, 1990년 2월 간첩을 접선하고 ‘제도 정치권에 침투, 합법적인 전위정당을 건설하라’ 는 지령과 함께 공작금 210만 불과 공작 장비를 수수했고
 - 손병선은 이선실에 포섭돼 공작 장비 및 공작금 미화 15만 불과 한화 3,000만원 등을 지급받고 A-3방송을 통해 민중당 활동 등에 대한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 또 황인오는 이선실에 포섭돼 이선실과 함께 강화도 갯벌을 통해 입북하여 간첩교육을 받고 남파된 후, 대외명칭을 ‘민족해방애국전선(이하 민애전)’ 으로 하는 중부지역당을 건설하고, 중부지역당의 강원도당으로 ‘조국통일 애국전선(이하 조애전)’ 과 산하조직으로 애국동맹을 결성했다는 것이었다.

2. 의혹사항

- 안기부가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이 사건을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 사건의 조작 및 사전기획설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 특히, 안기부 간부는 ‘간첩단과 정치인 관련설’ 과 같은 미확인 첩보를 공개하고 발표문에는 ‘북한의 민주당 지지 지령과 민주당 입법보조원의 군사기밀 유출’ 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 그동안 제기된 주요 의혹들은
 - 첫째, 안기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선실’ 이 10여 년간 잠복하면서 ‘이선화’ 와 ‘신순녀’ 란 가명으로 공작활동을 했는가
 - 둘째, 김낙중은 36년간 고정간첩으로서 북한의 지시에 따라 민중당에 참여하여 활동했는가
 - 셋째, 안기부가 A-3방송을 조작했으며, 또 황인오와 손병선이 이용한 일본 연락거점은 실제로 북한에서 운영한 곳인가
 - 넷째, 관련자들이 가입했다고 인정하는 민애전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 명칭인가, 혹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란 실재하지 않는 안기부가 날조한 조직인가
 - 다섯째, 안기부가 사건을 사전에 기획했거나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는가
 - 여섯째, 수사결과로 발표된 내용에 확대·과장된 부분이 있는가
 - 일곱째, 14대 대선에서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점 등이다.

Ⅱ 調査 內容

1. 자료 조사

가. 국정원 보유자료 : 98,000여 쪽

- 수사국에 보관된 각종 수사자료, 내사기록, 보고서, 계획서, 수사백서, 변호인 접견기록, 공판기록들과 MF로 보관된 각종 사건자료들을 분석했다.

- 주요 자료로는 「남파간첩 이선화 행적 및 관련사항 내사결과」, 「남파간첩 이지트 및 행적 내사상황」, 「북송 및 연고자 명단」 등의 보고서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후속 홍보 강화 계획」 등 홍보 관련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들이다.

나. 타기관 보유자료 : 152,200여 쪽

- 국가기록원에서 사건 관련자 61명의 판결문 등 2,000여 쪽, 서울중앙지검에서 각 관련자 사건기록(안기부·검찰 수사 및 공판 기록) 402권 150,000여 쪽, 관련 구치소에서 수용자 신분장 기록 중 입소시 신체검사기록 및 접견기록 200여 쪽을 입수하여 분석했다.
- 또 일본영사증명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선실 사진 감정 의뢰

다. 일반자료 : 1,260여쪽

-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에서 발간한 사건관련 자료집(2권), 각종 언론보도기사(45건),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권두영사건 결정문

2. 관련자 면담

가. 사건 당시 안기부 직원 : 6명

나. 사건 관련자 : 16명

다. 기타 : 당시 변호인 등 6명

Ⅲ 調査 結果

1. 이선실의 실제 및 활동에 대해

- 당시 안기부는 ‘민중당’ 등에 출입한 ‘이선화’와 황인오를 데리고 월북한 ‘할머니 공작원’이 북한 공작원 이선실이며, 실제 본명은 이화선으로 제주 출신이고 ‘신순녀’란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발표했다.
 - 하지만 민중당 관련자들이나 황인오 조차 ‘이선실’이란 이름을 알지 못했고, 당시 10여 년 동안 서울에서 재야단체 등을 출입하며 공개적으로 활동한 이선실의 실체를 안기부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선실이 실재하는 인물인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 그러나 당시 안기부가 이선실의 신원을 파악한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선화, 신순녀, 이화선 그리고 황인오와 입북한 할머니는 모두 이선실로 확인되었다.
 - 이선실은 월북한 제주 출신 ‘이화선’으로, 1973년 경 일본으로 침투하여 북송된 전북 완주 출신 ‘신순녀’의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한 후
 - 1980년 4월 ‘신순녀’란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이선화’와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 1990년 경 황인오와 손병선을 포섭하고, 1991년 10월 17일 황인오와 함께 강화도 갯벌을 통해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김낙중 사건에 대해

- ‘김낙중이 1955년 6월 자진 월북하여 간첩교육을 받고 남파돼 36년간 고정 간첩으로 암약해 왔고 북한의 지시로 민중당에 참여해 활동했다’는 안기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 안기부는 발표에서 ‘김낙중이 간첩으로 남파된 후 1961년 안행협을 월북시키고 1973년 정부전복을 음모하는 등 북한의 지령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으나

- 1957년과 1963년 사건 당시에는 김낙중이 ‘북한의 간첩으로 남파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고
 - 1973년 사건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김낙중이 1957년 이후 ‘장기매복 해 온 간첩’이라는 점을 판결문 모두사실에 밝혔으나, 관련자들은 유신체제라는 초헌법적 상황에서 중정의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따라서 김낙중이 월북했던 때로부터 무려 16년이 지난 1973년 사건 당시의 수사결과와 판결내용을 별도 조사 없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설령 사건 당시의 수사결과와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973년 사건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완료된 이후부터 1990년 김낙중이 북한공작원을 접촉한 시점까지 사이에, 김낙중이 북경사회과학원 이·문교수를 통해 자신의 저서 『굽이치는 임진강』을 북한에 전달하고자 한 사실은 있으나, 간첩활동으로 볼 만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 김낙중이 1990년에 공작원을 접선하고 공작금 210만 불과 공작장비를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36년 동안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는 당시 안기부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 또한 김낙중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민중당 참여를 요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중당 관련자 등 주변으로부터도 같은 요구를 받았다는 점에서 김낙중의 민중당 활동이 전적으로 북한의 지시에 의한 지령 수행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손병선 관련 발표 내용에 대해

- 손병선과 황인오가 각각 비밀조직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본의 연락거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안기부가 일본 연락거점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 돼 왔고, 손○영이 지령전문 해독방법을 진술하기 전에 안기부가 이미 해독했다는 점에서 ‘A-3방송을 안기부가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 연락거점 및 A-3방송과 관련된 의혹은 황인오 및 이선실과 관련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 그러나 일본 연락거점을 운용했던 재일동포 이○효가 황인오와 손병선의 대북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일본 연락거점을 이용했던 손병선, 황인오, 손○영도 관련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이를 부정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
 - 따라서 손병선과 황인오가 이용한 일본 연락거점은 실제로 북한이 운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당시 안기부는 손병선과 황인오로부터 암호 해독체계와 장비 등을 확보한 후 지령전문을 해독했고, 실제로 손병선, 손○영, 황인오 등이 A-3방송을 통해 북한과 통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A-3방송과 관련된 당시 안기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의혹제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서, 공판시의 진술, 관련 증거, 진실위 면담 등을 종합할 때, 황인오와 최호경 등은 대외 명칭을 ‘민애전’으로 하는 중부지역당을 결성하고 강원도당으로 ‘조애전’을 조직했으며 산하조직으로 ‘95년위원회’를 재편한 ‘애국동맹’을 두었다는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 황인오는 1990년 10월 17일 이선실, 김동식 등과 입북하여 북한으로부터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당’을 조직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내로 돌아와, 1991년 5월경 예전부터 알고 있던 최호경에게 함께 활동할 것을 제의했다.
 - 최호경은 1990년 12월경 이미 ‘95년위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한민전’의 직접 지도를 받기 위해 변○숙을 월북시킨 바 있다. 황인오의 제의를 받은 최호경은 황인오가 변○숙의 입북활동 결과 북으로부터 파견되어 이제 95년 위원회가 ‘한민전의 지도를 받게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황인오를 책임자로 하는 중부지역당의 결성 준비에 착수했다.
 - 황인오와 최호경은 한민전의 강령을 수정하여 필요한 강령과 규약을 만들었고 정○수와 은○형을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시킨 후, 1991년 7월말경 황인오,

최호경, 정○수, 은○형을 중앙위원으로 하는 중부지역당을 결성했다. '민애전'이란 명칭은 이 자리에서 정○수의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 중부지역당을 결성한 후, 1991년 10월경 황인오는 민애전의 중앙위원 은○형과 정○수를 해임하고 장○호를 새로운 중앙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새로운 조직원을 확보하고 '조애전'을 명칭으로 하는 강원도당을 결성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 그러나 황인오의 지도력에 대한 최호경의 불신이 고조되어 가던 가운데, 1992년 5월경 중부지역당 편집부원이 선전문건을 인쇄하다 적발된 '나라 기획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최호경은 비상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총책 황인오를 해임하고, 중앙위원회의 나머지 성원인 최호경과 장○호의 처리는 중앙당에 위임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민애전 중앙위원회를 해산하고 북한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 검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95년위원회'는 최호경이 한민전의 지도를 받는 노동자계급 주도의 정치투쟁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90년 1월경 결성하기 시작한 조직으로, 명칭은 '19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하자'는 '김일성의 교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그런데 황인오와 함께 활동하기로 결정한 최호경은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95년위원회'의 지휘권을 황인오에게 인계하면서 '95년위원회'를 당적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성에 따라 '애국동맹'으로 전환했다.
 - 황인오와 최호경은 '95년위원회'와 '애국동맹'에 관련된 북한의 지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으며, 애국동맹 구성원들에게는 민애전의 각종 유인물 배포, 북한에 보낼 정성금 모금과 축하편지 작성, 일본 연락거점 연락원 등의 임무를 실행하도록 했다.
- 다만, 비합법 비밀조직이었던 95년위원회 또는 애국동맹의 하부 구성원들은 최호경이 황인오에게 95년위원회의 지휘권을 인계한 사실, 95년위원회가 애국동맹으로 전환된 사실, 중부지역당과 애국동맹의 조직적 관계들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 결국 중부지역당과 95년위원회 또는 애국동맹의 지휘관계는 주로 황인오와 최호경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서

- 비합법 비밀조직의 특성상 북과 직접 연결된 중부지역당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남한 내의 자생적 운동조직인 95년위원회 또는 애국동맹의 다수 구성원들의 활동은 중부지역당을 주도적으로 조직한 지도부의 활동과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5. 수사과정에 대해

- 안기부가 전체 사건에 대한 단서를 미리 입수하고도 수사 착수시기를 임의적으로 조절했거나 사건을 사전 기획했다는 일부 세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각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 및 단서들을 검토해 본 결과, 김낙중 사건은 1992년 8월 21일 귀순한 은하수의 진술, 중부지역당 사건은 김낙중과 정○환의 진술, 손병선 사건은 황인오의 진술로 단서가 포착돼 검거되었다.
- 당시 안기부는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 접견을 상당한 수준에서 제한·통제했으며 허용한 변호인 접견에서 조차 비밀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 또 실질적으로는 긴급구속을 하고도 ‘인지보고서’에 ‘임의동행’으로 기재하고 구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긴급구속 된 날이 아닌 영장 집행일을 기산일로 삼아, 약 이틀간 피의자로서의 권리보장이 힘든 상태를 유발시켰다.
 - 수사과정에서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은 없었지만 일부 구타, 잠안재우기, 벌세우기, 인격모욕, 고문협박 등 여러 형태의 육체적, 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졌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6. 확대·과장 발표 문제에 대해

- 당시 안기부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 이선실이 직과 간첩 10여 명으로 ‘현지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김낙중망, 손병선 망, 황인오 간첩망의 중부지역당을 중심으로 한 ‘남한내 「조선노동당」을 결성’ 했다고 발표했고,

- 그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도 ‘조직원이 400여 명’ 이고 ‘남한조선노동당은 중부, 경인, 영남, 호남 지역당으로 구성’ 되었다고 발표했는데,
 - 이는 서로 조직적인 관련이 없는 3개의 사건을 ‘단일 조직사건’ 으로 규정한 것이며, 관련자 숫자와 조직의 지역적 범위도 사건을 확대하려 한 안기부의 의도에 의해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 이와 관련된 자료와 진술들을 검토한 결과, 김낙중, 손병선, 황인오 및 중부 지역당 사건은 개별 조직사건으로서, 이들이 ‘남한조선노동당’ 또는 ‘남한 내 「조선노동당」 이라는 단일한 조직을 결성했다고 볼 수 없고 조직 규모도 다소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었다고 판단된다.
- 물론 김낙중, 손병선, 황인오가 접촉한 북한공작원들이 모두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사회문화부 소속인 점으로 볼 때, 이들은 모두 북한 사회문화부의 ‘대남공작망’ 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서, 관련자들이 서로 별개로 나타난 3개 조직망을 결합시켜 ‘남한 조선노동당’ 또는 ‘남한내 「조선노동당」 을 결성하거나 결성을 시도했다고 판단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
 - 또한 김낙중 망, 손병선 망, 황인오 망 사이에 지휘체계나 연락체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고 이들은 각각 북한과의 연락체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한 것으로 발표된 북한공작원들로 구성된 ‘현지 공작 지도부’ 도 존재하지 않았다.
 - 한편 ‘남한조선노동당’ 이 경인, 영남, 호남, 중부의 지역당이 있다고 발표한 것은 ‘경인지역 공작에 대한 북한의 지령’ 사실, 북한공작원이 대구와 광주에서 사람을 접촉했다는 진술, 북한 대남공작 부서의 조직체계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니었다.
 - 게다가 ‘무전간첩망의 조직원 수를 400여 명’ 이라고 발표한 것도 1993년 11월 19일 관련문서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발표 당시의 예측이었다.
- * 1997년까지 안기부와 검찰이 조사한 관련자 수는 모두 350여 명이다.
- 결과적으로 남한조선노동당의 조직 규모와 관련된 안기부의 발표내용은 추정된 수치를 포함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특히 ‘간첩단 사건 또는 무전 간첩망의 조직원이 400여 명’ 이라고 발표하고
관련자 62명의 인적사항 및 행적을 공개한 것은
 - 모두를 간첩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400여 명의 간첩으로 구성된 대규모 간첩단’ 인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인적 사항과 행적이 공개된 62명이 ‘간첩’ 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 나아가 조선노동당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활동하거나 실제로도 ‘간첩죄’ 로 처벌받지 않은 관련자들까지도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간첩’ 으로 오인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7. 14대 대통령 선거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 노태우정권이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을 사전에 기획하고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 그러나 관련자들의 주요 행위 사실 상당 부분이 발표내용과 다르지 않고 수사 단서 및 착수 경위에 의심할만한 사실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만 안기부가 대선을 두 달 가량 앞둔 1992년 10월 6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수사결과’ 를 발표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간첩단과 정치인 관련설’ 과 같은 미확인 첩보 그리고 ‘북한의 민주당 지지 지령’ 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
- 우선 ‘간첩단 관련 정치인 수사’ 와 관련해
 -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지 못한 채 ‘간첩단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한 많은 단서와 첩보를 보유하고 내사 중’ 이라고 밝힘으로써 정치적 의혹을 부풀리다가 대선 이후로 수사결과 발표를 미뤘다.

- 그러다가 대선 이후에는 “야당의 위축과 견제 그리고 7공 국정 운영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유보하고 계속 내사’ 할 것을 계획하는 등 ‘간첩단 관련 정치인 수사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충격적이다.
- 또 북한의 ‘민주당 지지 지령’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의지나 정체성’과는 관련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대국민 안보의식 제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 이와 같은 내용을 굳이 발표문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과 민주당이 연결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긴 것은 국내 정치문제에 대해 불개입의 원칙을 엄정히 지켜야 할 정보기관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안기부는 언론을 동원하여 사회 각계각층을 상대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임으로써 위와 같은 내용들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확산시켰다.
- 결국 ‘수사결과 발표’의 시점이 대선 직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나 미확인 첩보를 발표하고 이례적으로 이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것은
 - 안기부가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했다는 의혹을 불필요하게 불러 일으켰으며, 어느 면에서는 안기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선거 과정에 개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와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켰다.

IV 結論 및 意見

1. 결 론

- 소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은
 - 국제적으로는 ‘베를린 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냉전 체제의 해체라는 변화, 국내적으로는 1987년 이후 빠르게 진행된

민주화,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상징되는 남북교류의 급진전 등의 분위기 속에서

-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국내 일부 운동세력 및 인물들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공작이 결합돼 발생한 사건이다.
- 안기부는 대선을 두 달 여 앞둔 시점인 1992년 10월 6일 '김낙중, 손병선, 황인오 등 3개 간첩망 사건'을 포괄해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을 발표하는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논란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정권이 사건을 기획·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선실은 이선화, 이화선,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동일 인물로서 1980년 재일교포 영주귀국 형식으로 귀국해 활동하다가 1990년경 손병선과 황인오를 포섭했고 1990년 10월 황인오와 함께 월북했으며
 - 김낙중과 손병선은 남파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A-3방송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수수했고
 - 황인오와 최호경 등은 대외 명칭을 '민애전'으로 하는 중부지역당을 결성하고 산하 조직으로 '95년위원회'를 재편한 '애국동맹'을 두었다고 한
 - 발표의 기본 내용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당시 노태우 정권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조작하고 유리한 발표 시점을 선택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그러나 당시 안기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 김낙중을 '36년 간 암약한 고정간첩'으로 발표하고
 - 이선실이 북한 정치국 내에서 차지하는 높은 서열만을 보고 북한이 남한 내에 이선실을 책임자로 하는 '현지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김낙중·손병선·황인오 등 3개 간첩망을 중심으로 한 남한 내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며, 개별적인 3개의 사건을 기계적으로 결합시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단일한 사건으로 부풀려 발표했다.
 - 또 '남한조선노동당'이 경인, 영남, 호남, 중부 지역당으로 구성된 것처럼 추정해 발표했다.

- 이와 같이 발표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하면서 관련자 62명의 인적 사항 및 행적을 공개한 것은 이들 62명은 물론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간첩’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 이것은 분단된 상황에 있는 우리 사회가 ‘북한의 간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고려할 때,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첩’이라고도 할 수 없는 다수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 한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피의자들의 진술 이외에 가혹 행위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 일부 구타, 잠안재우기, 별세우기, 인격 모욕, 고문 협박 등 여러 형태의 육체적, 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졌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변호인 접견권 등 법에 규정된 피의자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과거의 유사한 공안사건 수사 때에 비하면, 고문과 가혹행위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 제기가 줄었다는 점은 평가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건 당시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또한 안기부가 과장되게 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실체가 분명한 공안 사건으로서 확인된 사실조차 의혹을 사게 되고 반면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정치개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 이것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쟁의 진원지이자 주요 행위자가 되어 불신을 초래하고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2. 의 견

-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인권이 수사과정에서 보장되지 못한 점, 그리고 당시 안기부에서 관련자들을 모두 간첩이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세밀하지 못한

발표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모든 관련자들이 '간첩'으로 오인될 개연성을 제공한 점에 대해

- 비록 그것이 안기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모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관련자들이 부당한 영향을 받게 되거나 정치·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처하는 노력은 분명 국가기관의 몫이다.
 - 따라서 일부 근거가 불충분한 내용의 발표와 정치 상황에 의도적으로 편승한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향후 더욱 신중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나아가 이 사건들은 그 실체가 부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수사결과 발표 시기, 일부 과장된 내용,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공개, 이례적인 홍보 활동 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까지도 오해와 의혹을 불러 일으켰고 당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 왔다.
 - 이런 점에서 국가기관이 정치권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때로는 권력자의 의중에 영합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해 받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은 돌이켜 보면, 북한이 남한사회 내에 친북세력의 운동권이 등장하고 통일운동의 열기가 높아지자 그들을 이용하여 '남조선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속에서 벌인 공세적인 대남공작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운동진영 일부가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꾀하고자 한 무모한 행위로부터 야기된 측면이 있다.

- 또한 당시 정권과 안기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기획·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시기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안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 현재의 국가정보원은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함으로써 선진정보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후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1월 1일 10:00

주관: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조사활동 중간보고와 사건조사에 관한

일시: 2007년 1월 26일(목) 11:00

주관: 국가정보원 청문회

결과발표와 조사활동에

일시: 1월 27일(금) 오후 1시

주관: 국정원 과거사건 진

이제는 용서와 화해로...

3장

진실규명활동의 성과와 한계

▶ 조사의 성과와 한계

조사의 성과와 한계

1. 조사의 성과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는 2004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중정, 안기부, 그리고 국정원의 활동 중 사회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을 벌여 왔다. 구체적으로, 진실위는 과거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 안기부, 그리고 국정원의 활동과 관련해 1) 우선 그동안 사회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온 김형욱 前중정부장 실종사건(이하 김형욱사건), 부일장학회 등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사건,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 동백림사건, 남한조선노동당사건, KAL858기 폭파사건, 김대중납치사건이라는 7대 의혹사건을 조사한 뒤, 2) 의혹이 제기된 수많은 개별사건들을 일일이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와 관련해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불법 내지 권력 남용행위를 간첩, 노동, 사법, 언론, 정치, 학원 분야 등 6개로 유형화해 조사활동을 벌여 왔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진실위의 성과는 크게 보아 1) 1차 조사인 7대 의혹사건과 2차 조사인 주요 유형별 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라는 구체적인 조사 성과와 2) 개별 조사를 넘어 전체적인 성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이번 조사 작업은 권위주의정권하의 잘못된 관행에 의해 그동안 축적되어온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정보기관 스스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작업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물론 독일 통일이후 슈타지 문서공개 등이 보여주듯이 동독의 정보기관이 행한 잘못에 대한 청산작업이 진행되는 등 정보기관에 대한 과거청산 작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전환이라는 혁명적인 체제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또 이 같은 청산은 정보기관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조사 작업은 혁명적인 체제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정보기관

스스로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 작업을 해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업적이다.

이번 조사가 갖는 중요한 또 다른 성과가 있다. 그것은 조사 작업을 국정원 혼자가 아니라 학계, 법조계, 시민운동계, 종교계 등 시민사회, 특히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정보기관의 활동에 비판적이었던 시민사회의 대표적 인사들과 협의해 민관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함께 조사 작업을 벌인 점이다. 나아가 조사 작업에 대해 수시로 시민사회의 대표들과 대화하고 협의해 나갔다. 이는 조사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특히 비판적인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신뢰성을 갖도록 만들어주었다. 아울러 정보기관이 불가피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보안성과 '비밀성'이라는 특성, 그러나 이 같은 특성이 가져다줄 수 있는 권력 남용 등 폐해를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과 관련해, 국가정보기관의 핵심관계자들이 시민사회의 대표들과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 30개월 이상 합동으로 조사활동을 벌인 것은 정보기관과 시민사회가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행동으로 보여준 중요한 실험이다.

이밖에 종합적 수준에서의 이번 조사 성과는 크게 국정원 내부에 끼친 긍정적 영향, 과거사 청산작업 일반에 기여한 영향, 대사회적 성과와 국제적인 성과라는 네가지 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국정원 내부의 변화이다. 국가정보기관과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들이 권위주의 시절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의혹들과 무관하다. 그러나 선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학습과 자기성찰을 통해 이 같은 과거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데 이번 조사가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의 경우 이번 조사자체에 대해, 나아가 구체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번 조사와 같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국정원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일정한 시기 저하의 부작용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국정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달라졌을 것이며 이는 국정원의 시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태도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 군사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에 탄생한 민주정부 역시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제하기 위해 국정원장을 외부인사로 충원해 왔다. 그러나 국정원이 스스로 과거사청산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자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국가정보기관 사상 처음으로 내부출신 인사가 승진하여 국정원장에 임명됐다. 이 같은 변화는 국정원의 시기진작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다른 기관의 과거청산 작업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과거청산 작업 전체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정보기관은 그 특성상 국가기관 중에서도 과거청산과 같은 작업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기관이다. 이 같은 국정원이 오히려 다양한 권력기관 중에서 과거청산 작업을 주도함으로써 경찰, 국방부와 같은 다른 권력기관과 정부기관들의 과거청산 작업에 자극제가 되고 모범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대법원에 의해 확정판결이 났던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한 진실위의 조사작업은 결국 사법부의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과 정부의 배상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법부의 과거청산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셋째, 대사회적으로도 이번 조사작업은 많은 긍정적 성과를 남겼다. 그동안 중정, 안기부, 국정원은 국민들에게 어두운 이미지로 남아 있었다. 특히 인권·시민단체 등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주요한 시민사회 세력들의 경우 국가정보기관과의 오랜 악연으로 인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왔고 일부는 아예 폐지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조사활동은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 등에 대한 진실위의 발표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국정원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정보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권·시민단체 등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주요한 시민사회세력들의 경우도 자신들의 대표들을 사실상 조사활동에 참여시키는 등 조사활동에 협력한 경험, 그리고 조사결과 등을 보면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과거 부정

일변도의 시각을 어느 정도 교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진실위의 조사결과에 기초해 사법부가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고 거액의 배상을 결정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안보를 위해 활동하던 중 일으킨 잘못에 의해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에 도움을 줬다. 나아가 국가정보기관의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컸다. 그 대표적인 예가 KAL858기 폭파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주요한 사회운동세력의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87년 대선을 위해 안기부가 일으킨 자작극이라거나 안기부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도 방관했다고 하는 세간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줌으로서 그동안 시중에 유포되어 온 잘못된 인식과 이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이 억울하게 받아온 오해를 풀어주는 데 기여했다.

넷째,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정보기관이 과거의 인권탄압과 국제법 위반 등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특히 김형욱사건, 동백림사건, 김대중납치사건의 경우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과거의 잘못을 시인한 바, 국제적인 인권단체, 외국 언론, 나아가 외국의 정부 등에게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완전히 단절했고 새로워졌음을 보여 줄 수 있었다. 또한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그 권한을 넘어서는 일부 행위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반성과 자기정정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국가정보기관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것으로서 이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전체적인 성과를 전제로 개별 사건과 유형별 조사의 성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차 조사 : 7대 의혹사건

가)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사건

이 두 사건은 박정희정권이 5·16장학회 설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언론사

장악을 위해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의 소유주 그리고 경향신문의 소유주를 개인 비리와 공안의혹 등을 빌미로 협박해 이들 재산을 강제로 헌납 받거나 매각토록 한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나)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1964년 1차 인혁당사건은 과장된 사건이자 일선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기소를 강행한 사건이며, 1974년의 민청학련사건은 유신체제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순수한 학생운동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의 배후 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나아가 국내외에서 ‘사법살인’이라는 평을 받아온 인혁당재건위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은 이번 조사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겠다. 이 같은 진실위의 조사결과에 기초해 사법부가 인혁당 재건위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리고 거액의 배상을 결정했다. 다만 당시 담당 수사관들의 진술한 고백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다) 동백림사건

이 사건은 동백림 유학생 등이 북한을 방문해 금품을 받는 등 상당히 실체가 있는 사건이나 이들을 독일 등에서 강제 연행해 온 것은 국제법을 무시한 심각한 권력남용이며 나중에 법원이 대부분 무죄판결을 내린 사실이 잘 보여 주듯이 중정이 이들의 죄를 과장해 간첩으로 몰고 간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또 중정이 이 사건과 연루시킨 ‘민비연사건’은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이번 조사의 성과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박정희 승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황증거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다.

라) 김대중 납치사건

이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이후락의 지시에 의해 중정이 조직적으로 실행한 불법납치사건이며 사건 이후에도 중정과 박정희정권이 조직적인 진상은폐공작을 벌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두 개의 쟁점중 하나인 박대통령의 사전인지 내지 지시여부에 대해서는 박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사전에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건은폐에도 긴밀히 관여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다른 쟁점인 살해계획과 관련 중정이 초기단계에서는 살해 계획을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나, 최종단계에서는 단순 납치해 오는 것으로 확정 되었음을 밝혀냈다.

마) 김형욱 실종사건

그동안 의혹으로 남아 있던 김형욱 실종사건은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의 지시에 의해 중정 주불거점이 파리 현지에서 현지의 제3자를 고용해 살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이번 조사로 밝혀졌다. 그러나 중요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시신유기 현장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바) KAL858기 폭파사건

이 사건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던 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안기부의 기획조작설과 사전인지 후 방조설이 사실이 아니고 김현희 북한 공작원에 의해 일어난 폭탄테러사건으로 안기부의 최초 발표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 조사의 가장 큰 성과이다. 하지만 끝내 면담을 거부한 김현희를 조사하지 못함으로써 조사의 완결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 남한조선노동당사건

1990년대의 대표적인 대형 공안사건인 이 사건은 1992년 대선을 겨냥한 안기부의 조작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핵심인물인 북한 공작원 이선실의 실존과 중부지역당 결성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상당한 실체를 가진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 큰 성과다. 그러나 별개인 3개의 간첩망을 기계적으로 결합해 남한조선노동당이 결성됐다는 식으로 확대 발표한 것은 잘못된 과장이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일부 관련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2차 조사 : 유형별 조사

가) 정치분야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금기시해야 할

정치적 개입을 오랫동안 관행처럼 저질러 왔음을 확인했다. 특히 집권당과 야당 의원, 반정부인사 등에 대한 사찰, 일부 정치인의 출마포기 압력과 낙선운동에서부터 선거시기 조정, 선거의 총괄지휘에 이른 선거개입, 관제 야당창당으로 최고 권력자를 위한 집권여당에 대한 개입 등 정당 및 국회에 대한 개입, 여야의 정치 자금을 대한 통제 등 국가정보기관의 다양한 정치개입의 유형을 밝혀낸 것이 성과이다.

나) 사법분야

국가정보기관이 과거 사법부의 기소, 판결 등에 영향을 끼쳐 왔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국가정보기관이 공안사건들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 나아가 변호사들의 활동에 어떻게 개입했는가 하는 구체적인 통제개입방식을 규명해 낸 것이 이번 조사의 성과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은 검찰 및 법원에 조정관을 두고 일상적으로 동향을 파악해 왔으며, 검찰의 경우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근거로 수사권을 침해하고 비협조검사에 대한 비위조사 등을 통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고, 법원의 경우 비협조판사에 대한 신원조사와 비리조사 등으로 인사상 압력을 넣고 협조적인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다) 언론분야

국가정보기관은 창립초기부터 언론사에 대한 압력과 공작, 언론인의 연행과 구속, 언론사에 대한 기관원 출입 등을 통해 언론에 개입해 왔으며 이 같은 개입을 사상계, 다리지 등에 대한 필화사건, 동아투위 사태로 야기된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과 같은 언론자유실천과 언론노조운동 탄압, 보도지침 사건, 언론인들에 대한 연행과 사찰 등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 이번 조사의 성과이다.

라) 노동분야

국가정보기관이 1960년대부터 한국노총의 조직 구축과 노조선거과정 등 노동 문제에 개입했으며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70년대부터 실질적으로 노동대책회의나 공안합동수사본부와 같은 노동관련 협의기구를 통해 국가의 노동통제를

주도하고 기획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번 조사는 1980년대 초반 안기부는 노동 대책회의를 제도화해 안기부의 이 같은 역할을 공식화했으며 1988년 이를 폐지 하였지만 그 기능은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비공식기구를 통해 유지되었던 사실도 밝혀냈다.

마) 학원분야

과거 정보기관은 권위주의정부 시절 대학가에 정보망을 부식하여 학생운동 조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파악을 해왔으며, 학원안정이란 명분아래 문교부의 교육 정책과 대학의 학사행정에 개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통제를 가해왔고, 법적 권한을 일탈한 사찰과 통제가 행해졌음을 확인했다.

바) 간첩분야

4가지 유형인 월북자 가족, 행방불명자 가족, 납북귀환어부, 해외관련 간첩사건 중 사회적으로 의혹이 되어온 송씨일가사건, 박동운사건, 차풍길사건, 정영사건을 조사한 결과 장기구금과 고문으로 혐의의 확대, 왜곡, 혐의사실 조작 등 그동안 제기되어온 의혹 중 상당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일부 간첩사건의 경우 장기구금과 고문으로 혐의의 확대, 왜곡, 혐의사실의 조작이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조사의 한계

이번 조사는 그동안 중정, 안기부, 국정원의 활동 중 사회적으로 의혹이 되어온 주요 사건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정원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사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계도 많았다. 이 중 전체적인 한계는 주로 조사과정과 관련된 문제점이라면 유형별 조사의 한계는 주로 조사결과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그동안 제기되어온 많은 의혹 중 극소수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이다. 그동안 제기되어온 사건은 수도 없이 많으며 진실위가 조사활동을 위해 파악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만 해도 수십여 건이었다. 그러나 물리적인 이유로

이중 7대 사건만을 선정해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아직도 많은 사건들이 의혹 속에 남아 있고 많은 관련자들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했다. 7대 사건으로 선정된 인혁당재건위사건의 경우 조사결과에 기초한 사법부의 재심으로 무죄선고를 받는 등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남아 있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은 요원한 문제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차 조사에서 유형별 조사를 했지만 여기에서도 한계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많이 있다. 각 유형별 조사에 있어서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를 들어 간첩분야의 경우 초기에 선정했던 15개 사건 중 4개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선정되어 조사를 한 사건의 경우도 사건의 실체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냈다고는 하지만 여러 이유로 중요한 고리들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주요 사건에 대한 최고통치자, 즉 대통령의 사전인지 내지 지시여부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번 조사가 이처럼 많은 한계가 있었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시간과 인원 등의 문제이다. 매우 제한된 조사인력을 가지고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조사 작업을 벌이다보니 수많은 의혹들을 모두 다루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7대 사건과 6개의 유형별 문제들을 조사하기에도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에 대한 다양한 공개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국정원 보관 내부분서와 관계기관 문서, 관련 직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공개자료 수집과 분석에만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분서고 그 다음이 면담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원의 내부자료를 열람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나 자료열람에 관한 내부 규정과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사팀에 자료가 전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림으로써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면담조사의 경우도 면담을 요청하고 조직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따라서 관계자들을 충분하게 면담할 수 없었다. 이밖에도 고문피해자의 주장이 진실인가를 가리기 위한 피해 주장자들에 대한 심리조사, 조사에 필요한 해외 현지조사 등 조사에 필요한 여러 계획

들이 사정상 만족스럽게 실행될 수 없었다.

둘째, 그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조사권이다. 이번 조사는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관계자들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KAL 858기 폭파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현희 면담이다. 진실위는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김현희 면담을 추진했으나 본인의 거부로 실패하고 말았다. 김현희가 이번 사건의 핵심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면담을 거부하자 강제조사권을 갖지 못한 진실위로서는 이를 강제할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었다. 김형욱 실종사건의 핵심증인인 이○○ 당시 프랑스로도 마찬가지다. 김형욱 살해에 가담한 일선 실무자가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을 지시한 이○○ 공사가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상부선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진상을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이밖에도 고문시비 등과 관련해 전직 중정과 안기부 직원들과의 면담이 필요했지만 이들이 거부하는 경우 면담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갖지 못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국가정보기관의 전직직원의 경우 면담을 못한 경우가 면담한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결국 이 같은 한계는 조사결과에 결정적인 문제는 아님에도, 예를 들어 “김현희를 조사하지 않고 무슨 KAL 858기 사건 조사냐” 하는 비판적 여론을 일부 언론들과 유가족 단체, 사회단체로 하여금 제기 하게 하는 구실이 되었다.

셋째, 내부문서들의 문제이다. 의혹사건들과 관련된 국정원 내부문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 사건규명에 어려움이 많았다. 진실위는 국정원 내부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건관련 자료의 존안여부를 확인하고 이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열람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내부문서를 열람하였다. 그러나 검색결과 예상과 달리 주요자료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곧 많은 사건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보존연한이 지났고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체계적인 자료보관 시스템 미비, 정권교체 등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 해당 자료의 파기 가능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관련 자료들이 산발적으로만 남아 있었으며, 주요 자료들은 아예 검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존안 자료의 부족은 조사에 많은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남아있는 존안자료들의 경우도 제한적 열람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가능한 모든 문서를 공개한다는 국정원의 전향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관계법 등 보안과 관련된 법적 한계가 있었으며, 관련자 중 상당수가 아직 현직에 있고 조사와 무관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미치게 될 명예훼손, 정치적 파장 등 여러 현실적 이유로 인해 요청자료를 모두 열람하지는 못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문서열람을 위해서는 국정원의 보안검토 등을 거치는 바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조사활동 종료시한에 쫓겨 충분한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저항이다. 대부분 이번 조사에 우호적 태도를 가지고 협력과 지지를 보낸 반면 극소수의 경우 조사에 반대해 저항함으로써 조사에 어려움을 주었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된 일부 전직직원들, 직접 관련이 되지 않았더라도 평생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음지에서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일부 전직 직원들의 경우 면담조사 등에 불응하는가 하면 진실위 활동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특히 조사기간 중 미림팀에 의한 도청사건이 터져 나와 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국정원의 과거청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이 확산되기도 했다. 나아가 일부 냉전적 사고방식을 가진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일부 정치권의 경우 이번 조사활동을 정략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공격하는가 하면 조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제공을 방해함으로써 조사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설상가상으로 야당의 유력대통령후보의 부동산관련 자료를 국정원이 열람한 것이 밝혀지면서 국정원이 아직도 정치사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터져 나왔고 국정원의 과거청산 작업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이어져 조사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했다. 소위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조사에 저항하는 경우가 있었다. 관련자들 가운데는 발표된 혐의가 중정에 의해 과장·왜곡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와서 “다 지나간 사건을 왜 파헤쳐 잊혀진 상처를 다시 들추느냐”며 면담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전체적인 한계를 전제로 하여 유형별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별 조사의 경우 그 목적이 개별적인 사건의 심층조사를 통해 이를 둘러싼

의혹을 푸는 것이 아니라 간첩, 노동, 언론, 사법, 정치, 학원 등 6가지 분야에 있어서 국정원의 부당한 개입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조명해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조사시한과 인력부족으로 충분히 많은 사례를 다루지 못한 점 그리고 자료의 미비와 관계자의 면담거부 그리고 조사방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공통적인 한계로 안고 있다.

다만 두 가지의 한계는 명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2차 조사의 목적이 유형별 조사인 만큼 개별 유형에서 행해진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조사인력의 부족과 같은 여러 현실적 이유 때문에 유형을 간첩, 노동, 언론, 사법, 정치, 학원 등 6가지 분야에 한정함으로써 종교, 문화 등 중요한 다른 분야에 대한 개입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하겠다.



우리가 꿈꾸는 사랑받는 국정원으로 우뚝 솟기를..

4장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 ▶ 진실위의 국가정보원 발전을 위한 권고와 제언
-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국정원측의 다짐

진실위의 국가정보원 발전을 위한 권고와 제언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로 하여금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경우 조사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고, 대외 공표를 위한 보고서에는 의혹사건의 진상 등과 함께 ‘유사사건의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를 하도록 규정¹⁾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는 지난 3년간의 조사활동 결과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I 국가정보원에 대한 권고

1.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승계한 국가정보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과 사회 제 분야, 그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하여 행한 일부 월권적 행위에 대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온 유감을

1)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운영규정’ 제16조(조사결과와 보고 및 공표)

①위원회는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경우 조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성격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대외 정보공개
2. 기자회견
3. 보도자료 배포
4. 당사자에 의한 브리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혹사건의 진상
2. 의혹사건 관련 피해자의 피해상황
3. 의혹사건의 발생원인
4. 의혹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원인
5. 의혹사건에 대한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6. 유사사건의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권고
7. 의혹사건 관련 피해자의 명예회복 방안
8. 기타 위원회에서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표시하여야 한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위의 국가'로 군림했다. 이는 중정과 안기부가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 국익과 국가안보를 수호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기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권안보를 위해 일한 결과였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은 일부 정치인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권유지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위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유 업무에 월권적으로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한 측면이 있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조사활동을 통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밝힌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중정과 안기부 시절 야기했던 잘못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2.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만이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관 운영에서는 물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정치 불개입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국가와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중정·안기부가 최고 권력자의 손발이 되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국민들도 불행해졌을 뿐 아니라, 국가최고정보기관도 본연의 정보활동보다는 정치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신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정권유지를 위한 침범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권위와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를 개혁하는 일이 중대한 국정과제로 제기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탈정치화를 천명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정치 관련 정보보고를 받지 않는 등 고강도 개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편으로 과거의 업보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안팎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의 상충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종종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곤 했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이 국내정치 문제로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직무범위에 관한 법 규정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와 활동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국가정보원은 보유하고 있는 역사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이를 정부 유관부처와 학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961년 중정 창설 이래 중정-안기부-국정원은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왔으며, 현재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이 자료의 대부분은 사장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료들은 본 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과거사 진실규명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 유산으로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중정·안기부는 지난 시기 ‘국가위의 국가’, ‘정부안의 정부’로 치부되었다. 또한 중정·안기부가 특권적으로 행사했던 조정권한은 각 부처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국정원 존안자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정과 정부 운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위원회의 과거사 진실규명활동은 그 작업의 성격상 중정·안기부의 부정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수 밖에 없었지만, 국정원 존안자료를 통해 지난 시기 중정·안기부의 활동상을 총체적으로 고찰한다면, 이들 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음지에서 일해 온 긍정적인 면들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본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축적된 자료 뿐 아니라, 국정원 존안자료의 공개절차와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07년 4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원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는 일반 공공기관의 30년에 비해 50년 또는 그 이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이미 스스로 고백한 마당에 국가정보원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굳이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 잡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II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제언

4. 국가는 과거의 국가공권력 남용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비록 3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하지만, 국가의 과거사 진실규명 책임은 여전히 엄중하게 남아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오랜기간 지속되었고, 중정·안기부가 권위주의 정권의 유지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위원회 활동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인권침해를 다 밝혔다고 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국가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라도래하더라도 진실규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구 및 과거사 관련 시민사회의 진실규명 작업에서 요구되는 자료제공에 적극 협력하여 진실규명이 원활하고 만족스럽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중정·안기부의 활동이 과거사의 영역에서 역사의 영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길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

5. 국가는 과거사의 밝혀진 진실에 기초하여 국가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의 무죄 판결과 그에 따른 국가배상 조치 등은 한국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가는 역사적인 첫 발을 떤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오랜 권위주의 정권 기간에 자행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과 사법부의 재심 절차는 무척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입법·사법·행정부는 국민화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재심절차의 완화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을

위한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은 국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어두운 권위주의 시절을 살았던 국민들은 그 당시 국가공권력 남용 피해자들에 대해 때로는 겁에 질려 외면하고, 때로는 정부의 선전을 그대로 믿고 그들을 비난하였고, 또 많은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지나치기도 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공권력 남용에 의한 피해자가 우리 이웃에서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면 이는 현재의 문제이지 더이상 과거의 문제라고 방치해 둘 수 없다.

냉전의 종식과 그에 따른 민주주의의 확산 속에서 과거청산의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직면한 과제로 등장했다. 오랜 식민지배와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경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조금 일찍,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거청산 과제와 맞닥뜨리고 있다. 과거청산이 세계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청산 영역에서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필요한 다른나라에 전수·확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과거청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잡한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국민화합을 달성하는 것은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6. 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께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노력에 대하여 애정어린 평가를 해주시기를 제안한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정과 안기부와 같이 과거 업보를 갖고 있는 정보기관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처럼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 합동기구를 내부에 설치하여 스스로 과거사 진실규명과 정리에 나선 사례를 찾아볼 수는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가정보원의 과거사 정리 의지와 노력을 애정을 갖고 평가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정당한 감시 속에서만이 국가정보원은 최고 권력자 1인만을 바라봤던 과거와 같은 구태를 벗어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선진정보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정보원으로 거듭남을 위한 제언

7. 국가정보원은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을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시대의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보기관이 되어야 한다. 갈수록 고급 정보들이 생산되고 공개·활용되는 새로운 정보환경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정보의 수집과 생산기관인 동시에 주요 정보의 집결지이자 매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수집·분석·생산한 정보는 일부 특수자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민간기업과 연구소, 대학, 유관 시민단체에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민과 관의 원활하고 긴밀한 정보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은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정보 서비스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과 분석 능력 또한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8. 국가정보원은 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 정보기관이 고유의 업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활동하던 시절, 수사권의 남용은 국민과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오늘날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설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국정원과 그 직원 모두는 과거의 권한 남용이 초래한 이런 불행한 결과를 명심하면서, 과거의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일신해야 하며, 국정원이 전문적인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상응하는 유연한 조직구조와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중정·안기부는 피의자 수사와 더불어 미행과 도청, 우편검열 등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은 지난날과 같은 방식의 정보 수집을 용납하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이다.

21세기는 교통, 통신,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러 면에서 국경의 담장이 낮아진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각 국가들은 치열하게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무엇이 국익인지, 그리고 무엇이 국익에 봉사하는 고급정보인지에 대한 기준도 크게 변화하였다.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안기부·국정원은 여러차례 조직 개편을 겪었는데 그 상당부분은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부서의 개편 또는 축소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국제환경, 안보여건, 정보개념 등의 변화에 맞추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선진정보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이제 남과 북이 적대적인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냉전의 붕괴 이후 더욱 치열해진 국제경쟁 속에서는 동맹과 우방 사이라 하더라도 산업 분야의 경우 침예한 첩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냉전시대의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처럼 간첩의 개념을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해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제공한 자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여겼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인접·우방국의 산업스파이가 첨단기술을 빼내어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 국가이익 분야에 더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조직편제와 행동양식, 사고방식에는 아직도 과거 냉전시대, 남북대결 시대의 분위기가 불식되지 않고 남아 있다. 물론 남북간에 완전한 화해협력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국정원의 변화만을 촉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정보원이 냉전시대의 잔재를 떨쳐 버리고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환경, 정보환경,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비해 스스로 기구개편·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만 한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국정원측의 다짐

I 序

I 국정원 개혁 노력의 성과와 한계 I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으로 세 번이나 명칭이 바뀌는 가운데 조직과 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61년 6월 창설 이후 5·6共 시기까지 국내분야를 최우선시하면서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는 등 政權안보기관의 역할에 치중하였다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서 탈피, 국회 정보위 같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민주정보기관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과거의 업보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개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대흐름에 부응하여 국내·해외·북한·과학정보 분야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對테러·산업보안·사이버 안전 등 새로운 정보 영역을 개척하는 등 전문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중립·人權존중의 수사·對국민 정보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이미지와 신뢰도를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결실 뒤에는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진통과 내부 갈등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과거사 진실규명 노력과 불법감청 고백 그리고 부단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심지어 국내정보 파트 등에 대한 존폐론이 제기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에 걸맞는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환경 변화와 선진정보기관의 대응 |

지금 세계는 급속한 세계화·개방화와 함께 국가간 경제전쟁이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어려운 관문앞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가안보 분야에서는 군사·외교 등 전통적 요인에다 테러·국제 범죄 등 新안보, 환경·영토·이민자 등 미래형 안보 현안이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국내·외 현안간 구분마저 사라지는 이른바 ‘포괄적 안보상황’이 본격 전개됨에 따라 대처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언론 등 ‘공개 정보’의 수준이 급성장하고 있는데다,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국회·시민단체 등의 감시역량이 높아지고, 각종 법·제도를 통한 견제도 강화되면서 더욱 고도화된 업무 역량이 요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진 각국은 국가정보력을 21세기 생존경쟁의 핵심요소로 보고 전략적인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보기관들 또한 핵심 분야 역량 강화·미래대비 체제 확충·정보요원 전문성 제고 등 체계적 노력을 통해 정보경쟁력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선진 정보기관들의 최근 동향을 좀 더 살펴보면 우선, 汎국가적 통합정보력 제고를 위해 개별 정보기관 차원은 물론, 각 정보기관간 정보공유 확대와 기능·조직 통합조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각국 정보기관들간 정보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활동의 중점을 ‘국익’ 극대화에 두고,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全方位 산업·첨단과학 기술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래 정보환경과 정보수요에 대한 부단한 예측 작업을 통해 정보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정보활동영역을 창출해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 추세와 선진정보기관의 적극적인 대응동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법·제도 정비 등 일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그동안 국가정보활동 관련 법령들이 일부 제·개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맞게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國情院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다.

이는 국정원이 아직도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데 기인한 바 크지만, 정치권내 이해관계나 시민단체 등의 과거 국정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반대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과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과 정보기관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재 여건에 부합되는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강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I 법적 기반 정비 I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국정원은 최근의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法·制度를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수년간 민주정보기관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업무관행과 조직문화를 정착시켰으며,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과 정치권 및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 정도를 고려한다면, 이제 국정원이 과거의 권력기관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부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정원이 이제껏 개혁의 도마 위에서 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과 그에 따른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는 오히려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성원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정원이 多變化된 정보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정원이 안보와 국익을 위해 현재 맡고 있는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미래 안보변화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의 개념을 재해석하고, 관련법상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의 권한과 임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정부조직법」 제16조·「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 등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의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 부분 해석을 놓고 ‘예시나 열거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보기관의 일탈과 권력기관화는 마땅히 견제해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닐 것이다.

세계 각국 정보기관은 애초부터 정보기관의 임무와 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온데다, 최근의 이른바 ‘포괄적 안보상황’을 맞아서는 권한을 더욱 확대·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는 정보기관의 활동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할 경우 정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안보와 국익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獨逸 연방헌법보호청(BfV)은 “국가존립과 안전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독일의 대외적 이익을 위협하려는 폭력기도에 대한 정보 활동”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英國 비밀정보부(MI6)는 “영국 정부와 국방·외교 정책에 관계되는 국가안보 이익의 보호, 영국의 경제적 번영추구”로 임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점은 여타 국가의 정보기관들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주목되는 점은 국내외 안보현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서 국내외간 통합된 정보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정보활동 대상도 국가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원활한 국정운영 등 다양하면서 포괄적인 사항들에 걸쳐 있다.

최근 각국 정보기관들이 시민 사회공동체와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위해 환경·인권·프라이버시 등 이른바 ‘人間 安保’를 새로운 안보현안으로 간주하고, 자국은 물론 상대국의 부패문제 등을 국가의 안보와 대외 신인도에 직결되는 중대문제로 규정,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활동의 일환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임무와 활동에 관한 법조항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현재처럼 시비가 계속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안보환경 변화와 각국 사례에 비춰 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新안보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비밀 관리보호법·사이버위기대응법 등 일련의 법령 제·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이런 분야에서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줄 법률 정비가 미흡하여 업무효율성 저하는 물론, 향후 유사시 국민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의 경우도 국가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對테러·감청 등 정보기관 고유의 기능과 역량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人權국가인 美國은 CIA 공작관·분석관의 50% 증원방침 결정(04.11), FBI 산하 對테러·방첩 등 4개 수석 차장보직 신설에 이어 각계의 인권침해 시비에도 불구하고, 감청·인터넷 추적권한 등을 대폭 강화하는 「애국법」과 「대외정보감시법」 등을 시행중에 있다.

셋째, 국가 정보활동의 체계와 근간을 확립하기 위해 (가칭) ‘국가정보활동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정원과 각 부문정보기관의 정보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정보활동의 체계와 역량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해 국정원이 ‘과거’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가안보와 국익을 확실히 챙기고,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있는 정보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內·外部 통제장치 강화 |

국정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國情院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다 보면 자칫 국정원이 과거처럼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핵심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되, 통제 수단을 확실히 마련하여 법이 정한 궤도를 이탈 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다.

국정원이 특정 정권에 봉사하는 정권안보기관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정보위가 國情院에 대한 업무감독을 보다 전문화·체계화하는 동시에, 정보예산 운영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부단히 점검하고 감독해야 한다.

미국·영국·독일 등에서는 ‘의회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CIA 국장을 비롯한 각급 정보 기관장은 진행중인 모든 정보활동 및 예상되는 중요한 정보활동과 불법 정보활동·중대한 정보실패·시정 조치·시정계획 등을 적절한 시기에 상·하원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권한을 확실히 부여하면서, 그만큼 통제도 엄격히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정보예산과 관련하여 국회 「예·결산 소위」에 대한 세부 심사자료 제출 등을 보다 엄격히 하여 정보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위 전문위원 보강 등으로 정보위원의 예·결산 심사 기능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기관 자체의 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국정원 감사관 임명시 국회 정보위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감사관 임기제 도입·감사 전문 요원 확충 등도 검토할 만한 방안으로 사료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위에 보고한 기밀사항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조치와 병행, 정보위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한편,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정보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정치중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

우리의 헌정역사를 생각할 때, 국가정보기관이 확고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업무와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보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참여정부 들어 국정원의 정치중립이 확고해지고 정치관여 시비가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정권의 향배에 따라 정치 중립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제도적 인권장치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정치중립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내부 윤리강령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정원 직원법」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한 ‘거부권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다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장이 소신있게 국가정보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현재 국정원장의 직위는 대통령 신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우선적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만큼, 최소 2년 이상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FBI(10년)·중국 국가안전부(5년)·캐나다 보안정보부(5년)·이스라엘 비밀정보부(4년) 등이 정보기관장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기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싱가포르·호주 등도 통상적으로 일정기간의 임기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 국정원 원장·차장 등을 정무직에서 특정직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검찰총장·경찰청장·참모총장처럼 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특정직으로 신분을 전환할 경우, 업무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외부인사를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장치들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담보해 주는 동시에, 국가정보활동의 일탈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I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정보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능동적이고 순발력있는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직원들의 판단력과 창의력에 기반한 유연성 높은 조직을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최근 국가 안보환경의 변화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새로운 위협 요인들이 지속 대두되고 있어 조직 유연성에 기반한 신속 정확한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면에서 볼 때, 국정원이 정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러 정보통합센터·사이버안전센터·산업보안단 등을 신설하고, 직원 교육훈련을 현장·실무 중심으로 쇄신하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혁을 동시에 추진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조직문화와 관행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데다, 최근 총체적 안보·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국가안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그간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국정원이 명실상부한 선진정보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핵심기능 위주로 새롭게 재편하고, 직원들을 진정한 프로정보맨으로 육성하는 한편, 각 분야 업무프로세스를 초일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기능중심 조직 재편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국가 안보환경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고, 국내외 현안간 구분마저 사라진지 오래다. 그야말로 국가 정보기관의 諸기능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력의 발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국정원이 통합정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중심의 조직편제를 정보 분석, 수집 및 공작, 과학정보, 對테러·보안·방첩 등 등 기능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은 창설(61.6) 이후 반세기에 이르도록 국내·해외·북한이라는 지역별 次長 편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긴급한 안보현안이 발생할 경우, 조직 전체역량을 일사불란하게 투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현안발생시마다 별도의 임시 대응조직(T/F)을 가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평소 정보 보고서도 각각 국내·해외·북한 분야별로 작성할 수밖에 없어, 종합적·입체적인 정보판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 즉, 국정원은 모든 기능을 갖추고는 있으나, 조직구조상 진정한 통합정보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각 차장을 기능 중심 조직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작업을 검토해야 하며, 이는 국가차원의 정보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국정원의 정보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심·전략 기능 위주로 조직 역량을 再배치하는 일도 시급하다.

국정원은 그간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각종 현안 대응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보현안의 비중이나 중요성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다. 즉, 백화점식 업무수행의 경향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업무는 각 부문정보기관에 이관 하는 등 핵심·전략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가 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문 정보기관에 기능을 이관함으로써 국가정보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함께 기해나가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직 및 기능 재편 작업이 미래 정보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장기적 안목을 토대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경우 자칫 엉뚱한 형태의 조직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미래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하겠다.

즉, 고위간부들과 외부전문가들로 자체 '고위급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담조직을 상시 운영하면서, 5년 주기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매년

보완해나가는 등 체계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또, 지휘와 명령이 강조되는 조직 특성상 자칫 업무효율과 순발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 각 차장 및 부서장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조직운영의 묘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 최고 프로정보맨 확충 |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인재전쟁중이다. 각국 정부와 기업 등은 글로벌 인재 확보·양성하는데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보고, 사활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기관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업무환경이 너무도 빨리 변하자, 일일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기보다는, 핵심인재들로 하여금 전략수립과 실무추진을 순발력 있게 수행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인재 채용 및 양성 문제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MS社는 일 년 내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핵심인재 리크루팅을 실시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그룹도 해외출신 인재 및 가족들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까지 두고 있을 정도이다.

국정원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각 분야별 우수인재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공채 중심의 획일적 채용 방식보다는 특수기능 보유자·분야별 전문가 등에 대한 수시 채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국정원 직원들의 능력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조금의 실수도 허용치 않는 정보업무의 특성상 직원 모두가 진정한 프로로서 일당백의 역량을 갖춰야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인재 확보 노력을 잠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또한, 민간의 헤드헌팅 기법을 과감히 도입하고, 직원 선발시 조직문화 적합성과 정보업무 적격성을 테스트하는 등 보다 과학적·체계적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인재들이 진정한 프로 정보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인재 담당관’(CAO : Class A Officer) 책임 아래,

입사에서 퇴직까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퇴직 이후에도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우수인재들이 자발적으로 국정원을 찾아오고 열정을 갖고 꾸준히 근무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조직 매력도' (Employee Value Proposition) 자체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비전·목표·업무가치를 재설정하고, 근무 환경과意思결정 구조를 개선하며, 중요한 임무수행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하는 등 전략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 업무 프로세스·조직문화 개선 |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정보세계의 특성을 생각할 때, 민간기업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작업이 가장 필요하다.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선진 정보기관 및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정보·수사·공작 등 각 분야별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고 이를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高秘度 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보현장과 데스크 및 지휘부간 실시간으로 멀티미디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정보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테러사건 등 긴급현안 발생시 보다 순발력있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사태 대응 매뉴얼'에 국정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의 임무·권한 및 동원 가능한 자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최고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선 직원들이 자율과 창의적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또 직원들의 자율적 사고능력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소양교육, 독서문화 정착, 각종 외부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기관은 어느기관보다 엄격한 자기통제가 중요한 만큼, 직원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조직내에서는 물론, 대외 관계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직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안보와 국익분야 세계 최고 전문역량 확충

지금 우리는 안보면에서는 ‘포괄적 안보상황’에 능동 대처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무한경쟁의 파고를 이겨내야 하며, 북한과는 평화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삼중고의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은 기존 업무영역에서 우위 확보에 진력하는 동시에, 부단한 연구와 개척을 통해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활동 분야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기존의 국내 위주 정보활동에서 벗어나 해외·북한 분야를 강화하고, 경제·對테러·산업보안·사이버 등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진정으로 ‘안보와 국익에 봉사하는 세계적 수준의 선진 정보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북한·국익정보역량을 배가하는 것은 물론 산업보안·방첩 및 對테러·국제범죄, 영토갈등·대형전염병 등 제반 안보요인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역량을 지속 확충해나가야 한다.

| 국력에 걸맞는 海外정보역량 확충 |

한국의 대외적 위상과 외교적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국정원의 해외정보활동도 국가의 안보·외교전략 수립을 뒷받침하고 국익증진 및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정보활동의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

우선 중요 안보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강구는 물론 동북아 평화 정착·

발전적 韓美 동맹관계 설정 등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전략정보 생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 4강에 대한 정보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의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4강 위주의 정보수집 활동에서 탈피, 신흥 강대국·자원부국 등으로 정보수집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해외 정보요원 파견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량있는 인물들을 UN 등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 진출시키는 한편, 해외 각국의 대학·연구소에서 연수중이거나, 이미 해당 국가의 요로에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인재 및 동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해외 인적자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최근 세계 각국이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 정부간 공식 외교채널 外 비밀스런 정보채널을 가동하는 「Two-Track」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우리의 외교 협상력과 전략적 입지 강화를 위해 선진 정보기관과 협조네트워크 구축·다자 정보협력체 운영 등 글로벌 정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독도·동북공정 등 급증하는 영토·역사 갈등 문제는 물론 이민자 증가·신종전염병·기후급변 등 이른바 ‘미래형 안보현안’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안이 복잡하고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정원에서 신속한 기능 재편을 통해 미래형 안보현안에 대한 대응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北韓정보활동 강화 |

북한정보 분야는 남북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 국가안보 수호와 남북화해·협력관계 증진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사항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핵 등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사전에 포착,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고, 대량 탈북자 발생·북한 정세의 급변 등에 대한 대응책 강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조그마한 빈틈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 전인 차원에서 정부 및 기업이 남북간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간 관계 경색시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해결사’ 역할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랜기간 축적된 대북 정보 및 경험을 토대로, 각계 대북 전문가를 육성하고, 부문정보기관 및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북한의 정부 조직·인구·토지·교육제도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등 통일 이후에 대비한 국가적 역량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國益정보활동 강화 |

참여정부 들어 국정원은 새롭게 國益정보 분야를 확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고 경제적 위협 요인을 事前에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춰 활동 영역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선 FTA 등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면밀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IMF·카드대란 등으로 고통받았던 사실을 교훈삼아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제 인프라를 굳건히 하는데 정보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다국적 기업을 비롯, 국제 헤지펀드·지하 자금 등에 대한 심층정보 수집역량을 갖추는 한편 긴급한 경제 현안에 대해 정확한 판단역량을 배양하는데도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

또한 국가신인도 및 이미지 제고활동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가 소프트웨어를 확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대외 위상을 제고하는데 국정원의 광범위한 해외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글로벌 기업·해외 교포 등과 연계된 효율적인 해외경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과학기술 등 핵심정보를 민간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지식·문화산업 등 미래 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동·아프리카 등 자원부국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대한 투자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국부를 창출하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과학정보역량 자주화기반 마련 |

21세기는 국가안보 요소의 다원화·복합화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인간정보와 과학정보의 유기적 결합없이 신속·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은 과학정보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미·일·러 등 선진국의 경우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초정밀 정찰위성 개발, 첨단 감청장비 도입 등 기술개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역량을 갖추고, 나아가 정보자주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정보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육성, 연구·개발 인프라 정비, 재정 지원 확대, 관련법령 정비 등 국가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안보 및 국익관련 과학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물론 주변 4강을 아우르는 全方位的 첩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기관간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암호해독을 위한 대용량 컴퓨터시스템을 확보하는 외에, 고해상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첩보위성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과학정보 분야의 특성상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정보 기관과 영상·통신정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물샅틈없는 보안 및 방첩 태세 구축 |

글로벌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정 국가와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절취하려는 시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보통신·조선 등 선진국 수준에 이른 기술분야의 경우 외국 정보기관·기업 등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중요성을 인식, 07.4월부터 「산업기밀 유출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가적 차원의 대응태세는 대단히 부실한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정원이 산업보안 및 경제방첩 활동을 강화하여 참여정부 출범이후 무려 170兆여 원의 국부유출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국가차원의 빈틈없는 산업보안 및 경제방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즉, 휴대폰 등 첨단 통신기기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도록 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07.7월 현재 국내 이동통신 사용자가 4,200만명이 넘어선 상태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해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산업스파이들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적으로 중요한 비밀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밀’의 개념을 기존의 군사·외교 등과 함께 통상·과학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비밀의 누설·유출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분명히 하는 한편, 무엇보다 ‘전자적’ 자료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는 수비 개념의 ‘보안’에 더해, 산업스파이 행위를 사전에 색출·체포하는 ‘적극적 개념’의 경제방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형법상 간첩죄 구성 요건에 ‘외국(인)’을 위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외국 기업은 물론 공관원·상사원 등에 의한 스파이 행위를 적극 색출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의 업무기법을 더욱 과학화·첨단화하는 한편, 産·學·研을 하나로 묶는 협조 네트워크 강화작업도 시급하다고 본다.

| 국가사이버 보안역량 강화 |

사이버분야는 21세기 核心 정보영역으로서 국가 사이버 안전 확보가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국가전산망은 한번이라도 노출되거나 훼손될 경우 그 피해와 파급영향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다, 최근 테러·국제범죄 등 新안보 요인들이 각종 사이버 기술과 결합하면서 범죄수법이 보다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은 사이버 공간이 미래 정보활동의 핵심 영역임을 직시, 사이버 테러로부터 국가전산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업무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하고, '사이버위협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사이버 안전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이버 안전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민관 합동의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주요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전반의 사이버위기 대응역량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 테러·국제범죄를 비롯한 新안보 위협에 선제 대응 |

9·11 사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테러를 당면한 최대의 안보 현안으로 간주,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테러는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에서 보듯,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안보이슈가 되었으며, 해외진출 교민·기업·여행객의 증가, 해외파병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테러의 표적이 될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테러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테러방지법」·「테러자금 조달억제법」 등 테러대응에 꼭 필요한 관련 법령을 한시바빠 제정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 훈령에 불과한 '국가 對테러 활동 지침'을 근거로 對테러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유기적·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對테러 활동이 갖는 국제 외교상의 비중은 차치하고서라도,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대외 신뢰도와 위상을 생각할 때,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도 국익차원에서 관련법 통과를 위해 전향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테러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육성이다. 국정원이 김선일 사망사건 이후 對테러 전문가를 꾸준히 확충해 왔고,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에서는 전문가를 투입,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앞으로도 특수어·지역 전문가 및 비밀 협상 역량을 갖춘 테러 전문가를 지속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테러사건의 경우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선진 정보기관은 물론 아랍 지역 정보기관들과도 긴밀한 정보협력 체제를 구축,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더 이상 국제범죄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최근에는 신종 마약·보이스피싱·지하자금 등이 급증하면서 국제범죄의 중간지대가 되어 가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정원의 고급·심층정보 수집과 은밀한 현장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우선, 국제범죄의 특성을 감안,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 범죄 담당요원의 현지 파견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정원에 국제범죄 조사 또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안 및 방첩, 對테러, 국제범죄 분야 등은 이른바 '新安보' 분야로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범죄기법이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모의가 용이해 증거확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 글로벌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어 외국 정보·수사기관들과의 공조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앞으로, 국정원이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新安보 위협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Ⅴ 정보서비스 강화 및 對국민 신뢰 제고

최근 이루어진 국정원의 많은 변화중 주목해야 할 점은 국정원이 정보를 외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넓힘으로써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났다는 점이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우선 국정원 보고의 배포처를 청와대와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기업 및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제공정보도 안보사항 등을 비롯 해외 투자지역 소개 등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 등으로 다양화한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정원 홈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One-Stop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안보전시관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비롯 각계 지도층을 대상으로 院 관련사항을 이메일로 알려주는 정책고객 서비스(PCRM)를 시작하고, 영화·드라마 등을 통해 정보기관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도 기존과 다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국정원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정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국정원의 결의와 다짐을 보여주는 조치이다.

정보서비스를 통한 국민과의 신뢰관계 구축은 선진정보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점을 감안,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고품격 정보서비스와 對국민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외 정보공개 노력도 한층 배가해야 할 것이다.

| 고품격 정보서비스 확대 |

그간 국정원이 생산한 정보는 한정된 부처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국정원의 존재가치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잘못 인식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정원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제한된 정보서비스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정보서비스 범위도 안보 및 국익관련 사항을 비롯, 국민 삶 증진을 위한 문화·환경정보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생산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찾아가서 제공하는 '맞춤형·체감형 정보서비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항에 테러위험지역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전국의 안보상담소에서 기업체·민간단체·개인들이 안보·국익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국민들이 언제·어디에서든지 국정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와 더불어, 對국민 정보서비스 質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기업·연구소 등이 생산하는 모든 정보가 융합되어 적재적소에 원활히 배포될 수 있도록 국정원이 국가정보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즉, 정부 부처·기업·연구소 등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과 정보네트워크를 구축,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기업·교민 등과의 네트워킹으로 일본의 내각조사실과 같이 민간의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이고 배포되는 '정보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이 정보를 생산하는 UCC시대를 맞아 인터넷 등에 범람하는 국내외 각종 공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지원하는 체계도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정원에서 미국 CIA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공개정보센터(OSC)」를 신설하여 공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역량을 보강하여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정보고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정보의 質을 평가하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꾸준한 쇄신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사람은 누구든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 이 생명인 정보기관은 경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스스로를 해명할 수 없어 통상 비난을 받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민과 정보기관이 서로 두려워하고 배척하는 네거티브의 관계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홍보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과 국정원간의 신뢰관계 구축은 우선 상호간 소통의 폭을 넓히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이 국정원을 단순히 간첩신고 하기 위해 연락하는 곳으로 인식해서는 안되며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접촉할 수 있고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홈페이지·안보전시관·안보상담소 등 국민과의 다양한 접촉 창구를 활용, 국정원의 임무와 기능을 명확히 알리는 것과 함께 CIA 등 선진국 정보기관과 같이 드라마·영화 등을 통해 정보기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홍보방식도 단순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이 아니라 ‘즐기고 참여하는’ 쌍방향·체감형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정원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보강하는 것은 물론 안보전시관에 대테러·산업보안 등을 주제로 시뮬레이션 체험장을 개설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주기적으로 국민 대상 안보브리핑(가칭)을 실시하는 등 국민들이 정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도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여타 정부기관과 똑같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민 대상 봉사활동 및 소년소녀가장·장애우 돕기 등 사랑실천 운동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면 국민과 정보기관과의 거리감은 확실히 좁혀지게 될 것이다.

| 적극적인 정보공개 |

국정원이 ‘음습한 곳에서 숨어 나쁜 일을 꾸미는 곳’이라는 일각의 부정적 인식은 결국 국정원의 활동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기관의 비밀활동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CIA 등 선진정보기관들이 외교적 파급효과가 사라진 경우에 비밀공작 사항까지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정보기관 활동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줌으로써 국민적 신뢰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선진정보기관의 기틀을 다진다는 각오로 기준과 원칙을 정해 활동내용을 주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선진 정보기관 사례를 참고하고 공개시기·방법·내용 등에 대해 각계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친다면, 정보기관의 보안과 국민의 알권리가 공존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Ⅶ 맺음말

그동안 국정원이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과 함께 본연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내부혁신을 진행하고 보안상 부담을 무릅쓰며 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등 일련의 개혁 작업을 추진했던 이유는 결국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은 결코 국정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국정원이 변화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국민들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추동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국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언론·국민도 단순히 방관자나 비판자의 입장에서 냉소만 보낼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우선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당리당략에 얽매어 국정원을 정쟁의 한가운데에 끌어들이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을 논의할 경우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美 CIA가 워터게이트 사건이후 손실된 정보역량을 만회하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는 점은 정보기관 개혁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언론도 국정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보도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정원도 언론보도에 대해 무조건 부인하고 침묵하는 기존 NCND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서 해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방향으로 對언론 관계를 바뀌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 또한 국정원 개혁의 원동력은 다름아닌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거 정보기관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국정원의 변화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원 스스로 과거사 진실규명에 나서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후로는 과거와 같은 부끄러운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원은 이번 진실위 활동을 통해 과거의 오욕과 불신을 극복함으로써 바야흐로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회적 신뢰를 확보 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필요한 개혁작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속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과거사 정리를 통한 국정원 개혁

과거사 진실규명은 시대적 사명

국가정보원은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정원이 국가의 중추 정보기관으로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공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지난 시절 인권침해·정치사찰·불법감청 등 많은 논란속에서 정권 안보에 앞장서온 과오 또한 상당하다. 때문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보활동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마저 의심받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정원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없이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통해 과거사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처럼 전례없는 자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고조된 과거사 청산에 대한 여론의 압력은 국정원이 과거사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게 된 요인이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의미있는 것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과거사를 진솔하게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통절한 의지와 열망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 정보기관이 스스로 과거사 정리에 나서게 된, 세계정보기구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의미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수많은 전 현직 구성원을 지닌 조직이

지난날의 과오를 아무런 숨김없이 고백하고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웬만한 각오와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정원은 필요한 시점에서 결연한 용기를 냈다. 처음에는 ‘과연 국민들이 이러한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까’ 하는 의구심과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 줄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정보기관상의 정립

국정원이 과거사 진실규명에 나선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것만은 아니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보기관의 탈·불법 행위를 방지할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나아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관행과 조직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다짐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숨겨진 과거사를 들추어 반추하면서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생한 교훈으로 되새기려는 뜻이다. 중정에서 시작되어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진 역사 속에서 일부 행적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으며, 정보기관의 특성상 ‘비밀 유지’라는 미명하에 그냥 덮어진 채로 흘러 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사 진실 규명은, 국정원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내부적으로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다. 과거사 진실 규명 작업 초기에 일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보안이 생명인 정보기관이 모든 걸 다 밝힌다면 어느 누가 비밀스러운 업무를 감수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비판에서부터 “정보기관은 설명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는(Never Explain, Never Complain, Never Excuse)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과거사 진실 규명 활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사실, 보안을 신념으로 믿어온 대다수 국정원 직원들에게 과거 활동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국가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대공 수사에 평생을 바쳐왔던 고참 수사관들은 “밤을 세워가며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활동들이 조작행위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극도의 좌절감과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사 진실규명의 취지를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간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과거 의혹사건을 낱낱이 규명해 잘못된 용서를 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는 뚝뚝하게 해소하여, 국민은 국정원을 신뢰하고 국정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계로 새 출발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결국 초기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보여준 깊은 관심과 격려를 국정원 직원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우리의 조사결과를 믿어줄까”라는 의문을 배제할 수 없었다. 설익은 결과물로 인해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다른 억측을 불러일으켜 또다시 무차별적으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게 되면 ‘차라리 아니 함만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결해 나가야 했다.

우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종교·법조·학계는 물론 인권·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과거 정보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민주화운동 인사들까지 위원 및 조사관으로 참여해 주도록 협조를 구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국정원 외부 위원(10명)이 내부 위원의 2배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정원의 과거사 진실 규명 활동이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국민에게는 의혹을 해소하는, 국정원에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가 되었다.

위원회는, 저 멀리 부일장학회 사건(62.5)에서부터 KAL 858기 폭파사건(87.11) 남한조선노동당 사건(92.10)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했다. 또 정치, 언론, 학원, 노동, 사법, 간첩사건 등

분야에서의 과거 행적들을 일일이 들추어 총체적으로 정리했다. 그 결과 각 사건의 진실에 대한 왜곡 혹은 오해에서 야기된 사회 혼란과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관련된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사회적인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리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국정원의 도전은 의혹속에 있던 현대사 주요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과 함께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해진 일이다.

국정원 발전의 항구적 토대 마련

참여정부는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를 주요 국정 개혁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국정원에게는 과거 ‘정권안보기관’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라는 과제가 주어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탈정치·탈권력화’였다. 그동안 국정원 특권의 상징이었던 주례 대면보고를 중지하고, 정치권 동향 보고 등 정치 개입과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였다. 국내 정보 수집요원의 행정부처·언론사 상시 출입관행을 정보수요 파악 등을 위한 연락관

개념으로 전환하는 등 정보수집활동 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곧 국정원이 참여정부 하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한 개혁은 우리 현대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왜곡된 정보기관의 모습을 바로잡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제자리를 찾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제자리 찾기’ 개혁의 시발점이 탈정치·탈권력화와 함께 추진한 과거사 진실 규명이었던 것이다.

국정원의 개혁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 국정원은 탈정치·탈권력화와 ‘제자리 찾기’ 개혁을 통해 자신감과 자부심,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회복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본연의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최고가 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사 진실규명이 국정원 개혁을 더욱 심도있고 강도높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하여 준 셈이다.

이제 국정원의 개혁 작업은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 둘씩 크고 작은 성과를 도출해 나가고 있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던 일부 직원들도 점차 능동적으로 개혁 작업에 동참하게 되었고, 국정원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던 외부의 시각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국정원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국정원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이야 말로 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도 깨달았다.

국정원은 지금까지의 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개혁이 '완결'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진하다는 자세로 항상 겸허하게 되새기면서, 진정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보기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 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 총론(Ⅰ)

●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Ⅱ)

-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사건 진실규명
 - 동백림 사건 진실규명
 -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규명

● 주요 의혹사건편 下권(Ⅲ)

- 김형욱 실종사건 진실규명
- KAL 858기 폭파사건 진실규명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진실규명

● 정치 · 사법편(Ⅳ)

● 언론 · 노동편(Ⅴ)

● 학원 · 간첩편(Ⅵ)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 총론(Ⅰ)-

편 집 |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발행처 | 국가정보원

발간일 | 2007년 10월 10일